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연구용역

농산물HS관세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2009. 11.

농림수산물식품자료실



0018550



(사)세계농정연구원

목 차

< 연구요약 >	1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2. 연구내용과 방법	12
3. 선행연구의 검토	13
4. 연구결과의 활용	14
II. 농산물 품목분류의 국내외 규율체계	16
1. 국제상품분류의 규율 체계	16
2. 국내 상품분류 규율체계	21
III.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의 비교분석	23
1. 주요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상황비교	23
2.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비교	43
3. 시사점	49
IV. 주요농산물 및 관련품목의 관세체계 및 품목분류 정비방안	51
제1주제 : 곡물·과일분야	51
1. 연구범위	53
2. 곡물·과일 분야 주요내용	53
(1) 곡물	53
1) 쌀	53

가. 주요국 분류기준	5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58
다. 개편방안	58
2) 보리	59
가. 주요국 분류기준	5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61
다. 개편방안	61
3) 밀	62
가. 주요국 분류기준	62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64
다. 개편방안	64
4) 옥수수	64
가. 주요국 분류기준	6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67
다. 개편방안	67
5) 수수	68
가. 주요국 분류기준	6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69
6) 호밀	69
가. 주요국 분류기준	6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70
7) 기타곡물	71
가. 주요국 분류기준	71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73
다. 개편방안	74
8) 대두	74
가. 주요국 분류기준	7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76
다. 개편방안	77
(2)곡물가공품	77
1) 쌀가공품	77
가. 주요국 분류기준	77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79
다. 개편방안	80
2) 보리가공품	80

가. 주요국 분류기준	80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82
3) 밀가공품	83
가. 주요국 분류기준	8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87
다. 개편방안	87
4) 옥수수 가공품	88
가. 주요국 분류기준	8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92
다. 개편방안	93
5) 호밀가공품	93
가. 주요국 분류기준	93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93
다. 개편방안	95
6) 귀리가공품	95
가. 주요국 분류기준	95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98
다. 개편방안	98
(3) 과일	99
1) 사과 · 배	99
가. 주요국 분류기준	99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103
다. 개편방안	103
2) 감귤	104
가. 주요국 분류기준	104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105
다. 개편방안	105
3) 포도	106
가. 주요국 분류기준	106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107
다. 개편방안	108
4) 복숭아 · 자두	108
가. 주요국 분류기준	108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110
다. 개편방안	111

제2주제 : 채소·특작류 분야 ----- 113

1. 연구범위 ----- 115

(1) 품목분류현황 및 구조 ----- 115

(2) 채소 및 특작류 관세율 구조 ----- 121

2. 채소·특작류 분야 주요내용 ----- 124

(1) 주요국 세분화 구조와 정책시사점 ----- 124

1) 미국 ----- 124

2) EU ----- 129

3) 일본 ----- 136

4) 정책 시사점 ----- 143

(2) 채소·특작류 관세구조의 특징과 활용방안 ----- 151

1) 미국,EU,일본의 비종가세 활용현황 ----- 151

2) 미국,EU,일본의 계절관세 활용현황 ----- 154

3) 정책활용방안 ----- 155

(3) 채소·특작류 관세체제 개편방안 ----- 157

1) 기본 원칙 ----- 157

2) 개편 방안 ----- 158

가. 우리나라의 채소·특작류의 생산액 ----- 158

나. 품목별 관세체제 개편방안 ----- 159

3. 요약 및 정책제안 ----- 203

제3주제 : 축산·낙농유 분야 ----- 213

1. 연구범위 ----- 215

2. 축산·낙농유 분야 주요내용 ----- 215

(1) 축산물 ----- 215

1) 쇠고기 ----- 215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 215

나. 각국의 추가분류 기준 ----- 217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27

2) 돼지고기 ----- 236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236
나. 각국의 추가분류 기준	238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247
3) 가금육	255
가. 세계 공통분류 기준	255
나. 주요국 분류 기준	257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267
(2) 낙농유제품	274
1) 탈지분유	276
2) 전지분유	277
3) 요구르트	280
4) 혼합분유	281
5) 유장	285
6) 버터, 기타의 밀크지와 유, 데어리스프레드	287
7) 치즈와 커드	291
V. 요약 및 결론	294
<참고문헌>	299

표 목 차

<표 2-1> 국제상품분류표 제정 및 개정의 역사	18
<표 2-2> HSK 개정 연혁	22
<표 3-1> 한국 및 주요 10개국 농산물 HS 품목분류 현황(2단위 기준)	24
<표 3-2> 4단위 기준 품목별 세번수 비교(표준편차 4.5 이상, 단위 개수)	29
<표 3-3> 일본의 차액관세제도 : 돼지고기의 경우	33
<표 3-4> EU 진입가격제도하 관세부과 현황 : 토마토의 경우	36
<표 3-4 계속> EU 진입가격제도하 관세부과 현황 : 토마토의 경우	37
<표 3-5> 농산물 품목분류의 목표와 기준	44
<표 3-6> 주요품목의 HS 6단위 이후 품목분류기준 비교	48
<표 4-1-1> EU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54
<표 4-1-2> 미국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55
<표 4-1-3> 일본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56
<표 4-1-4> 스위스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57
<표 4-1-5> 한국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58
<표 4-1-6> 한국의 쌀(1006호) 품목 분류 개편안	59
<표 4-1-7> EU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59
<표 4-1-8> 미국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0
<표 4-1-9> 일본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60
<표 4-1-10> 스위스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0
<표 4-1-11> 한국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1
<표 4-1-12> 한국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개편안	61
<표 4-1-13> EU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2
<표 4-1-14> 미국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2
<표 4-1-15> 일본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63
<표 4-1-16> 스위스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3
<표 4-1-17> 한국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4
<표 4-1-18> EU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5
<표 4-1-19> 미국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5
<표 4-1-20> 일본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65
<표 4-1-21> 스위스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6
<표 4-1-22> 한국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7
<표 4-1-23> 한국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8
<표 4-1-24> 미국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8
<표 4-1-25> EU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8
<표 4-1-26> 일본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68
<표 4-1-27> 스위스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9
<표 4-1-28> 한국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9

<표 4-1-29> 미국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69
<표 4-1-30> EU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0
<표 4-1-31> 일본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70
<표 4-1-32> 스위스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0
<표 4-1-33> 한국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70
<표 4-1-34> 미국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1
<표 4-1-35> EU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1
<표 4-1-36> 일본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71
<표 4-1-37> 스위스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2
<표 4-1-38> 한국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74
<표 4-1-39> 한국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74
<표 4-1-40> 미국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5
<표 4-1-41> EU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5
<표 4-1-42> 일본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75
<표 4-1-43> 스위스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75
<표 4-1-44> 한국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77
<표 4-1-45> 한국의 대두(1201호) 품목분류 개편안	77
<표 4-1-46> 미국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8
<표 4-1-47> EU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8
<표 4-1-48> 스위스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79
<표 4-1-49> 한국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79
<표 4-1-50> 한국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개편안	80
<표 4-1-51> 미국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81
<표 4-1-52> EU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81
<표 4-1-53> 일본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81
<표 4-1-54> 스위스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82
<표 4-1-55> 한국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83
<표 4-1-56> 미국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84
<표 4-1-57> EU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84
<표 4-1-58> 일본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85
<표 4-1-59> 스위스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86
<표 4-1-60> 한국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현황(10단위 기준)	87
<표 4-1-61> 한국의 밀 가공품 분류 개편안	87
<표 4-1-62> 미국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88
<표 4-1-63> EU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88
<표 4-1-64> 일본의 옥수수 가공품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89
<표 4-1-65> 스위스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90
<표 4-1-66> 한국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2
<표 4-1-67> 한국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3
<표 4-1-68> 미국의 호밀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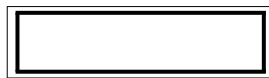
<표 4-1-69> EU의 호밀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94
<표 4-1-70> 일본의 호밀가공품 품목분류 현황(9단위 기준)	94
<표 4-1-71> 스위스의 호밀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94
<표 4-1-72> 한국의 호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5
<표 4-1-73> 호밀 가공품 분류 개편안	95
<표 4-1-74> 미국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95
<표 4-1-75> EU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96
<표 4-1-76> 일본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96
<표 4-1-77> 스위스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97
<표 4-1-78> 한국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98
<표 4-1-79> 한국의 귀리 가공품 품목분류 개편안	98
<표 4-1-80> 캐나다의 신선 사과·배 품목분류 현황(10단위)	100
<표 4-1-81> EU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1
<표 4-1-82> 미국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1
<표 4-1-83> 일본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101
<표 4-1-84> 스위스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2
<표 4-1-85> 한국의 신선 사과·배 품목분류 현황(10단위)	103
<표 4-1-86> 한국의 신선 사과·배 품목분류 개편안	103
<표 4-1-87> EU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4
<표 4-1-88> 미국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4
<표 4-1-89> 스위스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5
<표 4-1-90> 일본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105
<표 4-1-91> 한국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5
<표 4-1-92> 한국의 감귤류 품목분류 개편안	106
<표 4-1-93> EU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6
<표 4-1-94> 미국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7
<표 4-1-95> 스위스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7
<표 4-1-96> 일본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107
<표 4-1-97> 한국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8
<표 4-1-98> 한국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8
<표 4-1-99> EU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9
<표 4-1-100> 미국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109
<표 4-1-101> 스위스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09
<표 4-1-102> 일본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110
<표 4-1-103> 한국의 복숭아류(0809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10
<표 4-1-104> 한국의 복숭아류(0809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111
<표 4-2-1> 채소 및 특작의 HS 세 번(4단위)	116
<표 4-2-2>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118
<표 4-2-3>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119
<표 4-2-4>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119

<표 4-2-5>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120
<표 4-2-6> 채소 및 특작류 양허 관세율 수준	121
<표 4-2-7> 감자의 역관세 구조	122
<표 4-2-8> 고구마의 역관세 구조	123
<표 4-2-9> 관세 부조화의 예: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참깨	123
<표 4-2-10>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126
<표 4-2-11>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127
<표 4-2-12>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128
<표 4-2-13>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129
<표 4-2-14>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132
<표 4-2-15>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133
<표 4-2-16>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134
<표 4-2-17>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136
<표 4-2-18>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139
<표 4-2-19>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140
<표 4-2-20>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141
<표 4-2-21>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142
<표 4-2-22> 주요국의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비교(1)	145
<표 4-2-23> 주요국의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비교(2)	147
<표 4-2-24> 주요국의 HS 단위별 차와 고추의 세번 세분화 비교	148
<표 4-2-25> 주요국의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비교	149
<표 4-2-26> 주요국의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비교	150
<표 4-2-27> 미국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비종가세 적용 현황	151
<표 4-2-28> EU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비종가세 적용 현황	152
<표 4-2-29> 일본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비종가세 적용 현황	153
<표 4-2-30> 미국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계절관세 적용 현황	154
<표 4-2-31> EU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계절관세 적용 현황	154
<표 4-2-32> 우리나라의 종량세 품목(채소 및 특작류)	155
<표 4-2-33> 우리나라의 채소, 특작류 생산액	158
<표 4-2-34> 고추의 현행관세구조	159
<표 4-2-35> 고추 수입실적(2005~2008년)	160
<표 4-2-36> 노지 건고추의 월별 수입추세	161
<표 4-2-37> 냉동고추의 월별 수입추세	161
<표 4-2-38> 고추 개편방안	162
<표 4-2-39> 배추 관세구조	163
<표 4-2-40> 배추 수입현황(2005~2008)	163
<표 4-2-41> 배추 개편방안	165
<표 4-2-42> 토마토 관세구조	166
<표 4-2-43> 토마토 수입실적(2005~2008)	167
<표 4-2-44> 토마토 개편방안	168

<표 4-2-45> 오이 관세구조	169
<표 4-2-46> 오이 수입현황(2005~2008)	169
<표 4-2-47> 오이 개편방안	170
<표 4-2-48> 마늘 관세구조	172
<표 4-2-49> 마늘 수입실적(2005~2008)	172
<표 4-2-50> 신선·냉장 마늘(비탈피)의 월별 수입추세	173
<표 4-2-51> 냉동마늘의 월별 수입추세	174
<표 4-2-52> 마늘 개편방안	174
<표 4-2-53> 무 관세구조	175
<표 4-2-54> 무 수입현황(2005~2008)	176
<표 4-2-55> 무 개편방안	177
<표 4-2-56> 고구마 관세구조	178
<표 4-2-57> 고구마 수입실적(2005~2008)	179
<표 4-2-58> 고구마 개편방안	180
<표 4-2-59> 감자 관세구조	181
<표 4-2-60> 감자 수입실적(2005~2008)	182
<표 4-2-61> 감자 개편방안	183
<표 4-2-62> 양파 관세구조	184
<표 4-2-63> 양파 수입실적(2005~2008)	185
<표 4-2-64> 양파 개편방안	186
<표 4-2-65> 버섯 관세구조	187
<표 4-2-66> 버섯 수입실적(2005~2008)	189
<표 4-2-67> 버섯 개편방안	190
<표 4-2-68> 참깨, 들깨, 땅콩 관세구조	192
<표 4-2-69> 참깨, 들깨, 땅콩 수입실적(2005~2008)	193
<표 4-2-70> 참깨, 들깨, 땅콩 개편방안	194
<표 4-2-71> 호박 관세구조	195
<표 4-2-72> 호박 수입실적(2005~2008)	196
<표 4-2-73> 호박 개편방안	197
<표 4-2-74> 파 관세구조	197
<표 4-2-75> 파 수입실적(2005~2008)	198
<표 4-2-76> 파 개편방안	199
<표 4-2-77> 채두류 관세구조	200
<표 4-2-78> 채두류 수입실적(2005~2008)	201
<표 4-2-79> 채두류 개편방안	202
<표 4-3-1> 02류 쇠고기 관련 세번 (HS 6단위 기준)	216
<표 4-3-2> 쇠고기 관련 주요 세번(0201호와 0202호)의 분류기준 비교	217
<표 4-3-3> 주요국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18
<표 4-3-4> 미국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219

<표 4-3-5> 미국의 TRQ 대상 국가 및 물량	220
<표 4-3-6> EU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221
<표 4-3-7>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	223
<표 4-3-8> 일본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225
<표 4-3-9> 중국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226
<표 4-3-10> 우리나라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227
<표 4-3-11> 최근의 세번별 쇠고기 수입 실적	228
<표 4-3-12> 소 부위별 사용용도	231
<표 4-3-13> 최근의 부위별 쇠고기 수입 실적	231
<표 4-3-14> 소 부산물별 사용용도	232
<표 4-3-15> 우리나라 쇠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233
<표 4-3-16>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의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	234
<표 4-3-17>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기준 요약 (쇠고기)	234
<표 4-3-18> 02류 돼지고기 관련 세번 (HS 6단위 기준)	237
<표 4-3-19> 돼지고기 관련 주요 세번(0203호)의 분류기준 비교	238
<표 4-3-20> 주요국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39
<표 4-3-21> 미국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240
<표 4-3-22> EU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241
<표 4-3-23> 캐나다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243
<표 4-3-24> 일본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245
<표 4-3-25> 중국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246
<표 4-3-26>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248
<표 4-3-27> 최근의 세번별 돼지고기 수입 실적	249
<표 4-3-28> 최근의 부위별 돼지고기 수입 실적	251
<표 4-3-29> 돼지 부산물별 사용용도	252
<표 4-3-30>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253
<표 4-3-31>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의 자급률 추이	253
<표 4-3-32>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기준 요약 (돼지고기)	254
<표 4-3-33> 02류 가금육 관련 세번 (HS 6단위 기준)	256
<표 4-3-34> 가금육 관련 주요 세번(0207호)의 분류기준 비교	257
<표 4-3-35> 주요국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58
<표 4-3-36> 미국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259
<표 4-3-37> EU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261
<표 4-3-38> 캐나다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263
<표 4-3-39> 일본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265
<표 4-3-40> 중국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267
<표 4-3-41> 우리나라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268
<표 4-3-42> 최근의 세번별 닭고기 수입 실적	269
<표 4-3-43> 우리나라 오리고기 수입량 추이	270

<표 4-3-44> 우리나라 닭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271
<표 4-3-45> 우리나라 오리고기 소비량 변화 추이	271
<표 4-3-46>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기준 요약 (가금육)	272
<표 4-3-47> 주요국의 낙농품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75
<표 4-3-48> 주요국의 낙농유제품 HS 세번 수	276
<표 4-3-49> 주요국의 탈지분유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76
<표 4-3-50> 탈지분유 분류기준 비교	277
<표 4-3-51> 주요국의 전지분유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78
<표 4-3-52> 전지분유의 분류기준 비교	279
<표 4-3-53> 전지분유(04022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279
<표 4-3-54> 요구르트 분류기준 비교	281
<표 4-3-55> 주요국의 혼합분유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82
<표 4-3-56> 우유조제품(유장기타 HS 040490)의 분류기준 비교	283
<표 4-3-57> 우유조제품(유장기타 HS 04049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284
<표 4-3-58> 혼합분유(190190)의 분류기준 비교	284
<표 4-3-59> 혼합분유(19019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284
<표 4-3-60> 주요국의 유장과 변성유장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85
<표 4-3-61> 유장 및 변성유장(040410)의 분류기준 비교	285
<표 4-3-62> 유장 및 변성유장(04041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286
<표 4-3-63> 주요국의 버터 관련 HS 세번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87
<표 4-3-64> 버터(040510)의 분류기준 비교	289
<표 4-3-65> 버터(04051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289
<표 4-3-66> 데어리스프레드(040520)의 분류 비교	289
<표 4-3-67> 데어리스프레드(04052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289
<표 4-3-68> 기타 밀크지(040590)의 분류 기준	290
<표 4-3-69> 기타 밀크지(04059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290
<표 4-3-70> 주요국의 치즈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292



<그림 4-3-1> 소 부위별 명칭	230
<그림 4-3-2> 돼지 부위별 명칭 및 사용용도	251

그림목차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UR 농업협상 이후 WTO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존에 시행되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오직 관세부와 조치만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관심이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함으로써 산업보호 측면은 물론 소비자 유통구조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관세율 수준 자체는 물론 관세분류 체계 및 운영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DDA/FTA 협상 추진으로 야기되는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산업보호 수단으로서 농산물 관세체계 정비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농산물의 HS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한 후 향후 보다 효과적인 농업유지와 발전을 위해 주요 품목별 분류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품목의 향후 산업보호와 정확한 수입 통계확보를 통한 효과적 수급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경부 등 관계 부처에 농산물 관세율 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위한 설득 논리 제공과 농산물 관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WTO/DDA 농업협상 및 향후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으로 예상되는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에 기여 및 효과적인 협상전략 활용이 예상된다.

2. 주요 농산물 및 관련품목의 분류 및 정책 시사점

가. 곡물 및 과일 분야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곡물범위는 HSK 10류, 곡물 가공품은 11류, 12류 가운데 대두 그리고 19류로 한정하였다. 과일류의 경우 HSK 08류는 과일과 견과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 -

2) 연구의 주요내용

가) 문제점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는 전체적으로 품종별 세분화, 국산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분리, 관세할당 여부, 식탁용, 가공용, 사료용 등 용도별 세분화 측면에서 교역 대상국에 비해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품목분류의 단순함과 관세율 설정의 불합리성이 결합되어 관세회피를 위한 여러 가지 편법 수입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수입 농산물의 통관 및 유통, 통계 작성을 비롯하여 대외농산물 협상분야에서 품목선정 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최근 교역이 증가하는 GM 농산물 교역 분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기 농산물을 현행 품목분류체계에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개편방향

쌀 및 쌀 가공품의 경우 벼의 품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종자용 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벼 상태로 수입되어 도정될 경우가 있으므로 벼도 종자 이외의 기타 용도로 수입될 경우 쌀과 같은 분류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열처리(데친 것 등) 여부도 분류 기준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쌀 전분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 전분에 속해있으며 주정용 등 용도별 분류와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덩혀 먹는 1회용(즉석 요리) 쌀 제품 의 상품분류 추가가 필요하다. 보리 및 보리 가공품은 보리를 용도에 따라 주정용(주로 맥주보리), 사료용(주로 걸보리) 등으로 수입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용도에 따른 분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사료용, 가공용 등 용도별로 탄력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밀 및 밀 가공품은 밀의 배아 상태의 가공품(110430소호) 별도로 분류하고 옥수수 및 옥수수 가공품은 유전자조작(GMO) 옥수수의 국제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와 유사하게 옥수수 종자에 교잡종을 나타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 기타 곡물 및 가공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식용, 사료용, 기타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사료용 등 저율관세로 공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탄력관세로 대처하기보다 항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분류) 호밀 가공품은 HS 6단위 분류에 나타난 가공형태에 따라 조분, 펠리트 등을 추가할 필요

- -

가 있고 대두는 유전자조작(GMO) 대두의 국제 교역 증가, 소비자 관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조작 대두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기타 유지작물인 참깨, 유채 등은 유지작물 분류에 있어서 용도별 분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유채의 재배 및 교역이 증가하고 유지작물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품종별 분류가 필요하다.

과일류의 경우 미국, EU,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로 과일 교역에서 다양한 품종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역 증가에 대비하여 품종별 분류를 각각의 과일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과실류의 경우 품종에 따라 맛과 가격도 다르고 유통시기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사과: 후지, 델리셔스(골든, 레드), 갈라, 그래니 스미스, 퍼시픽로즈 등, 배: 동양배, 서양배, 감귤: 클레멘타인, 만다린, 탠저린 등, 복숭아: 복숭아와 벵타린 분리, 자두: 자두와 슬로우 분리. 자두 품종별 분류 필요> 이외에도 수입시기별 분류방식으로 우리나라 성출하기를 고려한 분류와 용도별로 식탁용과 가공용으로 분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종자는 별도분류를 통한 관세율 차이를 두어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품목코드를 지니고 있지 않아 기타로 상당수 통합되어 분류되고 있는 품목이 상당히 많은 상황(특히 신선농산물)에서 기타로 처리된 것 가운데 교역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실 품목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품목의 가공품도 실 품목의 가공 상태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GM농산물, 유기농산물의 경우 국제 교역량이 많은 GM 옥수수과 대두 등에 대하여는 GM 농산물 분류를 HS 6단위 이하에서 분리 분류하여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농산물 출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할당분리 추가하여 관세할당(TRQ) 물량의 수입과 일반 수입 물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TRQ 분류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나. 채소 및 특작분야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채소 및 특작분야로 주요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를 비롯하여 참깨와 땅콩 등 특작물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7류(채소) 전체와 제9류에서 0902(차), 0904(고추), 제12류(유지작물)에서 유지작물인(1202: 땅콩), 1207

- -

(기타 종자와 과실)이 대상이고, 그의 비차 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15류(식물성 유지)에서 땅콩유와 그 분획물(1507),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1515)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공조제채소라고 할 수 있는 제20류중(조제 채소)에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저장 처리한 채소, 과실 및 견과류(2001)와 식초 또는 초산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조제 채소(2002~2005)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주요내용

가) 문제점

일반적으로 채소 및 특작에서 우리나라의 품목분류는 핵심 품목 몇몇만이 세분되어 있고, 실제 국내 채소 및 특작생산에서 중요한 품목의 세분화는 적절한 수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기타 채소나 채소 혼합물 등의 세분화가 미진하여 실제 주요 채소의 수입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요 채소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사후 수입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품목 세분화가 긴요한 실정이다. 또한 세분화가 이루어진 품목도 신선·냉장 채소 및 특작에서의 세분화 정도와 그들의 1차 가공품에서의 세분화 정도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어 세번 세분화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한편 다른 선진국과 달리 채소 및 특작류에 계절관세의 적용이 전무하고 주어진 비종가세의 활용도 그 실적이 저조하여 관세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나)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개편방향

첫째, 채소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채소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계절관세는 기간별로 관세차이가 존재할 경우 효과가 있지만 설령 계절별로 관세차이를 둘 수 없다고 해도 국산 채소류의 성출하기가 아닌 계절에 수입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관세인하가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관세인하에 대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종량세 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계절적으로 국내산 채소의 성출하기에 종량세를 활용하여 저가의 수입산에 대한 국경보호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기존에 있던 유명무실한 종량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 종가세와의 국경보호효과에 대한 사전적 비교를 하여 종량세 부과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수준의 세번 세분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소매용 여부, 식용 여부, 공업용 원료 여부 등과 같은 기준이외 물리적 크기(또는 구경)나 품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되는 기준에 의거 세분화하여 세번 세분화의 국경보호효과의 제고는 물론 수입채소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신선·냉장 채소류의 세분류 정도와 이들의 1차 가공품간 세분류 정도는 상호 연관하에 일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세번의 세분화 및 관세체제 개편은 오히려 관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농업생산에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관세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축산·낙농분야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축산 및 낙농분야의 연구범위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그리고 낙농유제품의 일부로 선정하여 주요국의 분류체계와 우리나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국제적 분류동향과 우리나라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쇠고기의 경우는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02류는 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효소유연처리·다지기·설탕뿌리기 정도의 가공처리한 것을 두루 포함한다. 쇠고기의 경우 이 보다 추가적인 가공이 행해진 경우에는 16류에, 그리고 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5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개 02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동물의 장·방광·위 또는 피 등은 식용여부를 불문하고 5류에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쇠고기 식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분야이다. 또한 소시지 등이 포함되는 16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쇠고기 및 관련 가공산업 등의 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였다. 현재 02류 쇠고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2개이다.

돼지고기는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2류가 어류·연체동물·갑각류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제3류) 이외의 모든 동물의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 및 육과 설육의 분과 조분이 두루 분류되는 류이기 때문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3개이다. 가금육의 경우는 다른 육류와 더불어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공육의 경우 이보다 추가적인 가공이 행해진 경우에는 16류에, 그리고 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5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02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02류 가공육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4개이다.

낙농제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낙농유제품으로 분류되는 HS 세번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분류 현황과 관세부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요 낙농유제품의 HS 세번 분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낙농분야 대상품목으로는 HS 4단위기준으로 이루어졌다.(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 기타 발효/산화된 밀크와 크림, 0404: 유장과 따로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우유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0405: 버터, 기타의 지와 유, 데어리 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1702: 1702류 중 1702.11/19의 유당, 유당시럽, 1901: 1901류 중 1901.10/90의 밀크조제품)

2) 연구의 주요내용

가) 문제점

쇠고기 품목분야는 관련 세번인 0201호와 0202호의 상세 분류 체계가 다양하지 못한 점이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쇠고기 부위별로 구체적인 세번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정책적인 목적, TRQ의 in-quota 관세 부과, FTA 상대국별 특혜관세, 국내 정책목적 등 국내외 다양한 변수들을 품목분류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갈비를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했을 뿐 그 이외 다른 요소를 고려한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0206호와 5류 등에 분포되어 있는 소 부산물(머리,꼬리,사골,곱창 등) 관련 세번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미흡하고 소시지와 햄 등의 식육가공품 역시 매년 3만톤 가까운 양이 수입(2008년의 경우 2만 8천여 톤에 달함)되고 있으나 1601호에서의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하다. 그리고 SSG등 주요 정책수단이 세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돼지고기인 경우 쇠고기와 동일한 품목분류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주된 세 번인 0203호의 상세분류체계의 미흡을 비롯하여 돼지고기 부산물의 식용과 비

식용 여부가 02류와 05류의 관련품목사이에서 쟁점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품목 상 소시지와 햄의 경우 수입량대비 품목세분화가 단순하여 주재료 별, 가공방법별 세분화가 미흡하다. 이외에도 쇠고기와 동일하게 SSG등 주요 정책 수단이 세 번에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간 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금육의 경우 특히 닭고기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에 비해 부위별 품목분류가 세분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문화를 고려한 품목의 세분화는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조류독감과 같은 외부변수에 대한 변화량이 있지만 오리고기의 경우 꾸준한 수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 주요국과 같이 세 번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낙농유제품의 경우 주요국 대비 60개의 세 번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장접근 대상 품목과 비 대상 품목의 품목분류 코드가 미분화되었다. 이외에도 증가세위주의 단순 형태 관세부과 유형과 가공도와 관계없이 단순세율 및 일부제품은 역관세구조로 산업구조 보호효과가 낮은 점이다. 또한 6단위 이후로는 성분비율, 감미료 첨가 여부, 사용용도 및 포장용기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개편방향

쇠고기의 경우 연간소비량이 2008년 현재 8.2kg으로 1985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대비 낮은 소비량 수준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향후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쇠고기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국내 쇠고기 시장의 영향도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상세한 부위별 품목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선진국 분류와 같이 세분화된 품목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의 식품안정성 문제대두로 인해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품목개선방안과 같이 세 번별 품목을 세분화하고 부위별 분류를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가금육의 경우 주요선진국의 경우 수입 및 소비가 활발한 02류 내에서 도계형태나 부위 등 다양한 세 번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단일 세번을 개선하여 세 번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낙농제품의 경우 증가세 위주의 관세체계를 개선해야하며 사용용도, 성분비율, 감미료 첨가 등에 따른 세분화를 해야 한다. 이는 낙농산업 보호측면과 품목의 교역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을 지니는 개편으로 향후 WTO/FTA를 통해 제공된

TRQ 할당물량을 기준으로 쿼터량 안팎의 부과되는 세율이 품목 세번을 통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있을 수 있어 세 번수를 다양하고 많이 분류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있다.

3. 요약 및 결론

UR협상이후 농산물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초 하에서 상당한 교역규모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농산물 무역정책수단으로 농산물 관세가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는 산업보호측면 이외에도 소비 및 유통구조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많으며 주요국 대비 제도의 미흡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농산물 분야의 품목별 분류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주요국의 분류체계 및 구성을 비교검토 함으로써 국내 품목분류체계 및 구조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농산물 품목분류의 향후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WTO/FTA의 다양한 국제적 농산물 시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입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주요품목의 효과적인 수급관리와 관세강국의 분류유도를 통한 우회수입방지 그리고 국제적 농산물 관련 협상에서 관세감축 및 철폐에 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주요선진국의 품목분류의 체계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소비동향과 효과적인 수급관리를 반영한 품목별 세분화를 하고 산업보호적 측면을 반영한 다양성과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품목체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UR 농업협상에서 WTO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존에 시행되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오직 관세부와 조치만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로 인해 UR 농업협정 타결과 함께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제 농산물 교역은 관세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 출범이전까지 수입제한이 가능했던 고추, 마늘, 양파, 포도, 감귤,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주요 농산물이 1995년 이후에는 누구든지 일정율의 관세만 납부하면 검역상의 문제가 없는 한, 수입이 가능한 형태로 시장개방 되었음.
 - 즉 UR 농업협정 타결 이후 모든 품목의 관세화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농산물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농산물 관세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
-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산업보호 측면은 물론 소비나 유통구조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된 바가 없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UR 이전까지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농산물 관세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거의 부각되지 못하였음.
 - 왜냐하면 UR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이나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국경보호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였기 때문임. 예를 들어 WTO 출범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쌀, 옥수수, 대두 등 134개 품목은 양곡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수입제한을 유지하였고(통합공고 품목), 고추, 마늘, 쇠고기, 오렌지 등 108개 품목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수입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었음.

- -

- 이에 따라 농산물 관세율 수준 자체는 물론 관세분류 체계 및 운영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DDA/FTA 협상 추진으로 야기되는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산업보호 수단으로서 농산물 관세체계 정비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사실상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면밀한 분석과 검토 속에 농산물 관세체계를 해당 산업의 보호측면에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용도별, 성분별, 가공도별, 포장형태별 HS 관세분류 체계를 매우 세분화하고, 세 번별 민감도에 따라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종량관세, 혼합관세 등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산업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상태임.
 - 우선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는 기본적으로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산업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즉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유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는 주로 종가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관세구조는 유사 및 대체품간의 관세부조화 및 관세격차 문제로 인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통한 실질적인 국경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냉동마늘 혹은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마늘 및 낙농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이와 같은 원품목과 유사대체 품목간의 관세격차 혹은 관세부조화에 따른 수입급증과 농가피해 문제는 사실상 관세율 조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
 -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이미 양허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관세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그 한계가 있음.

- -

- 왜냐하면 관세율의 상향 조정은 양허의 철회 혹은 수정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으로 다른 WTO 회원국들의 동의와 양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 그렇다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첫째,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제는 근본적으로 해당 산업보호 측면에서 볼 때, 비합리적인 관세체제 및 관세부조화문제가 발생 중으로 국경보호 효과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즉 최근 관세의 역할 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산업보호적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제는 그 목적 달성이 거의 어려운 실정임.
 - 둘째, 이러한 비합리적인 관세체제 및 관세부조화 문제의 방치는 농산물의 편법/탈법/우회적인 수입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업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관세수입의 감소라는 국가 재정 수입 문제와도 연관됨.
 - 셋째, 현행 주요 농산물과 유사대체 품목 사이의 비합리적 관세율구조 하에서는 WTO/DDA 농업협상 등 다자간 협상이나 미국 등 주요국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관세감축(혹은 철폐)의 예외나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등 예외적 조치를 인정받기 위해 검토해야 할 민감품목 결정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컨대 어떤 특정 품목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와 직·간접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 또는 유사품목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된 경우, 해당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도 그 실질적 국경보호 효과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임. 즉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적게 감축했지만 해당 품목과 직·간접적으로 대체되는 품목의 관세가 낮아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당초 보호하려고 했던 해당 품목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주요 선진국들이 농산물 품목분류를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보다 농산물 품목별 특성과 교역 상황을 반영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HS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세번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임.

- 또한 선진국들이 농산물 품목분류를 세분화한 이유는 산업보호적 관세 부과 목적 이외에 통계적 목적도 함께 고려된 것임. 예컨대 국내 소비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품목 분류는 정확한 수출입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주요 품목의 효과적인 수급관리나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일반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단순하여 적정한 관세의 부과와 이를 통한 시장보호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수입통계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현행 농산물 품목분류를 산업보호의 측면이나 정확한 통계확보 목적차원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품목분류의 단순화로 관세부담회피를 위한 우회적인 수입으로 국내 농업의 주요품목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험이 있던 품목이나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품목, 주요 품목이 포함되었으나 기타로 분류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분류 상황을 기초로 품목분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요 농산물의 HS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한 후 향후 보다 효과적인 농업유지와 발전을 위해 주요 품목별 분류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 농산물 품목분류의 국내외 규율체계
 - 국제 상품분류의 규율체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 국내 상품분류의 규율체계
-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의 비교 분석
 - 주요국의 농산물 품목 분류 상황 비교
 - 주요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 비교

- -

- 주요 농산물의 HS 품목분류 정비 방안
 - 곡물류(쌀, 콩 등), 과일류(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특작류(인삼, 땅콩, 녹차 등),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낙농품(분유, 치즈, 버터 등)

나.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
 - 지식경제부, 관세청, 관세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등 담당자 면담 및 수입업체 등 조사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농산물 관세체계 현황 출장조사
 - 농산물 관세구조, 부과현황, HS세번분리 상황 등 조사
- 경제 이론적 논리를 활용한 실증분석
 - HS 세번별 관세구조 및 부과유형 분석
- 품목 전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곡물, 축산, 낙농, 과일, 채소, 특작 관련 품목 전문가 및 무역업 종사자 등

3. 선행연구의 검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HS 품목 분류체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 수준의 설정 자체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종종 관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 수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산업보호 측면은 물론 소비나 유통구조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된 바가 없어 관세율 수준 자체는 물론 관세체계 및 운영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음.
- 반면에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면밀한 분석

- -

과 검토를 거쳐 자국의 농산물 관세 분류체계를 해당 산업의 보호효과 제고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 증진측면에서 운영해 오고 있음.

- 특히 선진국들은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품목을 세분화한 다음에 세번 별로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량관세, 혼합관세 등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국가와의 FTA나 DDA 농업협상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제약여건 하에서 국내 농업의 개방 피해를 가급적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체제 및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농산물 관세체제 개편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본 연구와 연관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최세균외(2006)와 최용규외(2007) 그리고 임정빈외(2007)가 있으나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현행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관세체제 개선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실제 HS 품목분류 문제를 세밀히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특성과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품목분류 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주요 품목별 HS 세 번을 통한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연구결과의 활용

○ 주요 품목의 HS 관세 분류체계 정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품목의 향후 산업보호와 정확한 수입 통계확보를 통한 효과적 수급 관리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됨.

○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농산물 관세율 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위한 설득 논리 제공과 농산물 관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기대됨.

○ 또한 조만간 본격화될 WTO/DDA 농업협상 및 향후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 -

협상으로 예상되는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에 기여 및 효과적인 협상전략 마련에 활용이 예상된다.

○ 주요 농산물의 HS 품목분류 세분화 방안마련을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1) 정확한 수입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주요 품목의 효과적인 수급관리

- HS세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어떤 특성의 품목이 어느 정도 수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해당품목의 수급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내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의 HS 분류를 세분화함으로써 품목별 수입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함.

2) 관세당국의 엄격한 분류 유도를 통한 우회 수입방지

- 일부 품목의 경우 높은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 관세분류의 허점을 이용한 단순가공이나 혼합을 통한 우회 수입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주요 수입급증 품목 혹은 수입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분류를 세분화하면, 관세당국이 엄격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를 하게 되어 수입업자들의 우회 수입이나 허위 저가 수입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3) 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관세감축의 유연성을 확보

- 현재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분류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감품목과 비민감세번품목이 동일 세번 품목에 포함되어 동일한 관세 감축율이 적용됨. 이로 인해 지난 UR 농업협상보다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예상되는 DDA 농업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대응력을 취약하게 하고 있음. 주요 품목의 HS 세번 분류 체계를 정비하면 DDA 농업협상이나 FTA 협상 추진시 관세감축이나 관세철폐 협상에서, 민감한 세번 품목은 관세감축을 최소화하고, 민감하지 않은 세번 품목은 관세 감축을 높이는 신축성을 발휘하여 보호효과를 높일 수 있음. 즉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분류 체계의 세분화를 통해 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이나 관세철폐의 유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임.

- -

II. 농산물 품목분류의 국내외 규율체계

1. 국제 상품분류의 규율체계

- 각국의 관세부과 기준이 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국제적으로 HS체계를 따르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 체계인 HS의 정식명칭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임.
 - HS 체계는 관세협력이사회(CCC)에서 1983년 6월 14일에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품목분류표임.
 - HS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결정은 관세부과 뿐만 아니라 수출입승인·관세감면대상·원산지 등의 결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분류체계의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HS 품목분류표는 크게 두개의 영역으로 구분됨.
 - 첫 번째 영역은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에 근거한 것으로, 품목별 HS 세번상 6단위 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여기서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1류부터 24류에 포함됨.
 - 두 번째 영역은 품목별 HS 세번상 6단위 이상의 단위는 각 체약국이 국내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음. WTO 통보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등은 대체로 HS를 8~10단위 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태국은 7단위, 인도 및 호주 등은 6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 농산물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국내외 상품분류 규율체계를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

(1) 국제 상품분류 규율의 변천과정

-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생산능력 확대에 의한 필연적 결과물인 잉여상품의 증가와 국제자유무역은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생산기법 및 과학기술의 진보는 무역상품의 다양화로 이어졌음. 이렇게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품정보의 신속한 자료수집과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상품분류 규율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즉 서로 상이한 품목분류제도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간의 무역에 있어 통일되지 않은 상품분류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제간의 관세율 비교와 무역통계 및 무역활동에 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분류의 표준화와 국제적 조화가 요구된 것임.
-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상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830년대부터 시작되었음.
 - 1831년에 벨기에에서는 원료·농산물·공산물의 포괄적 상품분류를 자국의 무역통계에 사용하였고, 1853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협의회에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인식된 가운데 1908년까지 지속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표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음.
 - 지속적인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의 제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27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경제협의회에서 국제관세율표에 관한 기본골격이 제시되었고, 1931년 잠정관세품목분류표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제네바품목분류표임.
 - 그 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기초로 통계목적의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¹⁾와 관세목적의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 1976년 CCCN으로 개칭)²⁾이 제정되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인 HS가 제정되었음. HS의 정식명칭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약칭으로 HS라 함.

1) 국제연맹은 1938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경제통계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비교 등의 목적으로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최소목록을 발간하였고, 이것을 UN통계위원회가 SITC로 개칭하여 1950년 7월에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대외무역통계분류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SITC는 국제무역상품자료의 경제분석과 국제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통계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2) 유럽경제협력위원회는 유럽의 관세동맹창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947년 유럽관세 동맹연구단을 설립하였는데, 동 연구단은 제네바품목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1950년 12월 1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협약」 즉, BTN협약을 제정하였고, 이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것이 BTN이다.

○ HS 이전 국제상품분류체계인 CCCN³⁾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큰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품개발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출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1983년 관세협력이사회(CCC)⁴⁾에서 채택한 것이 “HS”임.

- HS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음. 첫째, CCCN을 채택하지 아니한 국가와 CCCN 채택국간의 국제무역교섭 및 수출입통계 등의 비교·분석이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특히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미국과 캐나다가 CCCN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를 포용하는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을 통해 품목분류체계의 국제통일화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품생산기술 개발에 따른 무역상품의 변화와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음. 셋째, 보험·운송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품목분류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음.

○ 국제상품분류표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를 요약하면 <표 2-1>와 같음.

<표 2-1> 국제상품분류표 제정 및 개정의 역사

연도	발전내용	용도	주관
1831년	응용통계분류표 제정 - 3개의 포괄적 분류 : 원자재, 농산물, 공산품	통계	벨기에
1853년	국제통일 관세율표 및 통계표의 필요성 인식	관세·통계	국제경제 협의회
1892년	관세율표 제정 - 오스트리아, 헝가리 시행	관세	밀라노
1913년	국제공통분류(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채택 - 최초 국제협약, 통일통계품목표 - 5개 그룹 186 항목(산동물, 식량 및 식료, 원자재, 공산품, 금, 은 등) - 30개국에서 관세품목표로 사용	관세·통계	상업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3)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이란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하며, HS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4) “Customs Cooperation Council(CCC)”이란 1952년 정식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에 즈음하여, 관세협력이사회란 명칭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로 변경키로 1994년 6월 총회에서 결정하였으나, 관세협력이사회설립에 관한 협약이 개정되지 않아 정식명칭은 Customs Cooperation Council(CCC)이라 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work name은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로 표시하고 있다. 관세협력이사회는 관세행정의 조화·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범세계적인 협력기구로서 각국의 통관절차감시활동·관세평가·품목분류 등 기술적인 사항을 국제적인 협의를 통하여 표준화를 촉진하고 관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도	발전내용	용도	주관
1927년	통일관세품목표 제정에 관한 안 채택 국제관세율표의 골격 제시(권고)	관세	국제연맹 세계경제 협의회
1931년	잠정관세품목표 제정(제네바 품목표)	관세	국제연맹 전문가위원회
1937년	1차 개정 제네바품목표 완성 - 21부 86류 4360호(이중 991개호 채용 의무화)		국제연맹 전문가위원회
1948년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상품최소 목록” 발간 - 제네바 품목표를 기초 - BTN의 모체가 됨.	통계	국제연맹
1950년	SITC의 제정 - 상품최소목록을 기초 - 10부 53류 150그룹, 570아이템 SITC 채택 권고 BTN 협약의 성립	통계	UN통계위원회, UN 경제사회 이사회
1959년	BTN 협약의 발효	관세	
1973년	HS 개발 결정	관세·무역	
1974년	SITC 개정(Rev. 2)	통계	
1976년	BTN을 CCCN으로 개칭		
1983년	HS 협약 채택	관세·무역	관세협력이사회
1985년	SITC 개정(Rev. 3)	통계	UN 통계위원회

(2)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 HS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근거 규약은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임.
- HS협약은 HS 협약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HS협약 본문은 전문과 2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HS품목분류표는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협약의 전문에 규정된 HS 협약의 목적은 국제무역의 원활화,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 관세교섭의 원활화, 다목적의 상품분류 활용 등 임.

- -

- 이 협약에 근거하여 HS 분류체계는 21부, 97류, 1222개의 호, 5052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음.
 - 부를 제외하고는 각각 분류번호가 있는데 류는 2단위, 호는 4단위, 소호는 6단위의 번호로 나타낼 수 있음.
 - 이러한 HS 6단위의 상품분류는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4단위까지 채택)하고는 HS 협약국의 의무로서 그대로 수용하여야 함.

- 관세협력이사회(CCC)에서 제정하여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사용한 CCCN이 관세부과에 사용하기 위한 품목분류표라면, HS는 관세부과 뿐만 아니라 통계·운송·보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CCN과 SITC⁵⁾를 모체로 하여 관세협력이사회에서 1983년 6월 14일에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품목분류표임.
 - 이는 관세협력이사회가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목적 등으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EU 등 170여 개국이 사용되고 있음.
 - HS는 1988년 제정 이후 현재 까지 4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제1차 개정은 1992년에, 제2차 개정은 1996년에, 제3차 개정은 2002년에, 제4차 개정은 2007년에 있었음.

- HS 품목번호의 표시방법은 6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계 공통단위임.
 - 6단위 숫자 중 앞의 두 단위는 류(類)를 나타내고, 그 다음 두 단위는 호를 나타내며, 마지막 두 단위는 소호를 나타냄. 예를 들어 HS 품목번호가 081340 이라면 제8류(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안에서 13호(건조한 과일)의 40소호(건조한 기타 과일)에 속하는 품목을 뜻 함.⁶⁾

5)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SITC)”란 국제무역상품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UN에서 “상품의 특성과 제품의 원재료·생산단계·제품의 용도 등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된 통계 목적용 분류표를 말한다. SITC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통계청)에서는 SKTC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HS 품목분류는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가공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농·수·임산물, 광물 및 화공약품, 경공업 제품, 기계·전기기기, 전자·정밀기구, 잡품 및 미술품 순으로 배열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산 동물인 소는 제 1류에 분류되어 있고, 소의 가공제품인 소가죽은 제41류에 분류되어 있으며, 가공도가 더 높은 가죽 신발류는 제64류에 분류되어 있음.

- 류(類) 안에서도 가공정도 순으로 품목을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예를 들면 신선한 감은 제 8류의 10호 90소호(081090)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 보다 가공도가 높은 건조 감은 제 8류의 13호 40소호(081340)에 분류되어 있음.

- 한편 앞서 언급한 바대로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HS 세번은 6단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그 하부단위의 분류는 각국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HS 6단위 이상은 국가마다 품목분류의 세분류 수준이 상이함.

2. 국내 상품분류 규율체계

- 우리나라는 1985년 6월 HS협약에 가입 서명한 후 1987년 7월 1일에 재무부고시 제87-12호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공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HSK 6단위까지는 국제협약인 HS 체계에 일치시키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품목분류표는 관세율과 함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됨.
 - 관세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율까지 포함한 변경은 국회에서의 관세법

6) 각국은 081340 아래 4단위의 숫자로서 건조한 기타 과실을 나타내는 부호로서 각국이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기타 건조 과실(081340)을 건조 감(1813401000)과 건조 대추(0813402000)로 세분류하고 있다.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율변경 없는 품목분류표의 변경은 HSK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로 개정됨(관세법 제84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98조 근거).

- 우리나라는 1987년 HSK가 도입된 이래 HS협약 개정 내용 및 산업발전 현황 반영을 위해 17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UR협정 발효 이후에도 6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 이러한 개정들은 대체로 HS수정협약 국내수용, 수출입규제물질 신설, 국내 산업구조 변화 반영 등을 위한 것임.
-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고추, 분유 등 관세 세번 분류의 이슈가 되었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 소비패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분류를 세분화하는 노력은 미미했다고 평가됨.

<표 2-2> HSK 개정 연혁

구분	시행일자	10단위 품목수
재정(재무부 고시) (명칭 : 한국통일상품분류)	1987.1.1	10,183
1차 개정	1988	10,205
2차 개정	1999	10,241
3차 개정	1990	10,274
4차 개정 (제1차 HS협약 개정)	1992	10,322
5차 개정	1993	10,417
6차 개정	1994	10,502
7차 개정 (제2차 HS협약 개정)	1996	10,859
8차 개정	1997	10,904
9차 개정(ITA협정 이행)	1997	11,012
10차 개정	1999	11,096
11차 개정	2000	11,170
12차 개정	2001	11,176
13차 개정 (제3차 HS협약 개정)	2002	11,237
14차 개정	2003	11,261
15차 개정 (제4차 HS협약 개정)	2007	11,703
16차 개정	2008	
17차 개정	2009	11,881

- -

III.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의 비교 분석

1. 주요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상황 비교

- WTO 농업협정 부속서 1의 농산물 분류 기준에 따라 각국이 농산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의 수는 <표 3-1>과 같음.
 - WTO 통보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의 품목분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등은 대체로 HS 8~10단위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태국은 7단위, 인도, 호주 등은 6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 분석대상국 중에서 EU가 2,205개로 가장 많은 세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스위스로 2,179개, 일본과 미국은 각각 1,794개, 1,777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농산물 세번을 가지고 있음. 반면 인도는 696개, 호주는 725개, 태국은 773개, 그리고 중국이 981개 등으로 그 수가 작은 편임⁷⁾.
-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농산물 품목분류 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1,452개임⁸⁾.
 - HS 2단위인 류별로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7류(채소)는 131개 품목, 20류(채소 및 과일조제품)는 108개 품목, 2류(육류)는 94개 품목, 12류(채유용종자, 인삼)는 92개 품목, 15류(동물성 유지)는, 91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는, 78개 품목 등으로 세번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반면에 14류(기타 식물성 생식품)는 21개 품목, 16류(육·어류조제품)는 24개 품목, 24류(담배류)는, 25개 품목 등으로 세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HS 2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 분류수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표 3-1>와 같음.

7) 다만 품목 세분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대적인 비교가 항상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 번의 수준이 8단위, 9단위, 10단위로 단위 수가 올라갈수록 절대적인 세번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8) 2005년 농축산물 HSK 기준이다. 다른 주요국가와의 동일연도 비교를 위해 2005기준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2008년 유장, 혼합분유, 치즈, 버터조제품 등 낙농품에 17개 세 번, 그리고 2009년 쇠고기에 2개 세 번(갈비(냉장/냉동))이 신설되어 현재 1,471개 HS 세 번으로 구성된다.

<표 3-1> 한국 및 주요 10개국 농산물 HS 품목분류 현황(2단위 기준)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태국	인도
	10단위	8단위	8단위	9단위	8단위	6단위	8단위	8단위	8단위	7단위	6단위
01류	48	24	47	27	37	17	32	42	38	28	17
02류	94	93	233	107	67	53	101	164	66	58	54
04류	51	251	175	145	37	29	87	80	50	37	28
05류	53	20	20	30	39	16	19	30	29	18	16
06류	74	28	48	18	19	12	36	53	40	13	12
07류	131	156	122	115	90	62	143	359	81	60	56
08류	78	117	201	109	78	55	92	128	68	57	55
09류	36	47	56	71	41	32	50	38	34	32	33
10류	32	21	55	45	23	16	25	93	22	17	17
11류	45	38	83	95	34	34	66	157	37	34	34
12류	92	60	80	74	103	47	53	197	84	55	48
13류	25	15	19	23	22	13	12	18	34	13	13
14류	21	14	12	19	13	10	10	12	14	10	10
15류	91	66	120	78	46	47	61	160	62	63	43
16류	24	27	45	51	16	11	53	34	16	12	11
17류	33	66	47	49	18	20	42	49	25	23	16
18류	33	78	27	31	11	11	17	35	14	11	14
19류	50	68	48	138	20	17	92	84	24	21	18
20류	108	173	307	232	75	47	88	151	74	47	46
21류	64	89	42	104	21	18	40	45	39	19	17
22류	52	76	176	54	25	29	77	71	49	27	22
23류	44	35	66	40	29	24	36	69	37	24	24
24류	25	69	30	11	11	17	15	15	14	9	9
29류	2	3	6	3	3	3	3	3	4	3	3
33류	30	23	38	27	24	21	20	18	31	18	17
35류	28	16	25	17	12	11	16	16	23	11	10
38류	2	10	15	7	7	7	8	11	9	7	7
41류	28	12	16	16	14	12	12	12	13	12	12
43류	12	10	13	13	10	9	9	9	11	9	9
50류	16	4	4	19	10	4	4	4	4	4	4
51류	11	39	16	14	15	10	10	10	22	10	10
52류	10	23	6	5	5	5	6	6	8	5	5
53류	9	6	7	7	6	6	6	6	7	6	6
합계	1,452	1,777	2,205	1,794	981	725	1,341	2,179	1,083	773	696

자료: WTO사무국 최종이행년도 기준 국별통보자료

○ HS 2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많은 품목수를 가지고 있는 부류는 1류(산동물)와 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6류(산수목·꽃), 13류(식물성 엑스),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 정도임.

- 반면에 우리나라의 품목분류가 주요국에 비해 적게 세분화된 부류는 2류(육과 식용설육), 4류(낙농품·조란, 천연꿀), 8류(과실·견과류), 9류(커피, 차,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전분), 16류(육·어류조제품), 17류(당류, 설탕과자), 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 22류(음료, 주류, 식초) 등임.

- 특히 낙농품(4류)은 미국이 251개 세번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51개 보다 약 5배 정도 세분화 되어 있음. 또한 EU도 낙농품에 대해서는 175개, 일본은 145개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세분화된 HS 코드를 낙농품에 가지고 있음.

- 과일·견과류(8류)의 경우에도 미국이 117개 세번으로 되어 있어 78개의 세번인 우리나라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는 EU와 일본도 유사하여, EU는 201개 세번을 일본은 109개 세번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약 30~120여개 많은 HS 품목 세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과실의 조제식품(20류)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108개 세번인데 반해 미국 173개, EU 307개, 일본 232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외에도 육류제품류(2류), 커피·향신료류(9류), 곡물류(10류), 밀가루·전분류(11류), 육·어류조제품(16류), 당류·설탕과자류(17류), 곡물·곡분의 조제품류(19류),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음료·알콜류(22류) 등에서도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 농산물수입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HS 세번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농산물 품목 분류 구조를 HS 4단위 기준으로 세분화 현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특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남.

- <표 3-2>는 HS 4단위 기준 각호(heading)별 주요국의 품목분류 세번 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임(단 국별로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호별 세번 분류의 표준편차가 4.5 이상인 주요 품목만 살펴봄.)

- -

- 분석 대상 11개 국가의 HS 4단위 품목분류 세번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전체 55개 호(heading, HS 4단위)중 호별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품목수가 더 많은 것은 15개로 여기에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0210호), 기타의 산식물 및 버섯 종균(0602호), 기타의 채소(0709호),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1209호), 야자유, 팜핵유와 그 분획물(1513호), 파스타(1902호), 기타 조제 식료품(2106호), 사료(2309호) 등이 포함됨.
- 이에 반해 쇠고기(0201호, 0202호), 돼지고기(0203호), 밀크와 크림(0402호), 발효유와 크림(0403호), 치즈와 커드(0406호), 양파·쪽파·마늘(0703호), 감귤류의 과실(0805호), 쌀(1006호), 기타의 당류 및 캐러멜당(1702호), 설탕과자(1704호), 맥아엑스와 조제식료품(1901호), 과실주스와 채소주스(2009호), 포도주(2204호),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2401호) 등은 우리의 품목분류가 11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 수입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쇠고기(0201호, 0202호), 돼지고기(0203호), 식용설육(0206) 등 축산물, 밀크와 크림(0402호), 발효유와 크림(0403호), 유장(0404호), 치즈와 커드(0406호) 등 낙농품, 냉동과실과 견과류(0811호), 곡물의 분쇄물/조분/펠리트(1103호), 기타 가공곡물(1104호), 식물성유지(1515호), 기타조제육류(1602호), 기타당류(1702호), 조제저장채소(2005호), 조제저장과실/견과류(2008호), 과실 및 채소 주스(2009호), 포도주(2004호) 등 가공식품류에 있어서 우리보다 상당히 세분화된 품목분류를 가지고 있음.
- 지금까지 HS 2단위 및 4단위를 기준으로 각국의 품목분류 현황을 양적인 품목분류 세번 수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일부 산동물, 산수목·꽃 등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수를 가지고 있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의 세분화 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그 조제품, 유장, 치즈 등 낙농품, 냉동·조제 과실 및 견과류, 포도주 등 고부가가치 가공품 등의 품목분류 세분화 정도가 낮은 수준임.

- -

- 그런데 이런 수치의 절대적·상대적 양적 비교만으로 한 국가의 품목분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왜냐하면 HS 6단위 이후의 품목분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각국이 자체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각국이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각국의 구체적인 품목분류의 기준과 방식을 부류별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우선 01류 산동물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번 수가 많음.
 - 이는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교역량이 많은 주요 동물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교역량이 작은 개, 앵무새, 꿀벌, 면양 등 품목을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임.
- 02류는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으로서 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효소유연처리·다지기·설탕뿌리기 정도의 가공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며, 여기에 속한 품목으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대표적임.
 - 쇠고기(제0201호, 제0202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공통기준(도체·이분도체, 뼈있는 것 및 뼈없는 것의 냉장과 냉동)을 그대로 수용하여 6개의 세번 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냉장과 냉동 쇠고기 부문에 갈비를 신설하여 8개 세 번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쇠고기의 품목분류가 매우 단순한 상태임.
 - 미국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국별 쿼터와 특수용 및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세번으로 구분하고,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세번을 다시 소매를 위한 가공여부 및 품질에 따라 세분하여 34개 세번을 가지고 있음. 미국은 소매용 고급 쇠고기에 대해서는 4% 관세를, 소매용 중·저품질 쇠고기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고품질 보다 중·저품질이 자국산 쇠고기와 직접적인 대체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EU는 냉장·냉동 뼈있는 쇠고기를 4개의 사분도체로 구분하였으며, 냉동 뼈 없는 쇠고기에는 대해서는 사분도체, 양지머리·목둘레살, 기타 등을 각각 별도의 세번으로 분리하고 있음.
 -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6단위 구분을 따르면서 동일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일본은 뼈가 포함된 도체·이분도체·사분도체, 등심·안심, 목살·허릿살·흉두깨살, 양지 등 부위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돼지고기(제0203호)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도체·이분도체, 어깨살·넓적다리 및 기타 부위의 냉장 및 냉동 6개로 구분되며, 그 이상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음.
- EU, 일본, 스위스가 각각 22개, 24개, 2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각각 10개, 8개로 다소 작은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냉장 삼겹살과 냉동 삼겹살을 별도의 세번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삼겹살과 목삼겹에 선호가 집중된 우리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

<표 3-2> 4단위 기준 품목별 세번수 비교(표준편차 4.5 이상, 단위 개수)

호	품목명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태국	인도	평균	표준편차
0201	쇠고기(신선/냉장)	3	17	6	7	3	3	6	12	3	3	3	6.3	4.7
0202	쇠고기(냉동)	3	17	8	6	3	3	6	12	3	3	3	6.4	4.8
0203	돼지고기	8	10	22	24	8	6	6	20	6	6	6	11.4	7.5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	10	13	27	9	9	9	13	18	9	9	9	12.5	5.9
0206	식용설육(脬肉)	12	9	26	22	9	9	9	25	11	9	9	13.8	7.4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33	14	92	22	21	13	38	40	20	18	14	29.2	24.0
0210	육과 식용설육	14	6	35	11	6	5	13	28	8	5	5	12.2	10.7
0402	밀크와 크림	10	30	28	38	5	5	14	11	11	7	5	15.4	12.1
0403	발효유와 크림	7	24	30	25	2	2	6	15	2	4	2	11.2	11.3
0404	유장	8	13	30	37	2	2	6	6	3	4	2	10.5	12.7
0406	치즈와 커드	6	154	50	10	5	7	34	22	12	5	5	30.4	45.9
0602	기타의 산식물 및 버섯 평균	40	10	18	6	10	5	9	26	16	5	5	11	7.0
0703	양파·쪽파·마늘(신선/냉장)	6	5	5	6	5	3	9	30	5	3	3	7.4	8.1
0704	양배추·케일 등(신선/냉장)	5	6	6	4	3	3	14	40	6	3	3	8.8	11.5
0705	상추 등(신선/냉장)	4	6	6	4	4	4	8	52	4	4	4	9.6	15.0
0706	당근·순무·샐러드(신선/냉장)	5	7	6	3	2	2	14	28	2	2	2	6.8	8.4
0708	채두류(신선/냉장)	3	10	7	3	3	3	11	24	3	3	3	7	6.7
0709	기타의 채소(신선/냉장)	20	21	25	15	11	9	25	52	13	9	9	18.9	13.3
0710	냉동채소(삶거나 찐 것)	15	29	16	12	11	8	16	20	13	8	8	14.1	6.6
0713	건조한 채두류	13	26	12	29	17	10	16	65	11	9	9	20.4	17.2
0805	감귤류의 과일(신선/건조)	8	8	45	11	7	5	5	5	5	5	5	10.1	12.4
0808	사과·배(신선)	3	3	18	2	5	2	6	16	3	2	2	5.9	6.0
0809	살구·복숭아·자두(신선)	5	6	22	4	4	4	20	19	4	4	4	9.1	7.8
0811	냉동과실과 견과류	6	14	20	16	4	3	9	7	3	3	3	8.2	6.3

주 : HS 4단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에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

<표 3-2 계속> 4단위 기준 품목별 세번수 비교(표준편차 4.5 이상, 단위 개수)

호	품목명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태국	인도	평균	표준편차
1006	쌀	6	6	34	8	5	4	4	12	4	4	4	8.5	9.3
1008	메밀·조	6	4	5	8	5	4	5	31	4	5	4	7.5	8.3
1102	곡분(밀가루 제외)	5	6	7	9	4	4	6	22	4	4	4	7	5.5
1103	곡물 분쇄물·조분·펠리트	10	7	16	22	7	7	16	31	7	7	7	12.7	8.4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11	8	37	24	8	8	16	45	8	8	8	17	13.8
1108	전분과 이눌린	7	6	7	19	6	6	9	21	7	6	6	9.3	5.7
1207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	10	10	19	10	16	9	9	72	13	10	9	17.7	19.4
1209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	22	19	21	13	12	14	18	22	33	13	12	17.7	6.6
1211	향료/의료/살충용 식물	33	6	7	11	32	3	3	6	6	5	3	8.2	8.7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등	20	11	15	17	15	10	9	14	30	10	10	14.1	6.2
1513	야자유, 팜핵유와 그분획물	8	5	18	7	4	6	4	16	4	4	4	7.2	5.3
1515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	12	12	27	17	9	10	14	31	12	13	9	15.4	7.6
1517	유지 혼합물 또는 조제품	4	7	6	6	2	2	7	18	4	2	2	5.6	4.9
1602	기타 조제 육·설육, 피	20	24	42	50	15	10	44	27	14	11	10	24.7	15.4
1702	기타의 당류 및 캐러멜당	17	30	24	28	8	9	22	25	13	13	8	18	8.7
1704	설탕과자	6	12	14	5	2	2	5	15	2	2	2	6.1	5.4
1806	초콜릿, 코코아 조제식료품	25	72	21	25	5	5	11	28	8	5	8	18.8	20.6
1901	맥아엑스와 조제식료품	13	49	6	80	3	3	21	44	9	6	3	22.4	26.5
1902	파스타	12	7	11	19	8	5	12	6	5	5	5	8.3	4.5
1904	곡물 또는 조제식료품	9	4	9	24	3	3	25	7	3	4	4	8.6	8.6
1905	빵과 기타 베이커리제품	14	6	21	14	5	5	33	26	6	5	5	12.6	10.5

주 : HS 4단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에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

<표 3-2 계속> 4단위 기준 품목별 세번수 비교(표준편차 4.5 이상, 단위 개수)

호	품목명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태국	인도	평균	표준 편차
2005	조제/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18	34	18	35	20	9	15	29	11	10	9	19	10.2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 등	5	20	18	16	4	3	5	7	7	3	3	8.6	6.7
2008	조제·저장 과일·견과류	22	69	146	93	23	12	26	25	23	14	12	44.3	44.7
2009	과실쥬스와 채소쥬스	28	20	85	47	12	13	22	54	15	10	10	28.8	25.1
2101	커피/차 조제품/커피대용품	8	21	11	25	4	4	6	6	6	4	4	9.1	7.7
2106	기타 조제식료품	21	42	10	53	6	4	18	22	17	3	3	17.8	17.2
2204	포도주	8	11	94	10	4	10	24	18	9	6	4	19	27.1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17	35	52	22	8	7	14	20	19	7	7	19.1	14.7
2309	사료용 조제품	16	11	29	17	4	2	10	15	13	2	2	10.5	8.6
2401	앞담배 및 담배 부산물	11	50	21	3	5	9	6	6	6	3	3	11.2	14.6

주 : HS 4단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에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미국의 경우 어깨살·넓적다리 및 기타부위를 소매용으로 가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임. 한편, EU는 돼지고기의 부위를 등심·안심, 삼겹살, 앞다리살, 목살 등으로 세분화하여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하였으며, 아울러 수입이 이뤄지는 계절별로 세번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세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차액관세라는 정책적인 요소에 기인함. 즉 일본은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 한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종량세적용 한도가액과 분기점 가격사이에 있는 경우, 분기점 가격보다 높은 경우 등 3개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있음. 또한 멧돼지 고기를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돼지고기 품목분류의 특징이기도 함.
- 참고로 일본의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해당 세번의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 이하인 경우 높은 수준의 종량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그러나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보다 높지만 분기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함(기준수입가격 유지목적). 또한, 분기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돈육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종가세를 적용함.
 - 이에 따라 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제도는 가급적 기존 수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일본에 수입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예컨대 어깨살, 넓적다리 등 부분육의 경우,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인 64.53엔/kg 이하가 되면 단순히 종량세(482엔/kg)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그러나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보다 높고, 분기점 가격 524엔/kg 보다 낮은 경우 기존 수입가격인 546.53엔/kg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함. 아울러, 분기점 가격보다 높은 경우 종가세 4.3%를 적용함(<표 3-3> 참조).

- -

<표 3-3> 일본의 차액관세제도 : 돼지고기의 경우

품 목	증가세 (%)	중량세 (엔/kg)	중량세 적용 한도 가격	기준수입가격	분기점
도체 및 이분도체	4.3	361.00	48.90	409.90	489.00
어깨살, 넓적다리 등 부분육	4.3	482.00	64.53	546.53	524.00

주 : 도체 및 이분도체의 해당 세 번은 HS 0203.11.020, 0203.11.030, 0203.11.040 0203.21.020, 0203.21.030, 0203.21.040이고, 어깨살, 넓적다리 등 부분육의 해당세번은 0203.12.023, 0203.12.022, 0203.12.021 0203.19.023, 0203.19.022, 0203.19.021, 0203.22.023, 0203.22.022, 0203.22.021, 0203.29.023, 0203.29.022, 0203.29.021

- 04류에는 각종의 낙농유제품, 조란, 천연꿀 및 기타의 동물성 생산품 가운데 식용의 것이 포함됨.
 - 낙농유제품은 각국의 식생활 문화의 차이와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민감품목인 경우가 많아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음. 반면에 유제품 이외 조란 및 가공품(제0407호, 제0408호)과 천연꿀(제0409호) 및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제0410호)은 국가별 품목 수의 차이가 작은 편임.
 - 특히 낙농유제품의 경우 선진국들은 사용용도/성분비율/감미료첨가/TRQ설정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우 단순한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예컨대 낙농유제품 관련 품목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HS 10단위 기준으로 60개의 세 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148개), 미국(259개), EU(159개)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치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낙농유제품 분야의 품목세분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2007년 12월 농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로 유장, 치즈, 혼합분유 등 유제품의 품목 세분화를 확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시행된 낙농품의 품목분류 세분화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현행 유장류 7품목(유장분말 2품목, 변성유장 5품목)이 각각 사료용과 기타로 구분되어 14개 품목으로 세분류되었으며, 혼합분유인 유장기타(0404.90.0000)는 지방분 함량 1.5%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조제식료품

(1901.90.2000)은 지방분 함량 30%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각각 세분류되었음. 치즈는 기존 6개 품목[① 신선치즈, ② 커드, ③ 치즈(갈았거나 분상), ④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 제외), ⑤ 블루바인 치즈, ⑥ 치즈기타]이 12개 품목으로 세분류되어 신선치즈는 모차렐라 치즈, 크림치즈 및 기타치즈로, 기타치즈는 체더치즈, 가우더치즈, 카망베르치즈, 에멘탈치즈 및 기타치즈로 세분류되었음. 그리고 버터기제조제품은 버터 함량 30% 이하, 30% 초과 70% 이하, 70% 초과로 구분하여 3개 품목으로 세분류되었음.

- 이러한 유제품 세분류를 통해 품목별로 국가·물량 등 수출입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분유·치즈 등 주요 유제품의 HS 세번 분류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품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기호 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동시에 FTA 등 양허협상에 있어서도 국내 낙농산업의 실정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품목별 협상전략을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05류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으로 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포함됨(다만 위, 장, 방광 및 피는 식용임).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정리한 동물성 재료로 여기에 포함됨.
 - 05류의 경우 국가별 품목분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06류는 조리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산수목, 화훼식물, 묘목 등이 분류되어 있으며 장식용의 절화, 꽃봉오리, 잎, 가지 등 식물의 부분으로서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염색한 것, 표백한 것과 꽃다발, 꽃바구니 등의 화훼제품이 포함됨.
 - 기타의 산식물 및 버섯종균(제0602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수목의 종류를 나열하여 세분화함에 따라 가장 많은 수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 EU 등은 품목을 나열하지 않고 균을 만들어 간략화하고 있음.

- 07류(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의 기타 신선·냉장 채소(제0709호)의 경우 우리나라와 여타 국들의 품목수가 유사함. 그러나 그 분류 기준은 차이가 있음.
 - 미국, 스위스, EU, 캐나다 모두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품목을 품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세번을 구분하고 있음.

- -

- 냉동채소(제0710호)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품목 및 품목군을 나열하여 세번을 분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계절 및 크기별로 세번을 달리하여 수확기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크기를 줄여 수입된 것에 대해서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도 계절 및 포장 여부에 따라 세번을 따로 분리하고 있으며, 수확기일수록, 포장 소포장일 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료용, 종자용, 기타 용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자용과 기타 용도의 관세율 차이는 없음. 미국은 종자용과 기타 용도로 구분하고 기타 용도에 대해서는 계절과 소매용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있음. 일본은 종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것, 국내법상 종자용으로 허가 받은 것, 저율관세 부과 대상인 것, 기타로 구분하여 관세를 달리 부과하고 있는데, 종자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스위스는 사료용, 기술용(technical usage), 가공용, 기타로 구분하여 사료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08류의 오렌지, 감귤, 라임, 자몽(제0805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종을 반영하여 8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계절별로 세분화하였으며, EU는 상당히 세분화된 계절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다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미국은 자몽에 대해서만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있음.
- 사과, 배(0808), 살구·버찌·복숭아·자두(0809)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일 종류만 나열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EU는 음료수의 주 원료가 되는 cider apple과 perry pear의 경우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냉동과실과 견과류(0811)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품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세번을 분류하고 있는 반면, EU는 설탕 포함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열대과일을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하고 있음.
 - 특히 EU는 07류(채소류)와 08류(과일류)에서 자국이 민감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시기 계절별로 차등 관세가 부과되는 진입가격(entry price) 제도를 운

영 중에 있음. 토마토, 오이 등 채소류와 오렌지, 레몬, 포도, 사과, 배, 체리, 복숭아 등 과일류에 이 제도가 시행중임. 이들 품목들은 주로 EU의 입장에서 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가 철저히 요구되는 민감품목들임. 그러나 상기 품목들에 대한 진입가격 적용은 연중 지정된 일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며, 적용기간도 품목마다 차이가 있음. EU의 진입가격(entry price)제도는 UR 농업협상 타결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관세화(tariffication) 이행차원에서 기존에 EU가 1995년 6월 30일까지 시행해 오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제도와 상계수입부과금(countervailing charge)제도의 변형이라 할 수 있음.

<표 3-4> EU 진입가격제도하 관세부과 현황 : 토마토의 경우

0702 00 00		Tomatoes, fresh or chilled:	
- From 1 January to 31 March: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84,6		8,8
----	Not less than € 82,9 but less than €. 84,6		8,8 + 1,7 €/100 kg/net
----	Not less than € 81,2 but less than €. 82,9		8,8 + 3,4 €/100 kg/net
----	Not less than € 79,5 but less than €. 81,2		8,8 + 5,1 €/100 kg/net
----	Not less than € 77,8 but less than €. 79,5		8,8 + 6,8 €/100 kg/net
----	Less than € 77,8		8,8 + 29,8 €/100 kg/net
- From 1 to 30 April: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112,6		8,8
----	Not less than € 110,3 but less than €. 112,6		8,8 + 2,3 €/100 kg/net
----	Not less than € 108,1 but less than €. 110,3		8,8 + 4,5 €/100 kg/net
----	Not less than € 105,8 but less than €. 108,1		8,8 + 6,8 €/100 kg/net
----	Not less than € 103,6 but less than €. 105,8		8,8 + 9 €/100 kg/net
----	Less than € 103,6		8,8 + 29,8 €/100 kg/net
- From 1 to 14 May: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72,6		8,8
----	Not less than € 71,1 but less than €. 72,6		8,8 + 1,5 €/100 kg/net
----	Not less than € 69,7 but less than €. 71,1		8,8 + 2,9 €/100 kg/net
----	Not less than € 68,2 but less than €. 69,7		8,8 + 4,4 €/100 kg/net
----	Not less than € 66,8 but less than €. 68,2		8,8 + 5,8 €/100 kg/net
----	Less than € 66,8		8,8 + 29,8 €/100 kg/net
- From 15 to 31 May: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72,6		14,4
----	Not less than € 71,1 but less than €. 72,6		14,4 + 1,5 €/100 kg/net
----	Not less than € 69,7 but less than €. 71,1		14,4 + 2,9 €/100 kg/net
----	Not less than € 68,2 but less than €. 69,7		14,4 + 4,4 €/100 kg/net
----	Not less than € 66,8 but less than €. 68,2		14,4 + 5,8 €/100 kg/net
----	Less than € 66,8		14,4 + 29,8 €/100 kg/net

자료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10/2004

<표 3-4 계속> EU 진입가격제도하 관세부과 현황 : 토마토의 경우

0702 00 00	Tomatoes, fresh or chilled:
- From 1 June to 30 September: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52,6	14,4
---- Not less than € 51,5 but less than €52,6	14,4 + 1,1 €/100 kg/net
---- Not less than € 50,5 but less than €51,5	14,4 + 2,1 €/100 kg/net
---- Not less than € 49,4 but less than €50,5	14,4 + 3,2 €/100 kg/net
---- Not less than € 48,4 but less than €49,4	14,4 + 4,2 €/100 kg/net
---- Less than € 48,4	14,4 + 29,8 €/100 kg/net
- From 1 to 31 October: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62,6	14,4
---- Not less than € 61,3 but less than €62,6	14,4 + 1,3 €/100 kg/net
---- Not less than € 60,1 but less than €61,3	14,4 + 2,5 €/100 kg/net
---- Not less than € 58,8 but less than €60,1	14,4 + 3,8 €/100 kg/net
---- Not less than € 57,6 but less than €58,8	14,4 + 5 €/100 kg/net
---- Less than € 57,6	14,4 + 29,8 €/100 kg/net
- From 1 November to 20 December: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62,6	8,8
---- Not less than € 61,3 but less than €62,6	8,8 + 1,3 €/100 kg/net
---- Not less than € 60,1 but less than €61,3	8,8 + 2,5 €/100 kg/net
---- Not less than € 58,8 but less than €60,1	8,8 + 3,8 €/100 kg/net
---- Not less than € 57,6 but less than €58,8	8,8 + 5 €/100 kg/net
---- Less than € 57,6	8,8 + 29,8 €/100 kg/net
- From 21 to 31 December:	
-- With an entry price per 100 kg net weight of:	
---- Not less than € 67,6	8,8
---- Not less than € 66,2 but less than €67,6	8,8 + 1,4 €/100 kg/net
---- Not less than € 64,9 but less than €66,2	8,8 + 2,7 €/100 kg/net
---- Not less than € 63,5 but less than €64,9	8,8 + 4,1 €/100 kg/net
---- Not less than € 62,2 but less than €63,5	8,8 + 5,4 €/100 kg/net
---- Less than € 62,2	8,8 + 29,8 €/100 kg/net

자료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10/2004

○ 한편 09류(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의 경우는 분석대상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음.

○ 10류(곡물)에는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불문하고 모든 낱알의 곡물이 대상임.

- -

- 10 류에 분류되는 곡물에는 밀, 호밀, 보리, 쌀, 귀리, 수수 등이 있으며, 특히 쌀의 국별 품목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쌀은 6단위 기준으로 도정도에 따라 벼, 현미, 정곡, 쇠미 등 4가지로 구분됨.
 - 우리나라는 6단위 공통기준에 글루텐 성분의 포함여부를 추가하여 세분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저율관세 수입을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하였음.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EU의 경우 우선 반숙(Parboiled)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 대해서는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였음. 미국은 바스마티 여부와 반숙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장립종, 중립종, 단립종, 혼합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에 반해 스위스는 용도를 감안하여 가공용, 사료용, 기타로 구분하였음.
- 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는 곡물, 감자, 채두류 등의 분, 조분, 분말, 펠리트 및 플레이크 상태가 포함됨.
- 기타 가공곡물 및 곡물배아(제1104호)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품목의 종류를 나열한 반면, 스위스는 가공용, 사료용, 식용, 시리얼용, 압착용, 추출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12류(채유용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품목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상이함. 스위스는 사료용, 식용, 추출용, 압착용, 가공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품목 및 품목군을 나열하여 세분화하고 있음.
- 인삼(제121120소호)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세번수를 가지고 있음. 우리의 경우 인삼의 부위와 가공상태에 따라 수삼, 백삼, 홍삼, 본삼, 미삼, 잡삼, 분말, 캡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우선 품종을 감안하여 화기삼(American ginseng)과 그 이외의 야생삼으로 구분하고, 다시 신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의 경우 스위스와 EU가 가장 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9) 반숙미(Parboiled rice)란 탈곡, 정미, 연마 등의 가공을 하기 전에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찌서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 EU의 경우 공업용에 대한 별도의 세번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스위스도 사료용 등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용도에 대한 고려 없이 품목이나 가공법에 따른 품목분류에 그치고 있음.
- 16류에는 소시지, 육이나 어류의 액즙과 액스 등 동물성 조제식품이 포함됨.
- 국가간 품목수의 차이가 큰 기타 조제 육·설육 또는 피(1602호)는 6단위 기준으로 동물간, 닭고기, 칠면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조제품으로 분류됨.
 - 우리나라는 이에 추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본은 밀폐용기 포장 이외 단순 끓인 것을 따로 분리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차별관세 적용에 따른 세분화를 반영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있음.
 - EU는 닭고기, 칠면조고기 등 주요 성분의 포함비율, 조리 여부, 밀폐용기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17류(당류와 설탕과자)에는 당류인 자당(설탕),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뿐만 아니라 당시럽, 카라멜당, 인조꿀, 설탕의 정제과정에 생기는 당밀 및 설탕과자를 포함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탕은 제1701호(사탕수수당·사탕무우당·순수자당 고체)에 포함됨.
- 제1701호에 포함된 당류 이외 기타 당류(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의 고체), 당시럽, 인조꿀 및 카라멜당을 포함하는 제1702호의 경우 추가적인 품목분류에 있어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당의 종류에 따라 고체상태와 시럽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향료, 색료, 설탕 첨가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세번을 가진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시럽상태와 기타 상태로 구분하고 기관용·샘플용 등 특수용도 수입과 저율관세 수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
 - EU의 경우 일본과 같이 향료, 색료, 설탕 첨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전분질 곡물에서 얻어지는 설탕대용품인 이소포도당을 별도로 분리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18류는 원료상태의 코코아두에서 초코렛 제품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생산품을 포함함.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품(1806호)의 품목분류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본, EU, 미국이 모두 조제시 포함되는 성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관용·샘플용 등 특수용도 수입과 저율관세 수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가장 많은 품목수를 가지고 있음.

○ 19류(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는 주로 제분산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각종 제품에 이르는 일련의 조제 식료품을 의미함(파스타, 라면, 과자, 빵 등). 특히 전분, 조분 등 제분산품의 혼합조제품 및 유제품의 조제식료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주요 선진국은 세 번 분리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음.

- 유아용 조제식품 및 유제품의 조제식료품(1901호)의 경우 각국간의 품목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이 낙농품 및 쌀과 같은 민감품목의 조제식품이라는데 기인함.
- HS 6단위 공통 기준이 유아용 조제식품, 베이커리용 반죽,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더하여 고흡우유, 버터지방, 설탕 성분의 포함비율에 따라 세번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49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 가장 많은 세 번 수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버터지방, 설탕 성분 포함비율 및 저율관세 수입, 국내 수급관리 정책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80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캐나다는 포장중량단위, 밀 포함비율, 저율관세 수입 등에 따라 21개로 세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6단위 공통기준에 추가하여 쌀과 보리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쌀이 포함된 것, 보리가 포함된 것, 기타로 구분하고 있음.
- 파스타(제1902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수, 냉면 등 면류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12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은 조리 여부 및 양념 포함 여부에 따라 7개로 분류하고 있음. 가장 많은 품목수를 가진 일본은 양념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양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면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고 양념이 포함된 경우 계란, 우유, 소시지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19개 세번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있음.

- -

- 곡물의 특정 제품(제1904호)은 콘플레이크, 팽창 또는 볶은 곡물, 사전 조리한 곡물 등을 포함함. 일본은 쌀 성분 포함여부, 일본 수급관리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포장 중량단위, 밀 포함비율, 저울관세 TRQ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가공방법, 쌀 제품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빵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제1905호)도 다른 호와 유사한 경향을 가짐. EU는 설탕, 유지방 등 성분의 포함여부, 포장중량 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장 세분화된 캐나다의 경우 단백질, 밀 성분의 비중, 발효 여부, 포장중량 단위, 저울 관세적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33개로 분류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스위트 비스킷, 건빵, 파이, 식빵 등 품목의 종류에 따라 19개로 분류하고 있음.
- 20류(채소·과일·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는 앞에서 분류되는 채소류, 과일류 또는 제분공업 생산품에서 허용하는 규정 이상으로 저장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기타 조제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또한 식용의 기타 식물성 부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것,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이 포함됨.
- 여기서는 특히 조제·저장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2008호)의 품목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 호는 6단위 공통 기준으로 품목군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추가하여 품목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밀폐용기 사용여부에 따라 22개로 분류하고 있음. 가장 많은 분류를 가지고 있는 EU는 주정(spirit) 포함 여부, 설탕 포함 여부, 알코올 포함여부, 포장중량 단위 등을 감안하여 146개로 아주 상세히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견과류를 설탕첨가 여부, pulp 상태 여부, 볶음 여부, 밀폐 여부, 저울관세 수입 등을 감안하여 93개로 분류하고 있음.
 - 과일주스와 채소주스(2009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냉장·냉동 및 당도를 기준으로 오렌지, 사과, 포도 등의 주스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서 파인애플, 채소주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임. 이에 반해, EU는 모든 주스에 대해 당도, 중량당 가격, 설탕 포함 비율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당히 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스위스도 EU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 21류(각종의 조제식품)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커피와 차류는 제9류에서 제외되는 가공방법인 엑스, 에센스와 이들의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포함됨.
 - 특히, 품목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기타 조제식품(제2106호)은 조제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조제품, 로얄제리로 강화된 천연꿀, 자가소화효모, 단백질 농축물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품목을 두부, 콜라베이스, 과일향음료베이스, 홍삼차, 인삼차 등 품목중심의 분류인 반면, 미국, 일본, EU 등은 우유, 유지방, 설탕, 향신료 등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2류(음료·알콜 및 식초)에는 각종의 음료와 알콜, 주류, 식초 등이 분류되는데 음료에는 천연의 광천수를 포함하며 천연주스를 물로 희석한 과실음료, 채소음료, 기타의 식물성 음료 등이 포함됨.
 - 여기에서는 포도주(2204호)의 세번수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포도주는 6단위 공통기준에 따라 발포성 포도주, 2ℓ 이하의 용기에 담은 포도주, 2ℓ 이상의 용기에 담은 포도주, 기타 포도즙으로 분류됨.
 - 우리나라는 여기에 화이트, 레드, 기타 포도주로 추가 세분화하여 총 8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일본은 공통 기준 이외 150ℓ 용기 사용여부, 설탕·알콜 비중에 따라 분류하여 10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미국은 토케이 포도주와 마르살라 포도주를 별도로 분류하고 여타 포도주에 대해서는 알콜도수 14%, 2ℓ~4ℓ 용기 사용 여부, 4ℓ 이상 용기 사용여부 등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10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반해 가장 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EU는 알콜도수(13%, 13%~15%, 15%~18%, 18%~22%, 22% 이상), 품질(고급과 기타), 포도주의 지리적 상표(Bordeaux, Bourgogne, Languedoc -Roussillon, Sherry, Muscat de Lemnos 등), 농축여부 등을 감안하여 94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리큐르트와 증류한 알콜성 음료(제2208호)에는 위스키, 브랜디, 데킬라, 주정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상품명을 나열한데 반해 미국, EU 등은 상품명 이외 용기의 용량, 단위당 가격 등의 기준을 추가하여 분류하고 있음.

- -

- 23류(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자류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중 조제사료(제2309호)에는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기타 첨가제 등이 포함됨.
 - 우리의 경우 양돈용, 양계용, 축우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EU는 이에 더하여 전분 및 유제품 함유 비율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음.
 - 미국도 용도뿐만 아니라 유제품 및 계란제품 포함 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중 입담배 및 담배 부산물(제2401호)의 국별 품목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2401호는 공통기준에 따라 주맥을 가진 잎담배, 주맥을 제거한 잎담배, 기타로 구분하고 각국가별로 추가적인 기준에 따라 세분화됨. 우리나라, EU 등은 황색종, 버어리종, 오리엔트종, 기타 등과 같이 잎담배의 품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미국은 특정 상품(wrapper tobacco)의 포함비율, 일반담배용 여부, 저울관세 수입 등을 감안하여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있음.

2.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 비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들은 HS 6단위까지는 국제적인 공통 기준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7단위부터는 각국의 품목별 민감도나 수급 및 교역특성 등을 감안한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음.
 -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농산물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 분류 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
- 즉, 국제적으로 HS협약에 따른 6단위 공통기준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 나름대로의 이유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추가분류기준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유형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 3-5>와 같음.

- -

<표 3-5> 농산물 품목분류의 목표와 기준

	산업보호	정확한 통계	
목표	Category I	Category II	Category III
품목분류	자연과학적 기준	소비유통적 기준	정책적 기준
기준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품종 - 상태 -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위 - 품질 - 용도 - 포장 -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 - 저율관세 - 특수용도 - 국내법규
세부기준			

자료 : WTO 사무국에 통보된 각국별 농산물 관세율표로 부터 정리

- 우선 농산물 품목 분류의 목적적 대국영보다 해당 산업, 발전 측면에서 후과적인, 일본, 주요 활용국 관세부과의 기준을 대량하물 뒷안가 , 스위스, 한국(일부) 스위스, 캐나다
 - 즉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품질, 성분, 부위, 용도, 포장상태, 가공도 등을 감안하여 매우 세분화 한 후 차등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효과적인 산업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품목분류는 이러한 산업보호적 관세부과 목적 이외에 통계적, 정책적 목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예컨대 국내 소비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품목분류는 정확한 수출입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주요 품목의 효과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 달성과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주요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무엇보다 자연과학적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음. 예컨대 품목분류

의 기준으로 품목, 품종, 상태(신선/냉장/냉동), 가공도(날알, 조분, 분쇄물) 등을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HS 6단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품목분류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칙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이로 인해 HS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모든 국가들이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품목별 소비·유통적 특성을 감안한 기준도 사용되고 있음. 예컨대 같은 품목과 품종이라도 품질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소비선호도가 상이하야 가격 차이가 발생함. 또한 포함된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 그리고 포장상태(소량 소매용)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정책 수행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도 품목분류 기준이 사용되고 있음. 예컨대, 과일/채소류 등의 산업보호 측면에서 수확기와 비수확기를 고려한 차등관세 부과와 필요성, FTA 대상국이나 WTO 회원국에 제공한 TRQ 물량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 그리고 특수용도(국가기관용/실험용)의 구분 및 국내법규를 반영한 품목분류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있음.
 - 사실상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품목분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자연과학적 기준과 함께 소비·유통적 기준과 정책적 기준도 활용하여 품목 세분화를 하고 있음.
- 이상의 국제적 품목분류 상황과 특징들을 감안할 때, 가장 이상적인 품목분류란 자연과학적 요소, 소비·유통적 요소,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여 과세목적과 통계 및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주요 국가들의 품목별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에 앞서 품목분류 전반에 걸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의 품목분류는 과세목적과 통계 및 정책적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음. 관세의 부과는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과세목적의 품목분류를 위해 특정 성분 포함 비율, 포장단위, 용도 등의 기준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기 어려운 품목별·계절별 통계를 얻기 위해 실무상 추가세번을 만들어 무역통계를 내고 있음. 미국의 경우 8단위까지는 주로 설탕·유지방·단백질 성분 포함비율, 포장단위,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함으로

- -

써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할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품목별·품종별 정확한 무역통계를 얻기 위해서 9~10단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통계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EU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EU는 계절별로 추가세번을 구분하여 시기별 물량흐름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EU는 양허된 농산물이 2,205개인 반면 실제로 활용되는 세번은 5,682개로 약 3,500개의 추가세번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성분별/계절별로 구분한 것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품목분류에 있어 용도별, 성분별 기준보다는 품목별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해당 품목전체의 무역통계를 획득하는 데 용이할 수 있으나, 용도별, 규격별, 성분별 세밀한 자료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둘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타 선진국들은 성분·용도·포장규격·품질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품목분류는 가공단계 및 품목별 기준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이상적인 품목분류는 생산·가공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및 소비 단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과학적인 요소와 소비·유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미국, EU, 일본 등은 포장용기의 크기가 일반 소매용인 경우 별도의 가공 없이 시판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설탕·단백질의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지는 용도를 감안해서 세번을 분류하고 가공용으로 활용될 경우 낮은 관세를, 소매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 높은 관세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제고하고, 가공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진흥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행 농산물 품목분류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업용·사료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몇몇 품목에 대해 산발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전체 산업구조와 시장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류체제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봄.

- 셋째, 선진국들이 품목분류에 TRQ와 SSG 설정 여부, 학교급식용, 정부용 등 대내외 정책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함. 미국의 경우 저율관세(in quota tariff rate)가 적용되는 FTA 체결국이

- -

나 WTO 회원국에 제공된 TRQ 수입과 정책적으로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정부 및 연구기관용·실험용·샘플용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번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SG)에 의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별도의 류(99류)를 만들어 그 파락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학교급식용, 사료용, 수급관리용 등에 대해 그 용도별로 별도의 세번을 만들고 있음. 스위스, 캐나다 등도 유사함.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저율관세 수입, 특수용 수입,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SG) 등에 대해 별도의 세번을 두고 있지 않음. 정확한 경제적 분석과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수입이 일반적인 거래와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suffix(첨자)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음. suffix란 하나의 세번에 첨자를 붙여 별도의 세번을 만들고,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번 분리인 셈임. suffix에 부과된 관세의 평균은 원래 품목의 양허세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세감축 약속을 준수함. 이는 원래품목의 성분이나 가공단계를 구분하여 만들기도 하고, 계절별로 구분하여 만들기도 함. suffix의 활용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국가는 EU와 일본이며, 이들 국가는 주로 채소 및 과일에 대해 suffix를 활용하고 있음. 즉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비수확기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그 평균이 양허관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미국, 중국, 캐나다 등도 이를 활용하고 있음.
- 아래 <표 3-6>은 주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과의 HS 6단위 이후 품목분류 기준의 특성을 정리한 것임.

- -

<표 3-6> 주요품목의 HS 6단위 이후 품목분류기준 비교

품목명	한국	미국	EU	일본	스위스
쇠고기 (제0201호, 0202호)	상태	품질, 가공 저울관세	부위, 계절	부위	저울관세
돼지고기 (제0203호)	삼겹살	가공여부	부위, 계절	정책, 멧돼지	저울관세 부위 멧돼지
밀크와 크림 (제0402호)	성분	성분 일폐용기 저울관세	성분 포장단위 저울관세	성분, 용도 저울관세	저울관세
치즈/커드 (제0406호)	상태	종류, 성분 가공방법 저울관세	종류, 성분	저울관세	저울관세
기타 채소 (제0709호)	종류	계절	계절	계절	계절 저울관세
건조 채두류 (제0713호)	용도	용도, 계절 포장단위	용도	용도	용도
감귤류(제0805호)	종류	계절	계절	계절	-
신선과일(제0808호, 제0809호)	종류	계절	계절, 용도	종류	계절
쌀(제1006호)	성분	반숙여부 바스마티	반숙여부 규격	저울관세	용도
기타의 당류 및 캐러멜당(제1702호)	시럽여부	시럽여부 저울관세	성분 이소포도당	성분	시럽여부 용도
과실쥬스와 채소 쥬스(제2009호)	당도 냉장/냉동	당도, 성분 중량당 가격	당도, 성분 중량당 가격	당도, 성분 중량당 가격	당도, 성분 중량당 가격
포도주(제2204호)	종류	지리적상표 성분, 포장단위	지리적상표 성분, 품질 포장단위	포장단위 성분	성분 저울관세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제2401호)	품종	성분, 용도 저울관세	품종	-	용도

자료 : WTO 사무국에 통보된 각국별 농산물 관세율표로 부터 정리

3. 시사점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주요 선진국들이 농산물 품목분류를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보다 농산물 품목별 특성과 교역 상황을 반영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HS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세번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임.
 - 또한 선진국들이 농산물 품목분류를 세분화한 이유는 산업보호적 관세 부과 목적 이외에 통계적 목적도 함께 고려된 것임.
 - 사실상 국내 소비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품목 분류는 정확한 수출입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주요 품목의 효과적인 수급관리나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관세의 부과와 이를 통한 시장보호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수입통계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의 주요품목에 대한 순화된 품목분류는 WTO나 FTA 협상에서 품목별 중요성을 감안한 신축적인 관세양허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농산물 품목분류를 산업보호의 측면이나 정확한 통계확보 목적차원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품목분류의 단순화로 관세부담회피를 위한 우회적인 수입으로 국내 농업의 주요품목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험이 있던 품목이나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품목, 주요 품목이 포함되었으나 기타로 분류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분류 상황을 기초로 품목분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

IV. 주요농산물 및 관련품목의 관세체계 및 품목분류 정비방안

제1주제 : 곡물·과일분야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 -

1. 연구 범위

- 이 연구에서 곡물은 우리나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 이하 HSK)의 10류를 의미하며, 곡물 가공품은 11류, 12류 가운데 대두, 그리고 19류로 한정하였다. 18류에 곡물 가공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18류는 코코아와 초코렛 조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곡물은 초코렛 또는 코코아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HSK 10류에 속하는 곡물은 밀(1001호), 호밀(1002호), 보리(1003호), 귀리(1004호), 옥수수(1005호), 벼 또는 쌀(1006호), 수수(1007호), 메밀 및 기타 곡물(1008호)이다..
- HSK 11류에 속하는 품목은 10류에 속하는 품목의 곡분, 분쇄물, 펠리트, 플레이크, 가공곡물, 배아, 맥아, 전분 등임.
- HSK 12류 가운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곡물로 인식하는 유지작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포함된 품목은 대두(1201호), 낙화생(1202호), 유채(1205호), 참깨(120740소호), 들깨(120799소호 가운데 1000) 등임.
- HSK 19류는 주로 곡물을 재료로 한 조제식료품, 파스타, 국수, 냉면, 당류베 이커리 제품 등임.

2. 곡물·과일 분야 주요 내용

(1) 곡물

1) 쌀

가. 주요국 분류기준

<유럽연합(EU)>

- EU는 HS 8단위 기준으로 쌀을 도정 상태(예; 벼, 현미, 백미 등), 모양 또는 품종(예; 원립, 중립, 장립 등), 열처리 여부(데친 것, 기타), 용도(종자용, 기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3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

- 원립종: 길이 5.2mm 이하이며 길이/너비 비율이 2 미만인 것
- 중립종: 길이 5.2mm 초과, 6mm 이하로 길이/너비 비율이 3 미만인 것
- 장립종: 길이 6.0mm 이상인 것

<표 4-1-1> EU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6 Rice 쌀	100610 Rice in the husk (paddy or rough) 벼	o t h e r	par-boiled 데친것	10061021	Round grain 원립종
				10061023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1025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 비율이 2이상 3이하
				10061027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 비율이 3이상
		기타	other 기타	10061092	Round grain 원립종
				10061094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1096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가 2이상 3이하	
			10061098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가 3이상	
		100620 Husked (brown) rice 껍질 벗긴 것	parboiled 데친것	10062011	Round grain 원립종
				10062013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2015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가 2이상 3이하
				10062017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가 3이상
	other 기타		Round grain 원립종	10062092	Round grain 원립종
				10062094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2096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가 2이상 3이하
				10062098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가 3이상
	100630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백미	Semi-milled rice	par-boiled	10063021	Round grain 원립종
				10063023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3025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가 2이상 3이하
				10063027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가 3이상
other 기타			10063042	Round grain 원립종	
			10063044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3046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가 2이상 3이하		
		10063048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가 3이상		
wholly		par-	10063061	Round grain 원립종	

		milled rice	boiled	10063063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3065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가 2이상 3이하	
					10063067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가 3이상	
				other 기타	10063092	Round grain 원립종	
			10063094		Medium grain 중립종		
			long grain 장립종		10063096	Of a length/width ratio greater than 2 but less than 3 길이/넓이가 2이상 3이하	
					10063098	Of a length/width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3 길이/넓이가 3이상	
			10064000				broken rice 썬미

<미국>

○ 벼, 현미, 백미, 썬미, 데친 쌀, 배즈마티 종의 쌀 등 모두 6 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도정의 정도, 품종, 가열 여부 정도만 고려된 비교적 단순한 분류로 볼 수 있으며, 배즈마티 품종을 따로 분류한 특징이 있음.

<표 4-1-2> 미국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61000	Rice in the husk (paddy or rough) 벼
10062020	Basmati rice, husked 배즈마티 종 현미
10062040	Husked (brown) rice, other than Basmati 배즈마티 종 외 현미
10063010	Rice semi-milled or wholly milled,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parboiled 데친 백미
10063090	Rice semi-milled or wholly milled,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other than parboiled 데친 상태 이외의 백미
10064000	Broken rice 썬미

<일본>

○ 도정의 정도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주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 관련 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적용됨. 도정 정도에 따라 벼, 현미(껍질 벗긴 것), 백미로 구분되고 부스러기 쌀(썬미)을 따로 분류하였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곡 관리 관련 법에 따라 수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8가지로 분류됨.

<표 4-1-3> 일본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6 Rice 쌀	100610 Rice in the husk (paddy or rough) 벼	100610010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0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law,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rice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34 of the law or imported as repayment to Japanese Government loan according to paragraph 1 of article 49 of the law and by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주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법"에 의한 수입)
		100610090	Other 기타
	100620 Husked (brown) rice 현미	100620010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0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law,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rice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34 of the law or imported as repayment to Japanese Government loan according to paragraph 1 of article 49 of the law and by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주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법"에 의한 수입)
		100620090	Other 기타
	100630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멩쌀 또는 찹쌀	100630010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0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law,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rice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34 of the law or imported as repayment to Japanese Government loan according to paragraph 1 of article 49 of the law and by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주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법"에 의한 수입)
		100630090	Other기타
	100640 Broken rice 쇄미	100640010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0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law,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rice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34 of the law or imported as repayment to Japanese Government loan according to paragraph 1 of article 49 of the law and by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주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법"에 의한 수입)
		100640090	Other

<스위스>

- 도정 정도에 의한 구분을 분류의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용도를 적용하여 분류하였음. 도정 정도는 벼, 현미, 백미로 하고 쌀의 상태에 따라 쉐미를 별도로 분리하였음.
- 용도는 주정용, 사료용, 기타로 구분되고, 기타는 다시 소매용과 기타로 분리됨. 따라서 도정 상태에 따른 4가지 분류에 3가지 용도별 분류가 추가되어 스위스는 쌀을 모두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표 4-1-4> 스위스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6 Riz 쌀	100610 riz en paille (riz paddy) 벼	10061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006102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61090 autre 기타	10061090.01 other 기타 10061090.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00620 riz décortiqué (riz cargo ou riz brun) 현미	10062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006202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62090 autre 기타	10062090.01 other 기타 10062090.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00630 riz semi-blanchi ou blanchi, même poli ou glacé 반백미, 백미, 완전백미	10063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006302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63090 autre 기타	10063090.01 other 기타 10063090.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00640 riz en brisures 쉐미	10064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006402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64090 autre 기타	10064090.01 other 기타 10064090.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나. 우리나라 분류 현황 및 문제점

- 쌀(HSK 1006호)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로 취급할 만큼 민감한 품목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을 그 중요도에 비해 품목분류에서 매우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음.
 - HS 10단위 코드에서 쌀을 그 종류와 도정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6개의 세부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쌀의 분류는 도정 정도에 따라 벼, 현미, 쌀(백미)로 구분하고 종자에 따라 메벼와 찰벼로 구분하였음. 이러한 구분에 따라 쌀은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찰쌀, 쇠미 등 5가지이고 도정된 쌀의 상태에 의해 쇠미를 따로 구분하여 모두 6가지로 분류되었음.
- 찰쌀과 멥쌀 등 종류별로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 쌀 소비 성향을 반영한 독특한 분류 방식임. 그러나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 또는 자포니카나 인디카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쌀에 대한 기호를 반영한 세분화가 부족함. 품종별 교역 및 통계가 품종별로 나타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표 4-1-5> 한국의 쌀(10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6100000	벼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찰쌀
1006400000	쇠미

다. 개편방안

- 찰쌀과 멥쌀 이외에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 등 벼의 품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종자용 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벼 상태로 수입되어 도정될 경우가 있으므로 벼도 종자 이외의 기타 용도로 수입될 경우 쌀과 같은 분류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열처리(데친것 등) 여부도 분류 기준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

- 종자용 벼의 경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농산물과 유사하게 종자용에 대한 저율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세할당 물량 수입의 증가, 가공용 쌀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입 형태별, 용도별 분류 추가

○ 쌀 전분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 전분에 속해있음. 주정용 등 용도별 분류와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덩혀 먹는 1회용(즉석 요리) 쌀 제품의 상품분류 추가

<표 4-1-6> 한국의 쌀(1006호) 품목 분류 개편안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100610	10061010	1006101000	벼, 종자용
	10061090	1006109000	벼, 기타
100620	10062011	1006201100	메현미, 단립종
	10062012	1006201200	메현미, 중립종
	10062013	1006201300	메현미, 장립종
1006202000	10062021	1006202100	찰현미, 단립종
	10062022	1006202200	찰현미, 중립종
	10062013	1006202300	찰현미, 장립종
100630	10063011	1006301100	멥쌀, 단립종
	10063012	1006301200	멥쌀, 중립종
	10063013	1006301300	멥쌀, 장립종
100630	10063021	1006302100	찹쌀, 단립종
	10063022	1006302200	찹쌀, 중립종
	10063023	1006302300	찹쌀, 장립종
1006400000	1006400000	1006400000	새미

2) 보리

가. 주요국 분류기준

<EU>

○ EU는 보리를 종자용과 기타의 2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음.

<표 4-1-7> EU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300 Barley 보리	10030010	Seed 종자용
	10030090	Other 기타

<미국>

○ 맥아용과 기타의 2가지로 구분

<표 4-1-8> 미국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30020	Barley, for malting purposes 맥아용 보리
10030040	Barley, other than for malting purposes 맥아용 보리를 제외한 보리

<일본>

○ 사료용, 기타 등 용도별로 분류

<표 4-1-9> 일본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3 Barley 보리	100300011 For feeding purposes 사료용
	100300019 Other 기타
	100300091 For feeding purposes 사료용
	100300099 Other 기타

<스위스>

○ 스위스는 보리를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음. 용도는 종자용, 맥아제조용, 맥아 전단계(용), 커피대체재 제조용, 식품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기타로 구분되며, 식용은 다시 관세할당 (TRQ)과 식용 몰트 추출물 용도로 구분하고 있음.

- 스위스의 보리 분류는 9가지로 사례 분석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 수를 나타내고 있음.

<표 4-1-10> 스위스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3 Orge 보리	100300 Orge 보리	10030010 à ensemercer 종자용
		1003002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맥아 제조용
		10030030 prémaltée ou pour la fabrication d'orge prémaltée 맥아 전단계(용)
		10030040 pour la fabrication de succédanés du café 커피대체재 제조용
	for human consumption 식품용	1003006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28) 관세 할당량 한도 내에서(Q. No. 28)
		10030069 for the manufacture of malt extract for foodstuffs 식용 몰트 추출물용

	1003007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3008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30090	autre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보리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보리의 종류는 맥주보리, 쌀보리, 겉보리, 기타 등 4가지로 분류하였음
- 우리나라는 보리를 용도에 따라 주정용(주로 맥주보리), 사료용(주로 겉보리) 등으로 수입하고 있음. 이러한 용도에 따른 분류가 반영되어 있지 못함.

<표 4-1-11> 한국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3001000	맥주맥
1003009010	겉보리
1003009020	쌀보리
1003009090	기타

다. 개편방안

-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등을 명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종자용에 대한 저율 관세 적용 가능성 확보. 용도별로 탄력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세번분리를 통해 보완

<표 4-1-12> 한국의 보리(1003호) 품목 분류 개편안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100300	10030010	1003001000	보리, 종자용
100300	10030020	1003002010	맥주맥, 주정용
	10030020	1003002090	맥주맥, 기타
100300	10030030	1003003010	겉보리
	10030030	1003003090	겉보리, 사료용
100300	10030040	1003004010	쌀보리
	10030040	1003004090	쌀보리, 사료용
100300	10030090	1003009090	기타

- -

3) 밀

가. 주요국 분류기준

<EU>

○ EU의 밀 분류는 품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품종은 듀럼, 스펠트, 보통 밀, 메슬린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스펠트 밀(야생 밀의 일종)은 종자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표 4-1-13> EU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1 Wheat and meslin 밀과 메슬린	10011000		Durum wheat 듀럼종의 밀	
	100190 Other 기타	10019010		Spelt for sowing 종자용 스펠트 밀
		other spelt, comm on wheat and meslin seed	10019091	Common wheat and meslin seed 보통 밀과 메슬린
			10019099	Other 기타

<미국>

○ 품종과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듀럼, 종자용 밀과 메슬린, 기타 밀과 메슬린 등 3가지로 분류

<표 4-1-14> 미국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11000	Durum wheat 듀럼종의 밀
10019010	Seed of wheat and meslin 밀과 메슬린 종자
10019020	Wheat & meslin other than durum or seed wheat 듀럼종의 밀과 밀의 종자를 제외한 밀과 메슬린

<일본>

○ 밀과 메슬린을 통틀어 주곡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된 법에 의해 수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 2가지로 분류

- -

<표 4-1-15> 일본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1 Wheat and meslin 밀과 메슬린	100110 Durum wheat 밀과 메슬린	100110010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3 of the law or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wheat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law ("주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법"에 의한 수입)
		100110090	Other 기타

<스위스>

- 밀과 기타로 구분한 다음 용도와 수입 방식에 따라 세분하고 있음. 밀은 종자용, 주정용, 관세할당 내에서 수입 하는 것, 기타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기타는 다시 사료용, 효소 제조용, 기술적 용도, 기타로 분류하였음.
- 기타 밀은 종자용, 주정용, 식품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기타 등으로 분류됨. 식품용은 다시 관세할당 수입 내에서 수입되는 것과 스웰링 제조용, 전분 제조용, 커피 대용품 제조용으로 분류됨. 따라서 스위스는 밀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표 4-1-16> 스위스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1 Froment (blé) et méteil 밀과 교잡밀	100110 froment (blé) dur 밀	10011011	à ensemercer 종자용	
		10011021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0011032	importé dans les limites du contingent tarifaire (c. n° 26) 관세 할당량 한도 내에서(Q. No. 26)	
		10011038 autre 기타	10011060.01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11060.02	for the manufacture of enzymes (special provisions cf. CCFL 631.012) 효소 제조용
			1001107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11080		autre 기타	
	100190 autres 기타	10019011	à ensemercer 종자용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autres 기타	for human consumption 식품용	10019032.01
10019032.02			soft wheat, for the manufacture of "swelling" (pregelatinized) flour swelling 제조를 위한 소프트 밀	
10019038 autres	10019038.01	soft wheat, for the manufacture of starch (special provisions cf. CCFL 631.012)		

				전분 제조를 위한 소프트 밀
		기타	10019038.02	soft wheat, for the manufacture of coffee substitutes 커피대용품 제조를 위한 소프트 밀
			1001906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1907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19080	autres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밀에 대한 분류는 품종과 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음. 품종은 듀럼, 메슬린, 기타로 나누고 용도는 종자용, 사료용, 제분용, 기타로 되어 있음.
- 용도와 품종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은 쌀이나 보리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

<표 4-1-17> 한국의 밀(1001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1100000	듀럼
1001901000	메슬린
1001909010	종자용
1001909020	사료용
1001909030	제분용
1001909090	기타

다. 개편방안

- 우리나라의 밀에 대한 분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옥수수

가. 주요국 분류기준

<EU>

- EU의 옥수수 분류는 종자용과 기타로 분류되고, 종자용은 다시 교잡종과 기타로 구분하고 교잡종은 2중, 3중, 단순,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 -

<표 4-1-18> EU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5 Maize (corn) 옥수수	100510 Seed 종자용	hybird	10051011 Double hybrids and top cross hybrids 두 가지 교잡종
			10051013 Three-cross hybrids 세가지 교잡종
			10051015 Simple hybrids 단순 교잡
			10051019 Other 기타
	10051090 Other 기타		
10059000 Other 기타			

<미국>

- 품종과 용도에 따라 종자용, yellow dent 종, 기타 3가지로 분류

<표 4-1-19> 미국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51000	Seed corn (maize) 옥수수 종자
10059020	Yellow dent corn
10059040	Corn (maize), other than seed and yellow dent corn 기타

<일본>

- 종자용과 기타로 구분한 다음 종자용은 화학적 처리를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기타는 용도별로 사료용, 팝콘용, 전분 제조용, 콘플레이크 등의 제조용, 내각령에 의해 수입되는 사료용, 기타 등 모두 8가지로 분류됨.

<표 4-1-20> 일본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5 Maize (corn) 옥수수	100510 Seed 종자용	100510010 Rendered suitable solely for sowing by chemical treatment (for example, sterilization, acceleration of germination) 화학처리를 한 종자용(예: 살균, 발아의 가속)	
		100510020 Other 기타	
	100590 Other 기타	100590010 For feeding purposes (Note: The imports under this item are to be used as materials for fodder and feed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ustos) 사료용	
		100590020 Popcorn, corn which is explosive with heating under normal air pressure 팝콘	

	100590091	Intended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rn starch 전분 제조용
	100590092	Intended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rn flakes, ethylalcohol or distilled alcoholic beverages 콘플레이크, 에틸알콜 또는 증류 알콜 음료 제조용
	100590095	For feeding purpose, stipulated by a cabinet order 내각 명령에 의해 규정된 사료용
	100590096	Other 기타
	100590099	Other 기타

<스위스>

- 스위스의 옥수수 분류는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가장 먼저 종자용과 기타로 분류하고 종자용은 유전자 조작과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종자용 이외 기타 옥수수는 용도에 따라 주정용과 기타로 분류하고 주정용은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그렇지 않은 것(기타)으로 분류함.
- 주정용 이외 기타는 식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기타로 분류됨. 식용은 TRQ 내 수입과 기타로 분류하고 TRQ 내 수입은 다시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기타로 분류됨. 식용의 기타는 다시 팝콘용과 소매용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유전자 조작 여부에 따라 한 번 더 분류됨. 따라서 스위스의 옥수수 분류는 모두 7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16개로 분류됨.

<표 4-1-21> 스위스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5 Maïs 옥수수	100510 à ensemencer cerà 종자용	10051000 à ensemencer 종자용	10051000.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0051000.999	other 기타			
		10059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0051010.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0051010.999	other 기타			
	100590 autre 기타	other 기타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005902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28)	1005902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관세 할당량 한도 내에서(Q. No. 28)	10059021.999	other 기타	
				10059029 other 기타	10059029.01 popcorn 팝콘용	10059029.01.911	génétique 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0059029.01.999	other 기타

				10059029.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0059029.26. 911	génétique 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0059029.26. 999	other 기타
		1005903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59030.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0059030.999			other 기타
		1005904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59040.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0059040.999			other 기타
		10059090 autre 기타	10059090.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0059090.999			other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용도에 따라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기타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유전자조작(GMO) 옥수수의 국제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U와 유사하게 옥수수 종자에 교잡종(단순교잡, 2중교잡, 3중교잡 등)을 나타내는 방안 검토. 사료용 이외에 채유용 등 수입 규모가 큰 것에 대하여 용도를 세분화.

<표 4-1-22> 한국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5100000	종자용
1005901000	사료용
1005902000	팝콘
1005909000	기타

다. 개편방안

○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별도로 분류

- -

<표 4-1-23> 한국의 옥수수(10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100510	10051000	1005100010	종자용, 유전자조작
	10051000	1005100090	종자용, 기타
100590	10059010	1005901010	사료용, 유전자조작
	10059010	1005901090	사료용, 기타
	10059020	1005902010	팝콘, 유전자조작
	10059020	1005902090	팝콘, 기타
	10059090	1005909010	기타, 유전자조작
	10059090	1005909090	기타, 기타

5) 수수

가. 주요국 분류기준

- 종자용과 기타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은 1가지로 가장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주정용, 식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가장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음.

<표 4-1-24> 미국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70000	Grain sorghum 수수

<표 4-1-25> EU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700 Grain sorghum 수수	10070010	Hybrids for sowing 종자용 교잡종
	10070090	Other 기타

<표 4-1-26> 일본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7 Grain sorghum 수수	100700010	Rendered suitable solely for sowing by chemical treatment (for example, sterilization, acceleration of germination) 화학처리를 한 파종을 위한 종자(예 : 적합, 살균, 발아의 가속)
	100700091	For feeding purposes (Note: The imports under this item are to be used as materials for fodder and feed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ustos) 사료용 수수
	100700099	Other 기타

<표 4-1-27> 스위스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7 Sorgho à grains 수수	100700 Sorgho à grains 수수	10070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0070021	importé dans les limites du contingent tarifaire (c. n° 27) 할당액 (c. n° 27)내에서 수입된
			10070029	autre 기타
			10070029.01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소비용,마초상태의 물질이 남아있는
		1007003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7004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70090	autre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종자용과 기타 2가지로 분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28> 한국의 수수(1007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700 수수	1007001000	종자용
	1007009000	기타

6) 호밀

가. 주요국 분류기준

○ 종자용과 기타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과 EU는 1가지로 가장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종자, 주정용, 식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가장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음.

<표 4-1-29> 미국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20000	Rye 호밀

- -

<표 4-1-30> EU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20000	Rye 호밀

<표 4-1-31> 일본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2 Rye 호밀	100200010 1 Rendered suitable solely for sowing by chemical treatment (for example, sterilization, acceleration of germination) 화학처리를 한 파종을 위한 종자(예 : 적합, 살균, 발아의 가속)
	100200021 For feeding purposes 사료용
	100200029 Other 기타

<표 4-1-32> 스위스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2 Seigle 호밀	10020011 à ensementer 종자용	10020011.01	for sowing 종자용	
		10020011.02	to be harvested green	
	10020021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other 기타	10020032 for human consumption 식품용	10020032.0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27) 관세 할당량 한도 내에서(Q. No. 27)
		10020038 other 기타	10020038.01	for the manufacture of coffee substitutes 커피대체제 제조용
		1002006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2007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20080	autre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호밀을 종자용과 기타 2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33> 한국의 호밀(1002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2001000	종자용
1002009000	기타

7) 기타 곡물

가. 주요국 분류기준

-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품목을 기타 곡물에 분류해 놓고 있으나 조의 경우 한 품목으로 우리나라보다 단순함. EU와 일본도 우리나라나 미국과 유사한 품목을 기타 곡물에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메밀과 기타 곡물의 종자용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스위스도 기본적으로 메밀, 조, 카나리, 기타 등 네 품목을 기타 곡물로 분류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네 품목에 대하여 용도별로 주정용, 식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기타 등으로 분류됨.

<표 4-1-34> 미국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81000	Buckwheat 메밀
10082000	Millet 조
10083000	Canary seed 카나리시드
10089000	Cereals nesi (including wild rice) 기타곡물

<표 4-1-35> EU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8 Buckwheat, millet and canary seed; other cereals	10081000	Buckwheat 메밀		
	10082000	Millet 조		
	10083000	Canary seed 카나리시드		
	100890 Other cereals 기타곡물	10089010	Triticale	
		10089090	Other 기타	

<표 4-1-36> 일본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8 Buckwheat, millet and canary seed; other cereals: 메밀, 조, 기타곡물	100810 Buckwheat 메밀	100810010	Rendered suitable solely for sowing by chemical treatment (for example, sterilization, acceleration of germination) 화학처리를 한 파종을 위한 종자(예 : 적합, 살균, 발아의 가속)
		100810090	Other 기타
	100820000		Millet 조
	100830000		Canary seed 카나리시드

- -

100890 Other cereals 기타곡물	100890010	Rendered suitable solely for sowing by chemical treatment (for example, sterilization, acceleration of germination) 화학처리를 한 파종을 위한 종자(예 : 적합, 살균, 발아의 가속)
	100890021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3 of the law or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wheat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law
	100890029	(1)Other 기타
	100890099	(2)Other 기타

<표 4-1-37> 스위스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008 Sarrasin, millet et alpiste; autres céréales 메밀,기 장,유럽 갈폴; 기타 곡물	100810 sarrasin 메밀	10081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other	for human consum ption 식용	1008 1021	importé dans les limites du contingent tarifaire (c. n° 27) 할당액(c. n° 27) 내에서 수입된	
				1008 1029 autre 기타	10081029.01	for the manufacture of foodstuffs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마초상태의 물질이 제거된 식품
			10081029.02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소비용,마초상태의 물질이 남아있는	
			10081029.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008103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8104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81090		autre 기타			
	100820 millet 조	10082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other	for human consum ption 식용	1008 2021	importé dans les limites du contingent tarifaire (c. n° 27)내에서 수입된	
				1008 2029 autre 기타	10082029 .01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소비용,마초상태의 물질이 남아있는
			1008203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8204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82090		autre 기타				
100830 alpiste 유럽갈 폴	10083010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other 기타	10083020 pour l'alimentati on humaine 식용	10083020.01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소비용,마초상태의 물질이 남아있는		
		10083030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83040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83090	autre 기타			
100890 autres céréales 기타곡 물	triticales	10089013	à ensementer 종자용				
		10089014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other 기타	for human consumption 소비용	10089022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0089028.01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소비용, 마초상 태의 물질이 남아있는		
		10089033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89034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89038		autre 기타				
	other 기타	10089041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other 기타	for human consumpti on 소비용	1008 9051	importées dans les limites du contingent tarifaire (c. n° 27) 할당액(c. n° 27) 내에서 수입된		
				10089052.01	wild rice (Zizania aquatica) 야생쌀(지리아니아 아콰티카)		
				10089052.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0089059.01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소비용, 마초상태의 물질이 남아있는		
		10089061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0089071		pour usages techniques 기술적 용도			
	10089099		other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기타 곡물은 HS 6단위에서 메밀, 조, 카나리, 기타 등 네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들 네 품목을 기타 곡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타 곡물(HSK 1008호)에 메밀, 조, 카나리, 기타 곡물 등 1008호에 속하는 기본적인 품목을 분류한 다음 조를 종자별로 분류하여 모두 6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음. 조는 foxtail 종으로 종자용 및 기타, 기타 조 등 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 -

○ 기타곡물의 종자용 별도분리 필요. 향후 용도별로 수입에 대한 정보가 요구될 경우 용도별로 분류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1-38> 한국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단위	세부 품목
1008100000	메밀
1008201010	조 종자용(foxtail)
1008201090	조 기타(foxtail)
1008209000	밀리트 기타
1008300000	카나리시드, 기타
1008900000	기타 곡물

다. 개편방안

○ 기타곡물의 종자용 별도분리 필요. 향후 용도별로 수입에 대한 정보가 요구될 경우

<표 4-1-39> 한국의 기타(1008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100810	10081010	1008101010	메밀, 종자용
		1008101090	메밀, 기타
100820	10082010	1008201010	조 종자용(foxtail)
		1008201090	조 기타(foxtail)
	10082090	1008209000	밀리트 기타
100830	10083010	1008301010	카나리시드, 종자용
		1008301090	카나리시드, 기타
100890	10089000	1008900010	기타 곡물, 종자용
		1008900090	기타곡물, 기타

8) 대두

가. 주요국 분류기준

○ 미국은 대두를 단일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EU는 채유용, 대두박용, 사료용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기타로 하여 2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

○ 스위스는 사료용, 채유용, 기타로 분류한 다음 각각에 대하여 다시 용도별로 분류하고 유전자 조작 여부를 적용하여 많게는 6단계까지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스위스의 대두 분류는 25가지에 달함.

<표 4-1-40> 미국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2010000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표 4-1-41> EU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20100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0010 For soya bean oil and oil cake or feeding oil cake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
	12010090 Other 기타

<표 4-1-42> 일본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20100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00010 Of yellowish white 노란빛을 띤 흰콩
	120100090 Other 기타

<표 4-1-43> 스위스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20100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001001 for animal feeding, except those for the production of oil 사료용(채유용 제외)	1201001001.911 génétiqu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1001.999 other 기타		
	for the production of oil 채유용	1201002101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201002101.911 génétiqu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2101.999 other 기타	
		for the production of oil fit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201002301 by extraction 추출용	1201002301.911 génétiqu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2301.999 other 기타
	1201002302 1201002302.911 génétiqument modifié			

			for the oil extraction and the manufacture of products of tariff heading 2103.9000		유전자 조작	
				1201002302.999	other 기타	
			1201002401 by pressing 압착용	12010024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2401.999	other 기타	
			1201002402 for the oil extraction and the manufacture of products of tariff heading 2103.9000	1201002402.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2402.999	other 기타	
		other 기타	1201002601 by extraction 추출용	12010026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2601.999	other 기타	
			1201002701 by pressing 압착용	12010027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2701.999	other 기타	
	other 기타	1201009101 for the production of foodstuffs 식품제조용		12010091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9101.999	other 기타	
		other 기타	1201009901 other 기타		12010099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9901.999	other 기타
			12010099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201009926.911	à ensementer
					other 기타	1201009 926.912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 조작
				1201009 926.999 other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대두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소비량이 많은 채유용, 대두박용, 사료용과 기타(가정용)으로 분류됨. 기타는 콩나물콩과 기타로 다시 분류됨.
- 유전자조작(GMO) 대두의 국제 교역 증가, 소비자 관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조작 대두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될 필요가 있음.

- -

<표 4-1-44> 한국의 대두(1201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20100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대두(파쇄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0010 For soya bean oil and oil cake or feeding oil cake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	1201001010	For soya bean oil and oil cake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01001020	For feeding 대두(사료용)
	12010090 Other 기타	1201009010	For bean sprouts 대두(콩나물용)
		1201009090	Other 대두(기타)

다. 개편방안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두 용도의 특징을 반영하여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조작(GMO) 대두의 국제 교역 증가, 소비자 관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조작 대두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될 필요가 있음.

<표 4-1-45> 한국의 대두(1201호) 품목분류 개편안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120100 대두(파쇄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0010	120100101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유전자조작
		120100109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기타
	12010020	1201002010	대두(사료용), 유전자조작
		1201002090	대두(사료용), 기타
	12010030	1201003010	대두(콩나물용), 유전자조작
		1201003090	대두(콩나물용), 기타
	12010090	1201009010	대두(기타), 유전자조작
		1201009090	대두(기타), 기타

(2) 곡물가공품

1) 쌀 가공품

가. 주요국 분류기준

- 일본은 밀, 메슬린, 호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공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류를 가지고 있으나 쌀의 경우 대부분 기타 곡물 가공품 속에 속해 있는 형태

- -

임. 수입 방식(주곡 수급 및 가격 안정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수입과 기타 방식에 의한 수입)에 따른 분류를 추가하고 있음.

- EU와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쌀 가공품의 분류가 단순한 형태이지만 EU는 쌀 전분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스위스는 용도에 따라 쌀 가공품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용도는 식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주정용, 소매용 등으로 분류됨.

<표 4-1-46> 미국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25	Rice flour(쌀가루)
11031914	Groats and meal of rice
19059090	Bakers' wares communion wafers, empty capsules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sealing wafers, rice paper and similar products, nesl

<표 4-1-47> EU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50	Rice flour(쌀가루)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Of other cereals (탄 것, 간 것, 펠릿)	11031950 Of rice(쌀의 것)
110320 Pellets(펠릿, 환)	11032050 Of rice(쌀의 것)
110419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 Rolled or flaked grains:- Of others 기타 방식으로 가공한 것(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의 쌀 제외; 압착한 것, 플레이크 상의 것; 기타의 것	11041991 Flaked rice(플레이크된 쌀)
11081- Starches:(전분)	11081910 Rice starch(쌀 전분)

<표 4-1-48> 스위스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 Farines de céréales autres que de froment (blé) ou de méteil 밀가루나 혼합밀가루 외의 다른 곡물가루- rice flour 쌀가루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102905101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29051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2905201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2905901	autres 기타
110319 Gruaux, semoules et agglomérés sous forme de pellets, de céréales: 강력분,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Gruaux et semoules: 분쇄물 및 조분 of rice 쌀의 것	1103192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3192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other 기타	1103192901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3192902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용도
11031929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9049020		riz précuit (riz «minute») 사전 조리된 쌀(일본요리 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HS 11류 및 19류에 쌀 가공품이 별도로 분류된 것은 11개임. 분류 기준은 가공 방식 또는 가공된 형태임.

<표 4-1-49> 한국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2000	쌀가루
1103193000	곡물의 분쇄물·조분-쌀의것
1103202000	곡물의 펠리트-쌀의것
1104191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기타 곡물의 것-쌀의 것
1104301000	곡물의 배아-쌀의 것
1901201000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

	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제1905호의 베이-쌀가루의 것
190190909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기타-쌀가루의 것
190410300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퍼프드 라이스
19049010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기타-찌거나 삶은 쌀
1905901050	미과
1905909020	라이스페이퍼

다. 개편방안

- 증가하는 1회용(덥혀먹는) 가공품 분리

<표 4-1-50> 한국의 쌀 가공품 품목 분류 개편안

HS 코드	세부 품목
19049010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기타-찌거나 삶은 쌀
1904901020	사전에 조리된 쌀(덥혀먹는 용기에 포장된 것)

2) 보리 가공품

가. 주요국 분류기준

- 11류에 속하는 보리 가공품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EU와 일본이 각각 3품목이고 미국은 2품목임. 스위스는 11류에 속하는 보리 가공품이 10품목으로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음. 분류에 적용된 용도는 사료용, 주정용, 식용 등이며, 식용은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잔여물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매용 등으로 분류됨.

- 그러나 19류에는 보리 가공품이 명시적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EU, 미국, 일본 등의 19류에 속하는 보리 가공품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공 형태별로 기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1-51> 미국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41910	Rolled or flaked grains of barley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 곡물의 것-보리의 것)
11042910	Grains of barley, hulled, pearled, clipped, sliced, kibbled or otherwise worked, but not rolled or flaked(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보리의 것)

<표 4-1-52> EU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10	Barley flour(보리 가루)
110319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of other cereals (물의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의 것)	11031930 Of barley(보리의 것)
110320 Pellets (펠릿, 환)	11032020 Of barley(보리의 것)

<표 4-1-53> 일본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10	Barley flour(보리 가루)
110319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of other cereals (물의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의 것)	11031930 Of barley(보리의 것)
110320 Pellets (펠릿, 환)	11032020 Of barley(보리의 것)

<표 4-1-54> 스위스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419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기타 가공한 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rolled or flaked grains: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of barley 보리의 것	1104192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4192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other 기타	1104192901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41929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429 Autres grains travaillés (mondés, perlés, tranchés ou concassés, par exemple): 기타 가공한 곡물 (예; 껍질을 벗긴 것, 진주상의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of barley 보리의 것	1104293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104293201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4293202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42932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42933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4293901	other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주요 보리 가공품으로 11류에 5품목, 19류에 2품목 등 모두 7품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음.
- 분류를 개편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표 4-1-55> 한국의 보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1000	보리가루
110319100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 곡물의 것-보리의 것
110320300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펠리트-보리의 것
1104192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기타 곡물의 것-보리의 것
1104292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기타 곡물의 것-보리의 것
1901202000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제1905호의 베이-보리가루의 것
1901909092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기타-보리가루의 것

3) 밀 가공품

가. 주요국 분류기준

- 가장 기본적인 분류 형태인 HS 6단위 분류 기준(가루, 조분, 펠리트, 기타 가공, 전분과 이눌린, 글루텐 등) 수준의 단순한 분류를 나타내는 국가가 있고(미국, 일본), 이러한 기본적인 분류에 품종을 결합하여 보다 복잡한 형태로 분류한 국가가 있음(EU, 스위스). 스위스는 용도별 분류를 추가하여 가장 복잡한 형태를 나타냄.
- 밀의 품종은 듀럼 밀, 스펠트 밀, 일반 밀 등으로 분류되고, 용도는 주정용, 식용, 사료용, 기술적 용도 등으로 분류됨.

<표 4-1-56> 미국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10000	Wheat or meslin flour(밀 또는 메슬린 가루)
11031100	Groats and meal of wheat(탄 것, 조분-밀의 것)
11081100	Wheat starch(전분)
11090010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to be used as animal feed(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동물 사료용)
11090090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to be used for other than animal feed(밀의 글루텐-건조 여부 불문-동물의 사료용이 아닌것)
19043000	Bulgur wheat, in grain form or in form of flakes or other worked grain (except flour, groats & meal),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nesoi 불가 밀(곡물 형, 플레이크 또는 기타 가공형)

<표 4-1-57> EU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100 Wheat or meslin flour (밀 또는 메슬린 가루)	11010011 Of durum wheat(듀럼종 밀)
	11010015 Of common wheat and spelt (일반 밀과 스펠트 밀)
	11010090 Meslin flour(메슬린)
110311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Of wheat (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밀의 것)	11031110 Durum wheat(듀럼종 밀)
	11031190 Common wheat and spelt (일반밀과 스펠트 밀)
110320 Pellets(펠렛, 환)	11032060 Of wheat(밀의 것)
110419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 Rolled or flaked grains:- Of other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기타의 것)	11041910 Of wheat(밀의 것)
110430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곡물 배아(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상의 것, 빻은 것)	11043010 Of wheat(밀의 것)
11081 Starches (전분)	11081100 Wheat starch(밀 분말)
11090000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밀 글루텐 (건조된 것 또는 아닌 것을 가리지 않음))

<표 4-1-58> 일본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1 Wheat or meslin flour (밀 또는 메슬린 가루)	110100011	For manufacturing sodium glutamate Note: The imports under this item are to be used as materials for manufacturing sodium glutamat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ustoms
	110100091	Other 기타
	110100200	Other 기타
110311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 Of wheat (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밀의 것)	110311010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3 of the law or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wheat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law ("주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법"에 의한 수입)
	110311090	Other(기타)
110811 Starches inulin- Starches Wheat starch 밀 전분	110811010	Imported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Law for Stabilization of Supply-Demand and Price of Staple Food", imported to be purchased and sold by Japa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a joint application by seller to and purchaser from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43 of the law or imported with certific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wheat and others provided by the cabinet order provided in column 3 of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law("주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법"에 의한 수입)
	110811090	Other
110900000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밀 글루텐, 건조여부 불문)

- -

<표 4-1-59> 스위스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100 Farines de froment (ble) ou de meteil 밀가루, 혼합밀가루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101004101 "swelling" (pregelatinised) flour 부풀어오르게 하는 가루
		other 기타
		11010043 of spelt 스펠트 밀의 것 11010048 other 기타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1005101 "swelling" (pregelatinised) flour 부풀어오르게 하는 가루
		1101005901 autres 기타
	1101009001 autres 기타	
110311 Gruaux, semoules et agglomérés sous forme de pellets, de céréales: 강력분,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Gruaux et semoules: 분쇄물 및 조분 de froment (blé): 밀의 것	durum wheat meal, in containers holding more than 5 kg	1103111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3111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autres 기타
	autres 기타	1103111901 for the preparation of pasta 파스타용
		1103111902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용도
		1103119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3119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3119901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용도
	Gruaux, semoules et agglomérés sous forme de pellets, de céréales: 강력분,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pellets: 펠리트 de froment (blé): 밀의 것	1103201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3201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3201901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용도		
11081 Amidons et fécules: 전분 de froment (blé): 밀의 것	1108111001 for making beer	
	1108112001 for animal feeding	
	1108119001 autres 기타	1108119002 for the manufacture of dextrin and glucose
		1108119003 for other technical uses
		1108119026 put up for retail sale
	11090000	Gluten de froment (blé), même à l'état sec 밀의 글루텐(건조한 상태의 것도 포함)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밀 가공품 가운데 명시적으로 밀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11류의 6품목, 19류의 1품목 등 모두 7개임. 가공된 형태와 품종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루, 분쇄물, 펠리트, 전분, 글루텐 등임.
- 밀의 배아 상태의 가공품(110430소호)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로 처리됨.

<표 4-1-60> 한국의 밀 가공품 품목 분류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1001000	밀가루
1101002000	메슬린 가루
1103110000	곡물의 분쇄물·조분-밀의 것
1103201000	펠리트-밀의 것
1108110000	전분과 이눌린전분-밀의 것
110900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4300000	불거 소맥

다. 개편방안

- 밀의 배아 상태의 가공품 별도로 분류(11043020)

<표 4-1-61> 한국의 밀 가공품 분류 개편안

HS 코드	세부 품목
1101001000	밀가루
1101002000	메슬린 가루
1103110000	곡물의 분쇄물·조분-밀의 것
1103201000	펠리트-밀의 것
1104302000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곡물 배아(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상의 것, 빵은 것)
1108110000	전분과 이눌린전분-밀의 것
110900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4300000	불거 소맥

- -

4) 옥수수 가공품

가. 주요국 분류기준

- 미국은 HS 6단위 분류 기준(가루, 조분, 펠리트, 기타 가공, 전분과 이눌린, 글루텐 등)의 단순한 분류를 나타냄. 일본은 이러한 기본적인 분류에 일부 품목(전분 등)에 대해 용도별 분류를 추가하였음.
- EU는 기본적인 분류 방식에 지방함유량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추가하고 있음.
- 스위스는 기본적 분류 방식에 용도별 분류를 추가하였음. 용도는 식용, 주정용, 사료용, 착유용, 맥주 제조용, 기타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추가하였음.
 - 배아 상태의 것을 기타 곡물에서 분리하고 있음.

<표 4-1-62> 미국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2000	Corn (maize) flour(옥수수가루)
11031300	Groats and meal of corn (maize)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옥수수의 것)
11042300	Grains of corn (maize), hulled, pearled, clipped, sliced, kibbled or otherwise worked, but not rolled or flaked(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옥수수의 것)
11081200	Corn (maize) starch(전분/옥수수의 것)

<표 4-1-63> EU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20 Maize (corn) flour(옥수수 가루)	11022010 Of a fat content not exceeding 1,5 % by weight(지방 함량을 무게로 1.5 %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11022090 Other(기타의 것)
110313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Of maize (corn) (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옥수수의 것)	11031310 Of a fat content not exceeding 1,5 % by weight(지방 함량을 무게로 1.5 %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11031390 Other(기타의 것)

110320 Pellets(펠릿, 환)	11032040	Of maize(옥수수의 것)
110419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 Rolled or flaked grains:- Of other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기타의 것	11041950	Of maize(옥수수의 것)
110423 Other worked grains (for example, hulled, pearled, sliced or kibbled):- Of maize(corn)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 진주상의 것 ·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옥수수의 것	11042310	Hulled (shelled or husked), whether or not sliced or kibbled(껍질을 벗긴(껍질을 벗기거나 슬라이스 된 또는 굵게 빻은))
	11042330	Pearled(환으로 된)
	11042390	Not otherwise worked than kibbled
	11042399	Other(기타의 것)
11081 Starches:(분말)	11081200	Maize (corn) starch(옥수수 분말)

<표 4-1-64> 일본의 옥수수 가공품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20000		Maize (corn) flour 옥수수 가루
11031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물의 분쇄물 · 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	110313000	Of maize (corn) 옥수수의 것
110320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Pellets(펠릿, 환)	110320310	Of maize(옥수수의 것)
110419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 Rolled or flaked grains:- Of other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기타의 것	110419210	Of maize(옥수수의 것)

110423 Other worked grains (for example, hulled, pearled, sliced or kibbled):- Of maize(corn)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옥수수의 것	110423010	Intended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rnflakes 콘플레이크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110423090	Other 기타
110812 Maize (corn) starch 옥수수 전분	110812010	For manufacturing starch sugery dextrin, dextrin glue, dissolve starch, roast starch or starch glue 접착제 덱스트린, 전분 분해, 로스트 전분 또는 녹말 접착제를 위한 가공용 옥수수
	110812020	Other 기타
	110812090	Other 기타

<표 4-1-65> 스위스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20 Farines de céréales autres que de froment (blé) ou de méteil 밀가루나 혼합밀가루 외의 다른 곡물가루- farine de maïs 옥수수가루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2201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2201001.999 Other 기타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2201026.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2201026.999 Other 기타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102202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2202001.999 Other 기타
	autre 기타		11022090.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22090.999 Other 기타
110311 Gruaux, semoules et agglomérés sous forme de pellets, de céréales: 강력분,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Gruaux et semoules: 분쇄물 및 조분 de maïs: 옥수수의 것	pour la fabrication du malt à brasser ou de la bière 주정용		1103131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3131001.999 Other 기타
	pour l'alimentation des animaux 사료용		11031320.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31320.999 Other 기타
	autres 기타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3139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3139001999 Other 기타

			1103139002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for the production of alcohol for technical purposes	1103139002999	Other 기타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3139026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3139026999	Other 기타
110423 Autres grains travaillés (mondés, perlés, tranchés ou concassés, par exemple): 기타 가공한 곡물 (예; 껍질을 벗긴 것, 진주상 의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de maïs 옥수수 의 것	11042310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1104231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231001.999	Other 기타
	11042320 for animal feeding		1104232.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232.999	Other 기타
	autres 기타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4239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239001.999	Other 기타
		maize (corn) groats, i.e. maize (corn) roughly broken, degermed and husked, for the manufacture of cornflakes	1104239002.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239002.999	Other 기타
		maize (corn), crushed,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 용도	1104239003.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239003.999	Other 기타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4239026.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239026.999	Other 기타
110430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 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for the production of fats or oils for human consumption or for technical purposes: of maize (corn): 옥수수의 것	for extraction factories 추출용		11043011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301101.999	Other 기타
	for pressing factories 압착용		11043012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301201.999	Other 기타
	for the production of fats or oils for animal feeding of maize (corn) 사료용		1104307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4307001912	Other 기타
110812 Amidons et féculés: 전분 maize (corn) starch:	1108121001 for making beer 맥주 제조용		1108121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옥수수외것			1108121001.999	Other 기타
	1108122001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8122001.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8122001.999	Other 기타
	11081290 01 other	for the manufacture of dextrin and glucose	1108129002.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8129002.999	Other 기타
		for other technical uses	1108129003.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8129003.999	Other 기타
		put up for retail sale	1108129026.911	génétiquement modifié 유전자조작
			1108129026.999	Other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옥수수 가공품 가운데 명시적으로 옥수수임을 나타내는 것은 11류에서 5품목, 19류에서 2품목 등 모두 7개임. 가공된 형태와 품종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루, 분쇄물, 전분, 플레이크, 칩 등임. 전분은 다시 식용과 기타로 분류됨.
- 옥수수의 분류와 같이 유전자조작 여부에 대한 별도 분류 필요

<표 4-1-66> 한국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200000	옥수수가루
110313000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옥수수의 것
1104230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옥수수의 것
1108121000	전분과 이눌린전분/옥수수의 것-식품용
1108129000	전분과 이눌린전분/옥수수의 것-기타
1904101000	콘 플레이크
1904102000	콘 칩

- -

다. 개편방안

○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가공품을 별도로 분류

<표 4-1-67> 한국의 옥수수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110220	11022010	1102201010	옥수수가루, 유전자조작
		1102201090	옥수수가루, 기타
110313	11031310	110313101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옥수수의 것, 유전자조작
		110313109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옥수수의 것, 기타
110423	11042310	110423101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옥수수의 것, 유전자조작
		110423109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옥수수의 것, 기타
110812	11081210	1108121010	전분과 이눌린전분/옥수수의 것-식품용, 유전자조작
		1108121090	전분과 이눌린전분/옥수수의 것-식품용, 기타
	11081290	1108129010	전분과 이눌린전분/옥수수의 것-기타, 유전자조작
		1108129090	전분과 이눌린전분/옥수수의 것-기타, 기타
190410	19041010	1904101010	콘 플레이크, 유전자조작
		1904101090	콘 플레이크, 기타
	19041020	1904102010	콘 칩, 유전자조작
		1904102090	콘 칩기타

5) 호밀 가공품

가. 주요국 분류기준

○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호밀가루 하나만 분류되어 있음. EU와 스위스는 조분, 펠릿 등이 추가로 분류되어 있음.

<표 4-1-68> 미국의 호밀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1000	Rye flour(호밀 가루)

<표 4-1-69> EU의 호밀 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1000		Rye flour(호밀 가루)
110319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Of other cereals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의 것)	11031910	Of rye(호밀의 것)
110320 Pellets(펠릿, 환)	11032010	Of rye(호밀의 것)
110419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 Rolled or flaked grains:- Of other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기타의 것	11041930	Of rye(호밀의 것)

<표 4-1-70> 일본의 호밀가공품 품목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10000	Rye flour 호밀가루

<표 4-1-71> 스위스의 호밀가공품 품목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10 Farines de céréales autres que de froment (blé) ou de méteil 밀가루나 혼합밀가루 외의 다른 곡물가루- farine de seigle 호밀가루	for human consumption 소비용	1102104101 "swelling" (pregelatinised) flour 부풀어오르게 하는 가루
		11021049 other 기타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2105101 "swelling" (pregelatinised) flour 부풀어오르게 하는 가루
		1102005901 autres 기타
	1102009001 autres 기타	
110319 Gruaux, semoules et agglomérés sous forme de pellets, de céréales: 강력분,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Gruaux et semoules: 분쇄물 및 조분 of rye 호밀의 것	1103191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3191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other 기타	1103191901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3191902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용도
		11031919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Gruaux, semoules et agglomérés sous forme de pellets, de céréales: 강력분,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pellets: 펠리트 of rye 호밀의 것	1103202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3202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3202901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용도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호밀은 호밀가루 하나만 11류에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음. HS 6단위 분류에 나타난 가공형태에 따라 조분, 펠리트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표 4-1-72> 한국의 호밀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100000	호밀가루

다. 개편방안

- HS 6단위 기본분류를 충족시킬 수준으로 조분, 펠리트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표 4-1-73> 호밀 가공품 분류 개편안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110210	11021000	1102100000	호밀 가루
110319	11031940	1103194000	분쇄물, 조분-호밀의 것
110320	11032040	1103204000	펠리트-호밀의 것
110419	11041940	1104194000	압착플레이크-호밀의 것

6) 귀리 가공품

가. 주요국 분류기준

-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이 모두 조분, 기타 가공은 우리나라 같은 분류를 가지고 있으나 펠리트 등이 추가된 경우가 있음. 스위스는 다른 곡물과 같이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음.

<표 4-1-74> 미국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31912	Groats and meal of oats(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 곡물의 것-귀리의 것)
11041200	Rolled or flaked grains of oats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귀리의 것)
11042200	Grains of oats, hulled, pearled, clipped, sliced, kibbled or otherwise worked, but not rolled or flaked(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귀리의 것)

<표 4-1-75> EU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30		Oat flour(귀리 가루)
110319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Of other cereals (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의 것)	11031940	Of oats(귀리의 것)
110320 Pellets(펠릿, 환)	11032030	Of oats(귀리의 것)
110412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 Rolled or flaked grain Of oat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귀리의 것	11041210	Rolled(압착한 것)
	11041290	Flaked (플레이크 상의 것)
110422 Other worked grains (for example, hulled, pearled, sliced or kibbled):- Of oat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귀리의 것	11042220	Hulled (shelled or husked) (껍질을 벗긴)
	11042230	Hulled and sliced or kibbled ('Grütze' or 'grutten') (껍질을 벗기거나 슬라이스 된 또는 굵게 빻은)
	11042250	Pearled(환으로 된)
	11042290	Not otherwise worked than kibbled
	11042298	Other(기타의 것)

<표 4-1-76> 일본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31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Groats and meal: (물의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	110319400	Of oats (귀리의 것)
110320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Pellets(펠릿, 환)	110320200	Of oats (귀리의 것)
110412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 Rolled or flaked grains:- Of oat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110412000	Of oats (귀리의 것)
110422 Other worked grains (for example, hulled, pearled, sliced or kibbled):- Of oats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	110422000	Of oats (귀리의 것)

<표 4-1-77> 스위스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30		Oat flour(귀리 가루)	
110319 Gruaux, semoules et agglomérés sous forme de pellets, de céréales: 강력분,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Gruaux et semoules: 분쇄물 및 조분 of oats 귀리의 것	11031921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31922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other 기타	1103192901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3192902	for technical purposes 기술적용도
11031929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412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1006;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rolled or flaked grains: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of oats 귀리의 것	11041210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11041220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other 기타	1104129001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41290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422 Autres grains travaillés (mondés, perlés, tranchés ou concassés, par exemple): 기타 가공한 곡물 (예: 껍질을 벗긴 것, 진주상의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d'avoine 귀리의 것	1104221001	for the manufacture of brewers' malt or beer 주정용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104222001	for human consumption, without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4222002	for human consumption, with residues for use as forage
		1104222003	milling oats, hulled, containing approximately 10% of non-hulled grains, for the preparation of milled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
		1104222026	put up for retail sale 소매용
	11042230	for animal feeding 사료용	
	1104229001	other 기타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HS 11류에 조분과 기타 가공 등 3품목
- 품목분류에 있어서 6단위 기본분류 수준에 미달

<표 4-1-78> 한국의 귀리 가공품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110319200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 곡물의 것-귀리의 것
1104120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귀리의 것
1104220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귀리의 것

다. 개편방안

- 귀리 가루를 추가하여 6단위 기본분류 수준으로 세분화

<표 4-1-79> 한국의 귀리 가공품 품목분류 개편안

HS 코드	세부 품목
1102903000	귀리가루
110319200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분쇄물 및 조분/기타 곡물의 것-귀리의 것
1104120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귀리의 것
1104220000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진주상의 것·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귀리의 것

(3) 과일

1) 사과 · 배

- HS 08류에 분류되어 있는 과일 가운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분석 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감, 자두, 키위 등 8개임.

가. 주요국 분류기준

- 캐나다는 사과와 배의 품종(예; Golden Delicious, Gala 등), 용도(가공용, 기타), 원형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과는 17 품목, 배는 3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EU는 용도와 시기를 결합하여 사과와 배를 각각 2품목씩 분류하고 있음. 수입 시기 구분은 사과의 경우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배의 경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미국은 배와 마르멜로를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입 시기별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된 것과 7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입된 것을 구분함. 사과는 1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일본은 사과 1품목, 배와 마르멜로를 합하여 1품목 등 2품목만 분류하고 있음.
- 스위스는 사과, 배와 마르멜로 등 2개로 구분한 다음 각각을 용도, 포장 방법, 수입 시기, 관세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있음. 사과는 7품목 배와 마르멜로는 16품목으로 분류.

- -

<표 4-1-80> 캐나다의 신선 사과·배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808101011	사과(엠펙라이어)/가공용(Empire,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2	사과(골든델리셔스)/가공용(Apples, Golden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3	사과(그래니 스미스)/가공용(Apples, Granny Smit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4	사과(아이다 레드)/가공용(Apples, Ida red,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5	사과(매킨토시)/가공용(Apples, Mckintos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6	사과(레드 델리셔스)/가공용(Apples, Red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7	사과(갈라)/가공용(Apples, Gala,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19	사과(갈라)/기타/가공용(Apples, Gala, fresh, nes, in their natural state, for processing)
0808101091	사과(엠펙라이어)/가공용 외(Apples, Empire,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2	사과(골든 델리셔스)/가공용 외(Apples, Golden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3	사과(그래니 스미스)/가공용 외(Apples, Granny Smit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4	사과(아이다레드)/가공용 외(Apples, Ida red,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5	사과(매킨토시)/가공용 외(Apples, Mckintosh,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6	사과(레드 델리셔스)/가공용 외(Apples, Red Delicious,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7	사과(갈라)/가공용 외(Apples, Gala, fresh,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1099	사과(갈라)/기타/가공용 외(Apples, Gala, fresh, nes, in their natural state, o/t for processing)
0808109000	사과/완전체를 제외한 기타(Apples, fresh, nes, except in their natural state)
0808201000	배/가공용(Pears, fresh, for processing)
0808202100	배/가공용 외(Pears, fresh, except for processing)
0808202900	배/기타(Pears, fresh, nes)
080820	마르멜로(Quinces, fresh)

- -

<표 4-1-81> EU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사과, 배와 마르멜로(신선)	Apples 사과	08081010	Cider apples, in bulk, from 16 September to 15 December	
		08081080	Other 기타	
	Pears and quinces 배, 마르멜로	Pears 배	08082010	Perry pears, in bulk, from 1 August to 31 December
			08082050	Other 기타
		08082090	Quinces 마르멜로	

<표 4-1-82> 미국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81000	Apples, fresh 사과(신선)
08082020	Pears and quinc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 through June 30, inclusive 배와 마르멜로(신선),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08082040	Pears and quinc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 through the following March 31, inclusive 배와 마르멜로(신선), 7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표 4-1-83> 일본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사과, 배, 마르멜로(신선)	080810000	Apples, fresh 사과(신선)	
	080820000	Pears and quinces, fresh 배와 마르멜로(신선)	

- -

<표 4-1-84> 스위스의 사과·배류(0808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8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사과, 배, 마르멜로(신선)	Apples 사과	for cider making or distilling	0808101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Q. No. 20)		
		other apples 기타 사과	in open packings	08081021		from June 15 to July 14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from July 15 to June 14 7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08081022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Q. No. 17)	
			08081029		other		
			in other packings:	08081031		from June 15 to July 14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from July 15 to June 14 7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08081032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Q. No. 17)		
	08081039		other				
	Pears and quinces 배, 마르멜로	for cider making or distilling	0808201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20)		pour la cidrerie		
					pour la distillation		
			0808201901 other		pour la cidrerie		
					pour la distillation		
		other pears and quinces	in open packings:	08082021 from April 1 to June 30		pears	
				08082021.013		coings	
				from July 1 to March 31:	08082022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17)		pears
					08082022.013	coings	
08082029 other					pears		
				08082029.013	coings		
in other packings:			08082031 from April 1 to June 30		pears		
			08082031.013		coings		
	from July 1 to March 31:		08082032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17)		pears		
			08082032.013	coings			
08082039 other		pears					
	08082039.013	coings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사과와 배는 마르멜로와 같이 0808호에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0808호를 HS 10단위로 3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과와 배는 각각 1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수입 시기 및 품종별 분류 부족

<표 4-1-85> 한국의 신선 사과·배 품목분류 현황(10단위)

HS 코드	세부 품목
0808100000	사과(신선)
0808201000	배(신선)
080820	마르멜로(신선)

다. 개편방안

- 수입 시기 및 품종별 분류를 추가. 품종은 한-미 FTA 협상 등에서 새롭게 분리한 수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입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 시기는 우리나라 성출하기와 기타로 구분

<표 4-1-86> 한국의 신선 사과·배 품목분류 개편안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080810	08081010	0808101010	사과(신선), 후지,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101090	사과(신선), 후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1020	0808102010	사과(신선), 기타,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102090	사과(신선), 기타,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20	08082010	0808201010	배(신선), 동양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201090	배(신선), 동양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201020	배(신선), 기타,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201090	배(신선), 기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2020	0808202010	마르멜로(신선),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8202090	마르멜로(신선),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 -

2) 감귤

가. 주요국 분류기준

- EU의 감귤류 분류는 오렌지와 만다린 등 기타로 구분한 다음 품종별로 다시 세분하는 방식임. 오렌지는 스위트 오렌지와 기타 2품목이 분류되어 있음. 만다린 등에는 클레멘타인, 탠저린 등 5품목이 분류되어 있음.
- 미국은 HS 0805호에서 감귤류를 오렌지와 만다린 2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스위스는 오렌지를 1품목으로 분류하고 만다린 등 기타를 1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일본도 미국이나 스위스와 유사한 분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렌지의 경우 수입 시기가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인 것과 그 밖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4-1-87> EU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510 Oranges 오렌지	08051020 sweet orange, fresh 스위트오렌지(신선)
	08051080 Other 기타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만다린, 클레멘타인, 윌킹 등 080520	08052010 Clementines
	08052030 Monreales and satsumas
	08052050 Mandarins and wilkings
	08052070 Tangerines
	08052090 Other 기타

<표 4-1-88> 미국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51000	Oranges, fresh or dried 오렌지(신선/건조)
08052000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fresh or dried 맨더린(탠저린, 사츠마일본귤 포함); 신선/건조

- -

<표 4-1-89> 스위스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51000 Oranges 오렌지	08051000.01	seville oranges, not covered, in open containers, for the manufacture of marmalade
08052000 만다린 등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표 4-1-90> 일본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510000 Oranges:	080510000.01	1 If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1st June to 30th November 6월1일에서 11월30일 사이에 수입된 것.
	080510000.02	2 If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1st December to 31st May 12월1일에서 5월31일 사이에 수입된 것.
080520000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만더린(귤과 일본귤(satsumas)을 포함);(신선/건조)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감귤류를 오렌지, 감귤, 만다린 등 3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통계 자료, 소비자의 정보 수요, 통상협상 등을 고려할 때 품종별, 수입시기별 세분화가 필요함.

<표 4-1-91> 한국의 감귤류(0805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0509209000	만더린(기타/신선/건조)

다. 개편방안

- 감귤류의 품종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수입 시기를 구분함.

- -

<표 4-1-92> 한국의 감귤류 품목분류 개편안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080510	08051000	0805100010	오렌지(신선/건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100090	오렌지(신선/건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020	08052010	0805201010	밀감(신선/건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1090	밀감(신선/건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20	0805202010	클레멘타인,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2090	밀감(신선/건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30	0805203010	탠저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3090	밀감(신선/건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40	0805204010	맨더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4090	맨더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90	0805209010	기타(신선/건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5209090	기타(신선/건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3) 포도

가. 주요국 분류기준

- 신선포도는 수입시기별로 분류한 경우가 많고(미국, 스위스, 일본) 용도를 구분한 경우도 있음(EU, 스위스).

<표 4-1-93> EU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6 Grapes, fresh or dried 포도, 신선 또는 건조	080610 fresh 신선	08061010	Table grapes
		08061090	Other 기타
	080620 dried 건조	08062010	Currants
		08062030	Sultanas
		08062090	Other 기타

- -

<표 4-1-94> 미국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61020	Grap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ebruary 15 through March 31, inclusive 포도(신선), 2월 15일 중 3월 31일의 간의 기간에 자란 것을 포함한다.
08061040	Grap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April 1 through June 30, inclusive 포도(신선), 4월 1일 중 6월 30일의 간의 기간에 자란 것을 포함한다.
08061060	Grap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July 1 through the following February 14, inclusive 포도(신선), 7월 1일 중 2월 14일의 간의 기간에 자란 것을 포함한다.

<표 4-1-95> 스위스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6 Grapes, fresh or dried 포도, 신선 또는 건조	080610 fresh 신선	Table grapes	0806101101 from July 15 to September 15 7월15일부터 9월 15일 까지
			0806101201 from September 16 to July 14 9월 16일부터 7월 14일 까지
		grapes for pressing 압축용 포도	0806102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22)
			08061029 other 기타
	08062000 dried 건조		dried 건조

<표 4-1-96> 일본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6 Grapes, fresh or dried 포도, 신선 또는 건조	080610000 fresh 신선	080610000.01 1 If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1st March to 31st October 3월1일에서 10월31일 사이에 수입된 것.
		080610000.02 2 If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1st November to the last day of February 11월1일에서 2월 마지막 날 사이에 수입된 것.
	080620000	

나. 우리나라 분류 현황 및 문제점

○ 신선포도는 품종이나 수입시기와 관계없이 1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

<표 4-1-97> 한국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6100000	포도(신선한 것)
0806200000	포도(건조한 것)

다. 개편방안

- 수입시기를 우리나라 성출하기 수입과 기타 시기로 구분

<표 4-1-98> 한국의 포도(0806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080610	08061010	0806101010	포도(신선한 것),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6101090	포도(신선한 것),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620	080620	0806200000	포도(건조한 것)

4) 복숭아, 자두

가. 주요국 분류기준

- EU는 복숭아와 벵타린을 각각 분류하고, 자두와 슬로우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미국은 복숭아와 벵타린, 자두와 슬로우 등을 구분하지는 않고 각각 1품목으로 분류하지만 수입시기별로는 구분하고 있음(모두 4품목).
- 스위스는 복숭아와 벵타린을 분리하고 자두와 슬로우도 분리하고, 자두는 다시 여러 가지 품종별로 분류하고 있음. 자두는 포장 상태와 수입시기, 용도, 관세할당 등으로 다시 구분하여 모두 23품목으로 분류됨.
- 일본은 우리나라의 분류방식과 동일하여 2품목에 불과함.

- -

<표 4-1-99> EU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plums and sloes, fresh 복숭아(넥터린 포함), 자두와 슬로우(신선)	08093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복숭아(넥터린 포함)	08093010	Nectarines 넥터린
		08093090	Other 기타
	080940 Plums and sloes	08094005	Plums 자두
		08094090	Sloes 슬로우

<표 4-1-100> 미국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8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9302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June 1 through November 30, inclusive 복숭아(넥터린 포함)(신선) 7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304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December 1 through the following May 31, inclusive 복숭아(넥터린 포함)(신선) 12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4020	Plums, prunes and slo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through May 31, inclusive 자두(신선)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4040	Plums, prunes and sloes, fresh, if entered during the period from June 1 through December 31, inclusive 자두(신선)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표 4-1-101> 스위스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plums and sloes, fresh 복숭아(넥터린 포함), 자두와 슬로우(신선)	08093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복숭아(넥터린 포함)	08093010		Peaches 복숭아	
		08093020		Nectarines 넥터린	
	080940 Plums and sloes 자두와 슬로우	in open packings	Plum s 자두	0809401201 from October 1 to June 30 for the manufacture of spirituous beverages	0809401201.911 prunes
					0809401201.912 mirabelles
					0809401201.913 reines-claudes
					pruneaux (prunes quetsches)
				080940130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18) for the manufacture of spirituous beverages
			08094014 other 기타		08094014.911 prunes
					08094014.912 mirabelles
					08094014.913 reines-claudes
	08094014.914 pruneaux (prunes quetsches)				
08094015		sloes 슬로우			

		in other packings	Plums 자두	0809409201 from October 1 to June 30 for the manufacture of spirituous beverages	0809409201.911		prunes	
					0809409201.912		mirabelles	
					0809409201.913		reines-claudes	
							pruneaux (prunes quetsches)	
				from July 1 to September 30:	0809409301 within the limits of the tariff quota (Q. No. 18) for the manufacture of spirituous beverages	0809409301.911		prunes
						0809409301.912		mirabelles
						0809409301.913		reines-claudes
								pruneaux (prunes quetsches)
					08094094 other 기타	08094094.911		prunes
						08094094.912		mirabelles
						08094094.913		reines-claudes
						08094094.914		pruneaux (prunes quetsches)
				08094095				sloes 슬로우

<표 4-1-102> 일본의 복숭아류(080930,080940호) 품목 분류 현황(9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930000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복숭아(넥타린 포함)
080940000	Plums and sloes 자두와 슬로우

나. 우리나라 분류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복숭아와 자두가 각각 1품목씩 분류되어 있음. 복숭아와 자두 모두 품종 분리 및 수입시기 분리 미흡

<표 4-1-103> 한국의 복숭아류(0809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HS 코드	세부 품목
0809300000	복숭아(넥타린포함)(신선)
0809401000	자두(신선)

- -

다. 개편방안

- 복숭아와 자두를 품종별로 분류하고 수입 시기를 우리나라 성출하기와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

<표 4-1-104> 한국의 복숭아류(0809호) 품목 분류 현황(10단위 기준)

6단위	8단위	10단위	세부 품목
080930	08093010	0809301010	복숭아(신선),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301090	복숭아(신선),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3020	0809302010	넥타린(신선),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302090	넥타린(신선),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40	08094010	0809401010	자두(신선),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401090	자두(신선),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4020	0809402010	슬로우(신선),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0809402090	슬로우(신선),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

- -

V. 주요농산물 및 관련품목의 관세체계 및 품목분류 정비방안

제2주제 : 채소·특작분야

(대외경제연구원 서진교)

- -

1. 연구범위

(1) 품목 분류 현황 및 구조

1) 채소 및 특작류의 HS 구성

□ 농산물 가운데 채소 및 특작과 관련된 류 및 호, 소호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식물성 생산품으로 6~14류가 있음.
- 그러나 제6류(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와 제8류(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9류(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제10류(곡물),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3류(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제14류(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 주로 7류(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와 9류의 일부(0902, 0904), 12류(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일부가 연구의 핵심
- 아울러 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식물성 유지)는 제12류와 연계하여 땅콩과 참깨를 대상으로 함(1507, 1515)
- 조제식료품과 음류, 알콜, 식초, 담배를 다루는 16~24류 가운데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의 조제품) 가운데, 채소부분(2001~2005)은 포함

가. 제7류(채소)

- 7류 해당 품목은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로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을 포함함.
- 또한 신선 또는 건조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인지 여부를 불문
- 다만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쿰속 또는 피멘타속의 것)는 제9류(0904)에서 다루고, 기타 제7류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서 다룸.

- -

나. 제9류(고추)

□ 제9류중에서 0902(차), 0904(고추)를 다름

다. 제12류(유지작물)

□ 제12류중 유지작물인(1202: 땅콩), 1207(기타 종자와 과실)이 대상

라. 제15류(식물성 유지)

□ 땅콩유와 그 분획물(1507),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1515)

마. 제20류중(조제 채소)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저장 처리한 채소, 과실 및 견과류(2001)와 식초 또는 초산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조제 채소(2002~2005)

<표 4-2-1> 채소 및 특작의 HS 세 번(4단위)

류	호	품 명	
07류 (채소)	신선·냉장	0701	감자
		0702	토마토
		0703	양파·쪽파·마늘·부추·기타 파속 채소
		0704	양배추·꽃양배추 등 기타 식용의 배추
		0705	상치, 치커리
		0706	당근·순무·무 등 기타 유사한 식용 뿌리
		0707	오이류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
		0709	기타의 채소(가지, 미나리, 버섯·시금치류 등)
	냉동	0710	냉동채소(조리 않은 것·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일시 저장	0711	일시 저장 처리한 채소
		건조	0712
			0713
	기타 채소	0714	고구마·매니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등
09류	향신료	0902	차류
		0904	후추 및 고추류
12류	채유용 종실	1202	땅콩
		1207	기타의 종자와 과실(참깨)
		1208	채유용 종실의 분과 조분
15류	식물성 유지	1508	땅콩유와 그 분획물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참기름)
20류	식초·초산 조제 저장	2001	채소, 과실 및 견과류
		2002	토마토
	식초·초산 이외 처리	2003	버섯과 송로
		2004	기타 채소 (냉동)
		2005	기타 채소 (비냉동)

2) 채소 및 특작류의 세분화 정도

가. 제07류(채소)

- 채소는 07류로 HS 10단위 기준으로 133개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단위로는 14개, 6단위로는 58개, 8단위로는 108개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음.
 - 0701~09호까지는 신선, 냉장 채소이며, 0710호는 냉동채소, 0711호는 초산이외의 기제로 용액으로 일시저장한 채소, 0712호는 건조채소, 0713호는 건조 채두류, 0714호는 고구마 등 전분 포함 기타 채소임.
- 0701호는 감자류로 6단위 기준에서 종자용과 비종자용 2개로 나눈후 10단위까지 세분 정도는 동일
- 0702호는 토마토로 신선, 냉장 토마토 모두가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에서 1개의 세번으로 되어 있음.
- 0703호는 파속의 채소로 양파, 마늘, 기타 파속의 채소 등을 의미하며, 6단위에서 3개, 8, 10단위에서는 6개 세 번으로 구분
 - 10단위에서 양파, 쪽파, 마늘, 깎마늘, 리크, 기타 파로 세분되어 있음.
- 0704호는 배추로 꽃양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일반 양배추 등 6단위에서 3개, 8, 10단위에서는 5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일반 양배추가 양배추, 배추, 기타 배추 등으로 세분
- 0705호는 상치 및 치커리류로 6, 8, 10단위 모두 4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10단위에서 상치(결구), 기타 상치, 치커리, 기타 치커리 등 4개 세번
- 0706호는 무 종류로 6단위에서 2개의 세 번(당근, 무), 8, 10단위에서는 모두 5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당근이 당근과 순무로 세분되고, 무가 일반 무, 겨자무, 더덕, 도라지, 기타 무로 세분됨
- 0707호는 오이류로 6, 10, 10단위 모두 1개의 세 번임.

- -

- 0708호는 채두류로 6, 8, 10단위 모두 3개 세번(완두콩, 기타 콩, 기타 채두류)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09호는 기타 채소로 6단위에서 6개 세번(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고추류, 시금치, 고사리 등), 8, 10단위 모두 19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10단위에서 버섯이 9개로 세분되고, 고추가 단고추와 기타고추류 세분, 그리고 고사리가 일반 고사리와 고비, 호박, 기타 채소 등 4개로 세분
- 0710호는 냉동 채소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8개, 8, 10단위에서 15개로 세분화되어 있음.
- 0711호는 일시 저장 채소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5개, 8단위에서 10개, 10단위에서 13개로 세분화되어 있음.
- 0712호는 건조채소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9개, 8단위에서 10개, 10단위에서 28개 세번으로 07류 채소중 가장 세분화되어 있음.
- 0713호는 건조채두류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9개, 8, 10단위에서 14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14호는 고구마류로 6단위에서는 3개 세 번(매니옥, 고구마, 칩뿌리), 8단위에서는 11개, 10단위에서는 15개 세번으로 분류되고 있음.

<표 4-2-2>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호	품명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
0701	감자	1	2	2	2
0702	토마토	1	1	1	1
0703	양파·마늘 등	1	3	6	6
0704	(양)배추 등	1	3	5	5
0705	상치, 치커리	1	4	4	4
0706	당근·무 등	1	2	7	7
0707	오이류	1	1	1	1
0708	채두류	1	3	3	3
0709	기타채소(고추, 버섯 등)	1	8	19	19
0710	냉동채소	1	8	15	15
0711	일시 저장처리 채소	1	5	10	13
0712	건조 채소	1	6	10	28
0713	건조 채두류	1	9	14	14
0714	매니옥, 고구마 등	1	3	11	15
07 류	소계	14	58	108	133

자료: 관세율표(2009)

- -

나. 제0902호(녹차, 후추, 건고추)

- 0902호는 녹차로 6, 8, 10단위 모두 4개(3kg이하 비발효 녹차, 기타 비발효 녹차, 3kg이하 발효 홍차, 기타 홍차 등)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음.
- 0904호는 후추, 고추로 6단위에서 3개 세번(후추 알갱이, 후추가루, 고추)으로 되어 있으며, 8, 10단위에서는 4개 세번(고추가 건고추와 건고추가루로 세분)으로 분류되어 있음.

<표 4-2-3>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0902	차류	4	4	4
0904	후추 및 고추류	3	4	4

자료: 관세율표(2009)

다. 제1202, 1207, 1508, 1517호(땅콩(유), 참깨(참기름))

- 1202호는 땅콩으로 6, 8, 10단위 모두 2개 세번(탈각, 비탈각)으로 이루어져 있음.
- 1207호는 유지작물로 종류별로 6단위에서는 5개 세번(면실, 참깨, 겨자씨, 양귀비씨, 기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8, 10단위에서는 모두 10개 세번(기타가 종류별로 6개로 세분화)으로 분류되어 있음.
- 1508호는 땅콩기름으로 6, 8, 10단위 모두 3개 세번(조유, 정제유, 기타)으로 분류되어 있음.
- 1515호는 기타 식물성기름으로 종류 및 순도에 따라 6단위에서 7개, 8단위에서 8개, 10단위에서 12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표 4-2-4>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1202	땅콩	2	2	2
1207	기타의 종자와 과실(참깨)	5	10	10
1508	땅콩유와 그 분획물	1	3	3
1515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유지 (참기름)	7	8	12

자료: 관세율표(2009)

- -

라. 제2001~05호(조제 채소류)

- 2001호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채소나 과실로 6, 8단위에서는 2개 세 번(오이와 기타 채소 및 과일)으로, 10단위에서는 10개의 세 번(기타 채소 및 과일이 토마토, 쪽파, 꽃양배추, 마늘, 양파, 과일, 기타 등 9개로 세분화)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2~2005호는 식초나 초산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채소로 2002호는 토마토, 2003호는 버섯과 송로, 2004호는 기타 채소(냉동)이며, 2005호는 기타 채소(비냉동)임.
 - 2002호는 토마토로 6단위에서 2개 세 번, 8, 10단위에서 3개 세 번(토마토페이스트, 조제 토마토, 기타 토마토 조제)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3호는 버섯류로 6단위에서 3개, 8, 10단위에서 6개 세 번(양송이, 송로, 표고, 송이,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기타 버섯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4호는 조제냉동채소로 6단위에서 2개 세 번, 8, 10단위에서는 3개 세 번(냉동감자, 냉동 스위트콘, 기타 냉동채소)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5호는 조제 비냉동 채소로 6단위에서는 10개 세 번, 8, 10단위에서 18개 세 번(유야용퓨레, 채소통조림, 감자크로켓, 기타 감자조제, 완두, 녹두(탈각, 비탈각), 팥(탈각, 비탈각), 콩(탈각, 비탈각),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스위트콘, 죽순, 김치, 기타 채소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표 4-2-5>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 번 세분화 정도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2001	채소 (조제)	2	2	10
2002	토마토 (조제)	2	3	3
2003	버섯과 송로 (조제)	3	6	6
2004	기타 채소 (조제, 냉동)	2	3	3
2005	기타 채소 (조제, 비냉동)	10	18	18

자료: 관세율표(2009)

- -

(2) 채소 · 특작류의 관세율 구조

1) 채소 · 특작류의 관세율 수준

- 감자(304%), 양파(135%), 마늘(360%), 고추(270%), 고사리(90%), 스위트콘(370%), 녹두(607%), 팔(420%), 고구마(385%), 녹차(513%), 땅콩(230%), 참깨(630%)를 제외하면 나머지 채소 및 특작류 관세율은 27~54% 수준
- 채소류 대부분의 관세율 수준은 27~54%
 - 주요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와 고구마, 감자, 녹두, 특작류(녹차, 땅콩, 참깨)가 초고율 관세

<표 4-2-6> 채소 및 특작류 양허 관세율 수준

세번	품명	양허 관세율	
0701	감자	304	
0702	토마토	45	
0703	10	양파	135
		쪽파	27
	20	마늘	360
		90	기타 파
0704	배추	27	
0705	1	상치	45
	2	치커리	19.7
0706		당근	40.5
		무	45
		기타	27
0707	오이	27	
0708	완두, 콩	27	
0709	20-40	가지, 셀러리	27
		표고	90
	5	영지	54
		기타 버섯	40.5
		송로	27
	60	고추	270
	90	고사리	90
		기타	27
0710	냉동 채소	27 (스위트콘 54, 고사리 90)	
0711	일시저장 채소	27~45 (마늘 360, 고추 270)	
0712	건조 채소	27, 40.5, 54 (양파 135, 마늘 360, 고사리 90, 스위트콘 370)	
0713	채두류	27 (녹두 607.5, 팔 420.8)	
0714	매니옥, 고구마	18, 45 (매니옥 887, 고구마 385)	

- -

세번	품명	양허 관세율
0902	녹차	513.6
0904	고추	270
1202	땅콩	230.5
1207	면실	5, 6.6, 36 (참깨 630, 들깨 54)
1508	땅콩유	27
1515	참기름 등	10~22.5 (참기름 630)
2001	초산조제 채소	30~54
2002	토마토	31.5~45
2003	버섯	30. 47.2
2004	조제 감자(냉동)	18~54
2005	조제 채소(비냉동)	15~54

2) 역관세 및 관세부조화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구조는 일반적으로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낮은 역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음¹⁰⁾.
- 채소 및 특작류도 이러한 역관세 현상의 예외가 아님.
 - 감자의 경우 원료품으로 볼 수 있는 신선·냉장 감자의 양허관세는 304%이지만 1차 가공품으로 볼 수 있는 냉동 감자나 일시 저장 처리한 감자, 건조 감자는 모두 양허관세가 27% 수준
 - 고구마도 이와 유사.

<표 4-2-7> 감자의 역관세 구조

	세번	품명	양허관세
1	0701.10.0000	신선, 냉장 감자(종자용)	304
2	0701.90.0000	신선, 냉장 감자(기타)	304
3	0710.10.0000	냉동 감자	27
4	0711.90.5099	기타 채소(일시 저장 처리)	27
5	0712.90.2093	감자 (건조)	27
6	2004.10.0000	감자 (조제저장처리/냉동)	18
7	2005.20.1000	감자 (플레이크로만든감자크로켓/조제저장처리)	54
8	2005.20.9000	감자 (기타/조제저장처리)	31.5

1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증대와 생산자보호측면에서 주요 원료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전제로 가공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비교적 낮게 유지해 왔음. 그러나 UR이후 비관세장벽이 관세화되고 그에 따라 주요 원료 농산물이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설정되었음. 이로 인해 가공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가 가공단계가 낮은 품목에 비해 매우 낮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음.

<표 4-2-8> 고구마의 역관세 구조

	세번	품명	양허관세
1	0714.20.1000	고구마(신선)	385
2	0714.20.2000	고구마(건조)	385
3	0714.20.3000	고구마(냉장)	385
4	0714.20.4000	고구마(냉동)	45
5	0714.20.9000	고구마(기타)	385
6	2001.90.9090	식용식물기타(조제저장처리)	36
7	2005.99.9000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22.9

□ 높은 관세율과 철저한 수입관리로 집중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번이 있으나, 이의 유사 세번이나 대체 또는 단순가공품목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초 높은 관세를 이용한 보호효과가 상실되는 관세부조화 문제는 이미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임.

-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땅콩에서 현저

<표 4-2-9> 관세 부조화의 예: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참깨

	세번	품명	양허관세
고추	0709.60.1000	고추류(단고추/벨타입/신선/냉장)	270
	0709.60.9000	고추류(기타/신선/냉장)(캐프시컴속)	270
	0710.80.7000	고추류(냉동)(캐프시컴속)	27
	0711.90.5091	고추의 것(일시저장처리)	270
마늘	0703.20.1000	마늘(신선/냉장/탈피)	360
	0703.20.9000	마늘(신선/냉장/기타)	360
	0710.80.2000	마늘(냉동)	27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처리)	360
	0712.90.1000	마늘(건조)	360
	2001.90.9060	마늘(초산조제저장처리)	36
양파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135
	0710.80.1000	양파(냉동)	27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27
	0712.20.0000	양파(건조)	135
	2001.90.9070	양파(초산조제저장처리)	54
땅콩	1202.10.0000	땅콩(미탈각)	230.5
	1202.20.0000	땅콩(탈각)	230.5
	1508.10.0000	땅콩유(조유)	27
	1508.90.1000	땅콩유(정제유)	27
	1508.90.9000	땅콩유(기타)	27

- -

2. 채소 · 특작류 분야 주요내용

(1) 주요국 세분화 구조와 정책 시사점

1) 미국

가. 제07류(채소)

- 채소류(07류)는 HS 8단위 기준으로 167개 세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위로는 58개 세번임.
 - 단 통계용으로 10단위까지 분류해 운용하고 있으나 적용세율은 8단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10단위까지 세분할 경우 07류는 총 233 세번
- 0701~09호까지는 신선, 냉장 채소이며, 0710호는 냉동채소, 0711호는 초산 이외의 기제로 용액으로 일시저장한 채소이며, 0712호는 건조채소, 0713호는 건조 채두류, 0714호가 고구마 등 전분 포함 기타 채소임.
- 0701호는 감자류로 6단위 기준에서 종자용과 비종자용 2개로 세분한 뒤, 8단위에서는 비종자용을 노란감자(yellow potatoes)와 그 이외 감자로 구분하여 총 3개로 세분함.
 - 이후 관세는 동일하지만 통계상 다시 10단위로 세분하여 10단위로 종자용의 경우 포장용기에 담아 순중량이 45kg 이하와 이상을 구분하고 있고, 기타 감자의 경우 포장용기에 담아 순중량이 1,200kg 이하와 이상을 구분한 후 이를 다시 감자의 품종에 따라 각각 3개로 세분하고 있음.
- 0702호는 신선 또는 냉장토마토로 6단위에서 1개 세번이지만 8단위에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시기에 따라 다시 3개 세번으로 세분화
 - 3월 1일~7월 14일 또는 9월 1일~11월 14일, 7월 15일~8월 31일, 11월 15일~2월 말 등 3기간으로 구분하여 취급
 - 이후 관세는 동일하지만 통계상 10단위로 세분하여 노지와 하우스 토마토로 구분하고, 노지의 경우 다시 4개의 타입으로 구분하여 10단위 기준으로 보면 총 15개로 세분

- -

- 0703호는 양파, 마늘과 기타 파속의 채소로 6단위에서 3개(양파, 마늘, 파 및 기타), 8단위에서 5개 세번으로 분류
 - 0703 10은 양파와 쪽파로 이는 다시 양파세트(onion sets), 기타 양파(직경에 따라 2개로 세분¹¹⁾)로 구분되며, 0703 20은 마늘, 0703 90은 파와 기타 파속의 채소로 분류되어 있음.
 - 이후 마늘에 대해서는 관세는 동일하지만 통계상 10단위로 세분하여 통마늘과 깎마늘, 기타 마늘로 구분하고 있음.
- 0704호는 배추로 꽃양배추, 브로콜리, 일반 양배추 등 6단위에서 3개로, 8단위에서는 6개(꽃양배추, 브로콜리(수입시기¹²⁾ 및 크기에 따라 3개로 분류), 양배추, 일반 배추(2개로 분류))로 분류되어 있음.
- 0705호는 상추류로 6단위에서는 4개의 세번(결구상추, 상추, 위트루우프치커리, 기타 치커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8단위에서는 수입시기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6개로 분류하고 있음.
- 0706호는 무 종류로 6단위에서 2개의 세번, 8단위에서는 7개의 세번(당근이 당근과 순무로 세분되어 있으며, 후자의 당근은 다시 크기에 따라 세분, 무, 양고추냉이, 기타 등으로 세분)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07호는 오이류로 6단위에서는 1개 세번이나 8단위에서는 수입시기에 따라 4개의 세번으로 세분됨.
- 0708호는 채두류로 6단위에서는 3개 세번(완두콩, 기타 콩, 기타 채두류)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8단위에서는 수입시기(완두콩과 기타 콩), 품종 등에 따라 10개의 세번으로 구분되어 있음.
- 0709호는 기타 신선·냉장채소로 6단위로는 8개 세번(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고추류, 시금치류, 기타(호박, 오크라, 스위트콘, 올리브 등))이며, 8단위에서는 수입시기, 크기, 품종에 따라 22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10호는 냉동 채소(조리되지 않았거나 또는 삶거나 스팀으로 조리된 것)로 6단위에서 8개, 8단위에서는 수입시기 및 크기, 품종에 따라 29개로 세분되어 있음.

11) 직경 16mm가 기준임.

12) 6월 5일~10월 15일과 그 외 기간으로 구분

- -

- 특히 앞서 언급된 채소(0701~0709)가 0710류의 것일 경우 연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세분류를 하고 있음(예를 들어 토마토가 수입시기별로 세분되어 있다면 냉동 토마토도 동일한 수입시기별로 세번을 분류)
- 0711호는 일시 저장 채소로(이 상태로는 식용이 불가능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5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8단위에서 중량에 따라 12개로 세분되어 있음.
- 0712호는 건조채소(전체가 건조된 것, 잘라진 것, 분쇄된 것에 한함, 더 이상 조제된 것은 제외)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6개(양파, 버섯, 8단위에서는 수입시기, 품종, 용도에 따라 20개 세번으로 세분화
- 0713호는 건조 채두류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9개, 8단위에서는 품종, 수입시기에 따라 25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14호는 매니옥 및 고구마류로 6단위에서는 3개 세번(매니옥, 고구마, 기타)으로, 8단위에서는 냉동여부, 품종, 중국산 마름의 포함 여부, 펠릿 형태 여부 등에 따라 15개 세번으로 분류되고 있음.

<표 4-2-10>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¹⁾
0701	감자	2	3	9
0702	토마토	1	3	15
0703	양파, 마늘 등	3	5	7
0704	(양)배추 등	3	6	7
0705	상치, 치커리	4	6	6
0706	당근·무 등	2	7	7
0707	오이류	1	4	6
0708	채두류	3	10	12
0709	기타 채소(버섯 등)	8	22	28
0710	냉동채소	8	29	36
0711	일시저장처리 채소	5	12	12
0712	건조 채소	6	20	26
0713	건조 채두류	9	25	47
0714	고구마 등	3	15	15
07류	소계	58	167	233

주1) 10단위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세분한 것임. 수입관세는 8단위의 관세가 적용됨
 자료: USITC, 미국 관세율표(2009)

- -

나. 제0902호(차류), 0904류(후추 및 고추류)

- 0902호는 녹차·홍차로 6단위에서는 4개(3kg이하 녹차, 3kg이상 녹차, 3kg이하 발효 홍차, 기타 홍차 등)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단위에서는 향 포함 여부, 포장용기의 형태에 따라 6개의 세번으로 구분
 - 0902 10은 비발효 녹차로 8단위에서 가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0902 20은 기타 비발효 녹차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8단위에서 가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음.
- 0904호는 후추, 고추류로 6단위에서 3개 세번(파쇄·분쇄되지 않은 후추, 파쇄·분쇄된 후추, 고추류)으로 되어 있으며, 8단위에서는 8개 세번으로 고추류가 파쇄여부, 품종여부에 따라 다시 6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904 11은 후추로 8단위에서 파쇄여부에 따라 세분되어 있으며, 0904 20은 고추로 품종에 따라 파프리카와 안하임고추, 기타고추 등 3개로 나눈 뒤 기타를 다시 파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0904 2060)으로 세분하고, 파쇄한 것은 다시 염분이 섞여 있는 유무에 따라 세분

<표 4-2-11>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¹⁾
0902	차류	4	6	7
0904	후추 및 고추류	3	8	11

주1) 10단위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세분한 것임. 수입관세는 8단위의 관세가 적용됨
 자료: USITC, 미국 관세율표(2009)

다. 제1202, 1207, 1508, 1517호(땅콩(유), 참깨(참기름))

- 1202호는 땅콩으로 6단위에서는 2개 세번(탈각, 비탈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단위에서는 6개로 세분됨.
 - 1202 10은 비탈각으로 미국의 TRQ에 따라 3개 세번으로 세분
 - 1202 20은 탈각으로 미국의 TRQ에 따라 3개 세번으로 세분
- 1207호는 유지작물로 6단위, 8단위 모두 품종별로 5개 세번(면실, 참깨, 겨자씨, 양귀비씨, 기타)으로 분류되어 있음.

- -

- 1207 20은 면실, 1207 40은 참깨, 1207 50은 겨자씨로 모두 8단위에서 1개의 세번임.
- 1207 9은 기타로 품종에 따라 2개로 구분(피마자, 기타)

□ 1508호는 땅콩유로 6, 8단위 모두 2개 세번(조유, 기타)으로 분류되어 있음.

□ 1515호는 기타 식물성기름으로 종류 및 순도에 따라 6단위에서 7개 세번, 8단위에서 9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1515 11은 아미유, 1515 21은 옥수수유는 8단위에서 조유와 기타유로 세분되어 있는 반면 1515 30 참기름과 1515 50 피마자유는 8단위까지 1개의 세 번임.

- 1515 90은 기타유로 8단위에서 품종별로 3개 세번으로 세분

<표 4-2-12>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¹⁾
1202	땅콩	2	6	12
1207	기타의 종자와 과실(참깨)	5	5	8
1508	땅콩유와 그 분획물	2	2	2
1515	참기름	7	9	11

주1) 10단위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세분한 것임. 수입관세는 8단위의 관세가 적용됨
 자료: USITC, 미국 관세율표(2009)

라. 제2001~05호(조제 채소류)

□ 2001호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채소나 과실로 6단위에서 2개 세번(오이와 기타 채소 및 과일)으로, 8단위에서는 채소의 품종과 중량 등에 14개의 세번(기타 채소 및 과일이 케이퍼, 아티초크, 콩, 피망, 밤, 망고, 호두 등 13개로 세분화)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2~2005호는 식초나 초산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채소로 2002호는 토마토, 2003호는 버섯과 송로, 2004호는 기타 채소(냉동)이며, 2005호는 기타 채소(비냉동)임.

- -

- 2002호는 토마토로 6단위에서 2개 세번(토마토, 기타 채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8단위에서 기타 채소가 가루형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나누어져 총 3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3호는 버섯류로 6, 8단위 모두 3개 세번(버섯, 송로, 기타 버섯)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4호는 조제·냉동채소로 6단위에서 2개 세번(감자와 감자이외)으로, 8단위에서는 감자를 다시 노란감자와 기타감자 2개로 세분하고, 6단위에서 감자이외를 품종별로 3개로 구분하여 총 5개 세번(노란냉동감자, 기타 냉동감자, 전채, 콩, 혼합채소)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5호는 조제 비냉동 채소로 6단위에서는 10개, 8단위에서는 품종, 중량 등에 따라 35개 세번(조제감자, 완두콩, 콩(탈각, 비탈각),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스위트콘, 죽순, 양파, 소금절인 양배추, 피망, 이집트콩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 특히 올리브를 8단위에서 염장여부, 용기중량, 색깔(녹색) 등에 15개로 세분

<표 4-2-13>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미국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¹⁾
2001	채소(조제)	2	14	14
2002	토마토(조제)	2	3	8
2003	버섯과 송로(조제)	3	3	9
2004	기타 채소(조제, 냉동)	2	5	9
2005	기타 채소(조제, 비냉동)	10	35	54

주1) 10단위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세분한 것임. 수입관세는 8단위의 관세가 적용됨
 자료: USITC, 미국 관세율표(2009)

2) EU

가. 제07류(채소)

- 채소류 07류는 8단위 기준으로 105개 세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위로는 58개의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음.

- -

- 0701~09호까지는 신선, 냉장 채소이며, 0710호는 냉동채소, 0711호는 초산이외의 기제로 용액으로 일시저장한 채소이며, 0712호는 건조채소, 0713호는 건조 채두류, 0714호가 고구마 등 전분 포함 기타 채소임.
- 0701호는 감자류로 6단위 기준에서 종자용과 비종자용 2개로 세분한 뒤, 8단위에서는 전분용과 비전분용으로 구분하여 총 3개로 세분함.
- 0702호는 신선 또는 냉장 토마토로 6, 8단위에서 모두 1개의 세번으로 분류
- 0703호는 양파, 마늘과 기타 파속의 채소로 6단위에서 3개(양파와 쪽파, 마늘, 기타 파), 8단위에서 5개 세 번으로 분류
 - 0703 10은 양파와 쪽파로 양파는 다시 형태에 따라 sets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됨
- 0704호는 6단위에서 꽃양배추와 절구된 브로콜리, 방울다다기양배추, 기타 양배추 등 3개 세번으로, 8단위에서는 4개 세번으로 분류
 - 0704 90인 일반양배추가 흰색·붉은색 양배추와 기타양배추 등 색으로 세분
- 0705호는 상추 및 치커리류로 6, 8단위 모두 4개의 세번(결구상추, 상추, 윗트루우프치커리, 기타 치커리)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06호는 무종류로 6단위에서 2개의 세번(당근, 기타), 8단위에서는 4개의 세번(당근·순무, 샐러리악, 겨자무, 기타 등으로 세분)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07호는 오이류로 6단위는 1개의 세번이나 8단위에서는 품종에 따라 일반오이와 절임용 작은 오이(Gherkin)의 2개의 세번으로 구분
- 0708호는 채두류로 6, 8단위 모두 3개 세번(완두콩, 콩, 기타 채두류)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09호는 기타 채소로 6단위에서 8개 세번(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송로, 단고추, 시금치류, 샐러드채소 등), 8단위는 채소 품목별로 23개 세번으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음.
 - 0709 20은 아스파라거스, 0709 30은 가지, 0709 40은 샐러리이며 8단위까지 1개 세 번

- -

- 0709 5는 버섯과 송로로 이는 버섯과 기타로 구분되며, 기타는 다시 종류에 따라 4개로 세분
 - 0709 60은 피망 또는 고추류로 단고추 등 4개로 세분되며
 - 0709 70은 시금치로 8단위까지 1개 세번이며, 0709 90은 기타로 종류에 따라 10개 세번으로 세분화
- 0710호는 냉동 채소로 6단위에서 8개 세번(감자, 완두콩, 일반콩, 기타 콩, 시금치, 스위트콘, 기타 채소)으로, 8단위에서 기타 채소를 품목별로 다시 세분해 총 16개 세번으로 분류하고 있음.
- 0710 10은 감자, 071021은 완두, 0710 22는 콩, 0710 29는 기타 콩, 0710 30은 시금치, 0710 40은 스위트콘 등으로 8단위까지 1개 세번으로 되어 있음.
 - 0810 80은 기타 채소류로 올리브와 단고추, 토마토, 아스파거스 등 8단위에서 9개로 세분되어 있음.
- 0711호는 일시저장채소로 채소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5개(올리브, 오이, 버섯류, 기타버섯, 기타채소)로 분류되어 있으며, 8단위에서는 용도(올리브의 경우), 품목별(기타채소)로 11개로 세분화되어 있음.
- 0711 20은 올리브로 착유용 여부에 따라 8단위에서 2개로 세분되어 있으며, 0711 40은 오이류로 8단위까지 1개 세번임.
 - 0711 5는 버섯류로 버섯과 기타로 나누어 8단위까지 2개 세번임.
 - 0711 90은 기타채소류로 고추, 스위트콘, 양파, 케이퍼, 기타, 혼합채소 등 8단위에서 6개 세번으로 구분되어 있음.
- 0712호는 건조채소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6개(양파,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목이버섯, 젤리균류, 기타버섯, 기타 채소), 8단위에서는 11개 세번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0712 90 기타 채소를 8단위에서 감자(종자용, 기타), 토마토, 당근, 기타 등 6개 세번으로 세분류
- 0713호는 건조 채두류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9개, 8단위에서 11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

- 0713 10은 완두로 종자용과 비종자용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으며, 0713 20은 이집트콩으로 8단위까지 1개 세번임.
 - 0713 3은 기타 콩으로 팔을 세분하고 있으며, 강낭콩의 경우 종자용과 비종자용으로 세분하고 있음
 - 0713 4는 렌즈콩, 0713 5는 잠두로 8단위까지 1개 세번임.
- 0714는 매니옥과 고구마로 6단위에서 3개 세번, 8단위에서는 7개 세번으로 분류되고 있음.
- 0714 10은 매니옥으로 식용(순증량 28kg 이하)과 비식용으로 구분되며, 0714 20은 고구마로 역시 식용과 비식용으로 세분
 - 0714 90은 기타로 역시 식용과 비식용으로 세분

<표 4-2-14>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호	품명	6단위	8단위
0701	감자	2	3
0702	토마토	1	1
0703	양파, 마늘 등	3	5
0704	(양)배추 등	3	4
0705	상치, 치커리	4	4
0706	당근·무 등	2	4
0707	오이류	1	2
0708	채두류	3	3
0709	기타 채소(버섯 등)	8	23
0710	냉동채소	8	16
0711	일시저장처리 채소	5	11
0712	건조 채소	6	11
0713	건조 채두류	9	11
0714	매니옥, 고구마 등	3	7
07류	소계	58	105

자료: EU 관세율표(2008)

- -

나. 제0902호(차류), 0904류(후추 및 고추류)

- 0902호는 녹차·홍차로 6, 8단위 모두 4개(3kg이하 발효하지 않은 녹차, 기타 발효하지 않은 녹차, 3kg이하 발효 홍차, 기타 홍차)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음.
- 0904호는 후추, 고추류로 6단위에서 3개 세번(파쇄·분쇄하지 않은 후추, 파쇄·분쇄한 후추, 고추류)으로 되어 있으며, 8단위에서는 5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904 20은 고추류로 8단위에서 단고추와 기타 고추, 파쇄한 것 등 3개의 세번으로 분류

<표 4-2-15>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호	품명	6단위	8단위
0902	차류	4	4
0904	후추 및 고추류	3	5

자료: EU 관세율표(2008)

다. 제1202, 1207, 1508, 1517호(땅콩(유), 참깨(참기름))

- 1202호는 땅콩으로 6단위에서는 2개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단위에서는 3개로 세분됨.
 - 1202 10은 비탈각으로 이는 다시 종자용과 비종자용으로 세분
 - 1202 20은 탈각으로 8단위까지 1개 세번
- 1207호는 유지작물로 종류별로 6단위 5개, 8단위 11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1207 20은 면실로 종자용과 비종자용으로 세분
 - 1207 40은 참깨로 종자용과 비종자용으로 세분]
- 1508호는 땅콩기름으로 6단위 2개(조유와 기타), 8단위 4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1508 10은 조유로 산업용과 비산업용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1508 90은 조유이외로서 이 역시 산업용과 비산업용으로 세분되어 있음.

- -

□ 1515호는 기타 식물성기름으로 종류 및 순도에 따라 6단위에서 7개, 8단위에서 24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1515 1은 아마인유, 1515 2는 옥수수유, 1515 3은 피마지유, 1515 5는 참기름으로 8단위에서 모두 산업용(비식용)과 비산업용으로 용도에 따라 세분
- 1515 90은 기타로서 용도와 중량별로 11개 세번으로 분류

<표 4-2-16>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호	품명	6단위	8단위
1202	땅콩	2	3
1207	기타의 종자와 과실(참깨)	5	11
1508	땅콩류와 그 분획물	2	4
1515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참기름)	7	24

자료: EU 관세율표(2008)

라. 제2001~05호(조제 채소류)

□ 2001호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채소나 과실로 6단위에서 2개 세번(오이와 기타채소, 과일)으로, 8단위에서는 11개 세번(기타채소 및 과일이 다시 망고, 스위트콘, 마, 버섯, 팜하트, 올리브, 단고추, 열대과일 및 열대견과류 등 10개로 세분)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1 10은 오이류로 8단위까지 1개로 세분
- 2001 90은 기타로 품종에 따라 10개(망고, 피망 및 단고추 이외 고추류, 스위트콘, 양 또는 고구마, 버섯, 팜하트, 올리브, 단고추, 열대과일이나 너트, 기타)로 세분

□ 2002~05호는 식초나 초산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조제채소로 2002호는 토마토, 2003호는 버섯과 송로, 2004호는 기타 채소(냉동)이며, 2005호는 기타 채소(비냉동)임.

- 2002호는 토마토로 6단위에서 2개 세번, 8단위에서 포장무게에 따라 8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2 10은 토마토 전체나 조각을 의미하며 껍질을 벗긴 여부에 따라 2개로 세분

- -

- 2002 90은 기타로 설탕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품종 및 중량 여부에 따라 다시 6개 세번으로 구분
- 2003호는 버섯과 송로로 6단위 3개(버섯, 송로, 기타), 8단위 4개(버섯, 송로, 기타 등)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4호는 조제·냉동 채소로 6단위에서 2개 세번(감자와 기타), 8단위에서 8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4 10은 감자로 조리된 것과 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세분되어 있고, 비조리는 다시 으깬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세분
 - 2004 90은 기타 채소나 혼합채소로 품종에 따라 5개(스위트콘, 염장 양배추, 콩, 양파, 기타 등)로 세분
- 2005호는 조제 비냉동 채소로 6단위에서는 10개(균질화한 채소, 분·조분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감자, 완두콩, 탈각된 콩, 기타,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스위트콘, 죽순, 케프시컴속의 열매), 8단위에서는 18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5 10은 균질화된 채소로 1개의 세번
 - 2005 20은 감자로
 - 2005 20은 감자로 으깬 것과 그렇지 않은 것(진공포장, 즉시 소비가 가능한 것, 기타 등으로 다시 세분)으로 구분하여 8단위에서 3개로 구분
 - 2005 40은 완두로 9단위에서 1개 세번
 - 2005 5은 콩으로 탈각은 51, 미탈각은 59 등 2개로 세분
 - 2005 60은 아스파라거스, 2005 70은 올리브, 2005 80은 스위트콘으로 8단위에서 각각 1개 세번
 - 2005 9은 기타 채소 및 혼합채소로 죽순과 기타로 구분되며, 기타는 다시 피망이나 단고추 이외 고추인 경우, 마늘인 경우와 스위트콘으로 설탕 포함 여부에 따라 9단위에서 2개로 세분
 - 2005 9는 죽순(91) 기타(99)로 구분되며, 기타는 당근, 케이퍼, 아티초크, 기타 혼합, 염장발효양배추, 기타 등 9단위에서 7개 세번으로 구분

- -

<표 4-2-17>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EU

호	품명	6단위	8단위
2001	채소(조제)	2	11
2002	토마토(조제)	2	8
2003	버섯과 송로(조제)	3	4
2004	기타 채소(조제, 냉동)	2	8
2005	기타 채소(조제, 비냉동)	10	18

자료: EU 관세율표(2008)

3) 일본

가. 제07류(채소)

- 채소류 07류는 9단위 기준으로 121개 세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위58개, 8단위 102개의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음.
- 0701호는 감자류로 6, 8, 9단위 모두 종자용과 비종자용 2개로만 세분
- 0702호는 신선 또는 냉장토마토로 6, 8, 9단위 모두 1개의 세 번임.
- 0703호는 양파, 마늘과 기타 파속의 채소로 6단위에서 3개, 8단위에서 5개, 9단위에서는 7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03 10은 양파와 샬롯으로 양파는 9단위에서 다시 수입단가에 따라 3개의 세번으로 구분(kg당67엔 이하, kg당 67~73.7엔, kg당 73.7엔 초과)
 - 0703 20은 마늘로 9단위까지 1개 세번
 - 0703 90은 기타 파속의 채소로 8, 9단위에서 모두 웨일스산 양파와 기타 파속의 채소로 구분
- 0704호는 6단위에서 꽃양배추와 절구된 브로콜리, 방울다다기양배추, 일반 양배추 등 3개 세번으로 분류
 - 0704 10은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이며, 0704 20은 방울다다기양배추로 9단위까지 각각 1개의 세번임

- -

- 0704 90은 일반 양배추로 8, 9 단위에서 모두 브로콜리, 결구 양배추, 배추, 기타 등 4개 세번으로 세분되어 있음.
- 0705호는 상추와 치커리류로 6, 8, 9단위 모두 4개의 세번(결구 상추, 일반 상추, 워트루우프 치커리, 기타 치커리)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06호는 당근, 무 종류로 6단위에서 2개의 세번(당근, 무), 8, 9단위에서는 무를 우영과 기타 등 2개 세번으로 세분
- 0707호는 오이류(신선·냉장)로 6, 8, 9단위 모두 1개의 세번임.
- 0708호는 채두류로 6, 8, 9단위 모두 3개 세번(완두콩, 콩, 기타 채두류)으로 분류함.
- 0709호는 기타 채소로 6단위에서 품종에 따라 8개 세번(아스파라거스, 가지, 셀러리, 버섯류, 단고추, 시금치류, 스위트콘·호박 등), 8단위 12개, 9단위 15개 세번으로 분류함.
- 0709 20은 아스파라거스, 0709 30 및 40은 가지와 셀러리로 9단위까지 모두 1개 세번
- 0709 51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이며, 그외 버섯은 모두 0709 59에 속하고, 이는 다시 품종에 따라 송로, 마츠타케, 기타 등 9단위에서 4개 세번으로 세분
- 0709 60은 피망속의 채소로 6단위에서 1개 세번이나 8, 9단위에서는 단고추와 기타 등 2개 세번으로 구분됨
- 0709 70은 시금치로 8, 9단위까지 1개 세번이며, 0709 90은 기타채소로 품종에 따라 4개로 세분(스위트콘, 호박, 엉겅퀴류, 기타 등)
- 0710호는 냉동채소로 6단위에서 품목에 따라 8개(감자, 완두콩, 콩, 녹두, 시금치류, 스위트콘, 브로콜리, 치커리) 세번, 8, 9단위에서 12개 세번으로 구분되어 있음.
- 0710 10은 냉동감자, 0710 21은 완두콩, 0710 22는 일반 콩(bean)으로 모두 9단위까지 1개 세번으로 되어 있음. 0710 29는 기타 콩으로 8, 9단위에서 녹두와 기타로 세분됨.

- -

- 0710 30은 냉동 시금치, 0710 40은 내용 스위트콘으로 9단위까지 각각 1개 세번으로 되어 있음.
 - 0710 80은 기타냉동채소, 0710 90은 냉동혼합채소인데, 기타 냉동채소는 품종에 따라 3개(우엉, 브로콜리, 기타)로 세분되어 있으며, 냉동혼합채소는 스위트콘의 포함여부에 따라 2개로 세분
- 0711호는 일시 저장 채소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5개, 8단위에서 6개(올리브, 오이류, 버섯, 기타, 가지·부추, 가지·우엉), 9단위에서 다시 12개로 세분화되어 있음.
- 0711 20은 올리브, 0711 40은 오이류로 모두 9단위까지 1개의 세번
 - 0711 5는 버섯과 송로로 51은 버섯, 59로 기타로 9단위까지 모두 1개 세번으로 되어 있음.
 - 0711 90은 기타 채소로 혼합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가지, 부추, 고사리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개당 20g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9단위에서 8개로 세분하고 있음
- 0712호는 건조채소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6개(양파,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목이버섯, 젤리균류, 기타버섯, 기타 채소), 8단위에서 13개, 9단위 14개 세번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0712 20은 건조양파, 0712 31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32는 목이버섯, 33은 제리균류, 39는 기타 버섯으로, 39 기타버섯이 다시 표고와 기타로 세분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9단위까지 1개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음.
 - 0712 90은 기타 및 혼합채소류로 스위트콘과 기타로 나누고, 기타는 다시 감자와 감자 이외로 나눈 후 감자 이외는 죽순, 기타 채소 등 9 단위에서 총 8개 세번으로 구분
- 0713호는 건조채두류로 채소 종류에 따라 6단위에서 9개, 8단위에서 22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9단위에서는 29개로 세분되어 07류 채소중 가장 세분화되어 있음.
- 0713 10은 완두콩, 0713 20은 이집트 콩으로 모두 종자용과 그럴치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0713 3은 일반 콩으로 31은 Vigna mungo속의 콩, 32는 팥, 33은 강남콩, 39는 기타 콩으로 종자용과 비종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

- 0713 40은 렌즈콩, 0713 50은 잠두 및 말먹이용 잠두, 0713 90은 기타로 모두 종자용과 비종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0714호는 매니옥·고구마류로 6단위에서는 3개 세번, 8, 9단위에서는 12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714 10은 매니옥으로 크게 냉동(310, 390)과 펠리트 및 가루(110, 190), 기타(210, 290) 등 3개로 나눈 뒤 다시 그 안에서 사료용과 비사료용으로 세분하고 있음.

- 0714 20은 고구마로 8, 9단위에서 냉동과 비냉동으로 구분

- 0714 90은 기타로 타로와 타로가 아닌 것으로 구분한 뒤 다시 냉동과 비냉동으로 세분되어 있음

<표 4-2-18> HS 단위별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호	품명	6단위	8단위	9단위
0701	감자	2	2	2
0702	토마토	1	1	1
0703	양파, 마늘 등	3	5	7
0704	(양)배추 등	3	6	6
0705	상치, 치커리	4	4	4
0706	당근·무 등	2	3	3
0707	오이류	1	1	1
0708	채두류	3	3	3
0709	기타 채소(버섯 등)	8	12	15
0710	냉동채소	8	12	12
0711	일시저장처리 채소	5	6	12
0712	건조 채소	6	13	14
0713	건조 채두류	9	22	29
0714	고구마 등	3	12	12
07류	소계	58	102	121

자료: 일본 관세율표(2008)

나. 제0902호(차류), 0904류(후추 및 고추류)

□ 0902호는 녹차·홍차로 6단위에서는 4개 세번, 8, 9 단위에서는 모두 8개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음.

- -

- 0902 10은 녹차로(3kg 이하) 9단위까지 1개 세번으로 되어 있으며, 0902 20은 기타 녹차로 음료용과 기타로 세분되어 있음.
- 0902 30은 홍차로(3kg 이하) 8, 9단위 모두 홍차와 기타 홍차로 구분되며, 0902 40은 기타홍차 및 부분 발효차로 음료용과 기타로 세분

□ 0904호는 후추, 고추류로 6단위에서 3개 세번, 8, 9단위에서는 7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904 11은 분쇄하지 않은 고추로 소매용과 비소매용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0914 12는 분쇄한 고추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소매용과 비소매용으로 세분되어 있음.
- 0904 20은 피망과 기타 고추로 소매용과 비소매용으로 세분되어 있음.

<표 4-2-19> HS 단위별 차 및 고추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호	품명	6단위	8단위	9단위
0902	차류	4	8	8
0904	후추 및 고추류	3	7	7

자료: 일본 관세율표(2008)

다. 제1202, 1207, 1508, 1517호(땅콩(유), 참깨(참기름))

□ 1202호는 땅콩으로 6단위에서 2개 세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단위에서는 4개, 9단위는 6개로 세분됨.

- 1202 10은 미탈각한 땅콩, 1202 20은 탈각한 땅콩으로 모두 착유용과 비착유용으로 세분

□ 1207호는 유지작물로 6단위 5개, 8, 9단위에서는 9개(면실, 참깨, 겨자씨, 양귀비씨, 대마씨, 팥과 핵, 파마자유씨, 잇꽃씨, 기타)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1207 20은 면실, 1207 40은 참깨, 1207 50은 겨자씨이며, 1207 9는 기타 유지작물로 양귀비와 기타로 나뉘고, 기타는 다시 대마씨, 팥과 핵, 파마자유씨, 잇꽃씨, 기타로 세분

□ 1508호는 땅콩기름으로 6단위 2개, 8, 9단위 3개 세번으로 분류

- -

- 조유와 기타유로 구분하되 조유는 다시 산가 0.6을 초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세분

□ 1515호는 기타 식물성기름으로 종류 및 순도에 따라 6단위에서 7개(아마인유(2), 옥수수유(2), 파마자유, 참기름, 기타유) 8, 9단위에서 산가 및 종류에 따라 17개 세번으로 분류

<표 4-2-20>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호	품명	6단위	8단위	9단위
1202	땅콩	2	4	6
1207	기타의 종자와 과실(참깨)	5	9	9
1508	땅콩류와 그 분획물	2	3	3
1515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참기름)	7	17	17

자료: 일본 관세율표(2008)

라. 제2001~05호(조제 채소류)

□ 2001호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채소나 과실로 6단위에서 2개 세번(오이와 기타 채소 및 과일)으로, 8, 9단위에서는 12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1 10은 오이류로 설탕 포함 여부에 따라 2개로 세분
- 2001 90은 기타로 설탕 포함 여부에 따라 나누고, 다시 품목별로(스위트콘, 옥수수열매, 생강, 기타)로 세분화

□ 2002~05호는 식초나 초산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조제채소로 2002호는 토마토, 2003호는 버섯과 송로, 2004호는 기타 채소(냉동)이며, 2005호는 기타 채소(비냉동)임.

- 2002호는 토마토로 6단위에서 2개, 8단위에서 5개, 9단위에서 7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2 10은 토마토 전체나 조각을 의미하며 9단위까지 1개 세번임.
 - 2002 90은 기타로 설탕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토마토 퓨레와 페이스트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

- -

- 2003호는 버섯류로 6단위 3개(버섯, 송로, 기타), 8단위 8개(설탕 포함 여부, 포장중량에 따라), 9단위 9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4호는 조제·냉동 채소로 6단위에서 2개 세번(감자와 기타), 8단위에서는 10개 세번(으깬 감자, 스위트콘, 아스파라거스, 콩과의 채소류, 죽순 등), 9단위에서 12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4 10은 감자로 조리된 것과 비조리된 것으로 세분
 - 2004 90은 기타 채소나 혼합채소로 설탕 포함 여부, 품종(스위트콘, 아스파라거스, 죽순, 옥수수, 기타 등)에 따라 세분
- 2005호는 조제 비냉동 채소로 6단위에서는 10개, 8단위에서는 30개, 9단위에서는 36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05 10은 균질화된 채소로 설탕 포함 유무에 따라 2개로 세분
 - 2005 20은 감자로 으깬 것과 그렇지 않은 것(포장 중량에 따라 다시 세분)으로 구분하여 9단위에서 3개 세분
 - 2005 40은 완두로 설탕 함유 여부, 포장 중량, 탈각 여부 등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9단위에서 6개로 세분
 - 2005 5은 콩으로 탈각은 51, 미탈각은 59이며, 다시 설탕 포함 여부와 중량에 따라 구분하여 9단위에서 6개로 세분
 - 2005 60은 아스파라거스, 2005 70은 올리브로 중량에 따라 9단위에서 각각 2개로 세분
 - 2005 80은 스위트콘으로 설탕포함여부에 따라 9단위에서 2개로 세분
 - 2005 9는 죽순(91) 기타(99)로 구분되며, 기타는 다시 설탕포함 여부, 옥수수 여부, 진공포장 여부, 마늘가루 포함 여부 등에 따라 9단위에서 11개 세번으로 구분

<표 4-2-21>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정도: 일본

호	품명	6단위	8단위	9단위
2001	채소(조제)	2	12	12
2002	토마토(조제)	2	5	7
2003	버섯과 송로(조제)	3	8	9
2004	기타 채소(조제, 냉동)	2	10	12
2005	기타 채소(조제, 비냉동)	10	30	36

자료: 일본 관세율표(2008)

- -

4) 정책 시사점

가. 제07류(채소)의 세분화 비교와 정책 시사점

- 8단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9~10단위까지 보더라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음.
 -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세분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큼 세번 세분화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0701호(감자류)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과의 세분화 차이는 거의 없음.
 - 다만 미국은 비종자용을 황감자(yellow potatoes) 여부로 구분하고, EU는 전분용과 비전분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우리나라도 신선·냉장 감자의 수입용도를 구분하여 전분용과 비전분용의 구분을 검토할 필요
- 0702호(토마토)의 경우 미국이 계절관세를 세번별로 구분한 것이 특징
- 0703호(양파, 마늘, 파)는 한국, 미국, EU, 일본 4개국의 세분화 정도는 유사
 - 다만 우리나라는 마늘을 탈피, 비탈피로 나눈데 반해 미국과 EU는 양파를 onion sets 여부에 따라 그리고 크기(직경)에 따라 세분했고, 일본은 수입단가에 따라 세분(종량세 적용)
 - 양파는 주요 품목의 하나이므로 수입형태를 고려하여 세분화 필요성과 함께 계절관세 필요성을 검토
- 0704호(배추류)는 한국, 미국, EU, 일본 4개국의 세분화 정도는 유사
 - 다만 미국이 계절관세를 적용해 세번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EU가 일반 양배추를 색(흰색, 붉은색, 기타)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
 - 우리나라도 배추 유통시기를 고려하여 계절관세의 세번별 적용 검토
- 0705호(상추와 치커리)도 한국, 미국, EU, 일본 4개국의 세분화 정도는 유사
 - 미국이 배추류와 마찬가지로 계절관세를 적용해 세번별로 구분

- -

□ 0706호(무, 당근)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세분화

- 다만 미국이 당근을 크기에 따라 세분(10센티 이상, 이하)하고 있으며, EU는 무 종류를 품종별로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우리나라도 크기나 품종에 따라 세분화 검토 필요

□ 0707호(오이류)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세분화

- 미국은 계절관세를 적용해 세번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EU는 오이를 품종(일반 오이와 절임용 작은 오이)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계절관세 및 크기나 품종에 따라 세분화 검토 필요

□ 0708호(채두류)도 미국이 가장 세분화

- 미국은 완두콩, 리마콩, 비둘기콩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해 세번별로 구분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은 모두 완두콩, 일반콩, 기타 채두류의 3개로만 분류
- 완두콩과 일반콩에 대해서 유통시기를 고려하여 계절관세 검토 필요

□ 0709호(고추, 버섯)는 한국, 미국, EU, 일본 4개국의 세분화 정도 유사

- 미국은 아스파라거스와 가지, 셀러리에 계절관세를 적용해 세번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셀러리는 크기도 구분하고 있음.
- EU와 일본은 버섯과 고추, 기타를 세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
- 우리나라도 버섯과 고추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에 따른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의 경우 미국 및 EU를 세분 정도를 참조하여 품종별로 보다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0710호(냉동 채소)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세분화

- 미국은 대부분의 냉동채소에 계절관세를 적용해 세번별로 구분(대상은 앞서 계절관세를 적용한 품목과 일치)
- EU 및 일본은 기타냉동채소를 품종별로 세분화하되 특히 감자와 완두콩, 일반콩, 시금치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

- -

- 우리나라도 0710 이전의 채소와 0711~12 채소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표 4-2-22> 주요국의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비교(1)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0701	감자	한국	2	2	2
		미국	2	3	
		EU	2	3	
		일본	2	2	2
0702	토마토	한국	1	1	1
		미국	1	3	
		EU	1	1	
		일본	1	1	1
0703	양파·마늘 등	한국	3	6	6
		미국	3	5	
		EU	3	5	
		일본	3	5	7
0704	(양)배추 등	한국	3	5	5
		미국	3	6	
		EU	3	4	
		일본	3	6	6
0705	상치, 치커리	한국	4	4	4
		미국	4	6	
		EU	4	4	
		일본	4	4	4
0706	당근·무 등	한국	2	7	7
		미국	2	7	
		EU	2	4	
		일본	2	3	3
0707	오이류	한국	1	1	1
		미국	1	4	
		EU	1	2	
		일본	1	1	1
0708	채두류	한국	3	3	3
		미국	3	10	
		EU	3	3	
		일본	3	3	3
0709	기타채소(고추, 버섯 등)	한국	8	19	19
		미국	8	22	
		EU	8	23	

- -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일본	8	12	15
0710	냉동채소	한국	8	15	15
		미국	8	29	
		EU	8	16	
		일본	8	12	12

□ 0711호(일시 저장 채소)의 경우 한국, 미국, EU, 일본 4개국의 세분화 정도는 유사

- 4개국 모두 품종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나, EU는 올리브의 경우 착유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타 일시 저장채소를 품종별로 세분화하고 있음. 한국도 이와 유사
- 기타 냉동채소에 대한 품종별 세분화 검토 필요. 아울러 신선,냉장 채소와의 일치성 유지에 주의(예: 계절 관세)

□ 0712호(건조채소)의 경우 미국과 한국이 가장 세분화

- 미국은 계절관세, 용도, 품종에 따라 세분화했으며, 우리나라는 버섯을 중심으로 세분화. EU는 감자, 토마토, 당근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타 건조채소를 품종별로 세분화하고 있음.

- -

<표 4-2-23> 주요국의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비교(2)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0711	일시 저장처리 채소	한국	5	10	13
		미국	5	12	
		EU	5	11	
		일본	5	6	12
0712	건조 채소	한국	6	10	28
		미국	6	20	
		EU	6	11	
		일본	6	13	14
0713	건조 채두류	한국	9	14	14
		미국	9	25	
		EU	9	11	
		일본	9	22	29
0714	매니옥, 고구마 등	한국	3	11	15
		미국	3	15	
		EU	3	7	
		일본	3	12	12
07 류	소계	한국	58	108	133
		미국	58	167	
		EU	58	105	
		일본	58	102	121

주: 일본은 9단위 세번임

나. 제0902호(녹차, 후추, 건고추)

0902호(녹차)는 한국, 미국, EU, 일본 모두 세분화가 유사

- 단 미국이 가향 여부로 다소 더 세분화

0904호(후추, 고추)로 미국과 일본이 보다 세분화

- 미국은 후추와 고추 모두에 파쇄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하고 고추는 특히 품종과 함께 파쇄한 고추의 경우 매운 고추(hot red peppers)의 혼합 여부에 따라 세분
- 일본은 후추의 경우 파쇄 및 소매용 여부에 따라 세분
- 우리나라는 파쇄 여부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고추의 품종 및 혼합여부, 소매용 여부 등에 따른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

- -

<표 4-2-24> 주요국의 HS 단위별 차와 고추의 세번 세분화 비교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0902	차류	한국	4	4	4
		미국	4	6	
		EU	4	4	
		일본	4	8	8
0904	후추 및 고추류	한국	3	4	4
		미국	3	8	
		EU	3	5	
		일본	3	7	7

주: 일본은 9단위 세번임

다. 제1202, 1207, 1508, 1517호(땅콩(유), 참깨(참기름))

□ 1202호(땅콩)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세분화

- 한국은 탈각, 미탈각으로 세분하고 있는 반면 EU는 미탈각을 다시 종자용과 기타로 세분
- 미국과 일본은 미탈각, 탈각 모두 착유용 여부에 따라 세분
- 우리나라도 수입목적에 따라 용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 1207호(식물성 유지)는 한국, 일본, EU가 유지작물별로 세분화

- 일본이 면실, 참깨, 겨자씨를 중요시 하고 있는 반면 EU는 모든 유지박물에 종자용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1508호(땅콩유)는 한국, 미국, 일본, EU의 세분화가 유사

- EU는 산업용 용도를 기준으로 세분, 반면 미국은 단순히 조유와 기타유로만 구분. 일본은 조유의 경우 산도를 기준으로 세분

□ 1515호(참기름)는 한국, 미국, 일본, EU의 세분화는 유사

- 다만 EU와 일본이 참기름 이외 여타 유지류의 기름을 많이 세분화한 정도

- -

<표 4-2-25> 주요국의 HS 단위별 땅콩 및 참깨의 세번 세분화 비교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1202	땅콩	한국	2	2	2
		미국	2	6	
		EU	2	3	
		일본	2	4	6
1207	기타의 종자와 과실(참깨)	한국	5	10	10
		미국	5	5	
		EU	5	11	
		일본	5	9	9
1508	땅콩유와 그 분획물	한국	1	3	3
		미국	2	2	
		EU	2	4	
		일본	2	3	3
1515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유지 (참기름)	한국	7	8	12
		미국	7	9	
		EU	7	24	
		일본	7	17	17

주: 일본은 9단위 세번임

라. 제2001~05호(조제 채소류)

- 2001호(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채소나 과실의 경우 한국, 미국, EU, 일본의 세분화 정도는 유사
 - 우리나라와 EU는 채소 품목별로 세분. 반면 미국은 특히 너트류에 중점을 둔 세분화, 일본은 설탕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 우리나라도 설탕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

- 2002호(조제 토마토)는 EU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보다 세분화
 - 일본은 설탕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 EU는 토마토의 탈피 여부와 함께 순중량(1kg)을 기준으로 세분화
 - 우리나라도 설탕 함유 여부를 검토할 필요

- 2003호(조제 버섯류)는 일본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보다 세분화

- -

- 일본은 설탕 함유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화. 우리나라는 버섯 종류에 따른 세분화
- 우리나라도 설탕이나 고추 등 향신료 함유 여부를 검토할 필요

□ 2004호(조제, 냉동 채소)는 일본과 EU가 상대적으로 보다 세분화

- 일본은 품종과 함께 설탕 함유 여부로 세분화. EU는 감자, 스위트콘, 양파, 완두콩을 중심으로 분류
- 우리나라는 기타 냉동 조제채소의 세분화 검토 필요

□ 2005호(조제 비냉동 채소)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보다 세분화

- 일본은 품종과 함께 설탕 함유 여부로 세분화
- 미국은 올리브를 중요시해 색(녹색 여부)과 중량 기준을 적용
- 우리나라도 기타 균질화된 조제채소와 기타채소를 품종, 중량, 함유물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필요

<표 4-2-26> 주요국의 HS 단위별 조제 채소의 세번 세분화 비교

호	품명		6단위	8단위	10단위
2001	채소 (조제)	한국	2	2	10
		미국	2	14	
		EU	2	11	
		일본	2	12	12
2002	토마토 (조제)	한국	2	3	3
		미국	2	3	
		EU	2	8	
		일본	2	5	7
2003	버섯과 송로 (조제)	한국	3	6	6
		미국	3	3	
		EU	3	4	
		일본	3	8	9
2004	기타 채소 (조제, 냉동)	한국	2	3	3
		미국	2	5	
		EU	2	8	
		일본	2	10	12
2005	기타 채소 (조제, 비냉동)	한국	10	18	18
		미국	10	35	
		EU	10	18	
		일본	10	30	36

주: 일본은 9단위 세번임

- -

(2) 채소 및 특작류의 관세구조의 특징과 활용방안

1) 미국, EU, 일본의 비종가세 활용 현황

□ 미국은 채소류의 상당 부분에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또는 혼합세를 적용하고 있음.

- 07류 8단위로 167개 세번 가운데 약 37%인 62개 세번에 대해 종량세 또는 혼합세를 적용
- 4단위에서 모두 비종가세를 적용한 세번: 0701(감자), 0702(토마토), 0705(상치와 치커리), 0707(오이), 0708(완두, 콩, 기타 채두류)
- 기타 올리브와 버섯 등에 비종가세를 적용

<표 4-2-27> 미국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비종가세 적용 현황

세번			품명	비고
0701			감자	
0702			토마토	계절관세
0703	10		양파, 쪽파	
	20		마늘	
0704	90	20	기타 일반 배추	
0705			상치와 치커리	
0706	10	10	당근(10cm 이하)	
		20	기타 순무	
0707			오이	계절관세
0708			완두, 콩, 기타 채두류	계절관세
0709	30		가지	계절관세
	40		샐러리 일부	계절관세
	5		버섯과 송로	
	60		고추류	
	90		호박, 올리브	
0710	21		완두, 콩, 기타 채두류(냉동)	계절관세
	29		강낭콩, 렌즈콩, 비둘기콩	계절관세(비둘기 콩)
	80	20	버섯	
		40	토마토	계절관세
0711	20~51		올리브, 오이, 버섯	

- -

세번			품명	비고
0712	31		버섯(건조)	목이버섯 제외
	39		기타 건조 버섯	
	90	50	올리브, 감자	
0713			건조 채두류(초산이외 조제저장)	계절관세
1202	10	05~40	땅콩(미탈각)	일부 예외
	20	05~40	땅콩(탈각)	일부 예외
1207	20		면화씨와 양귀비씨	
1508			땅콩 기름	
1515	11		아마인 유	
	30		참기름	
2001	90	42~45	너트류, 망고	
		50	월넛	
2003			버섯류	
2004	90		기타 콩	
2005	51		기타 콩	
	70		올리브	
	99		강낭콩	

□ EU도 비중은 크지 않으나 채소류 일부에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또는 혼합세를 적용하고 있음.

- 마늘, 양배추류, 상추, 콩, 버섯, 스위트콘, 감자, 고구마 일부에 비종가세 적용

<표 4-2-28> EU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비종가세 적용 현황

세번			품명	비고
0703	20		마늘	
0704	10		꽃양배추	계절관세
	90		일반 양배추	
0705	11		상추류	계절관세
0708	20		콩	계절관세
0709	9		기타 셀러드용 채소(스위트 콘)	
0710	40		스위트콘	
0711	20		혼합채소 일부	

- -

세번		품명	비고
	50	버섯	
	90	스위트콘	
0712	90	기타 감자	
0714	10	기타 채두류 및 잠두	
2001	90	30	스위트콘
		40	얌, 고구마
2003	10	20	버섯, 가타 버섯
2004	90	10	스위트콘
2005	20		감자
	80		스위트콘

□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채소류 일부에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또는 혼합세를 적용하고 있음.

- 양파, 신선 및 냉장 채두류(완두콩, 일반콩, 강남콩, 기타 채두류), 땅콩 일부, 일부 유지류에 비종가세를 적용

<표 4-2-29> 일본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비종가세 적용 현황

세번		품명	비고
0703	10	양파	
0712	90	기타 채소, 혼합 채소	
0713	10	211~229	완두콩
	32	090	일반콩
	33	229	강남콩
	39		기타 콩
1202	10	099	기타 땅콩(미탈각)
	20	099	기타 땅콩(탈각)
1508			땅콩유
1515	1		아마인유
	2		옥수수유
	50		참기름
	90	600	기타유

- -

2) 미국, EU, 일본의 계절관세 활용 현황

□ 미국은 채소류 가운데 토마토, 양배추, 상추, 오이, 콩류를 중심으로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표 4-2-30> 미국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계절관세 적용 현황

세번			품명
0702			토마토
0704	10		꽃양배추(결구)
0705	11~19		상추
0707			오이
0708			완두, 일부 콩(리마콩, 비둘기콩)
0709	10~40		아스파라거스, 가지, 기타 셀러리
0710	2		완두, 일부 콩(리마콩, 비둘기콩)
	80		토마토
0713	31		기타 콩
	33		강낭콩
	39		기타 채두류
	90		기타 참두

□ EU의 경우 기타 감자, 꽃양배추, 상추, 셀러리, 완두, 콩을 중심으로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표 4-2-31> EU의 채소 및 특작류 세번별 계절관세 적용 현황

세번			품명
0701	90	50	기타 감자(전분용)
0704	10		꽃양배추(결구)
0705	11	00	상추
0706	90	10	셀러리
0708	10~20		완두, 콩
0709	10~40		아스파라거스, 가지, 기타 셀러리
0710	2		완두, 콩

- -

3) 정책 활용방안

가. 비종가세의 도입 검토

현행 DDA 농업협상 논의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비종가세 도입은 매우 어려울 전망

- 현존하는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대세
-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비종가세는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

현재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세번은 HS 10단위로 78개 세번으로 이 중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채소 및 특작류는 44개 세번임.

- 신선, 냉장, 건조, 일시저장 양념채소(마늘과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버섯류, 무, 참깨 등이 해당

중국산 저가 수입에 대비한 비종가세의 운용을 적극 추진할 필요

<표 4-2-32> 우리나라의 종량세 품목(채소 및 특작류)

	세번	종 량 세 품 목	양허관세 (원/kg)
1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180
2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1,800
3	0703.20.9000	마늘(신선/냉장/기타)	1,800
4	0709.51.7000	양송이버섯(신선/냉장)	1,570
5	0709.51.9000	기타버섯(신선/냉장)(아가리쿠스속의 기타버섯)	1,586
6	0709.59.1000	송이버섯(신선/냉장)	7,478
7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냉장)	1,625
8	0709.59.3000	영지버섯(신선/냉장)	2,354
9	0709.59.4000	느타리버섯(신선/냉장)	1,586
10	0709.59.5000	팽이버섯(신선/냉장)	1,586
11	0709.59.9000	기타버섯(신선/냉장)	1,586
12	0709.60.1000	고추류(단고추/신선/냉장)	6,210
13	0709.60.9000	고추류(기타/신선/냉장)	6,210
14	0709.90.1000	고사리(신선/냉장)	2,466
15	0710.80.5000	고사리(냉동)	2,466

- -

	세번	종 량 세 품 목	양허관세 (원/kg)
16	0711.40.0000	오이류(저장처리)	145
17	0711.51.0000	아가리쿠스속의버섯(저장처리)	454
18	0711.59.9000	버섯과송로기타(저장처리)	454
19	0711.90.1000	마 늘(저장처리)	1,800
20	0711.90.5010	고사리(저장처리)	2,466
21	0711.90.5091	고추의것(저장처리)	6,210
22	0712.20.0000	양파(건조)	180
23	0712.31.1000	양송이버섯(건조)	1,570
24	0712.31.9000	기타버섯(건조)(아가리쿠스속 버섯)	1,586
25	0712.32.0000	목이버섯(건조)	1,586
26	0712.33.0000	젤리균류(건조)	1,586
27	0712.39.1010	송이버섯(건조)	7,478
28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1,625
29	0712.39.1030	영지버섯(건조)	2,354
30	0712.39.1040	느타리버섯(건조)	1,586
31	0712.39.1050	팽이버섯(건조)	1,586
32	0712.39.1090	기타버섯(건조)	1,586
33	0712.90.1000	마 늘(건조)	1,800
34	0712.90.2010	고사리(건조)	2,466
35	0712.90.2020	무(건조)	226
36	0712.90.2040	당 근(건조)	905
37	0712.90.2050	호 박(건조)	574
38	0712.90.2060	양배추(건조)	2,764
39	0712.90.2070	토란줄기(건조)	461
40	0714.20.1000	고구마(신선)	338
41	0904.20.1000	고추류(건조/분쇄않은것)	6,210
42	0904.20.2000	고추류(건조/분쇄한것)	6,210
43	1207.40.0000	참 깨	6,660
44	1515.50.0000	참기름과그분획물	12,060

나. 계절관세의 도입 검토

- 신선·냉장 채소는 하우스에 의한 연중재배로 계절성이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계절성은 신선·냉장 채소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로 유효

- -

- 특히 계절적 수요가 존재하는 채소류는 계절관세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

계절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국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

실제 계절관세의 부과시기 선정 및 운용은 국내 생산 및 출하시기, 해당 세번이나 유사 세번의 실제 수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채소 및 특작류의 관세체제 개편방안

1) 기본 원칙

중요 채소류에는 계절관세를 활용을 원칙으로 함.

- 설령 계절별로 관세차이를 둘 수 없다고 해도 국산 채소류의 성출하기가 아닌 계절에 수입되는 경우 관세인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관세인하에 대비하는 성격

- 특히 종량세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절적으로 국내산 채소의 성출하기에 종량세를 활용하여 저가의 수입산에 대한 국경보호효과 제고 가능

종량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

- 기존에 있던 유명무실한 종량세를 최대한 활용. 단 종가세와의 국경보호효과에 대한 사전적 비교 필요

세번 세분화 활용

- 소매용 여부, 식용 여부, 공업용 여부, 크기, 품종에 따라 세분화하되 특히 기타 세번은 중요 품목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세분화하여 수입관리와 함께 관세인하 대비(통계상의 목적도 중요)

신선·냉장 품목과 이들의 1차 가공품간 관세체제의 상호 연관성 확보

- 보호의 실효성 유지 및 수입관리 통계상의 목적

실제 세번별 수입실적을 고려

국내 농업생산에서의 중요성 반영

- -

2) 개편 방안

가. 우리나라의 채소, 특작류의 생산액

□ 해당 품목이 국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2007~08년 평균 생산액을 검토한 결과

- 고추, 배추, 토마토, 오이, 마늘, 무, 고구마, 감자, 양파, 버섯 등의 품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팔, 땅콩, 가지 시금치 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세개편도 중요성이 큰 세번을 중심으로 제시

<표 4-2-33> 우리나라의 채소, 특작류 생산액

	품목	2007~08년 평균 생산액 (억원)
고추	고추	9,073
	풋고추	3,716
배추	배추(노지)	6,452
	배추(시설)	319
	양배추 (노지)	808
토마토	토마토 (시설)	6,381
	토마토 (노지)	61
오이	오이 (시설)	3,955
	오이 (노지)	391
마늘	마늘	3,951
무	무 (노지)	3,050
	무 (시설)	469
고구마	고구마	2,706
감자	감자	1,885
양파	양파	1,877
버섯(느타리)	느타리	1,821
참깨	참깨	1,685
호박	호박 (시설)	1,646
	호박 (노지)	844
버섯(새송이)	새송이	1,540
상추	상추 (시설)	1,517
	상추 (노지)	325
파	파	1,490
들깨	들깨	991
파프리카	파프리카	802
버섯(양송이)	양송이	628

- -

	품목	2007~08년 평균 생산액 (억원)
버섯(팽이)	팽이	613
당근	당근 (노지)	483
시금치	시금치 (시설)	431
	시금치 (노지)	425
가지	가지 (시설)	184
	가지 (노지)	158
땅콩	땅콩	141
팥	팥	120

자료: 농림수산물 통계연보(2008)

나. 품목별 관세체제 개편방안

① 고추

□ 현행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아래서 냉동고추 때문에 심각한 관세부조화 문제 발생

<표 4-2-34> 고추의 현행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총가세 (%)	총량세 (원/kg)
0709	60	1000	단고추(벨타입) (신선/냉장)	270	6,210
		9000	기타 고추 (신선/냉장)	270	6,210
0710	80	7000	고추류 (냉동)	27	-
0711	90	5091	고추 (일시저장 처리)	270	6,210
0904	20	1000	건고추 (파쇄하지 않은 것)	270	6,210
		2000	건고추 (파쇄한 것)	270	6,210

- -

□ 세번별 수입현황

- 2005~08년 고추수입 실적을 보면 냉동고추가 수입의 핵심(전체 수입의 73% 점유)

<표 4-2-35> 고추 수입실적(2005~2008년)

세 번			품 목	2005~08년 수입실적	
				금액 (천 달러)	비율 (%)
0709	60	1000	단고추(벨타입) (신선/냉장)	48	0.1
		9000	기타 고추 (신선/냉장)	16	0.0
0710	80	7000	고추류 (냉동)	52,160	73.2
0711	90	5091	고추 (일시저장 처리)	26	0.0
0904	20	1000	건고추 (파쇄하지 않은 것)	17,078	24.0
		2000	건고추 (파쇄한 것)	1,894	2.7
			계	71,222	100.0

□ 세분화 검토

- 생산이 늘고 있는 풋고추와의 구분은 필요
- 냉동고추의 세분화를 통해 관세부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27%인 냉동고추의 양허관세를 세분화를 통해 상향조정하기란 양허재협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양허관세 인상의 어려움)¹³⁾
- 다만 간접적으로 용도를 구분해 냉동고추가 해동 이후 직접 생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식용 가공용(예: 고춧장이나 고춧가루 등의 원료로 사용)들어가는 경우를 세분해 사후 수입관리(통관이후 국내유통 포함) 차원에서 국내유통관리제도와 연계해 부정유통에 의한 간접적 제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할 것임.

□ 계절관세

- 노지고추의 성출하기는 9월부터 11월 하순(단 반축성은 5월 중순~9월 중순)
- 한편 노지고추 및 냉동고추의 월별 수입추세를 보면
 - i) 노지고추 수입은 국내산 노지고추의 성출하기에는 현저히 적은 반면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수입이 대부분(단 2월은 예외)
 - ii) 냉동고추의 경우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입이 중요

13) 다만 DDA의 이행계획서 제출시 양허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이해당사국과 양자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지고추의 경우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그리고 냉동고추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계절관세를 운용을 검토하되, 해당 기간에는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을 추진

<표 4-2-36> 노지 건고추의 월별 수입추세

월별	2006년 (중량 kg)	2007년 (중량 kg)	2008년 (중량 kg)	2006-08년 평균 (중량 kg)	비중 (%)
1	1,027,791	802,924	423,694	751,470	8.7
2	200,689	210,252	465,655	292,199	3.4
3	977,470	1,114,026	1,133,975	1,075,157	12.5
4	1,312,522	820,941	1,106,760	1,080,074	12.6
5	1,015,556	1,303,194	519,142	945,964	11.0
6	1,219,934	1,758,572	1,530,952	1,503,153	17.5
7	326,491	167,905	1,607,084	700,493	8.2
8	400,140	159,796	206,895	255,610	3.0
9	222,933	103,030	233,998	186,654	2.2
10	160,308	194,268	210,744	188,440	2.2
11	239,270	205,804	233,558	226,211	2.6
12	1,416,213	1,567,942	1,177,647	1,387,267	16.1
계	8,519,317	8,408,654	8,850,104	8,592,692	100.0

<표 4-2-37> 냉동고추의 월별 수입추세

월별	2006년 (중량 kg)	2007년 (중량 kg)	2008년 (중량 kg)	2006-08년 평균 (중량 kg)	비중 (%)
1	7,437,482	15,588,036	10,009,588	11,011,702	9.5
2	9,115,276	16,245,639	7,989,399	11,116,771	9.6
3	5,727,949	6,968,787	8,397,724	7,031,487	6.1
4	4,393,529	8,250,370	9,426,253	7,356,717	6.3
5	3,146,238	11,440,458	6,934,789	7,173,828	6.2
6	5,259,096	7,111,502	6,801,295	6,390,631	5.5
7	4,844,188	7,438,590	7,469,465	6,584,081	5.7
8	8,997,912	3,205,361	5,692,991	5,965,421	5.1
9	5,531,077	4,991,726	7,675,831	6,066,211	5.2
10	8,636,748	18,280,241	20,396,298	15,771,096	13.6
11	21,816,950	16,829,430	16,817,055	18,487,812	15.9
12	10,750,029	12,062,261	16,186,829	12,999,706	11.2
계	95,656,474	128,412,401	123,797,517	115,955,464	100.0

- -

□ 추가 고려사항

- 2103. 90. 9090(혼합조미 조제품)
- 2104. 20. 0000(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등은 고추 성분의 포함 유무에 따라 세분화 필요

□ 개편 방안

<표 4-2-38> 고추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9	60	1000	단고추(벨타입) (신선/냉장) - 풋고추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 기타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270 270	6,210
		9000	기타 고추 (신선/냉장) - 풋고추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 기타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270 270	6,210
0710	80	7000	고추류 (냉동) - 생식용 . 수입시기가 10월~이듬해 2월 . 그 외 - 식용가공용 . 수입시기가 10월~이듬해 2월 . 그 외	27	-
0711	90	5091	고추 (일시저장 처리) - 풋고추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 기타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270 270	6,210
0904	20	1000	건고추 (파쇄하지 않은 것)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270 270	6,210
		2000	건고추 (파쇄한 것) - 수입시기가 12월~이듬해 7월 - 그 외	270 270	6,210

- -

② 배추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대부분 27% 증가세
- 기타 채소, 채소 혼합물의 미세분화로 이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인지(認知) 곤란(이 문제는 주요한 채소 모두에 해당 되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함)

<표 4-2-39> 배추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0704	10	1000	꽃양배추, 결국 브로콜리	27	-
	20	2000	방울다다기양배추	27	-
	90	1000	양배추	27	-
		2000	배추	27	-
		9000	기타 배추	27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27	-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27	-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90	2060	양배추(건조)	54	2,764
		2099	기타 채소 (건조)	54	-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27	-

□ 세번별 수입현황

- 핵심은 꽃양배추와 브로콜리, 기타 채소(냉동, 일시 저장, 건조)임.

<표 4-2-40> 배추 수입현황(2005~2008)

세번			품 목	2005~08 수입실적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4	10	1000	꽃양배추, 결국 브로콜리	7,481	21.8
	20	2000	방울다다기양배추	2	0.0
	90	1000	양배추	744	2.2
		2000	배추	437	1.3
		9000	기타 배추	14	0.0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10,753	31.4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1,326	3.9

- -

세 번			품 목	2005~08 수입실적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7,759	22.6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14	0.0
0712	90	2060	양배추(건조)	1,111	3.2
		2099	기타 채소 (건조)	4,284	12.5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350	1.0
			계	34,274	100.0

□ 세분화 검토

- 노지배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먼저 단순 1차 가공된 배추와 양배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즉, 기타채소(냉동, 일시 저장, 건조)의 경우 배추, 양배추, 기타 등 3개로 세분하고, 채소혼합물은 주성분이 배추인 경우와 주 성분이 양배추인 경우, 기타인 경우로 세분하여 배추 및 양배추의 수입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 또한 꽃양배추와 브로콜리도 구분

□ 비종가세 검토

- 종량세 부과는 건조 양배추만 가능하므로 계절관세와 연계하여 국내 양배추 성출하기를 고려하여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을 검토

□ 계절관세 검토

- 배추의 성출하기는 봄 재배의 경우 6월 중순, 고랭지 및 가을재배의 경우 7월부터 12월 상순이므로 6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절관세 적용

□ 추가 검토사항

- 2001. 90. 9030 꽃양배추(초산 조제저장) 30%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 조제저장) 36%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1000 김치(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

⇒ 배추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꽃양배추안에서도 브로콜리를 구분)채소 혼합물도 배추를 주 성분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세분

□ 개편 방안

<표 4-2-41> 배추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0704	10	1000	꽃양배추, 결국 브로콜리 - 꽃양배추 · 수입시기가 6~12월 · 그외 - 브로콜리 · 수입시기가 6~12월 · 그외 - 기타	27 27 이하	-
	20	2000	방울다다기양배추	27	-
	90	1000	양배추 - 수입시기가 6월~12월 - 그 외	27 27 이하	-
		2000	배추 - 수입시기가 6월~12월 - 그 외	27 27 이하	-
		9000	기타 배추 - 수입시기가 6월~12월 - 그 외	27 27 이하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 배추 - 양배추 - 기타 배추 - 기타 채소	27 27 27 27 이하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 배추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기타	27 27 이하	-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 배추 - 양배추 - 기타 배추 - 기타 채소	27 27 27 27 이하	-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 배추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기타	27	-
0712	90	2060	양배추(건조) - 수입시기가 6월~12월 - 그외	54 54	2,764
		2099	기타 채소 (건조) - 배추 - 양배추 - 기타 배추	54 54 54	-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 기타 채소	54 이하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 배추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기타	27 27 이하	-

③ 토마토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대부분 27% 관세, 토마토 조제가공의 경우 32~45%

<표 4-2-42> 토마토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2	00	0000	토마토(신선/냉장)	27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27	-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27	-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90	2099	기타 채소 (건조)	54	-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27	-
2002	10	0000	토마토 (전체, 조각상/ 조제저장)	45	-
	90	1000	토마토 페이스트	31.5	-
		9000	토마토 기타(조제저장)	45	-

세번별 수입

- 신선·냉장 토마토의 수입은 용이하지 않으며, 핵심은 토마토 페이스트와 기타 채소

- -

<표 4-2-43> 토마토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2005~08 수입실적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2	00	0000	토마토(신선/냉장)	-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10,753	20.3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1,326	2.5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7,759	14.7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14	0.0
0712	90	2099	기타 채소 (건조)	4,284	8.1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350	0.7
2002	10	0000	토마토 (전체, 조각상/ 조제저장)	4,785	9.0
	90	1000	토마토 페이스트	21,477	40.6
		9000	토마토 기타(조제저장)	2,201	4.2
			계	52,949	100.0

세분화 검토

-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방울토마토와의 구분 필요
- 아올러 배추와 마찬가지로 기타 채소(냉동, 일시저장, 건조)도 미세분화로 토마토의 수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토마토와 기타로 세분하고, 채소 혼합물도 주성분이 토마토인 경우와 기타로 세분

비종가세 검토

- 종량세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계절관세 검토

- 토마토의(방울 토마토 포함) 성출하기는 2월 상순부터 7월 중순 이므로 1월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필요시 계절관세 적용

추가 검토사항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 조제저장) 36%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기타 채소는 토마토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은 토마토를 주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

□ 개편 방안

<표 4-2-44> 토마토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2	00	0000	토마토(신선/냉장) - 직경 3cm 이하인 경우 · 수입시기가 1~7월 · 그 외 - 그 외 · 수입시기가 1~7월 · 그 외	27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 토마토 - 기타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 토마토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7	-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 토마토 - 기타	27	-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 토마토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7	-
0712	90	2099	기타 채소 (건조) - 토마토 - 기타	54	-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 토마토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7	-
2002	10	0000	토마토 (전체, 조각상/ 조제저장) - 껍질을 깬 것 - 그 외	45	-
	90	1000	토마토 페이스트	31.5	-
		9000	토마토 기타(조제저장)	45	-

④ 오이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관세는 27~54%이고, 일시저장오이에 종량세 부과 가능

- -

<표 4-2-45> 오이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0707	00	0000	오이류 (신선/냉장)	27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27	-
0711	40	0000	오이류 (일시 저장)	45	145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90	2099	기타 채소 (건조)	54	-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27	-
2001	10	0000	오이류 (초산 조제저장)	36	-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저장)	36	-

□ 세번별 수입

- 신선·냉장 오이 수입은 거의 없으며, 핵심은 일시저장 및 초산조제 오이
- 기타 채소에도 오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정확한 인지는 불가

<표 4-2-46> 오이 수입현황(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7	00	0000	오이류 (신선/냉장)	3	0.0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10,753	34.1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1,326	4.2
0711	40	0000	오이류 (일시 저장)	4,048	12.8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14	0.0
0712	90	2099	기타 채소 (건조)	4,284	13.6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350	1.1
2001	10	0000	오이류 (초산 조제저장)	4,742	15.0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저장)	6,012	19.1
			계	31,532	100.0

□ 세분화 검토

- 길이에 따라 구분 필요(오이와 서양오이 구분 가능)

- -

- 기타 채소(냉동, 건조)의 경우 오이에 대한 수입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이와 기타로 세분하고, 채소 혼합물이나 기타 식용식물도 주성분이 오이인 경우와 기타인 경우로 세분

□ 비종가세 검토

- 일시 저장 오이에 한해 종량세 적용 가능

□ 계절관세 검토

- 오이는 대부분 시설작물로 성출하기는 2~6월과 12월 상순으로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를 고려하여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계절관세 적용을 검토

□ 추가 검토사항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기타 채소는 오이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은 오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개편 방안

<표 4-2-47> 오이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7	00	0000	오이류 (신선/냉장) - 10cm 이하인 것 · 수입시기가 11월~이듬해 7월 · 그 외 - 그 외 · 수입시기가 11월~이듬해 7월 · 그 외	27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 오이 · 길이가 10cm 이하인 것 · 그 외 - 기타	27	-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 오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길이가 10cm 이하인 것 · 그 외 - 기타	27	-
0711	40	0000	오이류 (일시 저장) - 10cm 이하인 것 · 수입시기가 11월~이듬해 7월 · 그 외 - 그 외 · 수입시기가 11월~이듬해 7월 · 그 외	45	145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 오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기타	27	-
0712	90	2099	기타 채소 (건조) - 오이 · 길이가 10cm 이하인 것 · 그 외 - 기타	54	-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 오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길이가 10cm 이하인 것 · 그 외 - 그 외	27	-
2001	10	0000	오이류 (초산 조제저장) - 10cm 이하인 것 · 수입시기가 11월~이듬해 7월 · 그 외 - 그 외 · 수입시기가 11월~이듬해 7월 · 그 외	36	-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저장) - 오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기타	36	-

⑤ 마늘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냉동마늘과 초산마늘이 27, 36% 관세로 관세부조화 문제 심각

- -

<표 4-2-48> 마늘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0703	20	1000	마늘(신선/냉장, 탈피)	360	1,800
		9000	마늘(신선/냉장, 기타)	360	1,800
0710	80	2000	마늘(냉동)	27	-
		90	채소 혼합물(냉동)	27	-
0711	90	1000	마늘 (일시 저장)	360	1,800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90	1000	마늘 (건조)	360	1,800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27	-
2001	90	9060	마늘 (초산 조제 저장)	36	-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 저장)	36	-

□ 세번별 수입

- 신선·냉장 마늘 수입은 대부분 시장접근물량이며, 핵심은 관세가 낮은 냉동마늘과 초산마늘임.

<표 4-2-49> 마늘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3	20	1000	마늘(신선/냉장, 탈피)	1,213	3.4
		9000	마늘(신선/냉장, 기타)	5,749	16.2
0710	80	2000	마늘(냉동)	15,642	44.0
		90	채소 혼합물(냉동)	1,326	3.7
0711	90	1000	마늘 (일시 저장)	32	0.1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14	0.0
0712	90	1000	마늘 (건조)	1,404	4.0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350	1.0
2001	90	9060	마늘 (초산 조제 저장)	3,769	10.6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 저장)	6,012	16.9
			계	35,511	100.0

- -

□ 세분화 검토

- 고추와 같이 냉동 및 초산마늘의 세번 세분화를 통해 관세부조화 문제를 해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종량세 활용도 어려움.
- 다만 채소혼합물(냉동, 건조, 초산조제)은 주성분이 마늘인 경우가 구분되도록 세분화 필요

□ 비종가세 검토

- 신선·냉장 마늘과 일시저장 및 건조 마늘에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

□ 계절관세 검토

- 마늘의 성출하기는 3월 하순부터 5월 중순, 10월 상순~11월 하순임
- 한편 신선/냉장 마늘(비탈피)의 경우 수입은 주로 8~12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냉동마늘은 월별 수입의 특성이 없음.

<표 4-2-50> 신선·냉장 마늘(비탈피)의 월별 수입추세

월별	2006년 (중량 kg)	2007년 (중량 kg)	2008년 (중량 kg)	2006-08년 평균 (중량 kg)	비중 (%)
1	1,277,600	0	500,000	592,533	5.8
2	0	300,000		100,000	1.0
3	0	1,000,000		333,333	3.3
4	0	0	0	0	0.0
5	0	191,500		63,833	0.6
6	0	0		0	0.0
7	0	0		0	0.0
8	2,232,000	2,259,030	24,000	1,505,010	14.7
9	2,003,148	1,983,443	20,000	1,335,530	13.0
10	2,801,000	523,000		1,108,000	10.8
11	1,309,000	2,500,000	3,374,000	2,394,333	23.4
12	4,984,525	3,467,000		2,817,175	27.5
계	14,607,273	12,223,973	3,918,000	10,249,749	100.0

- -

<표 4-2-51> 냉동마늘의 월별 수입추세

월별	2006년 (중량 kg)	2007년 (중량 kg)	2008년 (중량 kg)	2006-08년 평균 (중량 kg)	비중 (%)
1	1,131,080	5,453,840	4,526,600	3,703,840	11.9
2	3,286,000	2,450,403	2,313,100	2,683,168	8.6
3	2,063,010	1,985,820	4,033,340	2,694,057	8.7
4	1,906,280	1,400,730	5,979,600	3,095,537	10.0
5	820,600	1,137,700	2,606,000	1,521,433	4.9
6	1,137,580	2,506,210	2,674,100	2,105,963	6.8
7	1,953,805	4,190,180	2,588,170	2,910,718	9.4
8	2,277,930	3,324,440	2,042,000	2,548,123	8.2
9	4,143,240	1,810,200	1,716,400	2,556,613	8.2
10	1,726,600	2,544,960	3,232,970	2,501,510	8.0
11	1,301,280	2,073,710	2,407,600	1,927,530	6.2
12	2,941,780	2,267,410	3,354,790	2,854,660	9.2
계	24,689,185	31,145,603	37,474,670	31,103,153	100.0

□ 추가 검토사항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기타 채소는 마늘과 기타로 구입 마늘의 수입관리가 필요하며, 채소혼합물도 동일

□ 개편방안

<표 4-2-52> 마늘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총량세 (원/kg)
0703	20	1000	마늘(신선/냉장, 탈피) - 수입시기가 3~6월 또는 8~12월 - 그 외	360 360	1,800
		9000	마늘(신선/냉장, 기타) - 수입시기가 3~6월 또는 8~12월 - 그 외	360 360	1,800
0710	80	2000	마늘(냉동) - 생식용 - 조미용(식용 가공) - 기 타(비식용)	27	-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 마늘이 주성분 인 것 - 기타	27	-
0711	90	1000	마늘 (일시 저장) - 수입시기가 3~6월 또는 8~12월 - 그 외	360 360	1,800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 마늘이 주성분 인 것 - 기타	27	-
0712	90	1000	마늘 (건조) - 수입시기가 3~6월 또는 8~12월 - 그 외	360 360	1,800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 마늘이 주성분 인 것 - 기타	27 27 이하	-
2001	90	9060	마늘 (초산 조제 저장) - 생식용 - 조미용(식용 가공) - 기 타(비식용)	36 36 36 이하	-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 저장) - 마늘이 주성분 인 것 - 기타	36 36 이하	-

⑥ 무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대부분 27~54%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건조무는 총량세 226원/kg 적용 가능

<표 4-2-53> 무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0706	90	1000	무(신선/냉장)	45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27	-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27	-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90	2020	무(건조)	54	226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27	-
2001	90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저장)	36	-

□ 세번별 수입

- 무는 자체로서 수입이 뚜렷하지 않음. 건조무가 의미있는 수입
- 그러나 기타 채소(냉동, 일시 저장, 초산조제저장 등)의 수입에 무가 포함될 가능성은 존재

<표 4-2-54> 무 수입현황(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6	90	1000	무(신선/냉장)	252	0.9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10,753	38.5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1,326	4.7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7,759	27.8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14	0.0
0712	90	2020	무(건조)	1,492	5.3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350	1.3
2001	90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저장)	6,012	21.5
			계	27,958	100.0

□ 세분화 검토

- 기타 채소(냉동, 일시 저장, 초산조제저장)에서 무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무와 기타로 세분
- 필요시 무를 다시 세분하여 무와 알타리 무로 구분

□ 비증가세 검토

- 건조무에 한해 선택세(종량세/증가세) 적용 가능

- -

□ 계절관세 검토

- 무 성출하기는 7~12월이며, 시설재배 무의 경우 4월 중순~6월 중순임.
- 4~12월을 기준으로 필요시 계절관세 적용 검토

□ 추가 검토사항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기타 채소는 무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은 무를 주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개편방안

<표 4-2-55> 무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6	90	1000	무(신선/냉장) - 뿌리 길이가 10cm 이하인 것 · 수입시기가 4~12월인 경우 · 그 외 - 그 외 · 수입시기가 4~12월인 경우 · 그 외	45	-
0710	80	9000	기타 채소(냉동) - 무 · 뿌리 길이가 10cm 이하 · 그 외 - 기타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 무가 주성분인 것 - 기타	27	-
0711	90	5090	기타 채소 (일시 저장) - 무 · 뿌리 길이가 10cm 이하 · 그 외 - 기타	27	-
		9000	채소 혼합물(일시 저장) - 무가 주성분인 것 - 기타	27	-
0712	90	2020	무(건조) - 뿌리 길이가 10cm 이하인 것 · 수입시기가 4~12월인 경우	54	226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 그 외 - 그 외 · 수입시기가 4~12월인 경우 · 그 외	54 54 54	226
		9000	채소 혼합물 (건조) - 무가 주성분인 것 - 기타	27	-
2001	90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저장) - 무 - 기타	36	-

⑦ 고구마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냉동고구마를 제외하고는 385%의 고율관세 구조
- 신선 고구마는 총량세 적용도 가능
- 전분용으로 경합되는 매니옥의 경우 887.4%의 최고관세. 그러나 시장접근 관세는 고구마나 매니옥 모두 20% 관세가 적용되고, 매니옥의 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표 4-2-56> 고구마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0714	20	1000	고구마(신선)	385	338
		2000	고구마(건조)	385	-
		3000	고구마(냉장)	385	-
		4000	고구마(냉동)	45	-
		9000	고구마(기타)	385	-
0714	90	9010	서류(기타/냉동)	385	-
		9090	서류(기타/기타)	45	-

- -

□ 세번별 수입

- 신선 고구마, 건조 고구마는 고관세 때문 사실상 수입이 전무
- 관세가 낮은 냉동 고구마 및 기타 서류(냉동 이외)의 수입이 핵심

<표 4-2-57> 고구마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14	20	1000	고구마(신선)	-	-
		2000	고구마(건조)	-	-
		3000	고구마(냉장)	132	12.7
		4000	고구마(냉동)	255	24.5
		9000	고구마(기타)	-	-
0714	90	9010	서류(기타/냉동)	113	10.9
		9090	서류(기타/기타)	540	51.9
			계	1,040	100.0

□ 세분화 검토

- 냉동 고구마를 식용, 주정용, 전분용으로 구분하고, 식용의 경우 모양에 따라 펠리트나 그 이외의 형태로 세분
- 기타 서류도 고구마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비종가세 검토

- 신선 고구마에 한해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 가능

□ 계절관세 검토

- 고구마의 성출하기는 10~12월이므로 9월~이듬해 1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절 관세 활용을 검토

□ 추가 검토사항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 저장) 36%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

⇒ 기타 채소는 고구마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도 유사하게 세분

□ 개편방안

<표 4-2-58> 고구마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14	20	1000	고구마(신선) - 식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주정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전분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기타	385	338
		2000	고구마(건조) - 식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주정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전분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기타	385	-
		3000	고구마(냉장) - 식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주정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전분용 · 전체나 부분 · 펠리트 · 기타 - 기타	385	-
		4000	고구마(냉동)	45	-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총량세 (원/kg)
			- 식용 - 주정용 - 전분용 - 기타		
		9000	고구마(기타) - 식용 - 주정용 - 전분용	385	-
0714	90	9010	서류(기타/냉동) - 주 성분이 고구마인 것 · 식용 · 주정용 · 전분용 - 그외	385	-
		9090	서류(기타/기타) - 주 성분이 고구마인 것 · 식용 · 주정용 · 전분용 - 그외	45	

⑧ 감자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신선/냉장 감자의 고율관세(304%)를 제외하고는 대개 27% 내외
- 감자의 경우 총량세 대상은 없음

<표 4-2-59> 감자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총량세 (원/kg)
0701	10	0000	감자(신선/냉장, 종자용)	304	-
	90	0000	감자(신선/냉장, 기타)	304	-
0710	10	0000	감자(냉동)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27	-
0711	90	5099	기타 채소(일시저장)	27	-
		9000	채소류 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90	2093	감자(건조)	27	-
		9000	채소류 혼합물 (건조)	27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 기타(초산조제저장)	36	-
2004	10	0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냉동)	18	-

- -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종가세 (%)	총량세 (원/kg)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냉동)	31.5	-
2005	20	1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크로켓)	54	-
		9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기타)	31.5	-

□ 세번별 수입

- 초산 이외 방법으로 조제·저장한 감자 수입이 핵심이며, 그 외 비종자용 신선/냉장 감자 수입이 중요

<표 4-2-60> 감자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1	10	0000	감자(신선/냉장, 종자용)	1	0.0
	90	0000	감자(신선/냉장, 기타)	8,600	12.3
0710	10	0000	감자(냉동)	1,312	1.9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1,326	1.9
0711	90	5099	기타 채소(일시저장)	7,759	11.1
		9000	채소류 혼합물(일시 저장)	14	0.0
0712	90	2093	감자(건조)	240	0.3
		9000	채소류 혼합물 (건조)	350	0.5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 기타(초산조제저장)	6,012	8.6
2004	10	0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냉동)	36,162	51.6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냉동)	4,059	5.8
2005	20	1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크로켓)	77	0.1
		9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기타)	4,127	5.9
계				70,038	100.0

□ 세분화 검토

- 비종자용 감자는 식용이외 전분용, 주정용, 사료용 등으로 사용되므로 용도에 따른 추가 세분화가 필요
- 특히 기타 채소나 채소 혼합물의 경우 감자의 수입관리를 위한 세분화도 필요(감자와 기타, 또는 감자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

□ 비종가세 검토

- 감자의 경우 종량세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 계절관세 검토

- 감자의 성출하기는 하우스감자를 고려할 경우 4~8월까지로 이를 기준으로 계절관세 활용을 고려

□ 개편방안

<표 4-2-61> 감자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1	10	0000	감자(신선/냉장, 종자용)	304	-
	90	0000	감자(신선/냉장, 기타) - 생식용 - 전분용 - 주정용 - 기타	304	-
0710	10	0000	감자(냉동) - 생식용 - 전분용 - 주정용 - 기타	27	-
	90	0000	채소 혼합물(냉동) - 감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그 외	27	-
0711	90	5099	기타 채소(일시저장) - 감자 - 그 외	27	-
		9000	채소류 혼합물(일시 저장) - 감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그 외	27	-
0712	90	2093	감자(건조) - 식용 - 전분용 - 주정용 - 기타	27	-
		9000	채소류 혼합물 (건조) - 감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그 외	27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 기타(초산조제저장) - 감자	36	-

- -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 그 외		
2004	10	0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냉동) - 식용 - 전분용 - 주정용 - 기타	18	-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냉동) - 감자 - 그 외	31.5	-
2005	20	1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크로켓)	54	-
		9000	감자(초산이외 조제저장/기타) - 식용 - 전분용 - 주정용 - 기타	31.5	-

⑨ 양파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관세가 135%인 신선·냉장 양파와 건조양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7% 내외의 관세 수준
- 총량세는 고관세 대상인 신선·냉장 및 건조 양파에 한해 적용

<표 4-2-62> 양파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0703	10	1000	양파(신선/냉장)	135	180
0710	80	1000	양파(냉동)	27	-
	90	0000	채소류 혼합물(냉동)	27	-
0711	90	5099	기타 채소(일시 저장 처리)	27	-
		9000	채소 혼합물 (일시 저장 처리)	27	-
0712	20	0000	양파(건조)	135	180
	90	9000	채소 혼합(건조)	27	-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2001	90	9070	양파(초산 조제 저장)	54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 저장/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 저장/기타)	22.9	-

□ 세번별 수입

- 양파 수입은 신선·냉장이 핵심
- 다만 일시저장 처리 채소와 2004~05류 수입에서 양파가 포함될 가능성은 존재

<표 4-2-63> 양파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3	10	1000	양파(신선/냉장)	9,411	27.4
0710	80	1000	양파(냉동)	528	1.5
	90	0000	채소류 혼합물(냉동)	1,326	3.9
0711	90	5099	기타 채소(일시 저장 처리)	7,759	22.6
		9000	채소 혼합물 (일시 저장 처리)	14	0.0
0712	20	0000	양파(건조)	2,081	6.1
	90	9000	채소 혼합(건조)	350	1.0
2001	90	9070	양파(초산 조제 저장)	179	0.5
2004	90	9000	채소혼합물(초산이외조제저장/냉동)	4,059	11.8
2005	99	9000	기타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기타)	8,641	25.2
			계	34,347	100.0

□ 세분화 검토

- 양파 자체는 비교적 세분화가 잘 되어 있음. 다만 추가적으로 생식용과 식용 가공용으로 구분은 검토할 필요
- 채소 혼합물과 기타 조제채소의 경우 양파를 중심으로 한 세분은 필요

- -

□ 비종가세 검토

- 신선·냉장과 건조 양파에 대해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 필요

□ 계절관세 검토

- 양파의 성출하기는 품종(극조생종, 만생종 등)에 따라 4~9월 중순임을 고려하여 비종가세와 결부된 계절관세 활용

□ 개편방안

<표 4-2-64> 양파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3	10	1000	양파(신선/냉장) - 생식용 · 수입시기가 4~9월 중순 · 그 외 - 식용가공용 - 기타	135	180
0710	80	1000	양파(냉동) - 생식용 · 수입시기가 4~9월 중순 · 그 외 - 식용가공용 - 기타	27	-
	90	0000	채소류 혼합물(냉동) - 양파가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7	-
0711	90	5099	기타 채소(일시 저장 처리) - 양파가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7	-
		9000	채소 혼합물 (일시 저장 처리) - 양파가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7	-
0712	20	0000	양파(건조) - 생식용 · 수입시기가 4~9월 중순 · 그 외 - 식용가공용 - 기타	135	180
	90	9000	채소 혼합(건조) - 양파가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7	-
2001	90	9070	양파(초산 조제 저장) - 생식용 · 수입시기가 4~9월 중순	54	-

- -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 그 외 - 식용가공용 - 기타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 저장/냉동) - 양파가 주성분인 경우 - 기타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 저장/기타) - 양파가 주성분인 경우 - 기타	22.9	-

⑩ 버섯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버섯은 신선/냉장의 경우 품종별로 비교적 세번이 잘 분류되어 있음.
- 그러나 냉동은 상대적으로 세분화가 미흡
- 관세는 대개 40.5%이나 일부는 27, 54%, 90%(표고)

<표 4-2-65> 버섯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0709	51	7000	양송이(신선/냉장)	40.5	1,570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 버섯(신선/냉장)	40.5	1,586
	59	1000	송이(신선/냉장)	40.5	7,478
		2000	표고(신선/냉장)	90	1,625
		3000	영지(신선/냉장)	54	2,354
		4000	느타리(신선/냉장)	40.5	1,586
		5000	팽이(신선/냉장)	40.5	1,586
		6000	송로(신선/냉장)	27	-
		9000	기타 버섯(신선/냉장)	40.5	1,586
0710	80	6000	송이(냉동)	27	-
		9000	기타 채소(냉동)	27	-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27	-

- -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0711	51	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일시 저장)	40.5	-
	59	1000	송로(일시 저장)	27	-
		9000	기타 버섯과 송로(일시 저장)	40.5	-
	90	9000	채소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31	1000	양송이(건조)	40.5	1,570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 버섯(건조)	40.5	1,586
	32	0000	목이 버섯(건조)	40.5	1,586
	33	0000	젤리균류(건조)	40.5	1,586
	39	1010	송이(신선/냉장)	40.5	7,478
		1020	표고(신선/냉장)	90	1,625
		1030	영지(신선/냉장)	54	2,354
		1040	느타리(신선/냉장)	40.5	1,586
		1050	팽이(신선/냉장)	40.5	1,586
		1090	기타 버섯(건조)	40.5	1,586
		2000	송로(건조)	27	-
0712	90	9000	혼합채소(건조)	27	-
2001	90	9090	기타 초산조제 처리 채소	36	-
2003	10	4000	양송이(초산이외조제저장)	47.2	-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47.2	-
	20	0000	송로(초산이외 조제저장)	30	-
	90	1000	표고(초산이외 조제저장)	47.2	-
		2000	송이(초산이외 조제저장)	47.2	-
		9000	기타(초산이외 조제저장)	47.2	-
2005	99	9000	기타조제채소(초산이외, 비냉동)	22.9	-

□ 세번별 수입

- 신선/냉장은 송이와 표고, 냉동은 송이, 건조는 기타 양송이, 표고, 영지가 초산이외 조제저장은 양송이, 표고, 기타버섯이 수입의 핵심

- -

<표 4-2-66> 버섯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9	51	7000	양송이(신선/냉장)	2	0.0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 버섯(신선/냉장)	-	-
	59	1000	송이(신선/냉장)	1,312	2.4
		2000	표고(신선/냉장)	1,086	2.0
		3000	영지(신선/냉장)	56	0.1
		4000	느타리(신선/냉장)	-	-
		5000	팽이(신선/냉장)	-	-
		6000	송로(신선/냉장)	41	0.1
		9000	기타 버섯(신선/냉장)	21	0.0
0710	80	6000	송이(냉동)	4,132	7.6
		9000	기타 채소(냉동)	10,573	19.7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1,326	2.4
0711	51	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일시 저장)	-	-
	59	1000	송로(일시 저장)	10	0.0
		9000	기타 버섯과 송로(일시 저장)	177	0.3
	90	9000	채소혼합물(일시 저장)	14	0.0
0712	31	1000	양송이(건조)	159	0.3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 버섯(건조)	1,084	2.0
	32	0000	목이 버섯(건조)	672	1.2
	33	0000	젤리균류(건조)	7	0.0
	39	1010	송이(건조)	3	0.0
		1020	표고(건조)	4,997	9.2
		1030	영지(건조)	546	1.0
		1040	느타리(건조)	54	0.1
		1050	팽이(건조)	-	-
		1090	기타 버섯(건조)	623	1.1
		2000	송로(건조)	465	0.9
0712	90	9000	혼합채소(건조)	350	0.6
2001	90	9090	기타 초산조제 처리 채소	6,012	11.0
2003	10	4000	양송이(초산이외조제저장)	8,138	14.9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15	0.2
	20	0000	송로(초산이외 조제저장)	52	0.1
	90	1000	표고(초산이외 조제저장)	2,408	4.4
		2000	송이(초산이외 조제저장)	46	0.1
		9000	기타버섯(초산이외 조제저장)	1,254	2.3
2005	99	9000	기타조제채소(초산이외, 비냉동)	8,641	15.8
			계	54,551	100.0

- -

□ 세분화 검토

- 생산이 늘고 있는 새송이를 구분할 필요
- 버섯의 종류별로 세분화가 미흡한 초산조제 및 초산이외 조제채소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생산액이 큰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팽이와 수입액이 큰 표고, 영지 중심)

□ 비종가세 검토

- 대부분의 핵심 버섯은 종량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

□ 계절관세 검토

- 버섯의 성출하기 보다는 수입수요를 고려한 계절관세 부과를 검토

□ 개편방안

<표 4-2-67> 버섯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9	51	7000	양송이(신선/냉장)	40.5	1,570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 버섯(신선/냉장)	40.5	1,586
	59	1000	송이(신선/냉장) - 송이 - 새송이	40.5	7,478
		2000	표고(신선/냉장)	90	1,625
		3000	영지(신선/냉장)	54	2,354
		4000	느타리(신선/냉장)	40.5	1,586
		5000	팽이(신선/냉장)	40.5	1,586
		6000	송로(신선/냉장)	27	-
		9000	기타 버섯(신선/냉장) - 송이 - 새송이 - 기타	40.5	1,586
0710	80	6000	송이(냉동) - 송이 - 새송이	27	-
		9000	기타 채소(냉동) - 송이	27	-

- -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 새송이 - 양송이 - 표고 - 영지 - 느타리 - 기타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 버섯이 주 성분인 것 · 송이 · 새송이 · 양송이 · 표고 · 영지 · 느타리 - 그외	27	-
0711	51	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일시 저장)	40.5	-
	59	1000	송로(일시 저장)	27	-
		9000	기타 버섯과 송로(일시 저장)	40.5	-
	90	9000	채소혼합물(일시 저장)	27	-
0712	31	1000	양송이(건조)	40.5	1,570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 버섯(건조)	40.5	1,586
	32	0000	목이 버섯(건조)	40.5	1,586
	33	0000	젤리균류(건조)	40.5	1,586
	39	1010	송이(신선/냉장)	40.5	7,478
		1020	표고(신선/냉장)	90	1,625
		1030	영지(신선/냉장)	54	2,354
		1040	느타리(신선/냉장)	40.5	1,586
		1050	팽이(신선/냉장)	40.5	1,586
		1090	기타 버섯(건조)	40.5	1,586
		2000	송로(건조)	27	-
0712	90	9000	혼합채소(건조) - 표고가 주성분이 인 것 - 목이가 주성분이 인 것 - 기타	27	-
2001	90	9090	기타 초산조제 처리 채소	36	-
2003	10	4000	양송이(초산이외조제저장)	47.2	-
		9000	기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47.2	-

- -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20	0000	송로(초산이외 조제저장)	30	-
	90	1000	표고(초산이외 조제저장)	47.2	-
		2000	송이(초산이외 조제저장) - 송이 - 새송이	47.2	-
		9000	기타(초산이외 조제저장) - 송이 - 새송이 - 표고 - 영지 - 느타리 - 팽이 - 기타	47.2	-
2005	99	9000	기타조제채소(초산이외, 비냉동)	22.9	-

㉑ 참깨, 들깨, 땅콩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참깨와 그 분획물의 관세는 630%, 땅콩도 230.5%로 고관세
- 그러나 땅콩유는 27%로서 관세부조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참깨나 참기름은 종량세 부과가 가능

<표 4-2-68> 참깨, 들깨, 땅콩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1207	40	0000	참깨	630	6,660
	99	1000	들깨	54	-
1202	10	0000	땅콩(미탈각)	230.5	-
	20	0000	땅콩(탈각)	230.5	-
1508	10	0000	땅콩유(조유)	27	-
	90	1000	땅콩유(정제유)	27	-
		9000	땅콩유(기타)	27	-
1515	50	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12,060
	90	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1516	20	1010	땅콩유와 그 분획물(수소첨가)	36	-
		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수소첨가)	36	-
		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수소첨가)	36	-

□ 세번별 수입

- 수입의 핵심은 원료인 참깨
- 그러나 참깨 수입은 대부분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이 경우 적용 관세율은 40%
- 참깨의 관세부조화가 우려되는 참기름과 그 분획물(수소 첨가)의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4-2-69> 참깨, 들깨, 땅콩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1207	40	0000	참깨	80,411	77.5
	99	1000	들깨	19,417	18.7
1202	10	0000	땅콩(미탈각)	232	0.2
	20	0000	땅콩(탈각)	1,359	1.3
1508	10	0000	땅콩유(조유)	20	0.0
	90	1000	땅콩유(정제유)	33	0.0
		9000	땅콩유(기타)	27	0.0
1515	50	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170	1.1
	90	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1,103	1.1
1516	20	1010	땅콩유와 그 분획물(수소첨가)	1	0.0
		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수소첨가)	5	0.0
		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수소첨가)	0	0.0
			계	103,778	100.0

□ 세분화 검토

- 참깨는 시장접근물량과 그이외의 물량 구분을 위해 세번을 분리할 필요
- 아울러 참깨를 수입해 국산 참깨나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 기타 식용과 비식용으로의 구분도 검토 필요

- -

- 한편 땅콩유는 조유, 정제유 기타 등의 구분보다는 순도를 기준으로 세분하는 것을 검토
- 참기름과 분획물은 기름과 분획물을 구분

□ 비종가세 검토

- 참깨에 대해 선택세(종량세/종가세)를 최대한 활용

□ 계절관세 검토

- 참깨의 성출하기는 10월로 10~12월을 기준으로 계절관세 활용
- 땅콩의 성출하기는 11월로 10~12월을 기준으로 계절관세 활용

□ 개편방안

<표 4-2-70> 참깨, 들깨, 땅콩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1207	40	0000	참깨 - 생식용 - 착유용 · 수입시기가 10~12월 · 그 외 - 기타	630	6,660
	99	1000	들깨 - 생식용 - 착유용 - 기타	54	-
1202	10	0000	땅콩(미탈각) - 생식용 - 착유용 - 기타	230.5	-
	20	0000	땅콩(탈각) - 생식용 - 착유용 - 기타	230.5	-
1508	10	0000	땅콩유(조유) - 특정 산도 이상 - 특정 산도 미만	27	-
	90	1000	땅콩유(정제유) - 특정 산도 이상 - 특정 산도 미만	27	-
		9000	땅콩유(기타) - 특정 산도 이상 - 특정 산도 미만	27	-
1515	50	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 참기름	630	12,060

- -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 특정 순도 이상 · 특정 순도 미만 - 분획물		
	90	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 들기름 - 분획물	36	-
1516	20	1010	땅콩유와 그 분획물(수소첨가)	36	-
		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수소첨가)	36	-
		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수소첨가)	36	-

⑫ 호박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건조 호박(54%)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27%

<표 4-2-71> 호박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종가세 (%)	종량세 (원/kg)
0709	90	3000	호박(신선/냉장)	27	
0710	80	9000	기타채소(냉동)	27	-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27	-
0712	90	2050	호박(건조)	54	-
	90	9000	채소혼합물(건조)	27	-
2001	90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처리)	36	-
2004	90	9000	채소혼합물(초산이외조제/냉동)	45	
2005	99	9000	기타채소(초산이외조제/비냉동)	22.9	

□ 세번별 수입

- 수입은 신선·냉장의 호박이 핵심임
-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조 호박의 수입은 미미

- -

<표 4-2-72> 호박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9	90	3000	호박(신선/냉장)	10,229	24.3
0710	80	9000	기타채소(냉동)	10,753	25.5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1,326	3.1
0712	90	2050	호박(건조)	738	1.8
	90	9000	채소혼합물(건조)	350	0.8
2001	90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처리)	6,012	14.3
2004	90	9000	채소혼합물(초산이외조제/냉동)	4,059	9.6
2005	99	9000	기타채소(초산이외조제/비냉동)	8,641	20.5
			계	42,108	100.0

□ 세분화 검토

- 신선호박의 경우 품종이나 크기, 색깔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 애호박, 쥬키니, 단호박, 늙은 호박, 풋호박, 약호박 등
 - 진호박, 자호박, 연자호박, 연청호박, 청호박, 녹호박, 적호박 등
- 기타 채소나 채소혼합물로도 호박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비종가세 검토

- 비종가세 활용은 어려움

□ 계절관세 검토

- 호박의 성출하기는 촉성의 경우 3월, 반촉성은 5월, 조숙재배는 6월이고, 이후 7월과 10~12월에 억제 재배한 호박이 출하됨.
- 호박 역시 시설호박이 생산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절관세 검토시 10~12월, 3, 5, 6월을 고려해야 함.

□ 개편방안

- -

<표 4-2-73> 호박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0709	90	3000	호박(신선/냉장) - 품종에 따른 세분류 필요 (예: 애호박, 풋호박, 쥬키니, 단호박, 약호박, 늙은 호박 등)	27	
0710	80	9000	기타채소(냉동) - 호박 - 기타	27	-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 호박이 주성분인 것 - 기타	27	-
0712	90	2050	호박(건조)	54	-
	90	9000	채소혼합물(건조)	27	-
2001	90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처리) - 호박 - 기타	36	-
2004	90	9000	채소혼합물(초산이외조제/냉동) - 호박이 주성분인 것 - 기타	45	
2005	99	9000	기타채소(초산이외조제/비냉동) - 호박 - 기타	22.9	

⑬ 파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건조 파(54%)를 대개는 27% 관세수준
- 신선·냉장은 파를 쪽파와 구분하고 있으나 이후 1차 가공부터는 미구분

<표 4-2-74> 파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0703	10	2000	쪽파(신선/냉장)	27	-
	90	1000	리크(신선/냉장)	27	-
		9000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냉장)	27	-
0710	80	9000	기타채소(냉동)	27	-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27	-
0711	90	5099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27	-
		9000	채소혼합물(일시저장처리)	27	-
0712	90	2030	파(건조)	54	-
	90	9000	채소혼합물(건조)	27	-

- -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2001	90	9010	쪽파(초산조제처리)	30	-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처리)	36	-
2004	90	9000	채소혼합물(초산이외조제/냉동)	45	-
2005	99	9000	기타채소(초산이외조제/비냉동)	22.9	-

□ 세번별 수입

- 건조파가 수입의 핵심

<표 4-2-75> 파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3	10	2000	쪽파(신선/냉장)	669	1.3
	90	1000	리크(신선/냉장)	96	0.2
		9000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냉장)	1,872	3.7
0710	80	9000	기타채소(냉동)	10,573	21.1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1,326	2.6
0711	90	5099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7,759	15.2
		9000	채소혼합물(일시저장처리)	14	0.0
0712	90	2030	파(건조)	9,429	18.5
	90	9000	채소혼합물(건조)	350	0.7
2001	90	9010	쪽파(초산조제처리)	1	0.0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처리)	6,012	11.8
2004	90	9000	채소혼합물(초산이외조제/냉동)	4,059	8.0
2005	99	9000	기타채소(초산이외조제/비냉동)	8,641	16.9
계				50,979	100.0

□ 세분화 검토

- 파를 크기(길이 또는 구경)나 품종에 따라 쪽파이외 대파, 실파 등으로 보다 세분
- 기타 채소나 채소 혼합물을 파로 세분

□ 비증가세 검토

- 적용이 사실상 불가

□ 계절관세 검토

- 파는 전국적으로 생산되며, 김장과 연계해 11월이 출하 피크를 이루지만 3월부터 9월까지도 출하되어 계절관세 적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

□ 개편방안

<표 4-2-76> 파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 관세	
				증가세 (%)	종량세 (원/kg)
0703	10	2000	쪽파(신선/냉장)	27	-
	90	1000	리크(신선/냉장) - 대파 - 실파	27	-
		9000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냉장)	27	-
0710	80	9000	기타채소(냉동) - 파 - 기타	27	-
	90	0000	채소혼합물(냉동)	27	-
0711	90	5099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 파 - 기타	27	-
		9000	채소혼합물(일시저장처리) - 파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그 외	27	-
0712	90	2030	파(건조)	54	-
	90	9000	채소혼합물(건조) - 파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그 외	27	-
2001	90	9010	쪽파(초산조제처리)	30	-
		9090	기타식용식물(초산조제처리) - 파 - 기타	36	-
2004	90	9000	채소혼합물(초산이외조제/냉동) - 파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 - 그 외	45	-
2005	99	9000	기타채소(초산이외조제/비냉동) - 파 - 기타	22.9	-

⑭ 채두류

□ 현행 관세구조 및 관세율

- 녹두(607.5%), 팥(420.8%)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27% 관세수준

- -

<표 4-2-77> 채두류 관세구조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총량세 (원/kg)
0708	10	0000	완두(신선/냉장)	27	-
	20	0000	콩(신선/냉장)	27	-
	90	0000	기타 채두류(신선/냉장)	27	-
0710	21	0000	완두(냉동)	27	-
	22	0000	콩(냉동)	27	-
	29	0000	기타 채두류(냉동)	27	-
0713	10	1000	완두(종자용)	27	-
		2000	완두(사료용)	27	-
		9000	완두(기타)	27	-
	31	1000	녹두(종자용)	607.5	-
		9000	녹두(기타)	607.5	-
	32	1000	팥(종자용)	420.8	-
		9000	팥(기타)	420.8	-
	33	1000	강낭콩(종자용)	27	-
		9000	강낭콩(기타)	27	-
	39	0000	기타 콩	27	-
2005	40	0000	완두(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31.5	-
	51	1000	녹두(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22.9	-
		2000	팥(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22.9	-
		9000	콩(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22.9	-
	59	1000	녹두(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31.5	-
		2000	팥(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31.5	-
		3000	콩(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31.5	-

□ 세번별 수입

- 채두류 수입은 팥, 강낭콩, 완두, 콩이 핵심임.
- 팥은 관세가 높은 건조보다는 초산이외 조제저장 팥의 수입도 중요

- -

<표 4-2-78> 채두류 수입실적(2005~2008)

세번			품 목	수입실적(2005~08)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0708	10	0000	완두(신선/냉장)	5	0.0
	20	0000	콩(신선/냉장)	10	0.0
	90	0000	기타 채두류(신선/냉장)	15	0.0
0710	21	0000	완두(냉동)	143	0.4
	22	0000	콩(냉동)	1,484	4.4
	29	0000	기타 채두류(냉동)	840	2.5
0713	10	1000	완두(종자용)	141	0.4
		2000	완두(사료용)	30	0.1
		9000	완두(기타)	1,382	4.1
	31	1000	녹두(종자용)	0	0
		9000	녹두(기타)	1,566	4.6
	32	1000	팥(종자용)	0	0
9000		팥(기타)	12,407	36.5	
2005	33	1000	강낭콩(종자용)	11	0.0
		9000	강낭콩(기타)	5,480	16.1
	39	0000	기타 콩	2,172	6.4
	40	0000	완두(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102	0.3
		51	1000	녹두(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29
2000		팥(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2,494	7.3	
59	9000	콩(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1,460	4.3	
		녹두(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3	0.0	
	2000	팥(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4,074	12.0	
		3000	콩(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147	0.4
			계	33,992	100.0

세분화 검토

- 채두류는 종자용과 기타로 나누고 기타를 다시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 콩은 품종에 따라 세분할 필요(예: 황색 동근콩, 녹색콩, 쥐눈이콩, 갈색 얼룩이콩 등)

비종가세 검토

-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

계절관세 검토

- 콩, 팥, 녹두는 전작작물로 10월부터 11월까지가 성출하기임. 이를 고려하여 계절관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

- -

□ 개편방안

<표 4-2-79> 채두류 개편방안

세번			품 목	양허관세	
				증가세 (%)	증량세 (원/kg)
0708	10	0000	완두(신선/냉장)	27	-
	20	0000	콩(신선/냉장) - 품종에 따라 세분	27	-
	90	0000	기타 채두류(신선/냉장) - 품종에 따라 세분	27	-
0710	21	0000	완두(냉동)	27	-
	22	0000	콩(냉동) - 품종에 따라 세분	27	-
	29	0000	기타 채두류(냉동) - 품종에 따라 세분	27	-
0713	10	1000	완두(종자용)	27	-
		2000	완두(사료용)	27	-
		9000	완두(기타) - 식용 - 가공용	27	-
	31	1000	녹두(종자용)	607.5	-
		9000	녹두(기타) - 식용 - 가공용	607.5	-
	32	1000	팥(종자용)	420.8	-
		9000	팥(기타) - 식용 - 가공용	420.8	-
	33	1000	강낭콩(종자용)	27	-
		9000	강낭콩(기타) - 식용 - 가공용	27	-
	39	0000	기타 콩 - 품종에 따라 세분	27	-
2005	40	0000	완두(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 식용 - 가공용	31.5	-
	51	1000	녹두(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 식용 - 가공용	22.9	-
		2000	팥(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 식용 - 가공용	22.9	-
		9000	콩(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 식용 - 가공용	22.9	-
	59	1000	녹두(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 식용 - 가공용	31.5	-
		2000	팥(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 식용 - 가공용	31.5	-
		3000	콩(비탈각/초산이외조제저장/비냉동) - 식용 - 가공용	31.5	-

3. 요약 및 정책제안

-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채소류에는 계절관세 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관세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계절별로 관세차이를 둘 수 없다고 해도 국산 채소류의 성출하기가 아닌 계절에 수입되는 경우 관세인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관세인하에 대비하는 성격
 - 특히 종량세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절적으로 국내산 채소의 성출하기에 종량세를 활용하여 저가의 수입산에 대한 국경보호효과 제고 가능
- 종량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계절관세와 연계해 운용하되 종가세와의 국경보호효과에 대한 사전적 비교 필요
- 채소류에 대한 세번 세분화를 적절히 활용
 - 소매용 여부, 식용 여부, 공업용 여부, 크기나 품종에 따라 세분화하되 특이 기타로 분류된 세번이나 혼합채소의 경우 중요 채소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세분화하여 수입관리와 함께 관세인하에 대비
 - 아울러 신선·냉장 품목에 대한 세분화 정도와 이들의 1차 가공품의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아래 일치성이 유지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주요 채소 및 특작류에 대한 관세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1) 고추

- 세분화 검토
 - 생산이 늘고 있는 풋고추와의 구분은 필요
 - 냉동고추의 세분화를 통해 관세부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27%인 냉동고추의 양허관세를 세분화를 통해 상향조정하기란 양허재 협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양허관세 인상의 어려움)¹⁴⁾

14) 다만 DDA의 이행계획서 제출시 양허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이해당사국과 양자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다만 간접적으로 용도를 구분해 냉동고추가 해동 이후 직접 생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식용 가공용(예: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등의 원료로 사용)들어가는 경우를 세분해 사후 수입관리(통관이후 국내유통 포함) 차원에서 국내유통관리 제도와 연계해 부정유통에 의한 간접적 제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할 것임.

□ 계절관세

- 노지고추의 성출하기는 9월부터 11월 하순(단 반축성은 5월 중순~9월 중순)
- 한편 노지고추 및 냉동고추의 월별 수입추세를 보면
 - i) 노지고추 수입은 국내산 노지고추의 성출하기에는 현저히 적은 반면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수입이 대부분(단 2월은 예외)
 - ii) 냉동고추의 경우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입이 중요
- 따라서 노지고추의 경우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그리고 냉동고추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계절관세를 운용을 검토하되, 해당 기간에는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을 추진

□ 추가 고려사항

- 2103. 90. 9090(혼합조미 조제품)
- 2104. 20. 0000(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등은 고추 성분의 포함 유무에 따라 세분화 필요

2) 배추

□ 세분화 검토

- 노지배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먼저 단순 1차 가공된 배추와 양배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즉, 기타채소(냉동, 일시 저장, 건조)의 경우 배추, 양배추, 기타 등 3개로 세분하고, 채소혼합물은 주성분이 배추인 경우와 주 성분이 양배추인 경우, 기타인 경우로 세분하여 배추 및 양배추의 수입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 또한 꽃양배추와 브로콜리도 구분

- -

□ 비종가세 검토

- 종량세 부과는 건조 양배추만 가능하므로 계절관세와 연계하여 국내 양배추 성출하기를 고려하여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을 검토

□ 계절관세 검토

- 배추의 성출하기는 봄 재배의 경우 6월 중순, 고랭지 및 가을재배의 경우 7월 부터 12월 상순이므로 6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절관세 적용

□ 추가 검토사항

- 2001. 90. 9030 꽃양배추(초산 조제저장) 30%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 조제저장) 36%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1000 김치(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배추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꽃양배추안에서도 브로콜리를 구분)채소 혼합물도 배추를 주 성분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세분

3) 토마토

□ 세분화 검토

-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방울토마토와의 구분 필요
- 아울러 배추와 마찬가지로 기타 채소(냉동, 일시저장, 건조)도 미세분화로 토마토의 수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토마토와 기타로 세분하고, 채소 혼합물도 주성분이 토마토인 경우와 기타로 세분

□ 비종가세 검토

- 종량세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 계절관세 검토

- 토마토의(방울 토마토 포함) 성출하기는 2월 상순부터 7월 중순 이므로 1월 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필요시 계절관세 적용

- -

□ 추가 검토사항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 조제저장) 36%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기타 채소는 토마토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은 토마토를 주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4) 오이

□ 세분화 검토

- 길이에 따라 구분 필요(오이와 서양오이 구분 가능)
- 기타 채소(냉동, 건조)의 경우 오이에 대한 수입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이와 기타로 세분하고, 채소 혼합물이나 기타 식용식물도 주성분이 오이인 경우와 기타인 경우로 세분

□ 비종가세 검토

- 일시 저장 오이에 한해 종량세 적용 가능

□ 계절관세 검토

- 오이는 대부분 시설작물로 성출하기는 2~6월과 12월 상순으로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를 고려하여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계절관세 적용을 검토

□ 추가 검토사항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기타 채소는 오이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은 오이를 주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

5) 마늘

□ 세분화 검토

- 고추와 같이 냉동 및 초산마늘의 세번 세분화를 통해 관세부조화 문제를 해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종량세 활용도 어려움.
- 다만 채소혼합물(냉동, 건조, 초산조제)은 주성분이 마늘인 경우가 구분되도록 세분화 필요

□ 비종가세 검토

- 신선·냉장 마늘과 일시저장 및 건조 마늘에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

□ 계절관세 검토

- 마늘의 성출하기는 3월 하순부터 5월 중순, 10월 상순~11월 하순임
- 한편 신선/냉장 마늘(비탈피)의 경우 수입은 주로 8~12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냉동마늘은 월별 수입의 특성이 없음.

□ 추가 검토사항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 기타 채소는 마늘과 기타로 구입 마늘의 수입관리가 필요하며, 채소혼합물도 동일

6) 무

□ 세분화 검토

- 기타 채소(냉동, 일시 저장, 초산조제저장)에서 무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무와 기타로 세분
- 필요시 무를 다시 세분하여 무와 알타리 무로 구분

□ 비종가세 검토: 건조무에 한해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 가능

- -

□ 계절관세 검토

- 무 성출하기는 7~12월이며, 시설재배 무의 경우 4월 중순~6월 중순임.
- 4~12월을 기준으로 필요시 계절관세 적용 검토

□ 추가 검토사항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 기타 채소는 무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은 무를 주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7) 고구마

□ 세분화 검토

- 냉동 고구마를 식용, 주정용, 전분용으로 구분하고, 식용의 경우 모양에 따라 펠리트나 그 이외의 형태로 세분
- 기타 서류도 고구마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 비종가세 검토: 신선 고구마에 한해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 가능

□ 계절관세 검토

- 고구마의 성출하기는 10~12월이므로 9월~이듬해 1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절관세 활용을 검토

□ 추가 검토사항

- 2001. 90. 9090 기타 식용식물(초산조제 저장) 36%
 - 2004. 90. 9000 기타 채소혼합물(초산이외 조제저장, 냉동) 31.5%
 - 2005. 99. 9000 기타 채소(초산이외 조제저장, 비냉동) 22.9%
- ⇒ 기타 채소는 고구마와 기타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혼합물도 유사하게 세분

- -

8) 감자

세분화 검토

- 비종자용 감자는 식용이외 전분용, 주정용, 사료용 등으로 사용되므로 용도에 따른 추가 세분화가 필요
- 특히 기타 채소나 채소 혼합물의 경우 감자의 수입관리를 위한 세분화도 필요(감자와 기타, 또는 감자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비종가세 검토

- 감자의 경우 종량세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계절관세 검토

- 감자의 성출하기는 하우스감자를 고려할 경우 4~8월까지로 이를 기준으로 계절관세 활용을 고려

9) 양파

세분화 검토

- 양파 자체는 비교적 세분화가 잘 되어 있음. 다만 추가적으로 생식용과 식용 가공용으로 구분은 검토할 필요
- 채소 혼합물과 기타 조제채소의 경우 양파를 중심으로 한 세분은 필요

비종가세 검토

- 신선·냉장과 건조 양파에 대해 선택세(종량세/종가세) 적용 필요

계절관세 검토

- 양파의 성출하기는 품종(극조생종, 만생종 등)에 따라 4~9월 중순임을 고려하여 비종가세와 결부된 계절관세 활용

- -

10) 버섯

세분화 검토

- 생산이 늘고 있는 새송이를 구분할 필요
- 버섯의 종류별로 세분화가 미흡한 초산조제 및 초산이외 조제채소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생산액이 큰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팽이와 수입액이 큰 표고, 영지 중심)

비종가세 검토

- 대부분의 핵심 버섯은 종량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

계절관세 검토

- 버섯의 성출하기 보다는 수입수요를 고려한 계절관세 부과를 검토

11) 참깨, 들깨, 땅콩

세분화 검토

- 참깨는 시장접근물량과 그이외의 물량 구분을 위해 세번을 분리할 필요
- 아울러 참깨를 수입해 국산 참깨나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 기타 식용과 비식용으로의 구분도 검토 필요
- 한편 땅콩유는 조유, 정제유 기타 등의 구분보다는 순도를 기준으로 세분하는 것을 검토
- 참기름과 분획물은 기름과 분획물을 구분

비종가세 검토

- 참깨에 대해 선택세(종량세/종가세)를 최대한 활용

계절관세 검토

- 참깨의 성출하기는 10월로 10~12월을 기준으로 계절관세 활용

- -

- 땅콩의 성출하기는 11월로 10~12월을 기준으로 계절관세 활용

12) 호박

세분화 검토

- 신선호박의 경우 품종이나 크기, 색깔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 애호박, 쥬키니, 단호박, 늙은 호박, 풋호박, 약호박 등
 - 진호박, 자호박, 연자호박, 연청호박, 청호박, 녹호박, 적호박 등
- 기타 채소나 채소혼합물로도 호박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경우로 세분

비종가세 검토

- 비종가세 활용은 어려움

계절관세 검토

- 호박의 성출하기는 축성의 경우 3월, 반축성은 5월, 조숙재배는 6월이고, 이후 7월과 10~12월에 억제 재배한 호박이 출하됨.
- 호박 역시 시설호박이 생산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절관세 검토시 10~12월, 3, 5, 6월을 고려해야 함.

13) 파

세분화 검토

- 파를 크기(길이 또는 구경)나 품종에 따라 쪽파이외 대파, 싹파 등으로 보다 세분
- 기타 채소나 채소 혼합물을 파로 세분

비종가세 검토

- 적용이 사실상 불가

- -

□ 계절관세 검토

- 파는 전국적으로 생산되며, 김장과 연계해 11월이 출하 피크를 이루지만 3월부터 9월까지도 출하되어 계절관세 적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14) 채두류

□ 세분화 검토

- 채두류는 종자용과 기타로 나누고 기타를 다시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 콩은 품종에 따라 세분할 필요(예: 황색 동근콩, 녹색콩, 쥐눈이콩, 갈색 얼룩이콩 등)

□ 비종가세 검토: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

□ 계절관세 검토

- 콩, 팥, 녹두는 전작작물로 10월부터 11월까지가 성출하기임. 이를 기준으로 계절관세 적용을 검토

- -

VI. 주요농산물 및 관련품목의 관세체계 및 품목분류 정비방안

제3주제 : 축산·낙농유분야

(서울대학교 임정빈)

- -

1. 연구범위

- 본 연구품목의 범위는 축산물과 낙농제품이다. 축산물은 쇠고기를 비롯하여 돼지고기 그리고 가금육이 해당되며 낙농유 제품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요구르트, 혼합분유, 유장 그리고 버터, 기타의 밀크지와 유, 데어리스프레드 및 치즈와 커드를 중심으로 하였다.
- 축산물은 세계 공통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주요국의 분류 현황과 관세 부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축산물 분야의 개편방안을 각 품목별로 제안하였다.
- 낙농유 제품의 경우 HS 4단위를 기준으로 04류에서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품목과 1702와 1901 품목을 연구품목으로 선정하여 주요 선진국 분류 현황과 관세유형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관세구조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2. 축산 및 낙농유 분야 주요내용

(1) 축산물

1) 쇠고기

가. 세계 공통 분류 기준

- 쇠고기는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음.
 - 02류는 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효소유연처리·다지기·설탕뿌리기 정도의 가공 처리한 것을 두루 포함함.
 - 쇠고기의 경우 이 보다 추가적인 가공이 행해진 경우에는 16류에, 그리고 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5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개 02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다만 동물의 장·방광·위 또는 피 등은 식용여부를 불문하고 5류에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쇠고기 식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함.

- -

- 또한 소시지 등이 포함되는 16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쇠고기 및 관련 가공 산업 등의 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할 것임.

○ 02류 쇠고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2개임.

- 0201호와 0202호는 기본적으로 도체 및 이분도체의 냉장과 냉동, 뼈있는 것의 냉장과 냉동, 그리고 뼈 없는 것의 냉장과 냉동까지 6개의 세번으로 구분됨.
- 냉장 혹은 냉동 여부에 따라 0201호와 0202호로 나뉘는 다음, 다시 각 호들이 3개씩의 소호를 가지는 것임.
- 이밖에도 식용설육이 별도의 호(0206호)로 구분되어 있고, 분과 조분 형태로 가공한 것 역시 별도의 호(0210호)로 구분됨.

<표 4-3-1> 02류 쇠고기 관련 세번 (HS 6단위 기준)

류	호	소호	품목	비고
02	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02	01	10	도체와 이분도체	
02	01	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02	01	30	뼈 없는 것	
02	02		쇠고기 (냉동한 것)	
02	02	10	도체와 이분도체	
02	02	2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02	02	30	뼈 없는 것	
02	06		식용설육	
02	06	10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	
02	06	2	소의 것 (냉동)	
02	06	21	혀	
02	06	22	간	
02	06	29	기타	
02	10		육과 식용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	10	20	쇠고기	

○ 소의 부산물은 대부분 5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시지 등의 가공품은 16류에 포함되어 있음

- 0504.00에서 동물의 장·방광·위 등을 포괄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약용, 공업용 등의 용도로 이들 부위가 쓰이므로 05류로 분류되었음.

- -

- 1601.00에서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1602.50이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중에서 ‘소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1603.00이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규정하여 해당 가공 과정을 거친 소의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음.

나. 주요국 분류 기준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과 쇠고기라는 품목의 공급 및 소비 특성 등에 맞춰 국제기준인 HS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해당 산업 보호 및 수급관리, 정확한 통계 작성 및 정보 전파 등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임.
 - 주요국들은 쇠고기와 관련된 주요 세번인 0201호와 0202호에 국제 기준에 더하여 품질과 가공 상태(소매용 및 특수용도를 위한 가공 포함), 부위와 TRQ 등 다양한 기준을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음. (표 4-3-2 참조)
 - 특히 도체 상태를 이분도체에서 나아가 사분도체까지 분류하고 몸통에서의 위치(앞부분, 뒷부분 등) 등으로 분류하거나 대분할 기준으로서의 부위별 구분까지 포함하여 실제 식육 부위와 정합성을 갖는 경우도 많음.(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

<표 4-3-2> 쇠고기 관련 주요 세번(0201호와 0202호)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 기준	품질	가공	지육 형태	송아지 여부	가축 여부	TRQ	부위
미 국	○	○				○	
E U			○				○
캐나다		○	○	○		○	○
일 본							○
중 국					○		
한 국							○ (갈비)

- -

○ 미국과 캐나다처럼 TRQ를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하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 0201호와 0202호에 많은 세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의 경우 복합세를 부과해 보호효과를 높이고 있었음. (표 4-3-3 참조)

-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34개와 76개의 세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쇠고기 교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이나 중국 역시 한국(8개)보다 많은 세번을 갖고 있었음. 무조건 세번을 분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세번 구분을 통해 수급 관리와 해당 품목 보호 뿐 아니라 통계 작성 및 통상협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좀더 자세히 세번 분류 기준과 현황을 살펴볼 것임.

<표 4-3-3> 주요국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중가세 비중(%)	쿼터 세번수(개)
		증가세	증량세	복합세	선택세		
미 국	34	22	12			35	14
E U	14			14		100	
캐나다	76	76				0	38
일 본	12	12				0	
중 국	12	12				0	
한 국	8	8				0	

① 미국

○ 미국은 공급량, 수출량, 수입량 면에서 공히 세계 쇠고기 시장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쇠고기 시장의 강대국임.

- 2007년 말 기준으로 쇠고기 총 공급량 1위(세계 총 공급량의 약 20%), 수출량 4위 (세계 총 수출량의 8.5%), 그리고 수입량 1위 (세계 총 수입량의 약 19%)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와 관련된 세번 역시 여러 기준을 적용하여 타 국가들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음.

- 신선 또는 냉장(0201호)과 냉동(0202호)이 각각 17개씩 총 34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표 4-3-4 참조)

- -

- 각 호 내에서 ‘도체와 이분도체’, ‘뼈채로 절단한 것’, ‘뼈 없는 것’ 등의 소호 각각을 다시 나라별 쿼터로서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세번과 역시 낮은 관세의 적용을 받는 특수용 및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세번의 세 부류로 구분하였음.
- 또한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두 부류 세번의 경우 소매를 위한 가공여부 및 품질에 따라 더욱 세분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소매용 고급 쇠고기에 대해서는 4%의 관세를, 그리고 소매용 중·저품질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고품질 쇠고기¹⁵⁾보다는 중·저품질 쇠고기가 자국산 쇠고기와 직접적인 대체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4-3-4> 미국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6단위		
0201 (신선 또는 냉장)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3	TRQ
	020120 (뼈채로 절단한 것)	7	TRQ, 가공, 품질
	020130 (뼈 없는 것)	7	TRQ, 가공, 품질
0202 (냉동)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3	TRQ
	020220 (뼈있는 것, 절단)	7	TRQ, 가공, 품질
	020230 (뼈없는 것)	7	TRQ, 가공, 품질

○ 앞서 언급하였듯, 미국은 국가별로 할당된 국별쿼터물량(TRQ)에 따라 별도의 세번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0201호와 0202호 내에 TRQ 관련 별도 세번이 총 14개 존재하며, TRQ 대상 국가들이 이 세번으로 들어와 저율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쇠고기의 총량은 각국가별 TRQ를 초과할 수 없음.
- 즉 TRQ 해당 국가는 위 14개 세번에 포함되는 TRQ 내의 수출량에 대해서는 품질에 따라 4% 혹은 10%의 낮은 관세만 부여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세 번으로 분류되어 26.4%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15) 고품질쇠고기(high-quality beef cuts)는 절단, 가공 상의 특수한 방법이나 형상 등을 의도하였거나 소매 방면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 가공된 쇠고기로 미 농무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있음. 상세한 내용은, "HTS of the US(2009)"의 Additional U.S. Notes 1-(b)를 참조할 것.

- 미국의 TRQ 시스템으로 인해 저율관세의 혜택을 받는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등의 NAFTA 국가를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5 참조)

<표 4-3-5> 미국의 TRQ 대상 국가 및 물량

국가	Quantity (metric ton)	비고
캐나다	No limit	NAFTA
멕시코	No limit	NAFTA
호주	378,214	
뉴질랜드	213,402	
일본	200	
아르헨티나	20,000	
우루과이	20,000	
기타	64,805	

자료: 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2009)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쇠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별도의 분류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 또한 부과하지 않음. 이는 식용설육에 대한 소비 수요가 많지 않아 굳이 분류 및 관세 부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0504호 역시 국제 기준 그대로 단 하나의 세번(0504.00.00)만 무관세로 유지한 채 별도의 추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 있음.
 - 1601호(소시지 등)의 경우 재료가 돼지고기인 경우와 기타 육인 경우, 그리고 밀폐용기에 담긴 쇠고기로 각각 나누어 별도의 세번을 부여하고 있음.
 - 1602호(육류의 기타 조제저장품 등)의 경우도 쇠고기 관련 세번이 6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가공식품이 발달한 미국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② EU

- EU는 0201호와 0202호에 쇠고기와 관련하여 총 14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표 4-3-6 참조)

- 0201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도체와 이분도체, 뼈채로 절단한 것, 그리고 뼈 없는 것까지 세 부류로 구분한 다음, 뼈채로 절단한 것 내에서 다시 사분도체 기준으로 지육 형태 혹은 부위별로 구분하여 앞다리, 목심 등 앞부분과 뒷다리, 우둔 등 뒷부분, 나머지 몸통 부분 및 기타 등에 별도 세번과 세율을 부여함으로써 총 6 종류로 나누고 있음.
- 0202호의 경우도 0201호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따르는데, 더욱이 뼈 없는 것 내에서도 뼈채로 절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분도체, 양지머리·목둘레살, 기타 등을 각각 별도의 세번으로 분리하여 총 8개의 각기 다른 세번과 복합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EU는 0201호와 0202호를 이처럼 지육 형태별(부위별)로 다른 세번과 세율로 분류하여 통계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식생활 패턴 및 유통 동향 등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관세 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또한 복합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종가세 환산 시 실질적으로 고율 관세와 마찬가지로 썸이 되어 보호장치로서의 기능도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음.

<표 4-3-6> EU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6단위		
0201 (신선 또는 냉장)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	-
	020120 (뼈채로 절단한 것)	4	지육 형태
	020130 (뼈 없는 것)	-	-
0202 (냉동)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	-
	020220 (뼈있는 것, 절단)	4	지육 형태
	020230 (뼈없는 것)	3	지육 형태, 부위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쇠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더하여 제약 등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는 설육을 따로 구분하여 총 8개의 세번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관세는 부과하지 않음.
 - 다만 안창살(thin skirt)과 도시살(thick skirt) 등의 특수부위를 가리키는 세번(신선·냉장 시 0206.10.95와 냉동 시 0206.29.91)은 30개월 이상의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규정 제 936/97호¹⁶⁾에 의거하여 동 국가의 고급육 11,500톤에 대한 저관세쿼터를

반영한 특징이 있음.

- 0504호는 국제 기준 그대로 단 하나의 세번(0504.00.00)만 무관세로 유지한 채 별도의 추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 있음.
- 1601호(소시지 등)는 재료로 사용된 고기를 막론하고 부위가 간인 경우와 소시지나 건조한 것, 그리고 기타 등 3개의 세번을 포함하고 있음.
- 1602호(기타 조제저장품 등)의 경우는 조리된 고기나 내장 등의 혼합물과 소금에 절인 쇠고기, 그리고 기타 등으로 쇠고기 관련 세번이 3개로 구분되어 있음.

③ 캐나다

○ 캐나다는 0201호와 0202호에 쇠고기와 관련하여 총 76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표 4-3-7 참조)

- 0201호와 0202호 모두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도체와 이분도체, 뼈채로 절단한 것, 그리고 뼈 없는 것까지 세 부류의 소호로 구분한 다음, 각 소호를 다시 무관세수입물량에 해당되는 세번과 이를 상회하는 물량의 세번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WTO협정이나 NAFTA협정에 따라 캐나다가 TRQ제도 적용을 통해 매년 일정량의 쇠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임.
- 0201호와 0202호의 도체와 이분도체(즉 0201.10과 0202.10)는 무관세수입 및 26.5% 관세 부과 구분 내에서 다시 송아지 고기와 기타로 나뉘짐. 따라서 무관세수입물량인 송아지 고기, 무관세수입물량인 기타 쇠고기, 26.5%의 관세가 부과되는 송아지 고기, 26.5%의 관세가 부과되는 기타 쇠고기 등 0201.10과 0202.20 소호에 각각 4개씩의 품목번호가 존재함.
- 0201호와 0202호의 뼈채로 절단한 것(즉 0201.20과 0202.20) 역시, 무관세수입 및 26.5% 관세 부과 구분 내에서 다시 공히 송아지고기와 기타 가공, 그리고 갈비, 엉덩이, 등심과 안심 등의 허리 고기, 기타 등 6부류로 나뉘어 각 소호가 12개씩, 총 24개에 이르는 품목번호를 가짐.
- 0201호의 뼈 없는 것(즉 0201.30)의 경우 무관세수입 및 26.5% 관세 부과의 구분 내에서 각 10개씩, 총 20개의 세번을 가짐. 대부분 부위별로 나뉘져

16) 유럽연합은 WTO/GATT 일반관세협정을 체결하면서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관세 20%로 연간 5만 3천 톤을 수입하도록 한 바가 있음. 총 5만 7백 톤이 공장제조용 쿼터인데, 이를 유럽연합 규정 제936/97호에 의거 고품질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 및 냉동 버팔로 고기를 위한 관세쿼터로 전환하여, 양허 된 20%보다 낮은 관세로 총 6만 250톤을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규정 제2조(f)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총 1만 1천5백 톤을 할당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30개월 미만의 고급쇠고기만 유럽연합으로 수입될 수 있는 구조임.

있는데, ‘송아지 고기(Veal), 기타 가공(Other, processed), 앞부분(Other, forequarter), 뒷부분(Other, hindquarter), 양지(Brisquet), 목심(Chuck), 갈비(Rib), 엉덩이(Hip), 허리 부분(Loin), 기타(Other)’로 구분됨.

- 0202호의 뼈 없는 것(즉 0202.30)의 경우 무관세수입 및 26.5% 관세 부과의 구분 내에서 더욱 세분하여 각 12개씩, 총 24개의 세 번을 가짐. 이 역시 부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송아지 고기(Veal), 기타 가공(Other, processed), 앞부분(Other, forequarter), 뒷부분(Other, hindquarter), 양지(Brisquet), 목심(Chuck), 갈비(Rib), 옆구리살(Flank), 흉두깨살, 우둔, 설도, 설기살 등의 엉덩이살(Eye of round, outside round, inside round, outside flat and sirloin tip), 기타 엉덩이살(Other, hip), 허리 부분(Loin), 기타(Other)’로 구분됨. 이는 쇠고기 지육의 대분할에 따른 부위 구분에서 그치지 않고 일부 소분할에 따른 세부 부위까지 품목 분류에 반영하고 있는 것임.
- 캐나다는 이처럼 0201호와 0202호 내에서 정책적 수입 사항 및 지육 형태별(부위별)로 다양한 품목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사항을 세번에 반영한 미국과 일정 정도 부위별 품목 구분을 채택한 EU의 세번 분류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임.

<표 4-3-7>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6단위		
0201 (신선 또는 냉장)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4	TRQ, 송아지
	020120 (뼈채로 절단한 것)	12	TRQ, 송아지, 가공, 부위
	020130 (뼈 없는 것)	20	TRQ, 송아지, 가공, 지육형태, 부위
0202 (냉동)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4	TRQ, 송아지
	020220 (뼈있는 것, 절단)	12	TRQ, 송아지, 가공, 부위
	020230 (뼈없는 것)	24	TRQ, 송아지, 가공, 지육형태, 부위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쇠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별도의 분류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 또한 없음. 이는 식용설육이나 기타 부산물에 대한 소비 수요가 많지 않아 굳이 분류와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0504호는 국제 기준에 따른 하나의 세 번(0504.00.00)과 소시지 케이싱 원료(양, 돼지, 기타)에 따른 3개의 세 번, 그리고 기타를 가리키는 세 번까지 총

5개의 세번을 갖고 있어 특별히 쇠고기 관련품목만 분류되는 세번은 따로 없음.

- 1601호(소시지 등)는 제조방법과 저장성, 재료 등을 기본 기준¹⁷⁾으로 삼아 저관세(종량세임.)수입물량과 그렇지 않은 (종가세임.)물량을 구분한 총 17개의 세번을 포함하고 있으며, 쇠고기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칠면조 고기 등과 같이 따로 변별되는 재료로 취급되지는 않은 채 6개의 기타 세번들에 관련되어 있음. 이렇듯 쇠고기가 관련된 6개의 세번들은 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1602호(기타 조제저장품 등)에서는 소의 것을 가리키는 1602.50 세번 내에서 6개 세부품목으로의 구분을 행하고 있음. 즉 조제분(prepared meals)이 스투와 기타를 각각의 세번으로 포함하여 공히 11%의 관세를 지정하고 있고, 캔이나 유리병에 저장된 것(In cans or glass jars)이 런천미트(Luncheon meat)와 콘 비프(Corned beef), 기타를 각각의 세 번으로 포함하여 공히 9.5%의 관세를 지정하고 있음. 그 외 기타 품목의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④ 일본

-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은 1991년 쇠고기 시장 개방 이래 2002년도에 132,045톤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이른바 ‘광우병 사태’ 등으로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면서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추세임.
 - 2007년 말 기준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7만 6천여 톤에 그쳤으며, 국내 생산량 역시 10년 이상 36만~37만 톤 수준에서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음.
 - 부위별로는 앞다리 및 뒷다리살과 갈비, 등심 등의 수입량이 많은데, 이는 국내지방이 많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식습관에 부합하기 때문임.
- 일본은 0201호와 0202호에 쇠고기와 관련하여 냉장과 냉동 각 6개씩 총 12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표 4-3-8 참조)
 - 기본적으로 도체/이분도체와 뼈 있는 것, 그리고 뼈 없는 것의 세 부류로 나뉘나, 뼈 없는 것의 경우 목살과 어깨살, 둔부(우둔 등) / 허리 부분(갈비 등)

17) 소시지는 보통 제조방법과 저장성에 의해 더메스틱(domestic) 소시지와 건조(dry) 소시지로 나뉘며, 이를 다시 원료, 건조, 훈연, 가열 등에 의해 세분하면 그 종류가 약 150여 종에 달함. 캐나다의 1601호는 이런 종류 분류법을 자국의 식문화에 맞춰 포괄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상세 언급을 피함. 상세한 내용은 박형기 외 ‘식육·육제품의 과학과 기술’(2009) 참조.

/ 뱃살 부분(양지 등) / 기타 등 부위별로 4개의 소호를 가지는 것이 특징임.

- 다만 세율에는 차이가 없음.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50%로 모든 세번에 동일하며,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줄곧 하락해 온 잠정세율이 2009년 현재 38.5%로 각 세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이처럼 세번별로 차이가 없는 세율은 세번 분류의 목적이 부위별 교역량 파악이나 통계 집계 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까닭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축산 농가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검역 조치와 수입 중단 등을 통한 행정적 대응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3-8> 일본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6단위		
0201 (신선 또는 냉장)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	-
	020120 (뼈채로 절단한 것)	-	-
	020130 (뼈 없는 것)	4	부위
0202 (냉동)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	-
	020220 (뼈있는 것, 절단)	-	-
	020230 (뼈없는 것)	4	부위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쇠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더하여 타 국가에 비해 소비가 많은 부위를 따로 구분한 결과 총 9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즉 신선/냉장(0206.10)의 경우 불살/머릿살, 혀, 장기(臟器) 기타, 기타 등 4개의 세번으로 나뉘지며, 냉동(0206.2)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 따른 혀와 간장 이외에도, 기타를 불살/머릿살 및 장기(臟器)와 기타로 세분하고 있음.
 - 0504호는 국제 기준을 좀더 세분하여 소의 장과 소의 것(기타)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정확한 동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시지 껍질 용도의 장(臟)에 별도 세번을 부여하고 있으나 모두 관세는 없음.
 - 0206호에 포함되는 장기들과 0504호에 원래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동물의 장/방광/위 등과의 차이 및 관계 파악이 필요함.

- 1601호(소시지 등)는 국제 기준 그대로 단 하나의 세번(1601.00.00)만 10% 관세율로 유지한 채 별도의 추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 있음.
- 1602호(기타 조제저장품 등)의 경우는 소의 것을 가리키는 1602.50 세 번 내에 가공방법과 혼합물, 저장방법 등의 구체적 차이를 기준으로 24개의 세 번된 세번을 두고 있음.

⑤ 중국

- 중국은 0201호와 0202호에 쇠고기와 관련하여 냉장과 냉동 각 6개씩 총 12 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표 4-3-9 참조)
- 기본적으로 도체/이분도체와 뼈 있는 것, 그리고 뼈 없는 것으로 나뉘나, 각각의 경우에 야생 소(wild bovine animals)와 가축 소(bovine animals)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이채로움.

<표 4-3-9> 중국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6단위		
0201 (신선 또는 냉장)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2	가축 여부
	020120 (뼈채로 절단한 것)	2	가축 여부
	020130 (뼈 없는 것)	2	가축 여부
0202 (냉동)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2	가축 여부
	020220 (뼈있는 것, 절단)	2	가축 여부
	020230 (뼈없는 것)	2	가축 여부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쇠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별도의 분류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율 역시 0201호나 0202호와 비슷한 수준임.
 - 0504호에서는 소의 것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에 포함하여 단 하나의 세번으로 다루고 있음.
 - 1601호는 소시지 외피의 재료나 혼합물의 차이 등에 따라 6개의 세번으로 구분하고 있음.

- 1602호에서는 야생소와 가축소, 그리고 밀폐 용기에 넣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기준을 조합하여 4개의 세번을 두고 있음.

다. 우리나라의 HSK 분류 현황 및 문제점

① 우리나라 HSK 분류 현황

- 우리나라는 0201호와 0202호에 쇠고기와 관련하여 8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 (표 4-3-10 참조).
 -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공통기준(도체 및 이분도체의 냉장과 냉동, 뼈있는 것의 냉장과 냉동, 그리고 뼈 없는 것의 냉장과 냉동)을 그대로 수용하여 0201호와 0201호에 쇠고기와 관련하여 단지 6개의 세번만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2009년부터 뼈있는 것 중 갈비를 신설하여 기타와 구분하면서 총 8개의 세번을 갖게 되었음. 이는 쇠고기 부위 중 갈비 수입량이 가장 많은 데서 연유한 품목 구분임.
 - 관세율은 8개의 쇠고기 세번 모두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표 4-3-10> 우리나라의 쇠고기 관련 HS 세번(0201호와 0202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6단위		
0201 (신선 또는 냉장)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	-
	020120 (뼈채로 절단한 것)	2	부위 (갈비)
	020130 (뼈 없는 것)	-	-
0202 (냉동)	020210 (도체와 이분도체)	-	-
	020220 (뼈있는 것, 절단)	2	부위 (갈비)
	020230 (뼈없는 것)	-	-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05류 및 16류에도 쇠고기 부산물 및 가공품의 세번이 존재함.

- -

- 0206호는 국제 기준(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 소의 것 냉동 중 혀, 간, 기타)에 더하여 기타를 국내 소비 패턴에 부합하게 ‘꼬리, 족, 기타’로 구분함으로써 총 6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0504호는 국제 기준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장과 방광 및 위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장이 다시 소의 것과 기타로 나뉘짐. 즉 방광과 위는 다른 동물과 무차별하게 파악되나 장은 곱창 등의 소비를 감안하여 소의 것에 별도의 세번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601호(소시지 등)는 국제 기준에서 규정된 세 번(1601.00)을 둘로 나눠 소시지와 기타로 구분하고 있음. 소시지의 주재료로 쓰이는 육은 보통 돼지고기나 쇠고기지만 이에 대해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음.
 - 1602호(기타 조제저장품 등)의 경우는 소의 것을 가리키는 1602.50 세 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기타의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음.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우족탕, 도가니탕, 장조림 등을 파우치나 캔으로 포장한 것이 많음.
 - 동물의 엑스와 즙을 가리키는 1603호도 우리나라 식문화에 비추어 주목을 요함. 특히 1603.00.1000은 육 엑스를 가리키는데, 우골/우지/우육을 분쇄 혼합한 후 가열하여 추출, 건조한 분말 등이 분류사례에 존재하므로 조미료나 조제식료품용 원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세번별 수입량 추이를 보면, 주로 ‘뼈채 절단 냉동’(0202.20)과 ‘뼈없는 것 냉장’(0201.30), ‘뼈없는 것 냉동’(0202.30)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11> 최근의 세번별 쇠고기 수입 실적

(단위: 톤, 천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도체 (0201, 0202)	냉장	1	6	2	8	-	-
	냉동	15	52	19	47	19	89
뼈채 절단 (0201, 0202)	냉장	6,080	44,720	6,145	44,971	5,977	41,079
	냉동	75,186	206,437	59,278	183,189	68,121	256,828
뼈 없는것 (0201, 0202)	냉장	2,281	140,121	27,553	203,412	26,053	192,354
	냉동	100,464	387,182	126,618	507,761	110,586	469,637
식용 설육 (0206)	신선냉장	580	5,550	618	5,302	714	5,877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허	35.6	252.6	55	280	21	74
	간장	13.2	7.3	-	-	-	-
	꼬리	4,421	16,694	4,954	27,270	4,274	24,346
	족	2,850	6,206	3,404	3,718	934	1,905
	기타	15,551	56,084	15,643	56,101	15,671	58,026
육과 식용 설육 (0210)	건조/훈제	32.3	207	4	28	3	18
	기타	-	-	-	-	-	-
조제 (1602)	밀폐 용기에 넣은 것	16.2	85.2	36	200	51	286
	그 외	66.7	212.2	281	1,023	78	402
	합계	207,593	863,816.3	244,610	1,036,911	232,405	1,050,916

○ 이밖에도, 한-칠레 관세철폐 이행계획과 한-미 FTA 협상 및 한-EU FTA 협상의 이행계획 등이 향후 세번별 쇠고기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칠레 FTA의 경우 ‘소 식용설육(신선/냉장)’의 관세를 2004(16.5%) → 2009(8.3%) → 2013(1.7%) 이후 완전 철폐하게 됨.

- 한-미 FTA의 경우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등 총 6개 세번을 15년 후 폐지하며, 15년차까지 SG 발동이 가능함.

- 족 SG 발동물량을 270만톤에서 354만톤까지 매년 6천톤 증량할 수 있으며, SG 발동세율은 1~5년 차까지는 실행세율의 100%, 6~10년 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 11~15년 차까지는, 실행세율의 60%까지로 점차 낮아짐.

- 또한 육우와 식용설육(족, 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도 15년 후 폐지함.

② 우리나라 HSK 분류 및 운영상의 문제점

○ 쇠고기 관련 세번인 0201호와 0202호의 상세 분류 체계가 다양하지 못함.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쇠고기 부위별로 구체적인 세번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정책적인 목적, TRQ의 in-quota 관세 부과, FTA 상대국별 특혜관세, 국내 정책목적 등 국내외 다양한 변수들을 품목분류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갈비를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했을 뿐 그 이외

- -

다른 요소를 고려한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현행 우리나라의 쇠고기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함.

- 첫째,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입과 국내유통의 연계가 미흡함. <그림 4-3-1>과 <표 4-3-1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쇠고기의 모든 부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음. 향후 쇠고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과 소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민, 수입업자, 소매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정보획득 및 판단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봄.
- 둘째, 정확한 물량 및 가격통계 작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국내 쇠고기 가격통계는 쇠고기 부위별로 작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번은 갈비와 기타 부위로만 나뉘어져 있어 부위별 수입물량 및 가격 파악이 용이치 않음. 이런 문제점은 정책 수립이나 FTA/DDA 등 대외협상 전략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위별 국내외 가격 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셋째, 부위별 관세율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부위를 보다 세분화할 경우 FTA 및 DDA 협상 양허안 작성시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수단이나 협상 타결 방안 모색이 용이할 것으로 봄. 즉 국내 소비가 많은 품목의 경우 DDA 양허안 작성시 보다 덜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며, FTA 협상에서 더 민감한 품목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부위별 소비패턴과 수입현황에 입각한 좀더 다양한 분류체계가 요청됨. 특히, <표 4-3-13>에 따르면 갈비 이외에도 전지와 양지, 등심과 목심 등의 수입량이 많아 세번 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3-1> 소 부위별 명칭



<표 4-3-12> 소 부위별 사용용도

부위명	용도
목심	샤브샤브, 불고기, 국거리 등
등심	고급스테이크, 로스구이 등
안심	고급스테이크, 로스구이 등
채끝	스테이크, 로스구이 등
우둔	산적, 육포, 불고기, 로스구이(상등품) 등
설도	산적, 장조림, 육포, 불고기 등
사태	육회, 탕, 찜 등
양지 (차돌박이 포함)	국거리, 분쇄육 등
갈비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등 포함)	구이, 찜, 탕 등
앞다리	육회, 탕, 장조림 등

<표 4-3-13> 최근의 부위별 쇠고기 수입 실적

(단위: 톤)

		갈비	등심	목심	사태	설도	안심	전지	양지	우둔	채끝	기타	계
2006	냉동	37,057	15,677	12,492	11,034	6,336	728	24,574	13,857	7,738	514	21,149	151,156
	냉장	7,045	3,695	3,670	379	1,807	1,607	2,429	3,058	2,012	1,016	1,531	28,249
	계	44,102	19,372	16,162	11,413	8,143	2,335	27,003	16,915	9,750	1,530	22,680	179,405
2007	냉동	41,883	32,320	6,322	9,292	6,906	935	28,790	18,024	10,959	697	13,746	168,874
	냉장	7,849	5,344	3,595	570	2,949	2,014	3,540	3,864	2,537	1,377	272	33,911
	계	49,732	36,664	9,917	9,862	9,855	2,949	32,330	21,888	13,496	2,074	14,018	202,785
2008	냉동	70,754	32,805	12,476	5,846	3,964	1,068	21,626	20,042	10,885	506	11,956	191,928
	냉장	7,381	5,513	3,372	494	2,288	1,652	3,671	3,755	2,550	1,521	22	32,219
	계	78,135	38,318	15,847	6,340	6,252	2,720	25,297	23,798	13,435	2,027	11,978	224,147

○ 0206호와 5류 등에 분포되어 있는 소 부산물 관련 세번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미흡함.

- 우리나라는 머리, 꼬리, 사골, 곱창 등 전통적으로 소 부산물에 대한 소비가 매우 많은 국가임. (표 4-3-14 참조)
- 매년 이러한 소 부산물 수입량이 6만~9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머리, 위(양·대창), 창자(곱창), 꼬리, 횡격막 등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0206호와 5류의 세번 구분을 좀 더 정교하게 하여 주요한 소의 부산물을 별도 세 번화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5류는 국제적으로는 보통 비식용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번 설정시에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이 필요함.

<표 4-3-14> 소 부산물별 사용용도

부위명	용 도
머리	발골 머리고기: 국, 설령탕, 곰탕, 육개장 등 통머리: 잔치용, 고사용 등 편육: 술안주용, 제사용, 잔치용 등
내장	양: 소고기국, 내장탕, 양곱창, 전골 등 천엽: 안주용, 내장탕 등 곱창: 곱창전골, 내장탕, 케이징(소세지, 퍼티) 기타: 내장탕, 전골 등
간	식용: 전, 술안주(회 또는 삶은 고기 등) 약용: 의약품(추출물)
엽통, 허파, 지라	내장탕, 찌개, 국밥, 술안주, 전 등
우낭	식용: 술안주, 보신용 식품 등 약용: 의약품
족	산모나 노약자용 보신용 식품, 곰탕, 국 등
혈	식용: 선지국 약용: 의약품(헤모글로빈, 혈청)
수그레살	술안주, 탕류 등
꼬리	꼬리곰탕, 보신용식품 등
사골, 잡뼈	곰탕, 설령탕, 국 등
도가니	도가니탕, 술안주 등
지방	식용: 중국요리에 사용 공업용: 비누, 스테아린(양초), 광택제, 윤활유 제조용 등
피(가죽)	피혁제품, 산업용벨트, 악기 제조 등
뿔	단추, 빗, 머리핀, 공예품 등
채장	식용 및 의약품(알칼리액, 인슐린)
아킬레스건	아교, 젤라틴 등의 공업용도

자료: 육류부산물 유통실태 및 위생 안전성 제고 (농협중앙회, 2007)

- 소시지와 햄 등의 식육가공품 역시 매년 3만톤 가까운 양이 수입(2008년의 경우 2만 8천여 톤에 달함)되고 있으나 1601호에서의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함.
 - 주재료별, 혹은 가공방법별 분류 등을 통해 좀 더 세분해야 할 것임.
- SSG등 주요 정책수단이 세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에 SSG 조항이 존재하며, 향후에도 EU,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 미국, 일본 등은 TRQ 등의 정책 사항들을 별도 세번에 반영하여 필요 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함.

③ 개편방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쇠고기 연간 소비량은 2008년 현재 8.2kg 수준임.(표 4-3-15 참조)
 - 이는 1985년도에 비해 280% 이상 증가한 수치이지만, 아직 미국(41.2kg)이나 EU(16.0kg), 일본(9.3kg)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2년 경 약 8.45kg으로 1인당 소비량이 최고에 이르렀으나, 이후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이후 소비량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는 경향을 한동안 보이다 최근 다시 원산지 표시와 이력추적제 등의 도입과 정육점형 식당의 활성화 등으로 조금씩 소비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앞으로도 쇠고기 소비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지속적으로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해 온 수입산 쇠고기의 비중(표 4-3-16 참조)을 감안할 때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한 쇠고기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통계 조성 목적 등을 관세 체계에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3-15> 우리나라 쇠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1985	1995	2005	2008	2008 (미국)	2008 (일본)	2008 (EU 평균)
쇠고기	2.9	6.7	6.7	8.2	41.2	9.3	16.0

자료: 식육·육제품의 과학과 기술, 한국축산연감, 식육편람 등에서 재구성

<표 4-3-16>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의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

(단위: %)

연도	쇠고기 소비 비율	
	국내산	수입산
2001	42.3	57.7
2002	36.6	63.4
2003	36.3	63.7
2004	44.2	55.8
2005	48.1	51.9
2006	47.9	52.1
2007	46.6	53.4
2008	43.9	56.1

자료: 한국축산연감

- 앞서 살펴본 주요국들은 국제 무역 및 소비가 가장 활발한 02류 내에서 국제 기준 외에 부위(대분할 기준), 지육형태, 정책 목적 등 다양한 세번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부위별 구분은 캐나다가 가장 구체적이며, EU와 일본도 지육 형태와 대분할 부위를 기초로 국제기준보다 나아간 부위별 분류를 행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TRQ와 무관세수입 등의 정책 사항을 세번에 반영하고 있음.

<표 4-3-17>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기준 요약 (쇠고기)

	미국	EU	캐나다	일본	중국
추가적인 분류기준	TRQ, 품질, 소매용 등	지육 형태, 부위 등	송아지, 부위, 무관세수입, 지육형태 등	지육 형태, 부위 등	가축 여부

-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과 수입량 증가세, 그리고 주요국들의 관세 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쇠고기 관련 세번도 좀더 상세하게 부위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0201호와 0202호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가 요청됨. 이는 가장 수입량이 많은 호일 뿐 아니라, 0206호가 ‘꼬리’, ‘족’ 등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부위를 별도 세번으로 구분한 사실과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일 것임.
 - 또한 16류에 포함된 소시지 등의 가공품의 경우 지육 형태 혹은 정육 형태로 수입되어 육가공업체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국 02류에 분포된 쇠고기 수입이 관건이기 때문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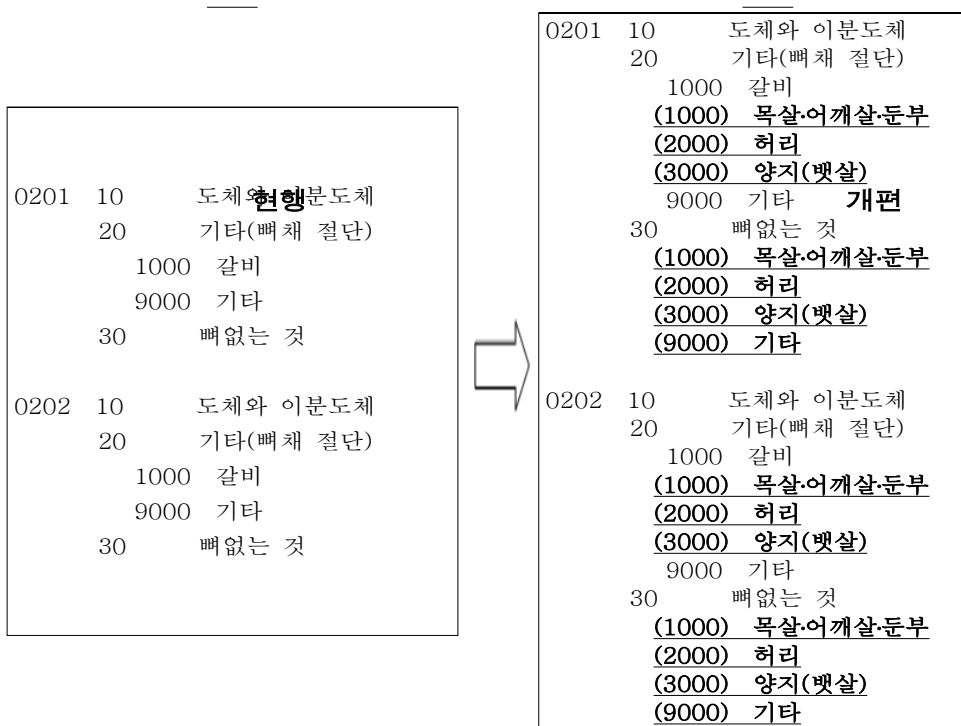
- 0201호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갈비'를 별도 세번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량이 증가하면 비로소 그 증가된 부위를 세번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기초 통계 자료 구축 및 정책 수립과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리 합리적이고 유동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적절한 부위들을 독자 세번으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 현행 쇠고기 품목분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국내 소비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품목분류의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 작성이 곤란함.
- 셋째, 전체를 고려한 체계화된 분류가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적인 분류에 그치고 있음.
- 넷째, SSG 등 정책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개편방안: 이에 우선 0201호와 0202호의 경우 부위별로 다음과 같은 세번 개편안을 제시함.

<0201호와 0202호 개편안>



- 냉동 및 냉장 쇠고기 관련 세번인 0201호와 0202호를 현행 갈비만으로 분류된 것 이외에 목살·어깨살·둔부, 허리, 양지(뺏살) 등 부위별로 상세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부위별 정확한 수입물량 및 가격 통계 확보로 이해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수급관리 정책 수립, 그리고 FTA/DDA 협상 전략 수립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쇠고기 부산물(05류) 관련 식용 및 비식용 세번의 구분의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기축산 증가, 소비자 안전 인식 증대 등을 감안한 세번분리 검토도 필요함.
- 물론 향후 쇠고기 생산, 유통, 무역 등 품목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분화를 검토해야 할 것임.

2) 돼지고기

가. 세계 공통 분류 기준

- 돼지고기 역시 쇠고기처럼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제2류가 어류·연체동물·갑각류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제3류) 이외의 모든 동물의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 및 육과 설육의 분과 조분이 두루 분류되는 류이기 때문임.
- 돼지고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3개임.
 - 우선 0203호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를 가리키며, 신선·냉장과 냉동 각각의 경우에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기타 등으로 세분되어 총 6개의 세번을 가짐.
 - 또한 0209호가 돼지 및 가금류의 비계를 가리키므로 국가별로 이에 준하여 세 번을 구분하고 있음.
 - 이밖에도 육과 식용설육(0206호) 중 돼지의 것이 냉동의 경우에는 간과 기타로 구분되며, 육과 식용설육을 분과 조분 형태로 가공한 것을 가리키는 호(0210)에서는 돼지고기가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기타 등 3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

<표 4-3-18> 02류 돼지고기 관련 세번 (HS 6단위 기준)

류	호	소호	품목	비고
02	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2	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	03	11	도체와 이분도체	
02	03	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
02	03	19	기타	
02	03	2	냉동한 것	
02	03	21	도체와 이분도체	
02	03	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
02	03	29	기타	
02	06		식용설육	
02	06	30	돼지의 것 (신선 또는 냉장)	
02	06	4	돼지의 것 (냉동)	
02	06	41	간	
02	06	49	기타	
02	09	00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02	10		육과 식용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	10	1	돼지고기	
02	10	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
02	10	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2	10	19	기타	

○ 돼지의 부산물은 대부분 다른 동물들과 더불어 5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시지 등의 가공품은 16류에 포함되어 있음

- 0504.00에서 동물의 장·방광·위 등을 포괄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약용, 공업용 등의 용도로 이들 부위가 쓰이므로 05류로 분류되었음.
- 1601.00에서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1602.4가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중에서 ‘돼지의 것’을 규정하여 1602.41호가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602.42호가 ‘어깨살과 그 절단육’, 그리고 1602.49호가 혼합물을 포함한 기타를 가리키고 있음. 또한 1603.00이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규정하여 해당 가공 과정을 거친 돼지의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음.

- -

나. 주요국 분류 기준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과 돼지고기라는 품목의 공급 및 소비 특성 등에 맞춰 국제기준인 HS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는 해당 산업 보호 및 수급관리, 정확한 통계 작성 및 정보 전파 등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임.
 - 주요국들은 돼지고기와 관련된 주요 세번인 0203호에 국제 기준에 더하여 부위 및 가공 상태(소매용 및 특수용도를 위한 가공 포함), 멧돼지 여부, 차액관세 등의 정책적 목적 등 다양한 기준을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음. (표 4-3-19 참조)
 - 특히 지육 및 정육을 구분할 기준으로의 부위별 구분까지 포함하여 실제 식육 부위와 정합성을 갖는 경우가 눈에 띄며, 자국의 식문화를 고려하여 특수한 부위(가령, 우리나라의 ‘삼겹살’)나 특수한 용도(가령, 중국의 ‘통돼지구이용’ 젓먹이 돼지)를 세번에 반영한 경우도 있음.

<표 4-3-19> 돼지고기 관련 주요 세번(0203호)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 기준	가공	부위	멧돼지	차액관세	특수용도
미 국	○				
E U		○	○		
캐나다		○			
일 본			○	○	
중 국			○		○ (젓먹이돼지)
한 국		○ (삼겹살)			

- 우리나라는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쇠고기처럼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세번 구분 및 관세 부과 방식이 단순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20 참조)
 - 각국들이 대체로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 관련 세번을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EU, 캐나다 등은 비종가세의 비중이 100%를 차지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차액관세를 통해 정책적인 목적성을 세번과 세율에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0203호에 8개의 세번을 갖고 있어 일본(24개)이나 EU(22개)는 물론, 중국(16개), 캐나다(11개) 등의 국가보다 현저히 적은 세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좀더 자세히 세번 분류 기준과 현황을 살펴볼 것임.

<표 4-3-20> 주요국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중가세 비중(%)	쿼터 세번수(개)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무관세		
미 국	10		10			100	-
E U	22		16		6	100	-
캐나다	11				11	100	-
일 본	24	12	12			50	-
중 국	16	16				0	-
한 국	8	8				0	-

① 미국

○ 미국은 공급량, 수출량 면에서 공히 세계 돼지고기 시장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돼지고기 시장의 강대국임.

- 2007년 말 기준으로 돼지고기 총 공급량 3위(세계 총 공급량의 약 10.5%), 수출량 1위 (세계 총 수출량의 27.6%)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량은 46위에 그치고 있으나, 40만톤을 상회하는 물량(세계 총 수입량의 약 4%)으로 역시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02류 내에서 돼지고기와 관련된 세번은 대부분 국제 기준을 따르는 가운데 신선·냉장 및 냉동 각각의 경우에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과 ‘기타’를 가공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표 4-3-21 참조)

- 따라서 0203호에 국제 기준 6개 세번을 좀더 구분하여 총 10개의 품목 분류를 행하고 있음.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과 ‘기타’는 각각 가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가공된 경우는 일정한 종가세가 부과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음.

- -

- 즉 가공도가 높고 소매용도에 가까울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4-3-21> 미국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5단위 & 6단위		
0203 (돼지고기)	02031 (신선 또는 냉장)	-	-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	-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2	가공
	020319 (기타)	2	가공
	02032 (냉동)	-	-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	-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2	가공
	020329 (기타)	2	가공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돼지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별도의 분류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 또한 부과하지 않음. 이는 식용설육에 대한 소비 수요가 많지 않아 굳이 분류 및 관세 부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0504호 역시 국제 기준 그대로 단 하나의 세번(0504.00.00)만 무관세로 유지한 채 별도의 추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 있음.
- 1601호(소시지 등)의 경우 재료가 돼지고기인 경우와 기타 육인 경우, 그리고 밀폐용기에 담긴 쇠고기로 각각 나누어 별도의 세번을 부여하고 있음. 쇠고기의 경우 종가세가 부가되나 돼지고기의 경우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음.
- 1602호(육류의 기타 조제저장품 등)의 경우도 돼지고기 관련 세번이 10개로 비교적 많은 편임.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어깨살과 그 절단육’, ‘기타’ 등의 국제 기준으로 구분한 다음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기타 등으로 세분되는데, 밀폐용기에 넣은 것들의 관세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이 역시 가공도가 높고 소매용도의 가능성이 클수록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

- -

② EU

- EU의 27개 국가는 돼지고기 공급량과 수출량에서 모두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을 만큼 돼지고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국가들임.
 - 총 돼지고기 소비량 중 수입량의 비중이 0.15%에 지나지 않아 돼지고기 수입을 많이 하는 경제그룹은 아니지만, 정책이나 세계 시장의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참조할 가치는 크다고 판단됨.
- EU는 0203호에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총22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표 4-3-22 참조)
 - 국제기준에 더하여, 가축 돼지(domestic swine)와 야생돼지(멧돼지)의 구분, 넓적다리살과 어깨살을 포함하는 세번의 경우 넓적다리살과 어깨살을 별개로 나누는 구분, 기타 가축 돼지의 경우 앞·뒷부분과 안심·등심 등의 허리 부위, 그리고 삼겹살 등의 뺏살 부위의 구분, 기타 야생돼지의 경우 빼없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등의 좀더 세분화된 분류가 수행되고 있음.
 - 세율의 경우 무관세와 상대적 저관세(종량세) 및 고관세(종량세)가 두루 분포하는데, 등심과 안심(Loins), 넓적다리살(Hams) 등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삼겹살이나 도체와 이분도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가짐. 즉 소비가 많은 부위와 품목일수록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3-22> EU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5단위 & 6단위		
0203 (돼지고기)	02031 (신선 또는 냉장)	-	-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2	멧돼지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3	멧돼지, 부위
	020319 (기타)	6	멧돼지, 부위
	02032 (냉동)	-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2	멧돼지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3	멧돼지, 부위
	020329 (기타)	6	멧돼지, 부위

- -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돼지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별도의 분류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 또한 부과하지 않음. 이는 식용설육에 대한 소비 수요가 많지 않아 굳이 분류 및 관세 부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0504호 역시 국제 기준 그대로 단 하나의 세번(0504.00.00)만 무관세로 유지한 채 별도의 추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 있음.
 - 1601호(소시지 등)는 재료로 사용된 고기를 막론하고 부위가 간인 경우와 소시지(비훈연 건조 공법을 주로 써서 가열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기타 등 3개의 세번을 포함하고 있음.
 - 1602호(육류의 기타 조제저장품 등)의 경우는 돼지고기 관련 세번이 11개로 비교적 많은 편임.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어깨살과 그 절단육’, ‘기타’ 등의 국제 기준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가축돼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기타’의 경우 한 번 더 전체 중량 중 육류 함량 비중(80% 이상, 40~80%, 40% 이하)과 부위를 기준으로 세분하였음. 관세율은 가축돼지일수록, 안심이나 등심 등을 재료로 한 조제품일수록, 그리고 육류 함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③ 캐나다

- 캐나다는 0203호에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총 11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어 쇠고기에 비해서는 덜 복잡한 양상을 보임.(표 4-3-23 참조)
 - 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냉동한 것을 각각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기타’로 나누는 국제기준에 더하여, 특별히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의 기타를 부위별로 4개의 품목으로 나누고, 냉동한 것의 기타 역시 부위별로 3개의 품목으로 나누고 있음. 다만 모두 무관세로 관세율의 차이는 없음.
 - 즉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의 기타는 갈비살(spare ribs)과 등갈비(back ribs), 그리고 특수용도의 가공(processed) 및 기타로 구분되며, 냉동한 것의 기타는 갈비살과 등갈비, 기타로 구분되고 있는 것임.

- -

<표 4-3-23> 캐나다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5단위 & 6단위		
0203 (돼지고기)	02031 (신선 또는 냉장)	-	-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	-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	-
	020319 (기타)	4	부위
	02032 (냉동)	-	-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	-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	-
	020329 (기타)	3	부위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돼지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별도의 분류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 또한 부과하지 않음. 이는 식용설육에 대한 소비 수요나 수입량이 많지 않아 굳이 분류 및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0504호는 국제 기준에 따른 하나의 세 번(0504.00.00)과 소시지 케이싱 원료(양, 돼지, 기타)에 따른 3개의 세번, 그리고 기타를 가리키는 세번까지 총 5개의 세번을 갖고 있어 한 개의 세번이 돼지고기와 관련되어 있음.
- 1601호(소시지 등)는 제조방법과 저장성, 재료 등을 기본 기준으로 삼아 저 관세(종량세임.)수입물량과 그렇지 않은 (종가세임.)물량을 구분한 총 17개의 세번을 포함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는 캔이나 유리병에 저장된 기타 조제품을 가리키는 하나의 세번과 기타 중 '돼지고기 소시지'(Pork sausages)를 가리키는 하나의 세번에 포함되어 총 2개의 품목과 관련되어 있음. 돼지고기 소시지에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음.
- 1602호(기타 조제저장품 등)에서는 돼지의 것을 가리키는 세번이 총 9개 존재함. 우선 넓적다리살과 어깨살, 그리고 혼합물을 포함한 기타 품목까지 3 부류의 품목으로 구분한 뒤, 각각을 다시 캔이나 유리병에 저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세번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혼합물을 포함한 기

타 품목의 캔이나 유리병에 저장된 것의 경우 런천미트(Luncheon meat)와 다른 것(Other), 조제분(prepared meals)의 3가지 경우로 다시 구분하고 있음.

- 특히 1602호 내 돼지와 관련된 9개 세번 중 캔이나 유리병에 저장된 것을 가리키는 세번은 모두 9.5%, 혹은 12.5%의 종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다른 세번은 무관세이므로 저장 상태가 양호하고 소매 용도가 확실할수록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일본

○ 일본은 세계 제1의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2007년말 현재 121만여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돼지고기 총 수입량의 24%에 달하는 수치임.

- 또한 돼지고기 소비량 대비 수입의존도 역시 약 45%에 이르는 만큼 수입 정책을 신중하고 정교하게 운용할 충분한 유인을 갖고 있는 국가로 판단됨.

○ 일본은 0203호에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총 24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표 4-3-24 참조)

-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근거하되 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냉동한 것을 각각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기타'로 나눈 후 다시야생돼지(멧돼지)의 구분을 추가로 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처럼 세번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차액관세라는 정책적 요소에서 기인함. 일본은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기타' 각각의 경우마다 멧돼지가 아닌 모든 돼지고기들에 차액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즉 일본은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 한도가액보다 낮은 경우, 종량세 적용 한도가액과 분기점 가격의 사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분기점 가격보다 높은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세번과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 구체적으로, 일본은 해당 세번의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종량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그러나 수입가격이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를 다시 두 부류로 구분하여 그럼에도 분기점 가격보다 낮을 때는 기준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분기점 가격보다도 역시 높을 때는 단순히 종가세를 적용함.

-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가급적 기준이 되는 수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는 돼지고기가 수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것임.

- -

<표 4-3-24> 일본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5단위 & 6단위		
0203 (돼지고기)	02031 (신선 또는 냉장)	-	-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4	멧돼지, 차액관세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4	멧돼지, 차액관세
	020319 (기타)	4	멧돼지, 차액관세
	02032 (냉동)	-	-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4	멧돼지, 차액관세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4	멧돼지, 차액관세
	020329 (기타)	4	멧돼지, 차액관세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돼지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더하여 멧돼지 여부와 타 국가에 비해 소비가 많은 부위를 따로 구분하고 0203호에서처럼 차액관세도 부과한 결과 총 12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즉 멧돼지가 아닌 경우, 신선·냉장과 냉동의 경우 모두 쇠고기와 유사하게 ‘장기(臟器)’와 ‘기타’로 구분한 뒤 ‘기타’는 다시 차액관세 체계에 맞춰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임.
- 0504호의 경우 국제 기준을 좀더 세분하고는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주로 소의 장과 소의 것(기타)을 별도로 다룰 뿐 돼지의 것이 변별되지는 않음.
- 1601호(소시지 등)는 국제 기준 그대로 단 하나의 세번(1601.00.00)만 10% 관세율로 유지한 채 별도의 추가적인 분류는 행하지 않고 있음.
- 1602호에는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13개의 세번이 존재함. 우선 넓적다리살과 어깨살, 그리고 혼합물을 포함한 기타 품목의 경우까지 세 부류로 구분한 후, 각각의 부류를 가공방법과 혼합물의 차이에 따라 한 특정세번과 기타세번으로 구분하고 있음. 나아가 특정세번의 경우에는 차액관세를 적용하여 다시 두 부류로의 구분이 행해짐. 즉, 수입가격이 분기점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량세(1,035엔/kg)를, 분기점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종가세(8.5%)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 -

- 이처럼 일본은 세계 제1의 돼지고기 수입대국으로서 특히 차액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축산업과 농가 보호 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⑤ 중국

- 중국은 세계 돼지고기 총 공급량의 44%를 담당하는 세계 제 1의 돼지고기 공급 국가임.
 - 수출량은 2007년말 현재 약 35만톤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만톤에 가까운 수입량 역시 세계 7위인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중국은 0203호에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총 16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음.(표 4-3-25 참조)
 - 국제기준에 더하여, 가축 돼지(domestic swine)와 야생돼지(멧돼지)의 구분이 행해지고 있으며, 도체와 이분도체의 경우 젓먹이돼지(sucking pig)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분류됨. 이는 특히 광둥 지방 등을 중심으로 ‘통돼지구이’ 등을 별미요리로 즐기는 자국의 식문화가 반영된 분류 체계임.
 - 기본관세율은 모든 세번이 70%로 차이가 없으나, MFN 관세의 경우 신선·냉장일 경우는 20%인 것에 비해 냉동의 경우는 12%로 더 낮게 나타남.

<표 4-3-25> 중국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5단위 & 6단위		
0203 (돼지고기)	02031 (신선 또는 냉장)	-	-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4	특수용도(젓먹이 돼지), 멧돼지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2	멧돼지
	020319 (기타)	2	멧돼지
	02032 (냉동)	-	-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4	특수용도(젓먹이 돼지), 멧돼지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2	멧돼지
	020329 (기타)	2	멧돼지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돼지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별도의 분류 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율 역시 0203호와 비슷한 수준임.
 - 0504호는 케이싱(소시지 외피를 가리킴. 주로 동물의 장으로 제작)과 위장,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의 부산물로 만든 케이싱에 2개의 세 번이 존재함.
 - 1601호는 소시지나 이와 비슷한 가공품을 소시지 외피(케이싱)의 천연/인조 여부나 혼합물의 차이 등에 따라 6개의 세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만 독립적으로 관련된 형태의 세번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음.
 - 1602호에는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8개의 세번이 존재함. 우선 넓적다리살과 어깨살의 조제 혹은 저장처리 품목을 별도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바비루사(돼지사슴)나 피그미 돼지 등의 몸집이 작은 돼지와 그렇지 않은 돼지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혼합물을 포함한 기타 품목의 경우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 뒤 역시 바비루사(돼지사슴)나 피그미 돼지 등의 몸집이 작은 돼지와 그렇지 않은 돼지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각 세번에 관세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① 우리나라 HSK 분류 현황

- 우리나라는 0203호에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8개의 세번을 마련하고 있음.(표 4-3-26 참조)
 - 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냉동한 것을 각각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기타’로 나누는 국제기준에 더하여, 특별히 ‘기타’를 ‘삼겹살’과 ‘기타’로 다시 구분하고 있음. 이는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의 소비와 수입이 특히 두드러지는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반영된 결과임.
 - 세율은 8개의 세번이 큰 차이 없이 22%, 혹은 25%인 것으로 나타남. 삼겹살 역시 세번 분류만 이뤄졌을 뿐 세율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

<표 4-3-26>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관련 HS 세번(0203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4단위	5단위 & 6단위		
0203 (돼지고기)	02031 (신선 또는 냉장)	-	-
	020311 (도체와 이분도체)	-	-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	-
	020319 (기타)	2	부위 (삼겹살)
	02032 (냉동)	-	-
	020321 (도체와 이분도체)	-	-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의 절단, 뼈 있는 것)	-	-
	020329 (기타)	2	부위 (삼겹살)

○ 이밖에 02류의 다른 호와 5류 및 16류에도 돼지고기 관련 품목과 세번이 존재함.

- 0206호는 국제 기준(돼지의 것 신선 또는 냉장, 돼지의 것 냉동 중 간, 기타)에 더하여 기타를 국내 소비 패턴에 부합하게 ‘족, 기타’로 구분함으로써 총 4개의 세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모두 18%로 동일함.
- 0209호는 국제 기준 그대로 돼지의 비계와 가금의 비계로 나누고 있음.
- 0210호 역시 국제 기준 그대로 ‘넓적다리·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기타’로 나누고 있으며,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만 30%의 관세율로 다른 두 세번의 25%보다 다소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0504호는 국제 기준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장과 방광 및 위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돼지의 것만 따로 분류된 세번은 없음. 이는 ‘장’에 소의 경우를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현황임.
- 1601호(소시지 등)는 국제 기준에서 규정된 세 번(1601.00)을 둘로 나눠 소시지와 기타로 구분하고 있음. 소시지의 주재료로 쓰이는 육은 보통 돼지고기나 쇠고기지만 이에 대해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음.
- 1602호(기타 조제저장품 등)에서는 돼지의 것을 가리키는 세번이 총 6개 존재함. 우선 국제 기준에 따라 넓적다리살과 어깨살, 그리고 혼합물을 포함한

- -

기타 품목까지 3부류의 품목으로 구분한 뒤, 각각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세번을 부여하고 있음. 세율 역시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 30%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27%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 주요 세번별 수입량 추이를 보면(표 4-3-27 참조), 압도적으로 ‘삼겹살 냉동’(0203.29.1000)과 ‘기타 냉동’(0203.29.9000)의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량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27> 최근의 세번별 돼지고기 수입 실적

(단위: 톤, 천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도체	냉동	171	238	61	91	238	575
넓적 다리	냉동	5,773	6,584	2,783	4,083	466	1,179
삼겹살	냉장	7,505	35,900	9,735	46,799	11,059	54,026
	냉동	209,543	403,471	103,478	360,970	95,040	341,544
돼지고기 기타	냉장	3,138	13,242	5,929	23,434	5,828	23,053
	냉동	85,303	281,902	215,867	426,664	210,905	402,877
기타 조제 과정	비계	1,205	796	1,263	964	1,590	1,697
	복부살	421	2,276	522	2,779	743	3,436
	그 외 기타	30	60	2	4	-	-
밀폐 용기에 넣은 것	넓적 다리살	199	508	173	672	913	3,494
	넓적 다리살 외 기타	3,000	8,710	3,189	10,177	4,439	16,583
밀폐 용기에 넣은 것 이외	넓적 다리살	321	1,558	258	2,119	303	2,086
	넓적 다리살 외 기타	463	2,224	74	279	807	3,949
식용 설육	신선 냉장	-	-	74	279	104	428
	간장 냉동	-	-	98	105	67	75
	족 냉동	-	-	5,802	5,415	317	463
	기타 냉동	-	-	6,198	15,504	6,874	19,915
합계				355,506	900,338	339,693	875,380

- 이밖에도, 한-칠레 관세철폐 이행계획과 한-미 FTA 협상 및 한-EU FTA 협상의 이행계획 등이 향후 세번별 돼지고기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칠레 FTA의 경우 ‘삼겹살(냉동)’의 관세를 2004(23.8%) → 2009(8.3%) → 2013(2.4%) 이후 완전 철폐하게 됨. ‘삼겹살(냉장)’의 경우도 2004(21.1%) → 2009(10.6%) → 2013(2.1%) 이후 완전 철폐하게 됨.

- 한-미 FTA의 경우 ‘삼겹살(냉장)’, ‘기타(갈비, 목살 등)’ 등 2개 세번을 10년 후 폐지하며, 10년차까지 SG 발동이 가능함.
- 즉 SG 발동물량을 8,250톤에서 13,938톤까지 매년 복리 6%씩 증량할 수 있으며, SG 발동세율은 1~5년 차까지는 실행세율의 100%, 6~10년 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 이후 50%로 점차 삭감됨.
- 또한 한-미 FTA 협상 이행계획에 의하면,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의 세율은 2014년 1월 1일에 폐지되며, 소시지 역시 5년 내 폐지할 예정임.

② 우리나라 HSK 분류 및 운영상의 문제점

○ 가장 주된 세번인 0203호의 상세 분류 체계가 다양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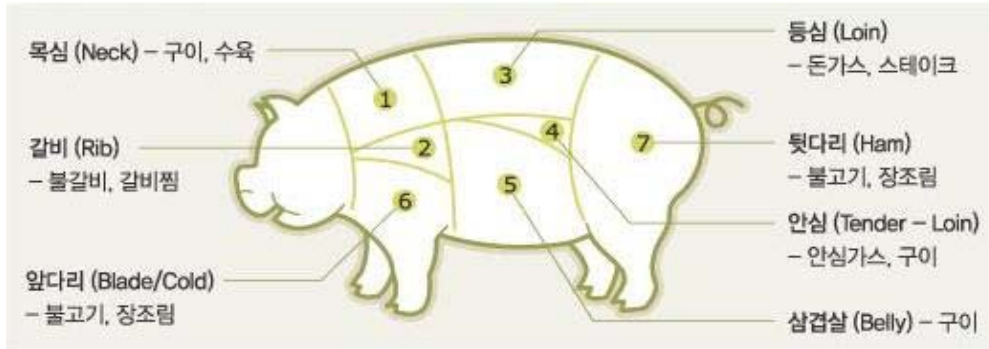
- 주요국들의 경우 대개 부위별로 더욱 세분된 구분을 행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겹살만을 국내 소비 비중에 맞춰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했을 뿐 국제 기준에 비추어 추가적인 다른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는 <그림 4-3-2>에서 보듯 여러 부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음.
- 특히 세번에 근거한 통계는 수입통계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부위별 소비 패턴과 수입현황에 입각한 좀더 다양한 분류체계가 요청됨.
- <표 4-3-28>에 따르면 삼겹살 이외에도 목등심, 갈비, 전지 등의 수입량이 많아 세번 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5류에 속해 있는 돼지고기 부산물은 식용/비식용 여부가 02류와 05류의 돼지고기 관련 품목 사이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음.

-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경우나 뼈 자체를 식용설육이나 05류의 ‘동물의 뼈’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함.
- 이런 경우들을 보면 수입업자는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05류로 판단한 듯하나, 결정세번을 보면 대부분 감자탕이나 곰국 등 결국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습관을 감안하여 ‘식용’ 용도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여 02류에 위치시키고 있음.
- 02류 중에서도 쇠골 후두근(항정살)처럼 0206호의 식용설육으로 판단할 것인가, 0203호의 돼지고기 기타 부위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분류 사례도 존재하는데 이 역시도 크진 않지만 일정한 관세율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함.

- -

<그림 4-3-2> 돼지 부위별 명칭 및 사용용도



<표 4-3-28> 최근의 부위별 돼지고기 수입 실적

(단위: 톤)

		삼겹살	목등심	갈비	후지	전지	등심	기타	계
2006	냉동	85,144	40,587	25,382	1,831	20,613	741	25,737	200,008
	냉장	7,494	1,855	33	-	814	19	332	10,547
	계	92,638	42,442	25,415	1,831	21,427	760	26,069	210,555
2007	냉동	107,665	63,408	27,260	1,217	25,322	1,178	5,657	231,707
	냉장	9,773	4,267	61	-	1,562	27	6	15,696
	계	117,438	67,675	27,321	1,217	26,884	1,205	5,663	247,403
2008	냉동	102,113	51,892	9,984	311	29,701	928	2,384	197,313
	냉장	11,041	4,109	237	-	1,582	-	7	16,976
	계	113,154	56,001	10,221	311	31,283	928	2,391	214,289

○ 0206호(식용설육)와 5류 등에 분포되어 있는 돼지 부산물 관련 세번에 대한 체계적 정리도 미흡함.

- 우리나라는 머리, 내장, 족 등 전통적으로 돼지 부산물에 대한 소비가 매우 많은 국가임. (표 4-3-29 참조)
- 매년 이러한 돼지 부산물 수입량이 13만톤(2006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머리, 족, 기타 등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0206호와 5류의 세번 구분을 좀더 정교하게 하여 주요한 돼지의 부산물을 별도 세번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5류는 국제적으로는 보통 비식용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번 설정시에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이 필요함.

<표 4-3-29> 돼지 부산물별 사용용도

부위명	용도
머리	삶은 머리고기: 국밥, 탕류, 술안주 등 통머리: 고사용 등 편육: 술안주, 잔치용 등
귀	순대국, 애견 껌
혀	순대국
내장	순대국, 술안주, 곱창전골, 국밥, 소세지용 등
간	순대국, 일부 수출
위	순대국
막창	구이용
소창	순대국
대창	돼지 곱창구이
허파	순대국
췌장	의약제품 (위장병)
지방	식용: 만두속, 중국조리용, 식용유 등 공업용: 비누, 스테아린(양초), 광택제, 윤활유 등
피(껍질)	식용: 놀린 머리고기, 술안주 등 공업용: 피혁제품
족	술안주, 산모 채유용 등
잡뼈	곰국 등 국물, 골분(사료용)
털	공업용 펠트 제품, 솔 류 등

자료: 육류부산물 유통실태 및 위생 안전성 제고 (농협중앙회, 2007)

- 소시지와 햄 등의 식육가공품 역시 매년 3만톤 가까운 양이 수입(2008년의 경우 2만 8천여 톤에 달함)되고 있으나 1601호에서의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함.
 - 주재료별, 혹은 가공방법별 분류 등을 통해 좀더 세분해야 할 것임.
- SSG등 주요 정책수단이 세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에 SSG 조항이 존재하며, 향후에도 EU,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 이를 별도 세번에 반영하여 정확한 분석과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음.

③ 개편방안

-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은 2008년 현재 31kg 수준임. (표 4-3-30 참조)
 - 이는 1985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미국과 일본을 상회하고 있으며 증가세도 지속적인 수준임.

- 특히 쇠고기가 식품안전성 면에서 자주 주요 이슈가 되면서 대체제로 돼지고기 소비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앞으로도 돼지고기 소비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지속적으로 자급률이 하락해 가는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현황(표 4-3-31 참조)을 감안할 때 안전성과 품질 등을 중심으로 한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통계 조성 목적 등을 관세 체계에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3-30>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1985	1995	2005	2008	2008 (미국)	2008 (일본)	2008 (EU 평균)
돼지고기	8.4	14.8	27.3	31.0	28.3	19.6	39.3

자료: 식육·육제품의 과학과 기술, 한국축산연감, 식육편람 등에서 재구성

<표 4-3-31>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의 자급률 추이

(단위: %)

연도	자급률
2001	88.5
2002	91.2
2003	93.0
2004	86.9
2005	80.1
2006	76.7
2007	74.1
2008	75.3

자료: 한국축산연감

- 앞서 살펴본 주요국들은 국제 무역 및 소비가 가장 활발한 02류 내에서 국제기준 외에 멧돼지 여부, 부위(대분할 기준), 가공도 및 소매용도 여부, 차액관세 등의 정책 목적 등 다양한 세번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표 4-3-32 참조)
- 부위별 구분은 EU가 가장 구체적이며, 캐나다도 갈비를 중심으로 국제기준보다 나아간 부위별 분류를 행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자국의 식문화를 반영하여 ‘젓먹이돼지’라는 세번을 따로 두고 있음.

- 미국은 소매용 돼지고기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관세율의 차이는 없으나 통계 목적 등으로 소매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음.
- 최근에 멧돼지를 따로 구분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함.

<표 4-3-32>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기준 요약 (돼지고기)

	미국	EU	캐나다	일본	중국
추가적인 분류기준	가공도, 소매용 등	멧돼지, 부위 등	부위, 소매용	멧돼지, 차액관세	멧돼지, 절먹이돼지

-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과 수입량 증가세, 그리고 주요국들의 관세 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관련 세번도 좀더 상세하게 부위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0203호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가 요청됨. 0203호는 수입량이 많은 호이며, 이미 ‘삼겹살’을 별도 세번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듯이 기초 통계 자료 구축 및 정책 수립과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리 합리적이고 유동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적절한 부위들을 독자 세번으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또한 16류에 포함된 소시지 등의 가공품의 경우 지육 형태 혹은 정육 형태로 수입되어 육가공업체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국 02류에 분포된 돼지고기 수입이 관건이기 때문임.
- 개편방안: 이에 돼지고기 HS 분류와 관련하여 우선 0203호를 중심으로 부위별로 다음과 같은 세번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0203호 개편안>

현행		개편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중략) 19 기타 1000 삼겹살 9000 기타 2 냉동한 것 (중략) 29 기타 1000 삼겹살 9000 기타	⇒	0203 1 신선 또는 냉동한 것 (중략) 19 기타 1000 삼겹살(벧살) <u>(2000) 목심·등심</u> <u>(3000) 갈비</u> 9000 기타 2 냉동한 것 (중략) 29 기타 1000 삼겹살 <u>(2000) 목심·등심</u> <u>(3000) 갈비</u> 9000 기타

- 즉 삼겹살 이외 기타로 분류된 세번(0203199000와 0203209000)을 목심, 등심, 안심, 갈비 등 세부 부위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5류에 속해 있는 돼지고기 부산물은 국제적으로는 보통 비식용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번 설정 시에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이 필요함.
- 그리고 향후 유기축산 증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식 증대 등을 감안한 세 번분리 검토도 필요함.

3) 가금육

가. 세계 공통 분류 기준

- 가금육 역시 다른 육류와 더불어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음.
 - 0207호가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0209호 역시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를 규정하여 가금육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0210호도 '염장·건조·훈제' 등 가공방법에 따른 육과 식용설육을 포괄하고 있어 가금육이 포함됨.

- 가금육의 경우 이보다 추가적인 가공이 행해진 경우에는 16류에, 그리고 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5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02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02류 가금육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4개임.

- 0207호는 총 13개의 세번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닭의 것(0207.1)과 칠면조의 것(0207.2), 그리고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0207.3)으로 구분됨. 이후 각 소호마다 절단하지 않은 육과 절단육(신선·냉장 및 냉동)으로 구분되어 12개 세 번으로 분화됨. 단,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의 경우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이 하나의 세 번을 가져 총 13개의 세 번이 되는 것임. 이는 '푸아그라' 등의 서구적 식습관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또한 0209호가 돼지 및 가금류의 비계를 가리키므로 국가별로 이에 준하여 세 번을 구분함.
- 이밖에도 염장·건조·훈제 등의 처리한 육과 식용설육 및 육과 식용설육을 분과 조분 형태로 가공한 것을 가리키는 호(0210)에서 가금류의 것이 기타 동물군에 포함되기는 하나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되지는 않고 있음.

<표 4-3-33> 02류 가금육 관련 세번 (HS 6단위 기준)

류	호	소호	품목	비고
02	07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02	07	1	닭의 것	
02	07	11	절단하지 아니한 육	신선 또는 냉장
02	07	12	절단하지 아니한 육	냉동
02	07	13	절단육 및 설육	신선 또는 냉장
02	07	14	절단육 및 설육	냉동
02	07	2	칠면조의 것	
02	07	24	절단하지 아니한 육	신선 또는 냉장
02	07	25	절단하지 아니한 육	냉동
02	07	26	절단육 및 설육	신선 또는 냉장
02	07	27	절단육 및 설육	냉동
02	07	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	07	32	절단하지 아니한 육	신선 또는 냉장
02	07	33	절단하지 아니한 육	냉동
02	07	34	기름진 간	신선 또는 냉장
02	07	35	기타	신선 또는 냉장
02	07	36	기타	냉동
02	09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 세번 상으로는 가금육의 부산물 중에서는 이렇다할 비중을 가진 것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움. 그러나 저장이 용이하고 가공 소비가 많은 육류가 가금육이므로 가공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가금육이 적지 않음.
- 1602호가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를 가리키는데, 이 중 가금류의 것이 별도의 세번을 부여받아 ‘칠면조의 것’, ‘닭의 것’, ‘기타’로 구분되고 있음.

나. 주요국 분류 기준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과 가금육이라는 품목의 공급 및 소비 특성 등에 맞춰 국제기준인 HS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는 닭고기, 칠면조, 오리 및 거위 등 해당 품목 보호 및 수급관리, 정확한 통계 작성 및 정보 전파 등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임.
- 주요국들은 가금육과 관련된 주요 세번인 0207호에 국제 기준에 더하여 부위와 도계형태와 산란계 여부, TRQ 등 다양한 기준을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음. (표 4-3-34 참조)
- 우리나라는 물론 EU,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부위별 구분을 통한 세번 분류를 행하고 있음. 특히 닭고기의 부위 분할이 세부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표 4-3-34> 가금육 관련 주요 세번(0207호)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 기준	도계형태	산란계	부위	수입가격	뼈 있는 것	TRQ	중량
미 국				○			
E U	○		○		○		
캐나다		○	○		○	○	○
일 본			○		○		
중 국			○		○		
한 국			○				○

- EU는 0207호 내에 92개의 세번을 갖고 있어 타 국가들보다 단연 구체적인 구분을 행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33개의 세번으로 미국(14개), 일본(22개), 중국(28개) 등의 국가보다 많은 세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표 4-3-35 참조)
- 일본과 한국은 모든 세번을 종가세로 운용하고 있음.

- -

- 캐나다의 경우 닭고기와 칠면조에 TRQ 세번을 두고 저관세로 운용하고 있음.
- EU의 경우 오리와 거위, 그리고 기니아새를 각각 구분하여 세번을 다양화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좀더 자세히 세번 분류 기준과 현황을 살펴볼 것임.

<표 4-3-35> 주요국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종가세 비중(%)	쿼터 세번수(개)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무관세		
미 국	14	1	13			93	-
E U	92	6	82		4	93.5	-
캐나다	52	39			1	25	12
일 본	22	22				0	-
중 국	28	22	6			21.4	-
한 국	33	33				0	-

① 미국

○ 0207호는 대부분 국제 기준을 따르는 가운데 ‘칠면조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의 경우만 수입가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표 4-3-36 참조)

- 즉 수입가격이 kg당 88센트 이하라면 kg당 8.8센트의 종량세를 매기고, 수입가격이 그 이상이라면 10%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0207호의 총 세번은 국제기준 13개보다 하나 많은 14개임.
- 칠면조와 달리 닭고기의 경우에 별다른 구분을 더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세계 수위의 닭고기 생산국으로 그 수출량이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고 수입은 거의 하지 않는 이유에서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절단육의 경우에는 Kg당 17.6센트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절단하지 않은 경우의 8.8센트/kg에 비해 2배에 이르는 액수임. 즉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

<표 4-3-36> 미국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5단위	6단위		
02071 (닭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13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	-
	020714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	-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2	수입가격
	020726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	-
	020727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	-
0207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0732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33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34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	-	-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	-	-
	020736 (기타-냉동)	-	-

○ 0209호 역시, 국제 기준 그대로 하나의 세번만 두고 있으며 돼지와 가금의 비계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음.

○ 1602호 역시 국제기준 그대로 ‘칠면조의 것’, ‘닭의 것’, ‘기타’ 세번만 부여할 뿐 별도의 구분은 행하지 않고 있음.

② EU

○ EU는 2008년말 현재 연간 68만톤에 가까운 닭고기를 수입하여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세계 제 3위의 닭고기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미국과 달리 가금육 관련 세번을 복잡하고 치밀하게 분류하여 수입 관련 사항에 대비하고 있음.

- -

- 0207호는 국제 기준에 도계 형태, 부위 등 다양한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총 92개에 이르는 세번을 마련하고 있음. (표 4-3-37 참조) 이 중에서 닭고기의 경우는 23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하지 아니한 닭고기의 경우, 도계 형태에 따라 ‘83% 닭고기’(머리와 다리 온전한 형태), ‘70% 닭고기’(머리와 다리는 없으나 목을 비롯한 기타 부위는 온전한 형태), ‘65% 닭고기’(머리와 다리, 그리고 목이 없는 형태) 등으로 나뉘지며 가공 정도가 높을수록, 즉 ‘닭고기’ 앞의 %수치가 낮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짐.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육의 경우는 우선 뼈없는 것과 뼈있는 것으로 구분한 뒤 다시 뼈있는 것은 부위별로 세번과 세율이 나뉘짐. 즉 이분도체·사분도체, 날개, 등·목·영덩이 등, 가슴, 다리, 기타 등으로 구분됨. 세율을 비교하면 뼈없는 것의 종량세액이 가장 높고, 뼈있는 것 중에서는 닭가슴의 세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가공도가 높고 소비가 많을수록 많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설육의 경우는 간장과 기타로 구분됨.
- 칠면조의 경우도 0207호 내에서 24개의 세번을 갖고 있으며 닭고기와 거의 유사한 분류 체계를 보임.
 - 즉 도계형태와 부위, 뼈없는 것과 뼈있는 것, 간장과 기타 등의 분류기준이 칠면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가공도가 높고 소비가 많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 역시 0207호 내에서 닭고기나 칠면조와 유사한 체계를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오리, 거위, 기니아새 각각을 구분하기도 하여 총 45개에 달하는 세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EU에서는 ‘기름진 간’(0207.34)의 경우도 거위의 간과 오리의 간을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함.
 - 대체로 가공도가 높은 경우와 오리, 기니아새, 거위의 순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름진 간의 경우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이는 ‘푸아그라’ 등의 고유한 식문화를 위한 ‘기름진 간’의 수요가 자체적으로 소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4-3-37> EU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5단위	6단위		
02071 (닭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3	도계형태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2	도계형태
	020713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9	뼈 있는 것, 부위
	020714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9	뼈 있는 것, 부위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2	도계형태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2	도계형태
	020726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10	뼈 있는 것, 부위
	020727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10	뼈 있는 것, 부위
0207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0732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6	가금의 종류, 도계형태
	020733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5	가금의 종류, 도계형태
	020734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	2	가금의 종류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	15	가금의 종류, 부위
	020736 (기타-냉동)	17	가금의 종류, 부위

○ 0209호에서는 돼지비계와 가금류의 비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가금의 비계에 돼지비계와 구별되는 하나의 세번(0209.00.90)을 부여하고 있음.

- 종량세액 역시 돼지비계보다 가금류의 비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602호에서는 국제기준인 ‘칠면조의 것’, ‘닭의 것’, ‘기타’ 각각마다 4개씩의 세 번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세번이 존재함.

- 전체 종량 중 육류(가금육) 함량 비중과 가공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 칠면조는 각 세번에 동일한 종량세액이 부과되나, 닭고기와 기타 가금의 경우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종량세를, 낮은 경우에는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종량세의 보호효과가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함량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큰 보호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③ 캐나다

- 0207호는 국제 기준에 산란계 여부, 저관세수입물량 여부, 부위별 구분 등 다양한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총 52개에 이르는 세번을 마련하고 있음.(표 4-3-38 참조) 이 중에서 닭고기의 경우는 26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하지 아니한 닭고기의 경우, 산란계와 기타로 구분한 후 기타를 다시 저관세수입물량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음. 즉 산란계의 경우 8%의 일정한 증가세를 부과하며, 기타 중 저관세수입물량은 5% 관세를, 그렇지 않은 물량은 238%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임.
 - 절단육 및 설육의 경우에도 신선·냉장 상태인 경우는 산란계 여부에 따른 구분 후 산란계가 아닌 품목을 다시 저관세 수입물량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함. 다만 저관세 수입물량이 아닌 품목은 다시 빼있는 것과 빼없는 것으로 한 단계 더 구분을 하게 됨.
 - 절단육 및 설육이 냉동 상태인 경우는, 신선·냉장 상태인 경우와 유사한 구분법을 따르되, 산란계를 ‘다리’, ‘날개’ 등의 부위별로 구분하여 세번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음.
- 칠면조의 경우도 0207호 내에서 16개의 세번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저관세 수입물량의 별도 세번 부여 측면에서 닭고기와 유사한 분류 체계를 보임.
 - 그러나 칠면조는 특별히 부위별 구분을 행하지 않는 대신, 통조림 포장 여부에 따른 세번 구분을 행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다만 통조림 포장에 따른 관세율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0207호 내에서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는 거의 국제 기준에 그대로 준하고 있으나, 냉동 기타의 경우에만 ‘간’과 ‘기타’로 다시 구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

- -

<표 4-3-38> 캐나다의 가공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5단위	6단위		
02071 (닭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3	산란계, TRQ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3	산란계, TRQ
	020713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4	산란계, TRQ, 뼈 있는 것
	020714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16	산란계, TRQ, 뼈 있는 것, 부위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4	통조림, TRQ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4	통조림, TRQ
	020726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3	TRQ, 뼈 있는 것
	020727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5	부위, TRQ, 뼈 있는 것
0207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0732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33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34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	-	-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	-	-
	020736 (기타-냉동)	2	부위

○ 0209호에서는 돼지비계와 가공육류의 비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공육류의 비계 역시 가공육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즉 가공육류의 비계를 우선 ‘닭의 비계’, ‘칠면조의 비계’, 그리고 ‘기타’로 나눈 후, ‘닭의 비계’와 ‘칠면조의 비계’를 다시 저관세 수입물량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여 별개의 세번과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임.

○ 1602호에서는 국제기준인 ‘칠면조의 것’, ‘닭의 것’, ‘기타’ 각각을 12개, 11개, 3개씩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총 26개의 세번이 존재함.

- 혼합방법, 저장방법, 저관세 수입물량 여부가 각 품목마다 공통된 세부 분류 기준임.

- -

- 이처럼 캐나다의 경우는 가금류와 관련된 대부분의 호에 국내 가금류 생산 기반의 보호를 위한 저관세 수입물량이 존재하여 이를 세번과 세율에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④ 일본

- 0207호는 국제 기준에 부위와 뼈 있는 것 등의 기준을 다소 추가하여 총 22개에 이르는 세번을 마련하고 있음.(표 4-3-39 참조) 이 중에서 닭고기의 경우는 7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하지 아니한 닭고기는 국제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추가적인 구분을 행하지 않음.
 - 절단육 및 설육의 경우에는, 신선·냉장 상태일 때는 ‘뼈있는 다리’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냉동상태일 때는 ‘간장(livers)’과 ‘기타’로 나눈 다음 다시 기타를 ‘뼈있는 다리’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
- 칠면조의 경우는 0207호 내에서 5개의 세번을 갖고 있으며 거의 국제기준을 그대로 따름.
 - 다만 냉동 상태의 절단육 및 설육만 ‘간장’과 ‘기타’로 구분하고 있음.
-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 역시 0207호 내에서 10개의 세 번을 가지며 거의 국제기준을 그대로 따름.
 - 다만 오리와 기타 가금으로의 구분 하에 세번이 부여됨.
 - 이는 기타 가금에 비해서는 오리의 소비가 현저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표 4-3-39> 일본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5단위	6단위		
02071 (닭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13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2	뼈 있는 것
	020714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3	부위, 뼈 있는 것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26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	-
	020727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2	부위
0207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0732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2	가금의 종류
	020733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2	가금의 종류
	020734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	-	-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	2	가금의 종류
	020736 (기타-냉동)	3	부위, 가금의 종류

- 0209호에서는 국제 기준 그대로 비계를 통칭하는 하나의 세번만 존재할 뿐 돼지비계와 가금류의 비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1602호에서는 국제기준인 ‘칠면조의 것’, ‘닭의 것’, ‘기타’ 각각마다 3개씩의 세 번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세번이 존재함.
 - 장과 방광, 위 등 부산물을 중심으로 조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우선 구분한 다음, 다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쇠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부산물이 함유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여, 국제 기준에서 제시된 세번마다 세 부류의 구분을 행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장과 방광, 위 등 부산물을 중심으로 조제된 경우에 관세가 없고, 쇠고기 등의 육류나 그 부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의 관세가 6%에 그치는데 반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나 그 부산물이 함유된 경우의 관세가 21.3%로 나타나고 있음.

⑤ 중국

- 0207호는 국제 기준에 빠있는 것 여부 및 특정 부위 등의 기준을 다소 추가하여 총 28개의 세번을 마련하고 있음.(표4-3-40 참조) 이 중에서 닭고기의 경우는 11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하지 아니한 닭고기는 국제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추가적인 구분을 행하지 않음.
 - 신선·냉장 상태의 절단육 및 설육의 경우에는 우선 절단육과 설육을 구분한 다음, 절단육을 다시 ‘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설육을 ‘날개’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함.
 - 냉동상태의 절단육 및 설육도 앞선 신선·냉장 상태의 절단육 및 설육과 거의 유사하나 다만 설육이 ‘날개’와 ‘발톱이 달린 닭발’, 그리고 나머지로 분류되는 차이가 있음. 이는 발톱이 달린 닭발 요리를 일부 지역에서 별미로 먹고 있는 식문화를 반영한 이유에서임.
- 칠면조의 경우는 국제 기준을 그대로 따라 0207호 내에서 4개의 세번을 갖고 있음.
-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는 0207호 내에서 13개의 세 번을 가짐.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하지 아니한 육’과 ‘기타’가 모두 ‘오리의 것’, ‘거위의 것’, ‘기니아새의 것’으로 구분되어 12개의 세번으로 분류됨.
 - ‘기름진 간’이 국제기준 그대로 1개의 세번을 가짐.

- -

<표 4-3-40> 중국의 가금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5단위	6단위		
02071 (닭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13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4	뼈 있는 것, 부위
	020714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5	뼈 있는 것, 부위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26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	-
	020727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	-
0207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0732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3	가금의 종류
	020733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3	가금의 종류
	020734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	-	-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	3	가금의 종류
	020736 (기타-냉동)	3	가금의 종류

- 0209호에서는 국제 기준 그대로 비계를 통칭하는 하나의 세번만 존재할 뿐 돼지비계와 가금류의 비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1602호에서는 국제기준인 ‘칠면조의 것’, ‘닭의 것’, ‘기타’ 에 ‘닭의 것’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구분을 행해 총 8개의 세번이 지정되어 있음.
 - ‘칠면조의 것’은 별도의 추가적인 구분 없이 단 한 개의 세번만 존재함.
 - ‘닭의 것’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선 구분한 다음, 다시 그렇지 않은 것을 가슴, 다리, 기타 등 부위별로 분류하고 있음.
 - ‘기타’의 경우도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 후,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오리의 것과 기타 가금류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① 우리나라 HSK 분류 현황

- 우리나라는 0207호에 33개의 세번을 마련하고 있으며(표 4-3-41 참조), 이 중

‘닭의 것’은 16개의 세번을 가짐.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하지 아니한 닭고기의 경우, ‘중량이 550g 이하인 것’과 ‘기타’로 구분됨. 550g이 기준이 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삼계탕용이나 통닭구이용으로 적합한 닭을 550g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선·냉장과 냉동을 막론하고 절단육의 경우는 ‘다리’, ‘가슴’, ‘날개’, ‘기타’ 등 부위별로 구분되어 세번이 늘어남. 설육 역시 ‘간’과 ‘기타’로 구분됨.

○ 칠면조의 경우는 0207호 내에서 8개의 세번을 갖고 있으며 ‘절단하지 아니한 육’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그대로 따름.

- 다만 ‘절단육 및 설육’의 경우에는 우선 절단육과 설육을 구분한 다음, 설육을 ‘간’과 ‘기타’로 나누고 있음.

○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 역시 0207호 내에서 9개의 세번을 가지는데, ‘기름진 간’이 국제기준에 따라 세번으로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칠면조의 경우와 분류 체계가 같음.

<표 4-3-41> 우리나라의 가공육 관련 HS 세번(0207호) 추가 분류 현황

HS 코드		추가 세번 갯수	세번 추가 기준
5단위	6단위		
02071 (닭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2	중량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2	중량
	020713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6	부위
	020714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6	부위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26 (절단육 및 설육 - 신선 또는 냉장)	3	절단육과 설육 구분, 부위
	020727 (절단육 및 설육 - 냉동)	3	절단육과 설육 구분, 부위
0207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020732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 또는 냉장)	-	-
	020733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	-
	020734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	-	-
	020735 (기타-신선 또는 냉장)	3	절단육과 설육 구분, 부위
	020736 (기타-냉동)	3	절단육과 설육 구분, 부위

- 0209호에서는 국제 기준에 의한 하나의 세번을 둘로 나누어 돼지와 가금류의 비계를 구분하고 있음.
- 1602호에서는 국제기준인 ‘칠면조의 것’, ‘닭의 것’, ‘기타’ 각각을, 2개, 3개, 2개씩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세번이 존재함.
 - ‘칠면조의 것’과 ‘기타’의 세번을 둘로 세분한 기준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인지의 여부임.
 - 닭의 경우, ‘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다시 ‘삼계탕’과 ‘기타’로 구분하여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까지 총 3개의 세번을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각각의 구분들에 관세율의 차이는 없음, 따라서 이는 국내 식문화 등을 반영한 세번 분류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 등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닭고기와 관련된 주요 세번별 수입량 추이를 보면, 냉동된 형태의 닭다리(0207.14.1010)와 닭가슴(0207.14.1020), 닭날개(0207.14.1030) 등 부위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닭고기(0207.12) 역시 조류독감의 여파가 잦아들면서 최근 수입이 뚜렷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42> 최근의 세번별 닭고기 수입 실적

(단위: 톤, 천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냉동	닭고기	46	94	20	80	69,664	154,421
	닭다리	45,813	48,009	33,783	49,778	25,043	43,027
	닭가슴	1,135	2,205	361	864	21,737	42,567
	닭날개	10,164	21,344	8,018	1,521	4,159	9,775
	기타 절단육	2,232	1,989	1,476	1,935	5,422	13,242
	기타 설육	1,360	1,473	457	555	1,340	1,930
밀폐 용기의 것	삼계탕	2,715	8,035	8	15	7	38
	기타			2,271	6,889	1,479	5,654
밀폐 용기의 것 이외	기타조제 저장	12,110	35,157	13,632	41,785	10,032	38,196
	합계	75,575	118,306	60,026	119,422	139,783	308,850

- 이밖에도, 한-칠레 관세철폐 이행계획과 한-미 FTA 협상 및 한-EU FTA 협상의 이행계획 등이 향후 세번별 닭고기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칠레 FTA의 경우 ‘닭고기(냉장/미절단)’의 관세를 2004(16.9%) → 2009(8.5%) → 2013(1.7%) 이후 완전 철폐하게 됨. ‘닭고기(냉동/미절단)’의 경우도 2004(19.5%) → 2009(9.8%) → 2013(2.0%) 이후 완전 철폐하게 됨.
 - 한-미 FTA의 경우 ‘통닭’과 ‘가슴살(냉동)’, ‘날개(냉동)’ 등의 관세를 12년 내 폐지해야 하며, 냉장육 및 ‘다리(냉동)’, ‘기타 절단육(냉동)’과 모든 닭고기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폐지해야 함.
 - 또한 한-미 FTA 협상 이행계획에 의하면, 기타 가금육 중 오리고기 냉장육은 10년 내에, 오리고기 냉동육은 12년 내에 관세를 폐지할 예정임.

② 우리나라 HSK 분류 및 운영상의 문제점

- 가금육, 특히 닭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여타 축산물에 비해 부위별로 품목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고려할 때 기타 가금류 중 오리고기 등에 대한 세 번 분류가 상세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조류독감 및 중국산 훈제오리의 멜라민 검출 등 돌발변수들로 수입량 추이에 부침은 있으나 우리나라는 꾸준히 오리고기를 수입해오고 있음.(표 4-3-43 참조)
 - 하지만 오리고기는 0207호내에 9개 세번으로 이루어진 HS 021073(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에서 기타 가금류와 함께 통합적으로 분류되고 있음. 물론 여기에 속한 세 번의 수입이 현재 대부분 오리고기라 여겨지지만 오리고기를 EU·일본, 중국처럼 별도 세번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표 4-3-43> 우리나라 오리고기 수입량 추이

(단위: 톤)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수입량	8,428	3,969	31	83	1,571	338

자료: 한국축산연감

③ 개편방안

- 우리나라의 1인당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2008년 현재 12.5Kg수준임.(표 4-3-44 참조)
 - 이는 1985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소비 증가세를 감안할 때 멀지 않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배달용 치킨이나 주류 안주용 등으로도 소비가 활발할 뿐 아니라, 가슴살 등의 특정부위는 헬스나 다이어트 등의 용도로도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닭고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관세체계는 부위별 구분이나 삼계탕 등의 특수 용도 구분 등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어 이러한 향후의 추세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표 4-3-44> 우리나라 닭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1985	1995	2005	2008	2008 (미국)	2008 (일본)	2008 (EU 평균)
1인당 소비량	3.1	6.0	10.6	12.5	45.1	15.2	15.9

자료: 식육·육제품의 과학과 기술, 한국축산연감, 식육편람 등에서 재구성

- 우리나라의 1인당 오리고기 연간 소비량은 2008년 현재 1.75Kg수준임
 - 식품안전 이슈와 직결되어 있는데다가 웰빙 보양식 등의 이미지로 인해 향후에도 오리고기의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타 가금류 내에서 오리고기의 세번을 별도 부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45> 우리나라 오리고기 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톤, kg)

연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총 소비량	35,198	40,727	46,461	60,292	76,841	85,156
1인당 소비량	0.78	0.89	0.97	1.23	1.53	1.75

자료: 한국축산연감

- 앞서 살펴본 주요국들은 수입 및 소비가 가장 활발한 02류 내에서 도계형태나 부위 등 다양한 세번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 도계 형태와 부위에 따른 구분은 EU가 단연 가장 구체적이며, 일본과 중국도 ‘다리’와 ‘날개’ 등 자국내 소비가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국제기준보다 나아간 부위별 분류를 행하고 있음.
- 미국은 소비량이 많은 칠면조의 경우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저관세수입량을 따로 관리하고 있음.

<표 4-3-46>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세번 분류기준 요약 (가금육)

	미국	EU	캐나다	일본	중국
추가적인 분류기준	가공도, 수입가격 (칠면조) 등	도계형태, 부위 등	산란계, 부위, 저관세수입 등	도계형태, 부위 등	뼈 있는 것, 특정부위 등

- 따라서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 현행 가금육 품목분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닭고기의 경우 부위별 국내 소비 패턴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기타 가금육의 경우 소비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세번에서 총괄하고 있음.
 - 둘째, 이에 특히 오리 고기 등의 정확한 통계 작성이 곤란함.
- 개편방안: 이에 우선 HS 0207호와 1602호 내에서 오리고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세 번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0207호 개편안>

현행

개편안

0207	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32	절단하지 아니한 육 (신선 또는 냉장)
	33	절단하지 아니한 육 (냉동)
	34	기름진 간(신선·냉장)
	35	기타(신선·냉장)
	1000	절단육
	20	설육
	10	간
	20	기타
	36	기타(냉동)
	1000	절단육
	20	설육
	10	간
	90	기타



0207	3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32	절단하지 아니한 육 (신선 또는 냉장) <u>1. 오리</u> <u>2. 거위 및 기니아새</u>
	33	절단하지 아니한 육 (냉동) <u>1. 오리</u> <u>2. 거위 및 기니아새</u>
	34	기름진 간(신선·냉장)
	35	기타(신선·냉장)
	1000	절단육 <u>1. 오리</u> <u>2. 거위 및 기니아새</u>
	20	설육
	10	간
	20	기타
	36	기타(냉동) <u>1. 오리</u> <u>2. 거위 및 기니아새</u>
	1000	절단육 <u>1. 오리</u> <u>2. 거위 및 기니아새</u>
	20	설육
	10	간
	90	기타

<1602호 개편안>

현행

개편안

1602	39	기타 (닭, 칠면조 외)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1602	39	기타 (닭, 칠면조 외)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u>1. 오리의 것</u> <u>2. 기타</u>
	9000	기타 <u>1. 오리의 것</u> <u>2. 기타</u>

- 즉 대체적으로 닭고기의 경우 국내 소비 패턴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여 부위별로 HS 세번이 현재 잘 나누어져 있으나 기타 가금육(오리 및 거위·기니아새)으로 분류된 세번(HS 02073과 0160239)을 명확히 오리와 거위·기니아새로 나누어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임.
- 특히 오리고기 소비증가 및 수입 증가 추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오리고기를 독립 세번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2) 낙농유제품

- 여기서는 전 세계적으로 낙농유제품으로 분류되는 HS 세번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분류 현황과 관세부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요 낙농유제품의 HS 세번 분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 대상품목으로는 HS 4단위기준으로 아래와 같음.
 -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 기타 발효/산화된 밀크와 크림
 - 0404: 유장과 따로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우유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 0405: 버터, 기타의 지와 유, 데어리 스프레드
 - 0406: 치즈와 커드
 - 1702: 1702류 중 1702.11/19의 유당, 유당시럽
 - 1901: 1901류 중 1901.10/90의 밀크조제품
- 우리나라 낙농유제품 관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 낙농유제품 관련 품목 : HS 10단위 기준으로 60개의 세번
 - 호주(26개)를 제외한 일본(148개), 미국(259개), EU(159개)에 비하여 세번수가 적음.
 - (2) 시장접근 물량(TRQ) 적용 품목 :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유장, 버터와 유당
 - 시장접근 대상 품목과 비대상 품목의 HS 코드가 미분화되어 있음
 - (3) 관세율의 구성 : 종가세 100%로 단순한 형태의 관세부과 유형을 가짐.
 - (4) 가공도와 관계없이 단일 관세율이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 할수록 관세율이 낮게 책정되는 역관세구조로 산업보호 효과가 낮음.
 - (5) HS 6단위 이후로는 성분비율을 기준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음
 - (6) HS 6단위 이후로는 감미료 등의 첨가여부로 세분되어 있지 않음
 - (7) HS 6단위 이후로는 사용용도, 포장용기 등을 기준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음

(8) 유사대체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 존재

- 탈지분유 세율 : 176%
- 유장과 변성유장 기타, 유아용 조제식료품 기타 (혼합분유) 세율 : 36%
- 버터 : 89%
- 데어리 스프레드 : 54%
- 가공도가 낮은 유사대체 품목의 관세가 낮아 유사대체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 존재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낙농품관세체계의 특징은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종가관세 위주이며, 특히 사용용도/성분비율/감미료첨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선 낙농품관세부과 유형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세 번의 낙농품에 대해 전적으로 종가관세만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품목 및 교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관세유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예컨대 전체 낙농품 HS 세번에서 비종가세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48%, EU 96%, 일본 31%, 호주 16%수준으로 우리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음.
- 또한 위에 언급한 낙농품류에 속하는 HS 세번수는 미국 259개, EU 159개, 일본 148개, 호주 26개, 한국 60개로 호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낙농품관세 세번 수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미국, EU, 일본 등의 낙농품 관세세번 분류 수가 많은 이유는 주로 사용용도/성분비율/포장단위 별로 세 번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임. 또한 WTO나 FTA를 통해 제공된 TRQ 할당물량을 기준으로 쿼터량 안팎의 부과되는 세율이 HS세번을 통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세번 수가 많게 나타난 이유임.

<표 4-3-47> 주요국의 낙농품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HS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 번수(개)		비종가세 비중(%)
		종가세	비종가세	
한 국	60	60	0	0
일 본	148	102	46	31
미 국	259	134	125	48
E U	159	6	153	96
호 주	26	21	5	19

<표 4-3-48> 주요국의 낙농유제품 HS 세번 수

HS	한국	미국	일본	EU	호주
0401	4	9	11	12	3
0402	10	30	38	25	5
0403	7	24	25	30	2
0404	16	13	37	30	2
0405	3	14	13	10	3
0406	12	155	10	44	7
1702	4	2	2	2	2
1901	4	13	2	2	2

1) 탈지분유(HS코드: 040210, 지방함량 1.5%이하)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관세부과 품목분류 체계상 040210류에 속하는 탈지분유의 HS 세번수는 일본 10개, EU 4개, 미국 3개, 한국 3개, 호주 1개로 분류되어 있음.

<표 4-3-49> 주요국의 탈지분유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종가세 비중(%)	쿼터세번수 (개)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한 국	3	3				0	
일 본	10	6	2	2		40	6
미 국	3		3			100	1
E U	4		4			100	
호 주	1	1				0	

- 일본의 탈지분유 세번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감미료 첨가여부 외에 지정수입자 여부와 학교급식용, 사료용, 일반용 등 용도별로 세번이 나누어져 있고, TRQ수입과 일반 수입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임.
- EU의 경우는 감미료 첨가 여부, 순중량 2.5kg 단위포장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포장단위가 적을수록 관세율이 높게 부과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감미료 첨가 여부에 관계없이 세번이 분류되어 있으나 일반용과 구분하여 정부사용용 여부 그리고 TRQ 여부에 따라 HS세번이 구분되어 있음.

- 호주의 경우는 자국의 높은 경쟁력을 반영하여 1개 세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감미료 첨가여부에 따라서만 분류되어 있으나 감미료 미첨가의 경우 기타라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 실제 내용과 달리 3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실제 HS 0402101090(감미료 미첨가/기타)는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모호한 분류이고, 실제 수입실적도 거의 없음.
- 모든 나라가 감미료 첨가여부에 따라 세번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이 사용용도(학교급식용, 사료용), TRQ 물량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EU는 포장방법에 따른 분류가 추가되어 있음.
 - 어느 나라나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는 없음.

<표 4-3-50> 탈지분유 분류기준 비교

분류기준	감미료 첨가 여부	용도	수입지정	TRQ 여부	포장방법
한국	○				
일본	○	○	○	○	
미국	○	○		○	
EU	○				○

- 개편방안: 탈지분유는 대체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세 번 분류를 취하고 있어 현행 분류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탈지분유는 TRQ 물량(WTO 회원국과 FTA 체결국인 미국과 EU)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으로 향후 TRQ 물량에 대한 국내외 통계 정보제공차원에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TRQ 제공여부에 따른 세번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전지분유(HS코드: 040220, 지방함량 1.5%초과)

- 관세부과 품목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040220류에 속하는 전지분유의 HS 세번수는 일본 18개, 미국 12개, EU 10개, 한국 3개, 호주 2개로 분류되어 있음.

<표 4-3-51> 주요국의 전지분유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중가세 비중(%)	쿼터세번수 (개)
		증가세	증량세	복합세	선택세		
한 국	3	3				0	
일 본	18	10	2	6		44	10
미 국	12	2	9	1		88	4
E U	10		10			100	
호 주	2	2				0	

- 일본의 전지분유 세번수가 많은 이유는 감미료 첨가여부 외에, 지정수입자 여부, 지방함량, 학교급식용, 사료용, 일반용 등 용도별로 세번이 나누어져 있고 TRQ 수입과 일반수입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임.
 - 지방분 성분함량에 따라 1.5%초과 5%이하, 5%초과 30%이하 품목과 30%초과 품목으로 HS 세번을 구분하고 있음.
 - 감미료가 첨가되고 지방 성분함량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으며, 학교급식용과 사료용에 비해 일반용 세율이 높음.
- 미국은 감미료 첨가여부, 정부사용용 여부, 그리고 TRQ 물량 여부에 따라 HS 세번이 구분되어 있음.
 - 또한 감미료 미첨가의 경우에 한해 지방분 성분함량에 따라 1.5%초과 3%이하, 3%초과 35%이하, 그리고 35%초과 품목으로 HS 세번을 구분하고 있음.
 - 감미료가 첨가되고 지방 성분함량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음.
- EU는 순중량 2.5kg 단위포장 여부에 따라 세번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미료 첨가여부와 지방성분 함량에 따라 HS 세번을 분류하고 있음.
 - 지방분 함량에 따라 1.5%초과 27%이하, 1.5%초과 11%이하, 11%초과 27%이하, 27%초과 품목으로 HS 세번을 구분하고 있음.
 - 2.5kg 이하로 포장단위가 적을수록, 감미료가 첨가되고 지방성분 함량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음.
- 호주의 경우는 자국의 높은 경쟁력을 반영하여 단지 감미료의 첨가여부에 따라 2개 세번으로 전지분유를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 마찬가지로 감미료 첨가여부에 따라서만 전지분유를 분류하고 있으나 탈지분유와 마찬가지로 감미료 미첨가의 경우 기타라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 실제 내용과 달리 3개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실제 HS 0402219000(감미료 미첨가/기타)은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모호한 분류이고, 실제 수입실적도 거의 없음.
-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전지분유를 지방분 함량에 따라 세분류하고 있으나, 일본은 5%, 30%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미국은 3%, 35%를 기준으로 하고, EU는 11%, 27%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일본과 미국은 TRQ물량 및 용도에 따라 별도 세번을 부여하고, EU는 포장방법을 세번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음.

<표 4-3-52> 전지분유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기준	감미료 첨가 여부	지방분 함량	용도	수입지정	TRQ 여부	포장방법
한국	○					
일본	○	○	○	○	○	
미국		○	○		○	
EU		○				○

<표 4-3-53> 전지분유(04022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유지방 [관 세]	유지방 [관 세]	유지방 [관 세]
한국(%)	1.5 [176]		
일본(¥/kg+%)	1.5 [425+21.3]	5.0 [612+25.5]	30.0 [1,023+25.5]
미국(\$/kg)	1.5 [0.865]	3.0 [1.092]	35.0 [1.556]
EU(€/kg)	1.5 [130.4]	11.0 [130.4]	27.0 [161.9]

- 지방함량이 11~27%인 전지분유가 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방성분 비율에 따라 전지분유의 HS 세번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에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지분유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EU(독일) 무역통계에 의하면 전지분유에 대한 대한국 수출량은 HS 04022119(지방분 이전 중량의 11%초과 27%이하, 감미료 미첨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지분유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는 전지분유에 대한 세번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성분에 따라 분류되지 않아 어떤 유형의 전지분유를 우리에게 수출하는 지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나 아마도

EU(독일)로부터 수입되는 전지분유와 비슷한 유형의 지방분을 함유한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미국, 일본, EU와 같이 전지분유의 세번을 지방분 함량에 따라 3단계(일본과 미국)내지 4단계(EU)로 세분화함으로써 정확한 수입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주요 품목의 효과적인 수급관리와 WTO나 FTA 협상에서 관세감축의 유연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개편방안: 전지분유의 세번을 지방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지분유는 TRQ 물량(WTO 회원국과 FTA 체결국인 미국과 EU)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으로 향후 TRQ 물량에 대한 국내외 통계 정보제공차원에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TRQ 제공여부에 따른 세번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지방성분비율의 경계점을 식품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임.

3) 요구르트(HS코드: 040310-)

○ 관세부와 품목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040310류에 속하는 요구르트의 HS 세번수는 일본 6개, 미국 4개, 캐나다 4개, EU 12개, 한국 3개, 호주 1개로 분류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냉동·냉장 등 상태, 감미료 및 향신료 첨가여부, 소매포장 단위, TRQ에 의해 구분하고 있음.

○ 미국은 냉동·냉장 등 상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상태에 대한 구분없이 TRQ에 의해 분류한 뒤 유기농 인증 여부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 특징임.

○ EU의 요구르트 세번수가 많은 이유는 과일, 너츠,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향신료를 가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후 감미료 및 지방분의 함량이 3% 이하, 3% 초과 6% 이하, 6% 초과 하는 품목으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임.

- -

<표 4-3-54> 요구르트 분류기준 비교

분류기준	감미료 첨가	용도	TRQ	유기농	포장방법	지방분 함량	상태
한국							○
미국							○
일본	○		○		○		○
EU	○					○	○
캐나다			○	○			

○ 개편방안: 현재 요구르트는 상태(액상/냉동/기타)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요구르트 세번을 일본, EU, 캐나다와 같이 감미료첨가, 지방분 함량, 유기농여부에 따라 세분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혼합분류(HS코드: 040490-우유조제품(유장기타) 및 190190-혼합분류(우유성분포함))

○ 관세부와 품목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040490류와 190190류에 속해 있는 세번으로 정의되는 혼합분류의 HS 세번수는 일본 26개, 미국 11개, EU 7개, 한국 4개, 호주 2개로 분류되어 있음.

- 일본의 26개 혼합분류 품목에는 16개 우유조제품과 10개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의 11개 혼합분류 품목에는 5개 우유조제품과 6개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EU의 7개 혼합분류 품목에는 6개 우유조제품과 1개의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호주는 각각 1개의 우유조제품과 1개의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호주와 같이 단순분류였으나 2008년 이후 유장기타(0404900000)은 지방분 함량 1.5%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조제식품(1901902000)은 지방분 함량 30%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구성됨.

- -

<표 4-3-55> 주요국의 혼합분유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종가세 비중(%)	쿼터세번수 (개)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한 국	4	4				0	
일 본	26	18		8		31	11
미 국	11	7	1	3		36	3
E U	7	1	6	1		86	
호 주	2	2				0	

○ 일본의 혼합분유 세번수가 많은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우선 우유조제품(040490) 품목이 16개로 세분되어 있는데, 감미료 첨가여부, 유아용과 일반용 등 용도, TRQ물량 여부, 지방성분 함량에 따라 HS 세번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임.
- 특히 우유조제품은 지방분의 성분비율에 따라 1.5%이하, 1.5%초과 30%이하, 30%초과 품목으로 HS 세번을 구분하고 있음.
- 지방성분 함량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으며, 유아용에 비해 일반용 세율이 높음.
- 190190류에 속해 있는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의 경우도 천연우유성분의 포함 비율 30%, 지방함량 30%, 자당의 성분비율 50%를 기준으로 HS 세번을 세분화 하고, 성분비율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음.

○ 미국의 혼합분유 분류 상황은 아래와 같음.

- 전체 11개 혼합분유 품목은 우유조제품(040490류) 품목 5개와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190190류) 6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유조제품은 일반용과 구분하여 GN15에 따른 정부사용용 그리고 TRQ 물량여부에 따라 HS세번이 구분되어 있음.
- 190190류에 속해 있는 우유성분 포함조제품의 경우 우유성분 10%를 기준으로 성분비율에 따라 HS 세번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성분비율이 높아도 관세율은 동일함.

○ EU의 혼합분유 분류 상황은 아래와 같음.

- EU의 경우 전체 7개 혼합분유 품목 분류는 우유조제품(040490류) 6개와 우유

- -

성분 포함 조제품(190190류) 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우유조제품(040490)의 경우 감미료 첨가여부와 지방성분 함량에 따라 HS 세번을 분류하고 있음.
- 지방분 성분함량에 따라 1.5%이하, 1.5%초과 27%이하, 27%초과 품목으로 HS 세번을 구분하고 있음.
- 감미료가 첨가되고 지방 성분함량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음.
- 한편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190190류)은 명목상 1개 세번으로 되어 있으나 7.6%를 기준으로 유지방, 단백질, 전분/포도당, 자당/전화당 등의 성분비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실제 세번수는 가장 많은 경우임.

○ 반면에 우리나라의 혼합분유 분류는 최근(2008년)에 우유성분비율을 감안하여 우유조제품(유장기타 040490류) 2개와 우유성분 포함 조제품(혼합분유190190류) 2개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단순한 분류 형태임.

○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사용용도, 주성분의 함량, 감미료 첨가여부, TRQ여부 등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우유조제품(040490)의 경우, 일본은 지방성분 1.5%, 30%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EU는 1.5%, 27%를 기준으로 분류함.
- 혼합분유(190190)의 경우, 일본은 우유성분 30%, 지방성분 30%, 자당 함량 50%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EU는 지방, 단백질, 당류성분 구성비에 따라 분류함.

<표 4-3-56> 우유조제품(유장기타 HS 040490)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기준	감미료 첨가	유지방함량	용도	유즙단백질	ad 1 품목	TRQ
한국		○				
일본	○	○	○			○
미국			○	○	○	○
EU	○	○				

- -

<표 4-3-57> 우유조제품(유장기타 HS 04049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관 세]	유지방	[관 세]	유지방	[관 세]
한국(%)	[36]	1.5	[36]		
미국(\$/kg+%)			[1.189+8.5]		
일본(¥/kg+%)	[400+29.8]	1.5	[679+29.8]	30.0	[1,023+29.8]
EU(€/100kg)	[100.4]	1.5	[135]	27.0	[167.2]

<표 4-3-58> 혼합분유(190190)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기준	감미료 첨가	우유 성분	지방분	자당	TRQ	용기	용도	ad 1 품목
한국		○						
일본	○	○	○	○	○	○		
미국		○			○		○	○
EU	각성분 함량에 따라 관세율 결정							

<표 4-3-59> 혼합분유(19019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자당함량	[관 세]	우유 성분비	[관 세]	지방함량
한국(%)		[36]	30%	[36]	
미국 (\$/kg+%)		[1.189+8.5]	10%	[1.189+8.5]	
일본(%, ¥/kg+%)	자당 50%이하	[23.8]	30%	[679+29.8]	지방 30%이하
	자당 50%이상	[29.8]	30%	[1,159+29.8]	지방 30%이상
EU	유지방, 단백질, 자당, 포도당 등의 성분비율에 따라 관세 비례				

○ 개편방안: 우유조제품(유장기타 040490)은 지방분의 성분비율에 따라 현행 지방성분 1.5% 기준에서 일본과 같이 1.5%이하, 1.5%초과 30%이하, 30%초과 품목으로 HS 세번을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혼합분유(190190류)의 경우는 최근 유지방에 30%를 기준으로 두 개 세 번으로 개편하였으나 일본과 같이 감미료첨가나 자당함량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유장(HS 040410류: 유장과 변성유장)

○ 040410류에 속하는 유장과 변성유장의 HS 세번수는 일본 21개, EU 24개, 미국 8개, 한국 14개, 호주 1개로 분류되어 있음.

<표 4-3-60> 주요국의 유장과 변성유장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국 가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중가세 비중(%)	쿼터세번수 (개)
		증가세	증량세	복합세	선택세		
한 국	14	14				0	
일 본	21	15		6		29	12
미 국	8	3	3	2		62	2
E U	24		24			100	
호 주	1	1				0	

○ 일본의 040410류의 세번수가 많은 이유는 우선 감미료 첨가여부와 지방분의 함량에 따라 HS 세번이 나누어져 있고, 지정수입자 수입여부와, 사료용, 유아용, 일반용 등 용도별로 세번이 나누어져 있고, TRQ 물량, 무기질 농축여부가 HS 세번을 통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세번수가 많게 나타남.

- 용도분류 및 TRQ 물량에 따른 세번 분류를 제외하면 실제 040410류는 6개의 세번으로 분류됨.
- 일본의 040410류 관세율 부과상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감미료가 첨가될수록, 지방분 함량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고, 용도별로는 사료용, 유아용, 일반용의 순으로 관세율이 높음. TRQ 배정물량에 부과되는 시장접근세율은 증가세이나 TRQ 초과 수입물량에는 복합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지방분 함량에 따른 HS 세번 분류는 5%를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로 구분됨.

<표 4-3-61> 유장 및 변성유장(040410)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 기준	감미료 첨가	지방 함량	단백질 함량	성분 조정	용도	TRQ	수입 지정	비살균 처리	성상
한국				○	○				○
일본	○	○		○	○	○	○	○	
미국				○	○	○			○
EU	○	○	○						○

- -

<표 4-3-62> 유장 및 변성유장(04041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관 세]	유지방	[관 세]	유지방	[관 세]
한국(%)			[49.5]		
미국(\$/kg+%)			[1.035+8.5]		
일본(¥/kg+%)	[425+29.8]	5.0	[687+29.8]		
EU(€/100kg)	[100.4]	1.5	[135.7]	27.0	[167.2]

- EU의 경우는 분상/과립/기타 형태, 감미료 첨가여부, 단백질 함량 및 지방분의 함량에 따라 HS 세번과 세율이 나뉘져 있음. 일본과 달리 분상/과립/기타 고체 형태 유무와 단백질 함량에 따라 세번이 분류되고 있으나 분상/과립/기타 형태, 단백질 함량에 따른 관세율 격차는 거의 없음.
 - EU의 040410류 관세율 부과상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감미료가 첨가될수록, 지방분 함량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음.
 - EU에서 유장과 변성유장(040410)의 경우 단백질 함량에 따른 HS 세번 분류는 15%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지방분 함량에 따른 HS 세번 분류는 1.5%이하, 1.5%~27%, 27%초과로 구분됨.
- 미국의 경우 감미료 첨가여부나 지방분 함량에 관계없이 세번이 분류되어 있으나, 일반용과 구분하여 정부사용용에 별도 세번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의 040410류 관세율 부과상의 특징은 단백질농축 유무와 액체/건조의 형태에 따라 HS 세번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임.
- 호주의 경우는 단지 1개의 세번만으로 040410류를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의 상태(유장분말과 기타)로 HS 세번이 나누어져 있고, 변성유장은 유당, 무기질, 유장농축 단백질의 제거 여부에 따라 HS 세번이 나누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040410류는 일본, EU와 달리 감미료나 지방분의 함량에 따라 HS 세번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040410류의 세율은 49.5%로 모두 동일함.
 - 현행 우리나라 040410류 HS 세번 분류체계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유장과 변성유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로 구성성분의 제거 형태에 따라서만 세번이 분류되고 있으며, 그나마 세번별 관세율 차이도 없다는 측면에서 해당 품목의 산업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2008년)에 당초 유장류 7개 품목(유장분말 2개, 변성 유장 5개)으로 단순 분류되던 것을 각각의 경우를 사료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14개 품목으로 세분류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040410류 세번 분류 방식은 일본이나 EU에 비해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개편방안: 유장 및 변성유장(040410류)의 경우 EU, 일본과 같이 감미료 첨가 여부나 지방성분 비율에 따라 HS 세번을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정확한 수입통계 목적에서 우리나라에 0404류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EU에서와 같이 지방분 함량에 따라 1.5%, 27%를 기준으로 세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장은 TRQ 물량(WTO 회원국과 FTA 체결국인 미국과 EU)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으로 향후 TRQ 물량에 대한 국내외 통계 정보제공차원에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TRQ 제공여부에 따른 세번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버터, 기타의 밀크지와 유, 데어리스프레드(0405류)

○ 관세부와 품목분류 체계(HS 4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0405류에 속하는 각국의 HS 세번수는 미국 14개, 일본 13개, EU 10개, 한국 3개, 호주 3개로 분류되어 있음.

<표 4-3-63> 주요국의 버터 관련 HS 세번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비 고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종가세 비중(%)	쿼터세번수 (개)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한 국	3	3				0	
일 본	13	8		5		38	8
미 국	14	5	7	2		64	4
E U	10	2	8			80	
호 주	3	3				0	

- 0405류는 HS 6단위 기준으로 다시 버터(040510), 데어리스프레드(040520) 그리고 기타(040590)로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미국의 0405류는 14개 세번수로 분류되어 있으나 다른 낙농품 분류와 마찬가지로 국가소비용(GN15)과 국제협정이행(additional note)에 따른 TRQ 물량에 대한 별도 세번 8개를 제외하면 실제 0405류의 세번수는 6개임.

- -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미국의 0405류 6개 세번은 버터(040510) 1개, 데어리스프레드(040520) 4개, 기타 밀크지(040590) 1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즉 버터와 기타 밀크지의 경우에는 GN15와 TRQ 물량에 대한 별도 세번 분류를 제외하면 HS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하지만 데어리스프레드는 버터대체품 여부와 버터지방분 45%를 기준으로 HS 세번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버터지방분의 함량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버터보다 버터 지방분이 높은(45% 이상) 데어리스프레드와 기타 밀크지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음.
- 일본의 0405류는 13개 세번수로 분류되어 있으나 다른 낙농품 분류와 마찬가지로 지정수입자 수입 및 TRQ에 대한 별도 세번 분류 8개를 제외하면 실제 0405류의 세번 수는 5개임.
- 일본의 0405류 5개 세번은 버터(040510) 2개, 데어리스프레드(040520) 1개, 기타 밀크지(040590) 2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와 달리 버터와 기타 밀크지의 경우 지방분 함량 85%을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로 HS 세번이 구분되어 있으나 데어리스프레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지방분 함량이 85% 이하인 버터와 기타 밀크지, 그리고 데어리스프레드의 관세율이 다 같이 높은 수준(985¥/kg+29.8%)이나 지방함량 85% 이하인 버터와 밀크지의 세율이 더 높음.
 - 또한 모든 TRQ 물량에 대해서는 종가세가 부과되나 TRQ 물량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복합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EU의 0405류는 공식적으로 10개의 세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데어리스프레드에 해당하는 일부 세번의 경우(0405.20.10, 0405.20.30)는 관세율이 기본세율 9%를 기준으로 유지방, 단백질, 전분/포도당, 자당/전화당 등의 성분비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가장 다양하고, 세번 분류도 많은 국가임.
- EU의 0405류 10개 세번은 버터(040510-) 5개, 데어리스프레드(040520-) 3개, 기타 밀크지(040590-) 2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버터의 경우 지방분 함량 85%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특히 85%이하의 지방분 함량 버터의 경우는 다시 버터의 유형(자연/재결합/유장버터)으로, 그리고 자연버터의 경우는 즉시포장과 순중량(1kg)에 따라 HS 세번이 5개로 구분되어 있음.
- 데어리스프레드는 지방분의 함량 39%~60%, 60%~75%, 75%~80%에 따라 HS 세번이 3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타 밀크지의 경우도 지방분(99.3%)의 함량에 따라 2개 세번으로 구분됨.
- 일반적으로 지방분의 함량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음.

<표 4-3-64> 버터(040510)의 분류기준 비교

분류기준	지방함유량	유형	중량 1kg 이하	TRQ	용도	수입지정
한국						
일본	○			○		○
미국				○	○	
EU	○	○	○	○		

<표 4-3-65> 버터(04051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지방	[관 세]	지방	[관 세]
한국(%)		[89]		
미국(\$/kg)		[1.541]		
일본(¥/kg+%)	80	[985+29.8]	85	[1,159+29.8]
EU(€/100kg)	80	[189.6]	85	[231.3]

<표 4-3-66> 데어리스프레드(040520)의 분류 비교

분류기준	지방함량	버터대체품	용도	ad 1	TRQ
한국					
일본					○
미국	○	○	○	○	○
EU	○				

<표 4-3-67> 데어리스프레드(04052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지방	[관 세]	지방	[관 세]	지방	[관 세]	지방
한국(%)		[8(54)]					
일본(¥/kg+%)		[985+29.8]					
미국(\$/kg)	39	[0.131]	45	[1.996]	80		
EU(€/100kg)	39	[9%+α]	60	[9%+α]	75	[189.6]	80

주 1) EU의 α는 유지방, 유단백, 포도당 등의 함량에 따라 계산된다.

<표 4-3-68> 기타 밀크지(040590)의 분류 기준

분류기준	지방분	수분	수입지정	용도지정	TRQ
한국					
일본	○		○		○
미국				○	○
EU	○	○			○

<표 4-3-69> 기타 밀크지(040590)의 세분류 기준과 관세율

	[관 세]	지방	[관 세]
한국(%)	[89]		
미국(\$/kg+%)	[1.865+8.5]		
일본(¥/kg+%)	[985+29.8]	85	[1,159+29.8]
EU(€/100kg)	[231.3]	99.3	[231.3]

- 호주의 0405류는 버터(040510-) 1개, 데어리스프레드(040520-) 1개, 기타 밀크지(040590) 1개 세번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인 3개 세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버터와 기타 밀크지는 0%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데어리스프레드에는 4%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 마찬가지로 0405류가 단지 3개의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음.
 - 버터(040510-) 1개, 데어리스프레드(040520-) 1개, 기타 밀크지(040590-) 1개 세번임.
 -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지방분 함량 등에 따른 HS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터와 기타는 89%의 양허관세가 부과 되고 있는 반면에 버터 대체품목으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데어리스프레드는 8%의 실행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버터 및 관련 유제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0405류 세번 분류 방식은 매우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버터 유사·대체 품목간에 관세격차문제의 발생으로 해당 품목의 산업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는 버터, 데어리스프레드, 기타 밀크지가 각각 단일 세번으로 되어있고, 데어리스프레드의 실행관세는 8%로 양허관세 54%보다 특별히 낮음.

- 버터는 EU가 유지방 85%를 기준으로 세번을 분류하고 있고, 유형(내추럴/유장/재결합)에 따라서도 세분하고 있음.
 - 데어리스프레드는 미국이 지방함량 45% 초과와 이하를 기준으로, EU가 지방함량 39~60%, 60%~75%, 75~80%로 세분하고 있음.
 - 기타 밀크지는 일본이 지방함량 85% 이상과 이하, EU가 99.3% 초과와 이하로 세분하고 있음.
- 개편방안: 버터, 데어리스프레드, 기타 밀크지의 경우 일본, 미국, EU와 같이 지방성분 비율에 따라 HS 세번 분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버터는 유지방 85% 기준으로 분류하고, 데어리스프레드는 지방분 60%, 75%, 기타 밀크지는 지방함량 85%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버터는 TRQ 물량(WTO 회원국과 FTA 체결국인 미국과 EU)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으로 향후 TRQ 물량에 대한 국내외 통계 정보제공차원에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TRQ 제공여부에 따른 세번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치즈와 커드(0406류)

- 0406류는 HS 6단위 기준으로 다시 신선한 치즈/커드/유장치즈(040610-), 갈았거나 분상한 치즈(040620-), 갈았거나 분상한 치즈를 제외한 가공치즈(040630-), 블루바인치즈(040640-), 그리고 기타치즈(040690-)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관세부과 품목분류 체계(HS 4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0406류(치즈와 커드)의 HS 세번수는 미국 154개, EU 45개, 일본 10개, 호주 7개, 한국 12개로 분류되어 있음.
- 치즈(0406류)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동양과 서양 국가의 식생활 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품목으로 0406류의 동서양 국가별 HS 세번수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음.
 - 미국, EU의 0406류의 HS 세번수는 여타 낙농품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 중 가장 많고, 호주 역시 낙농품 중 세번수가 가장 많음.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HS 세번수를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0406류가 미국이나 EU에 비해 매우 단순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음.

<표 4-3-70> 주요국의 치즈 관련 HS 세번 수 및 관세부과 유형 비교

비 고	세번수	관세유형별 세번수(개)				비중가세 비중(%)	쿼터세번수 (개)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한 국	12	12				0	
일 본	10	10				0	3
미 국	154	103	51			33	56
E U	45	2	43			96	
호 주	7	2	5			71	

- 미국의 경우 040640인 블루바인 치즈를 제외한 040610, 040620, 040630, 040690류에 걸쳐서 Colby, Edam, Romano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각 치즈의 종류 별로 HS 세번을 분류하고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54개의 가장 많은 세번으로 0406류를 분류하고 있음.
 - 버터지방의 함량에 따른 HS 세번의 분류도 있으나, 대부분은 치즈의 다양한 종류별로 HS 세번을 분류하고 있음.
 - 다른 종류의 낙농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용과 구분하여 정부사용용에 대한 세 번을 지정하고 TRQ 물량에 대한 HS 세번도 구분되어 있음.
- EU의 경우 지방분/수분의 함량에 따라 HS 세번이 나뉘져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 비슷하게 치즈의 종류에 따라 같은 지방분의 함량기준 안에서도 HS 세 번이 나뉘어져 있으나 미국보다는 치즈 종류별 세분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동시에 치즈를 만드는 방법(양가죽, 소가죽 병을 사용, 염수를 포함하는 용 기)에 따라 HS 세번을 분류해 놓기도 하였음.
 - Glarus 허브로 만들어진 치즈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종가세(7.7%)의 관세가 부과되어 대부분 종량세가 부과되는 다른 종류의 치즈와는 다른 관세율 체계를 따름.
- 호주는 대부분 무관세인 다른 낙농품과 달리 0406류에 대하여 \$1.22/kg(호주 달러)의 종량세를 5개의 세번에 부과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종량세를 부과하는 5개의 품목에 대하여는 TRQ 물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낙농강국인 호주도 UR 협상 이전에는 치즈에 대해 비 관세장벽을 통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

○ 일본은 0406류를 공식적으로 HS 세번상 10개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TRQ 물량에 대해 설정된 HS 세번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0406류는 7개 세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른 낙농품에 비해 0406류에 대한 분류가 매우 단순화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2008년) 치즈에 대한 유형과 제조방식 등을 감안하여 0406류를 과거 6개 세번에서 현재는 12개 세번으로 치즈의 HS 세번수를 늘렸으나 동시에 모든 세번에 걸쳐 동일한 관세율(36%)이 부과 되고 있음.

- 신선치즈(3개세번): 모차렐라, 크림, 기타 치즈

- 커드,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제외), 블루바인치즈 각각 1개세번

- 치즈기타(5개세번): 체더, 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치즈

○ 지속적인 소비패턴의 서구화와 포도주 소비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치즈 수입 증가 추세, 치즈의 수입단가가 종류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근 단행된 0406류의 관세 세 번 분류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치즈제품의 세분류를 통해 품목별로 국가·물량 등 수출입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개편방안: 최근(2008년) HS 세 번이 세분화된 바 있는 치즈와 커드는 현행 12개 세번을 유지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 치즈의 소비와 수입 동향을 고려하여 미국, EU 등과 같이 치즈의 종류에 따라 HS 세번을 더 세분화하여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 치즈는 성분보다는 종류, 상품특성, 산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류체계를 정해야 할 것임.

- -

V. 요약 및 결론

UR 농업협상에서 WTO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존에 시행되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오직 관세부과 조치만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UR 농업협정 타결과 함께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제 농산물 교역은 관세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출범이전까지 수입제한이 가능했던 고추, 마늘, 양파, 포도, 감귤,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주요 농산물이 1995년 이후에는 누구든지 일정율의 관세만 납부하면 검역상의 문제가 없는 한, 수입이 가능한 형태로 시장개방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농산물 교역시장은 모든 품목의 관세화 적용에 따라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화 정책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국들은 품목분류의 세분화와 전문화 정도에 따라 정책 활용가능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산업보호 측면은 물론 소비나 유통구조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된 바 없으며 UR 이전까지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농산물 관세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거의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UR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이나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국경보호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관세율 수준 자체는 물론 관세분류 체계 및 운영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DDA/FTA 협상 추진으로 야기되는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산업보호 수단으로서 농산물 관세체계 정비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상당기간동안 농산물 관세구조와 품목분류에 관한 용도별, 성분별, 가공 및 포장형태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품목특성세분화를 마련하고 관세부과방식도 단순부과방식에서 혼합부과방식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관련 관세체계는 국내 농산물 보호차원이 매우 빈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부과 방식에서 종가세 위주의 단일관세부과방식으로 인해 단순부과 구조이며 농산물 원재료와 가공도에 따른 관세부과시 가공도가 증가할 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는 역관세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내 농산물 산업보호에 치명적

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관세구조는 유사 및 대체품간의 관세부조화 및 관세격차 문제로 인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통한 실질적인 국경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환경 하에서 향후 국내 농산물 시장보호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WTO/FTA 농산물 협상에서 보다 활용도가 높은 정책수단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품목분류의 세분화를 통한 관세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내제도분석과 주요국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찰해보고 최근 관세의 역할에서 강조되는 산업보호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보호와 정확한 수입통계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수급관리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농산물 관세율 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위한 설득논리 제공과 농산물 관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WTO/FTA 농업협상 및 향후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예상되는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에 기여 및 효과적인 협상전략의 기초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구조는 국내 농산물 관세체계 분석을 위해 3가지의 대 분류를 통해 각 분야별 관세구조와 품목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와 주요국 방식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국내농업보호측면에서 농산물 관세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과제는 곡물과일분야이며 품목분류체계(HS)상 제10류, 제11류, 제12류, 제19류로서 제 10류에 속하는 곡물은 밀(1001호), 호밀(1002호), 보리(1003호), 귀리(1004호), 옥수수(1005호), 벼 또는 쌀(1006호), 수수(1007호), 메밀 및 기타 곡물(1008호)이며 제11류에 속하는 품목은 10류에 속하는 품목의 곡분, 분쇄물, 펠리트, 플레이크, 가공곡물, 배아, 맥아, 전분 등이다. 제12류 가운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곡물로 인식하는 유지작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포함된 품목은 대두(1201호), 낙화생(1202호), 유채(1205호), 참깨(120740소호), 들깨(120799소호 가운데 1000) 등이다.

곡물 및 과일분야에서 품목분류상의 구조상의 문제점은 품종별 세분화, 국산농산물의 성출하기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분리, 관세할당의 여부, 식탁용, 가공용,

- -

사료용 등 용도별 세분화 측면에서 주요 교역대상국에 비해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편법에 의한 수입을 조정하는 측면이 문제점을 분석되었으며 수입 농산물의 통관 및 유통, 통계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GM농산물 및 유기농산물의 분류기준이 부재하여 향후 유기 농산물의 품목 분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과일의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등과의 FTA협상체결을 통해 다양한 품종수입이 예상되는 환경하에서 교역증가에 대비한 품종분류 세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일류의 경우 품종에 따라 맛과 가격이 차별화되었고 유통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수입시기별 분류방식을 비롯하여 용도별로 분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곡물 및 과일분야에서 관세체계의 문제점과 주요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품목세분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신선 농산물 가운데 기타로 처리된 품목에 대해 향후 교역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실 품목으로 분류하고 이 품목의 가공품도 실 품목의 가공 상태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제안하였다. 특히 GM농산물과 유기농산물 등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이 출현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품목분류의 세분화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관세할당의 분리와 과실의 경우 수입시기를 고려한 방안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2과제는 채소·특작분야이며 주로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를 비롯하여 참깨와 땅콩 등 특작물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제7류 전체를 비롯하여 제9류의 차, 고추, 제12류의 땅콩과 기타 종자와 과실이 대상이고 제 15류 땅콩류와 그 분획물,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20류중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저장, 처리한 채소 및 과실 및 견과류와 식초 또는 초산 이외에 방법으로 처리한 조제 채소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채소특작분야의 문제점은 일부 핵심품목을 제외한 국내 채소 및 특작생산에 중요품목에 대한 품목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수입관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주요 채소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사후 수입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품목세분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분화가 이루어진 품목이라 할지라도 신선과 냉장으로 구분되는 현실에서 제1차 가공품에서의 세분화 정도가 연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일관성 결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주요선진국과

달리 계절관세의 적용이 전무한 상태이며 비종가세의 활용도 그 실적이 저조하여 관세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채소특작분야에서는 채소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안하고 계절별 관세차이를 설정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국산 채소류의 성출하기가 아닌 경우에 수입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관세인하가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관세인하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종량세 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국내산 채소의 성출하기에 종량세를 활용하여 저가의 수입 산에 대한 국경보호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종가세와 국경보호효과에 대한 사전비교 검토를 시도하여 종량세 부과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시사점도 제안하였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세 번 세분화 활용방안과 향후 세 번 세분화와 관세 제도 개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을 고려한 부정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적절수준의 관세개편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제3과제는 축산·낙농분야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그리고 낙농유제품의 일부로 선정하여 주요국의 분류체계와 우리나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국제적 분류동향과 우리나라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쇠고기의 경우는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공 처리한 것을 두루 포함한다. 쇠고기의 경우 이 보다 추가적인 가공이 행해진 경우에는 16류에, 그리고 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5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다만 동물의 장·방광·위 또는 피 등은 식용여부를 불문하고 5류에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쇠고기 식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분야이다. 또한 소시지 등이 포함되는 16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쇠고기 및 관련 가공산업 등의 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였다. 현재 02류 쇠고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2개이다.

돼지고기는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2류가 어류·연체동물·갑각류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제3류) 이외의 모든 동물의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 및 육과 설육의 분과 조분이 두루 분류되는 류이기 때문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3개이다. 가금육의 경우는 다른 육류와 더불어 주로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을 가리키는 02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금육의 경우 이보다 추가적인 가공이 행해진 경우에는 16류에, 그리고 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5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02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02류 가금육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HS 6단위 세번은 총 14개이다. 낙농제품의 경우 HS 4단위기준으로 이루어졌다.(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 기타 발효/산화된 밀크와 크림, 0404: 유장과 따로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우유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0405: 버터, 기타의 지와 유, 데어리 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1702: 1702류 중 1702.11/19의 유당, 유당시럽, 1901: 1901류 중 1901.10/90의 밀크조제품)

축산·낙농분야인 경우 다른 2개의 과제에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품목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축산분야는 주요국과 비교 시 구체적인 세번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주요국의 경우 단순 관세 부과 차원을 넘어선 정책적인 목적으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있음을 우리나라 분류체계와 큰 차이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돼지고기는 주재료별, 가공방법별 세분화가 미흡한 점과 SSG 등 중요정책수단이 세 번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국가간 통상협상에서 중요쟁점이 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반면 가금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와는 달리 세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분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낙농제품의 경우는 주요국과 대비 적은 세 번수의 문제점과 시장접근 대상품목과 비 대상 품목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종가세위주의 관세구조로 인한 문제점과 역관세 구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보호효과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3가지 대 주제를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정확한 수입동향 파악을 통한 국내 주요 품목의 효과적인 수급관리를 비롯하여 관세당국의 엄격한 분류유도를 통한 우회수입방지 그리고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WTO/FTA 농업협상에서의 관세감축에 대한 협상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품목세분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농업의 효과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정책적 효율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보완이라 생각되는 바이다.

- -

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 -

제1주제 : 곡물 · 과일분야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최세균 · 어명근 등,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 어명근,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분석,” 「농촌경제」 2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2001,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 감축 효과,” 「농촌경제」 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 허주녕 외, 2006. 5.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농림부.

한국관세연구소, 2004, 「HS 종합편람 관세율표」.

Choi, S.K. et al. 1998, “Effective Protection Rates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1(2), Korea Rural Economic Development.

<http://www.tares.ch>

<http://www.ezv.admin.ch>

<http://eur-lex.europa.eu/JOHtml.do?uri=OJ:L:2008:291:SOM:EN:HTML>

제2주제 : 채소 · 특작류분야

1. 관세무역개발원, www.custra.com

2. 관세청, www.customs.go.kr

4. 관세평가분류원, 「2007년 관세율표실무해설편람」, 2006

5.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통계연보」 2008

6.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2008

7. 세계농정연구원, 「시장개방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관세체제의 중장기 개편방향」, 2007.

8. 세계관세기구(WCO), www.wcoomd.org/tariff

8.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9. 미국의 관세율표 USITC, Tariff Information Center, <http://www.usitc.gov/>

10. 일본의 관세율표, www.customs.go.jp

11. EU의 관세율표,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tarhome_en.htm

— —

제3주제 : 축산·낙농유분야

김정환, 김성일(2007), 관세율표 및 상품학, 박문각

김재식(2002), “관세율표 상 농산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3권 제2호

김재식(2008), “품목분류 왜곡을 통한 농산물의 관세회피 사례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김영춘, 김광수(2004), “HS 품목분류의 시각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3호

김영춘외(2004), “무역통계의 정확성 증진 방안”, 관세학회지 제5권 제2호

낙농진흥회(2009), 「2008 낙농 통계연감」

농수축산신문(2009), 「2009-2010 한국축산연감」

농협중앙회(2007), 「육류 부산물 유통 실태 및 위생 안전성 제고」

박형기외(2009), 「식육 육제품의 과학과 기술」

송기호(2008), 「급창을 위한 변론」

이균(2008), 「관세론」

이병오외(2008), 「축산업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외(2007),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GS & J Institute 연구용
역보고서 2007.

임정빈외(2007).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국제농업개발
학회지」 19권4호.

임정빈(2000). “WTO 출범 이후 국제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과 정책과제,” 「농촌경
제」 23권4호.

정용화, 홍영선(2009),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최용규외(2007),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관세체제의 중장기 개편방향」, 세계농
정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07.

최세균외(2006),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농림부 연구용역보고서,
2006.

최세균, 임송수(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감축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보고서 R448.

관세청(2009), 「관세율표 실무해설 편람」

농림부(2009), 「농림축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국제농업국.

대한민국(1994), UR 농산물 협상 이행계획서.

- -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7), 「관세율표」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2003-2009), 「식육편람」 각 년도.

James P. Houck(1986), Elements of Agricultural Trade Policies.

Neil Vousden(1989), Tariff Escalation in Agricultural Trade.

OECD(1999), Review of Tariff Synthesis Report

USDA-ERS(1999), "Implementation of Uruguay Round Tariff Reductions", Agricultural Outlook, 19 October.

USDA-ERS(1999), "Agriculture and the Evolution of Tariff Bargaining", Agricultural Outlook, 20 July.

USDA-ERS(2001), Profiles of Tariffs in Global Agricultural Markets. USDA/ ERS Report No 796.

USITC(2009),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09

WTO(2004) Calculation of Ad valorem Equivalent: Data Requirements and Availability, TN/AG/S/11

WTO(1998), Uruguay Round Agricultural Tariff Reductions for Selected WTO Members, AIE/S11, 1998.

<http://krei.re.kr/kor/info/world.php> (KREI 세계농업정보)

<http://www.cl24.co.kr/> (씨엘 관세정보)

<http://www.usitc.gov/tata/hts/>(미국),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EU\)](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EU)),

<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index.htm>(일본),

<http://www.mac.doc.gov/China/Docs/searchableothertariffs.pdf>(중국),

<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08/01-99/tblmod-1-eng.html#toc-tdm>(캐나다), <http://www.cbec.gov.in/customs/cst-0607/cst-main.htm>(인도),

http://www.export.gov/static/switzerland_tariff_schedule.pdf(스위스)

<http://www.hsodelist.com/>

<http://www.wcoomd.org/tariff/>

- -